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복지ir 함께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퍼블리셔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584-10



# 2018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 2018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2018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 Contents



## I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16
2. 추진배경 및 경과 .....	18
3. 2018년 사업추진방향 .....	20
4. 사업추진체계 .....	21

## II 사업운영

1. 드림스타트 설치 .....	24
2. 조직 구성 및 주요업무 .....	26
3. 사업관리 .....	30
4.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관리 .....	34
5. 예산관리 .....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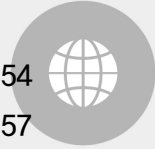
##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1. 운영위원회 .....	48
2. 아동복지기관협의체 .....	49
3. 슈퍼비전 .....	50
4. 멘토-멘티 체계 .....	51



## IV 아동통합사례관리

1. 아동통합사례관리 개요 .....	54
2. 아동통합사례관리 과정 .....	57
3.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운영 .....	79



## V 자원관리

1. 개념 .....	86
2. 자원관리 방법 .....	89

## 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1. 개요 .....	96
2. 사례관리 협력체계 .....	96



## VII 부록

1. 근거법령 .....	103
2. 관련서식 .....	121
3. 참고자료 .....	165
4. 아동통합사례관리 안전준칙 .....	193
5.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 서식 .....	201
6. 전산시스템 권한 .....	243
7.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매뉴얼 ...	251



# 부록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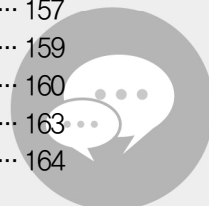
## [부록 1] 근거법령



1. 드림스타트 운영 근거 법령 .....	104
2. 기부금품의 모집 관련 법령 .....	107
3. 숙박형 청소년 활동 관련 법령 .....	109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령 .....	111
5.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령 .....	118

## [부록 2] 관련서식

1. 사업계획서(예시) .....	122
2.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실적 점검표 .....	125
3.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129
4. 드림스타트(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서 .....	130
5. 초상권 사용 동의서 .....	131
6.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	132
7.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133
8.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134
9.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135
10. 근로계약서(예시) .....	136
11. 운영위원회 회의록 .....	138
12. 아동복지기관협의체 회의록 .....	139
13. 슈퍼비전 기록지 .....	140
14. 업무협약서(예시) .....	141
15. 서비스 관리일지(서비스 수행기관용) .....	143
16. 서비스 관리대장(드림스타트) .....	144
17. 후원금(품) 관리대장 .....	145
18. 자원봉사 활동일지(단체) .....	146
19. 자원봉사 활동일지(개인) .....	147
20. 자원봉사 관리대장 .....	148
21. 자원봉사 확인증(예시) .....	149
22. 자원봉사 신청서 .....	150
23. 서비스 만족도 조사 .....	151
24. 효과성 측정(참고 서식) .....	152
25. 지역 간 드림스타트 서비스 의뢰 요청서(예시) .....	157
26. 지역 간 드림스타트 서비스 의뢰 결과서(예시) .....	159
27. 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 의뢰 양식 .....	160
28.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의뢰서 .....	163
29.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결과확인서 .....	164







### [부록 3] 참고자료

1. 전국 드림스타트 지역유형 분류 .....	166
2. 전국 드림스타트 현황 .....	168
3.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170
4. 행복e음 전국자원 현황 .....	173
5. 외국의 아동통합서비스 운영사례 .....	178



### [부록 4] 아동통합사례관리 안전준칙

1. 공통지침 .....	194
2. 아동의 집 등을 방문할 시 주의사항 .....	195
3. 대상아동 및 가족과 상호작용 시 주의사항 .....	197

### [부록 5]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 서식

1. 초기상담 .....	202
2. 인적정보관리 .....	203
3. 욕구조사 .....	212
4.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도구 .....	223
5. 사례회의관리 .....	224
6. 대상자선정 및 유형분류 .....	225
7. 서비스 제공계획 관리 .....	226
8. 지역서비스 제공관리 .....	237
9. 서비스 점검관리 .....	239
10. 종결심사관리 .....	241



### [부록 6] 전산시스템 권한

1. 행복e음 권한 및 ID 부여 .....	244
--------------------------	-----

### [부록 7]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매뉴얼

1.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도구의 이해 .....	252
2.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의 실시 .....	255
3.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결과의 활용 .....	263
4. 사정도구 세부문항별 평정 .....	266
5. 참고자료 .....	292





## 「2018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주요 변경내용

### I. 사업개요

페이지	2017년	2018년	비고
16	1. 사업개요 나. 사업대상 ■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시설입소 아동 사례관리 기준 (생략) <신설>	1. 사업개요 나. 사업대상 ■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시설입소 아동 사례관리 기준 (생략) - 일시보호시설, 모자원 아동 등은 필요 시,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관리대상으로 선정 가능	일부 시설입소 아동에게 지자체 재량으로 대상 선정 가능토록 개선

### II. 사업운영

페이지	2017년	2018년	비고
24	1. 드림스타트 설치 다. 사업환경 조성 ■ (설치장소) (생략) ※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시, 지방비를 확보하여 시·군·구 내 드림스타트 1개소 이상 추가 설치 가능 <신설>	1. 드림스타트 설치 다. 사업환경 조성 ■ (설치장소) (생략) ■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시, 지방비를 확보하여 드림스타트 사무소 추가 설치 가능 ※ 주사무소 지정 (이하 생략)	시·군·구 드림스타트 사무소 추가 설치 및 주사무소 지정 필요
26	2. 조직 구성 및 주요 업무 가. 조직 구성 및 역할 1) 운영책임 ■ 시장·군수·구청장 - 드림스타트 전담부서 설치 <신설>	2. 조직 구성 및 주요 업무 가. 조직 구성 및 역할 1) 운영책임 ■ 시장·군수·구청장 - 드림스타트 전담부서 설치 ※ 전담부서(드림스타트 전담팀)는 아동 복지 담당부서에 설치하여 각종 아동 복지 제도 및 자원 간 연계 원활 도모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부서에 드림스타트 전담팀 설치 필요

페이지	2017년	2018년	비고																		
27	<p>2) 운영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생략)</li> <li>- 지역별 기본 4명 배치, 사례관리 아동 수에 따라 최대 7명까지 채용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사례관리 아동 수 60~80명 권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2) 운영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생략)</li> <li>- 지역별 기본 4명 배치, 취약계층 아동 수를 고려하여 7명까지 채용 〈위치변경〉</li> </ul> <p>※ 「2018년 시·군·구별 예산 지원기준」(p.44)에 맞게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운용(추가 총원 등)을 위해 지원된 인건비 산정 인원에 따라 채용(취약계층 아동 과다 지역은 8명까지 채용 지원)</p>	<p>2018년 시·군·구별 예산 지원 기준 준용</p> <p>아동통합 사례관리사 1인당 권장 사례관리 아동 수 50 ~ 70명 권장으로 조정→Ⅳ.2 아동통합사례 관리과정의 다 2) '대상자 선정'(p.68)으로 위치변경</p> <p>복지부가 통보한 시·군·구별 예산 지원기준에 따라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추가 총원 등 이행 필요</p>																		
31	<p>3. 사업관리</p> <p>다. 사업운영 점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점검 시기</th> <th>대상 지역</th> <th>대상 사업</th> </tr> </thead> <tbody> <tr> <td>2017년 1~3월</td> <td>대도시 기초단체/농산어촌 기초단체</td> <td>2015~ 2016년 추진사업</td> </tr> <tr> <td>2018년 1~3월</td> <td>대도시 자치구/중소도시 기초단체</td> <td>2016~ 2017년 추진사업</td> </tr> </tbody> </table>	점검 시기	대상 지역	대상 사업	2017년 1~3월	대도시 기초단체/농산어촌 기초단체	2015~ 2016년 추진사업	2018년 1~3월	대도시 자치구/중소도시 기초단체	2016~ 2017년 추진사업	<p>3. 사업관리</p> <p>다. 사업운영 점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점검 시기</th> <th>대상 지역</th> <th>대상 사업</th> </tr> </thead> <tbody> <tr> <td>2018년 1~3월</td> <td>대도시 자치구/중소도시 기초단체</td> <td>2016~ 2017년 추진사업</td> </tr> <tr> <td>2019년 1~3월</td> <td>대도시 기초단체/농산어촌 기초단체</td> <td>2017~ 2018년 추진사업</td> </tr> </tbody> </table>	점검 시기	대상 지역	대상 사업	2018년 1~3월	대도시 자치구/중소도시 기초단체	2016~ 2017년 추진사업	2019년 1~3월	대도시 기초단체/농산어촌 기초단체	2017~ 2018년 추진사업	<p>점검지역을 당해 연도 기준으로 수정</p>
점검 시기	대상 지역	대상 사업																			
2017년 1~3월	대도시 기초단체/농산어촌 기초단체	2015~ 2016년 추진사업																			
2018년 1~3월	대도시 자치구/중소도시 기초단체	2016~ 2017년 추진사업																			
점검 시기	대상 지역	대상 사업																			
2018년 1~3월	대도시 자치구/중소도시 기초단체	2016~ 2017년 추진사업																			
2019년 1~3월	대도시 기초단체/농산어촌 기초단체	2017~ 2018년 추진사업																			





페이지	2017년	2018년	비고
33	〈신설〉	마. 사업 수행인력 안전대책 ■ 시·군·구 드림스타트는 사례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행인력의 위험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매년 수행인력 안전대책 마련 (이하 생략)	사업 수행인력 안전대책 마련 필요
34	4. 행정사항 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관리 (생략)	4.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관리 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배치 1) 기존 근무자(전환, 연속(재)고용 등) 채용 기준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방침에 따라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이하 생략) 2) 신규(결원 또는 증원 등에 따른 총원 시) 채용기준 ■ 관련 분야 자격증(간호, 복지, 보육(교육)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현장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 (중략) - 사회복지사 1급, 보육교사 1급, 정교사,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준교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략) ※ 자격증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 해당 기관장의 책임 하에 드림스타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채용 가능 5) 채용 형태 ■ 시·군·구가 직접 고용 형태로 채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 방침에 따른 정규직(무기계약직) 채용 원칙 (이하 생략)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기존 근무자 및 신규 채용 기준을 구분 해당 분야의 현장경력 강화하여 신규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채용 기준에 반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사항 반영

페이지	2017년	2018년	비고																								
36	<p>&lt;신설&gt;</p> <p>(생략)</p>	<p>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복무관리</p> <p>2) 권한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분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취약계층 대상 가정 또는 관련 기관 방문 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신분증 발급 크기 및 형태 등은 공무원증과 동일</li> </ul> </li> <li>■ 행복e음 이용 ID 부여</li> <li>■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이용 ID 부여</li> </ul>	<p>신분증 발급 사항 추가 및 전산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p>																								
37	<p>나) 서비스 운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급은 연차에 따라 차등지급</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caption>&lt;연차에 따른 기본급 지급 기준&gt;</caption> <thead> <tr> <th>근무 기간</th> <th>1년차 (1년 미만)</th> <th>2년차 (1년 이상 ~ 2년 미만)</th> <th>3년차 (2년 이상 ~ 3년 미만)</th> <th>4년차 (3년 이상 ~ 4년 미만)</th> <th>5년차 이상 (4년 이상 ~)</th> </tr> </thead> <tbody> <tr> <td>기본급 (만원)</td> <td>170</td> <td>175</td> <td>180</td> <td>185</td> <td>190</td> </tr> </tbody> </table> <p>※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 드림스타트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지출 가능</p>	근무 기간	1년차 (1년 미만)	2년차 (1년 이상 ~ 2년 미만)	3년차 (2년 이상 ~ 3년 미만)	4년차 (3년 이상 ~ 4년 미만)	5년차 이상 (4년 이상 ~)	기본급 (만원)	170	175	180	185	190	<p>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급은 연차에 따라 차등지급</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caption>&lt;연차에 따른 기본급 지급 기준&gt;</caption> <thead> <tr> <th>근무 기간</th> <th>1년차 (1년 미만)</th> <th>2년차 (1년 이상 ~ 2년 미만)</th> <th>3년차 (2년 이상 ~ 3년 미만)</th> <th>4년차 (3년 이상 ~ 4년 미만)</th> <th>5년차 이상 (4년 이상 ~)</th> </tr> </thead> <tbody> <tr> <td>기본급 (만원)</td> <td>175</td> <td>180</td> <td>185</td> <td>190</td> <td>195</td> </tr> </tbody> </table> <p>※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된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 드림스타트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지출 가능</p>	근무 기간	1년차 (1년 미만)	2년차 (1년 이상 ~ 2년 미만)	3년차 (2년 이상 ~ 3년 미만)	4년차 (3년 이상 ~ 4년 미만)	5년차 이상 (4년 이상 ~)	기본급 (만원)	175	180	185	190	195	<p>기본급 약 3% 인상 및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된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에도 사업비 내 인건비 지출 가능토록 변경</p>
근무 기간	1년차 (1년 미만)	2년차 (1년 이상 ~ 2년 미만)	3년차 (2년 이상 ~ 3년 미만)	4년차 (3년 이상 ~ 4년 미만)	5년차 이상 (4년 이상 ~)																						
기본급 (만원)	170	175	180	185	190																						
근무 기간	1년차 (1년 미만)	2년차 (1년 이상 ~ 2년 미만)	3년차 (2년 이상 ~ 3년 미만)	4년차 (3년 이상 ~ 4년 미만)	5년차 이상 (4년 이상 ~)																						
기본급 (만원)	175	180	185	190	195																						
40	<p>나. 예산관리</p> <p>1) 국고보조금 집행지침</p> <p>- (시·군·구) 사업안내서 「17년 예산편성(안)」을 근거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p>	<p>5. 예산관리</p> <p>나.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사업안내서 「2018년 시·군·구별 예산 지원기준(안)」(p.44)을 근거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li> </ul>	<p>복지부가 통보한 시·군·구 예산 지원기준(안)으로 변경</p>																								



페이지	2017년	2018년	비고																																																
44	<p>3) 2017년 예산편성(안)</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사업내역</th> <th>사업비</th> </tr> </thead> <tbody> <tr> <td>1. 기본 사업비</td> <td></td> <td>50</td> </tr> <tr> <td>가. 사업 관리 운영비</td> <td>- 시설유지관리비, 사무용품 구입비, 공과금, 여비, 교육비, &lt;이하 생략&gt;</td> <td>50</td> </tr> <tr> <td>2. 서비스 운영비</td> <td></td> <td>250</td> </tr> <tr> <td>가. 기본 서비스</td> <td>- 기본서비스 수행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td> <td>150</td> </tr> <tr> <td>나. 필수·맞춤 서비스</td> <td>- 필수·맞춤 서비스 연계 및 제공비</td> <td>90</td> </tr> <tr> <td>다. 지역사회 조직화</td> <td>- 부모, 실무자, 지역 사회 참여자 대상 사업설명회 및 교육 운영비 등 - 전문가 수당, 슈퍼바이저 수당, 운영위원회 지원 및 수당, 아동복지 기관협의체 수당, 자원 봉사활동비, 홍보비 등</td> <td>10</td> </tr> <tr> <td>사업비 계</td> <td></td> <td>300</td> </tr> </tbody> </table> <p>- 예산 편성기준 : 시·군·구별 3억원(다만 서울은 2억원) · 시·군·구별 지원금액은 취약계층 아동 수, 사례관리 아동 수 등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 시·도는 보건복지부가 문서로 통보하는 '시·군·구별 지원기준'을 참고하되, 필요한 경우 지역간 지원단가를 조정하여 교부 가능</p>	구분	사업내역	사업비	1. 기본 사업비		50	가. 사업 관리 운영비	- 시설유지관리비, 사무용품 구입비, 공과금, 여비, 교육비, <이하 생략>	50	2. 서비스 운영비		250	가. 기본 서비스	- 기본서비스 수행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150	나. 필수·맞춤 서비스	- 필수·맞춤 서비스 연계 및 제공비	90	다. 지역사회 조직화	- 부모, 실무자, 지역 사회 참여자 대상 사업설명회 및 교육 운영비 등 - 전문가 수당, 슈퍼바이저 수당, 운영위원회 지원 및 수당, 아동복지 기관협의체 수당, 자원 봉사활동비, 홍보비 등	10	사업비 계		300	<p>3) 2018년 시·군·구별 예산 지원기준(안)</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사업내역</th> <th>사업비</th> </tr> </thead> <tbody> <tr> <td>1. 기본 사업비</td> <td></td> <td>50</td> </tr> <tr> <td>가. 사업 관리 운영비</td> <td>- 시설유지 관리비, 사무용품 구입비, 공과금, <u>수행인력 여비 및 교육비</u>, &lt;이하 생략&gt;</td> <td>50</td> </tr> <tr> <td>2. 서비스 운영비</td> <td></td> <td>&lt;삭제&gt;</td> </tr> <tr> <td>가. 기본 서비스비</td> <td>-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기본서비스 수행비</td> <td>차 등</td> </tr> <tr> <td>나. 필수·맞춤 서비스비</td> <td>- 필수·맞춤 서비스 연계 및 제공비</td> <td>차 등</td> </tr> <tr> <td>다. 지역사회 조직화비</td> <td>- 부모, 실무자, 지역 사회 참여자 대상 사업설명회 및 교육 운영비 등 - 운영위원회, 아동복지 기관 협의체, 슈퍼바이저 등 지원기구 운영 지원 및 수당, 사례관리 컨설팅 운영 지원 및 수당, 전문가 또는 슈퍼바이저 수당, 자원봉사 활동비 등</td> <td>10</td> </tr> <tr> <td></td> <td></td> <td>&lt;삭제&gt;</td> </tr> </tbody> </table> <p>■ 예산 지원기준 : 지역여건(취약계층 아동 수, 지리적 특성) 및 사업추진상황(사례관리 아동 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지원금액 조정 - 시·도는 보건복지부가 문서로 통보하는 '시·군·구별 예산 지원기준'을 참고하되, 필요한 경우 지역 간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교부 가능 (이하 생략)</p>	구분	사업내역	사업비	1. 기본 사업비		50	가. 사업 관리 운영비	- 시설유지 관리비, 사무용품 구입비, 공과금, <u>수행인력 여비 및 교육비</u> , <이하 생략>	50	2. 서비스 운영비		<삭제>	가. 기본 서비스비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기본서비스 수행비	차 등	나. 필수·맞춤 서비스비	- 필수·맞춤 서비스 연계 및 제공비	차 등	다. 지역사회 조직화비	- 부모, 실무자, 지역 사회 참여자 대상 사업설명회 및 교육 운영비 등 - 운영위원회, 아동복지 기관 협의체, 슈퍼바이저 등 지원기구 운영 지원 및 수당, 사례관리 컨설팅 운영 지원 및 수당, 전문가 또는 슈퍼바이저 수당, 자원봉사 활동비 등	10			<삭제>	<p>2018년 시·군·구별 예산 지원기준(안)으로 변경</p>
구분	사업내역	사업비																																																	
1. 기본 사업비		50																																																	
가. 사업 관리 운영비	- 시설유지관리비, 사무용품 구입비, 공과금, 여비, 교육비, <이하 생략>	50																																																	
2. 서비스 운영비		250																																																	
가. 기본 서비스	- 기본서비스 수행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150																																																	
나. 필수·맞춤 서비스	- 필수·맞춤 서비스 연계 및 제공비	90																																																	
다. 지역사회 조직화	- 부모, 실무자, 지역 사회 참여자 대상 사업설명회 및 교육 운영비 등 - 전문가 수당, 슈퍼바이저 수당, 운영위원회 지원 및 수당, 아동복지 기관협의체 수당, 자원 봉사활동비, 홍보비 등	10																																																	
사업비 계		300																																																	
구분	사업내역	사업비																																																	
1. 기본 사업비		50																																																	
가. 사업 관리 운영비	- 시설유지 관리비, 사무용품 구입비, 공과금, <u>수행인력 여비 및 교육비</u> , <이하 생략>	50																																																	
2. 서비스 운영비		<삭제>																																																	
가. 기본 서비스비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기본서비스 수행비	차 등																																																	
나. 필수·맞춤 서비스비	- 필수·맞춤 서비스 연계 및 제공비	차 등																																																	
다. 지역사회 조직화비	- 부모, 실무자, 지역 사회 참여자 대상 사업설명회 및 교육 운영비 등 - 운영위원회, 아동복지 기관 협의체, 슈퍼바이저 등 지원기구 운영 지원 및 수당, 사례관리 컨설팅 운영 지원 및 수당, 전문가 또는 슈퍼바이저 수당, 자원봉사 활동비 등	10																																																	
		<삭제>																																																	



### Ⅲ.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페이지	2017년	2018년	비고
48	1. 운영위원회 나. 구성 및 운영 (신설)	1. 운영위원회 나. 구성 및 운영 ▪ 임기 : 지자체 별도 규정 ▪ 회의수당 : 지급 가능	임기 및 회의수당, 자문료, 원고료 등 지급 근거 추가
49	2. 아동복지기관협의체 나. 구성 및 운영 (신설)	2. 아동복지기관협의체 나. 구성 및 운영 ▪ 임기 : 지자체 별도 규정 ▪ 회의수당 : 지급 가능	
50	3. 슈퍼비전 나. 구성 및 운영 (신설)	3. 슈퍼비전 나. 구성 및 운영 ▪ 임기 : 지자체 별도 규정 ▪ 회의수당 : 지급 가능 ※ 자문료, 원고료 등 추가 지급 가능	

### Ⅳ. 아동통합사례관리

페이지	2017년	2018년	비고
55	1. 통합사례관리 개요 (신설)	1. 아동통합사례관리 개요 라. 역할 ▪ 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초기정보 수집 및 사정, 개입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점검, 평가, 종결 등 사례관리의 전 과정 총괄하는 역할 (이하 생략) 마. 방법 ▪ 인적정보관리, 욕구조사,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기반으로 대상 아동과 가족의 욕구 및 문제 파악 (이하 생략)	아동통합 사례관리 전반에 대한 이론 추가
64	2. 통합사례관리 과정 나. 사정 ※ 비사례대상인 경우, 최종 사례관리대상에서 제외되나 1년마다 재사정을 통해 대상아동 및 가족의 변화 사항 점검	2. 아동통합사례관리 과정 나. 사정 - 사정결과, 비사례대상*인 경우 · 최종 사례관리대상에서 제외되나 1년마다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아동 및 가족의 변화 사항 점검	비사례대상 정의 및 사후관리 방안 변경



페이지	2017년	2018년	비 고
	<p>〈신설〉</p>	<p>* 비사례대상 : 양육환경 사정도구 및 아동발달 사정도구의 모든 항목에서 '0점(없음)'으로 체크된 대상자 (이하 생략)</p>	
69	<p>다. 계획 2) 대상자 선정  〈신설〉</p>	<p>다. 계획 2) 대상자 선정 권장 사례관리 아동 수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50~70명 권장 ※ 취약계층 아동이 과다한 지역이더라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사례관리 아동 수가 최대 80명을 넘지 않도록 함</p>	<p>1인당 권장 사례관리 아동수 변경</p>
75	<p>바. 종결 1) 종결심사 - 종결유형은 종결사유에 따라 '재조사'와 '종결'로 구분 * 종결사유 : ① 연령 도래에 따른 상급 학교 진학(만 13세 이상) ② 이사 또는 연락 두절(사망 포함) ③ 아동 및 가족의 서비스 거절이나 포기 ④ 기타 서비스 조정회의 결과 종결 합의된 사례 ⑤ 재사정 결과 비사례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신설〉</p>	<p>바. 종결 1) 종결심사 - 종결유형은 '재조사'와 '종결'로 구분 〈참고〉 종결사유 ① 재사정 결과 비사례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장, 단기 목표 달성) ② 연령 도래에 따른 상급학교 진학(만 13세 이상) ③ 이사 또는 6개월 이상 연락 두절(사망 포함) ④ 아동 및 가족의 서비스 거절이나 포기 (서비스 거부 동의서 활용 가능) ⑤ 기타 서비스 조정회의 결과 종결 합의 된 사례 * 위 ①의 경우, '종결심사관리'를 작성 하기 전에 재사정 결과를 '위기도 조사'에 추가하여 등록</p>	<p>종결사유 내용 구체화</p>
76	<p>2) 사후관리  ■ 개념 - 종결 이후, 대상자의 상황이 유지되는 정도를 파악하고, 재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 ■ 주요내용 - 종결 후 일정기간을 두고 종결 이후의 변화상황, 안정화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재개입 필요성을 조기에 판단하는 사후관리 실시</p>	<p>2) 사후관리  ■ 개념 - 종결 이후, 대상자 및 가족이 성취한 변화들을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재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 ■ 주요내용 - 종결 후 6개월 이내에 변화상황, 안정화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재개입 필요성을 조기에 판단하는 사후관리 실시</p>	<p>사후관리의 개념 정리 및 내용 구체화</p>

페이지	2017년	2018년	비 고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인 사후관리 일정, 내용을 포함하여 사후관리계획 작성</li> <li>-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li> <li>- 종결대상자에게 종결심사 단계에서 e-그린우편을 연계하여 통지서 발행 가능 (단, e-그린우편을 사용하는 지역만 발송 가능)</li> </ul>	<p>사후관리 시 전산입력 방법 안내</p> <p>종결통지서 발행 관련 안내</p>
81	3.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신설〉	<p>3.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운영</p> <p>라)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p> <p>1) 서비스 인력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실행을 위해 채용되는 인력(아동통합사례관리사, 강사, 자원봉사자)에 대한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을 각각 조회 실시</li> </ul>	<p>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구체화</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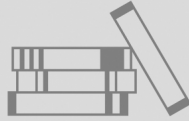
## V. 자원관리

페이지	2017년	2018년	비 고
91	〈신설〉	<p>라. 복지자원 일제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관리책임자는 지자체에서 자체 발굴 등록한 지역 복지자원 정보에 대해 정해진 사업기간 동안 행복e음(복지자원통합관리 시스템)에 정비 실시</li> <li>-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 내 정보의 적합성 점검 및 현행화</li> </ul>	<p>복지자원 일제 정비 내용 추가</p>

## 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페이지	2017년	2018년	비 고
98	2. 사례관리 협력체계 나. 희망복지지원단 〈신설〉	<p>2. 사례관리 협력체계</p> <p>나. 희망복지지원단</p> <p>1) 희망복지지원단과 드림스타트 간 중복 서비스 연계 방지를 위한 사전 협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서비스가 기 연계되고 있는지를 확인 후 서비스 연계</li> </ul>	<p>사례관리 기관 간 연계 협력 강화</p>





# I

## 사업개요

1. 사업개요
2. 추진배경 및 경과
  - 가. 추진배경
  - 나. 추진경과
3. 2018년 사업추진방향
4. 사업추진체계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나. 사업대상

-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 시설입소 아동 사례관리 기준

-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은 중복 수혜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대상에서 제외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아동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대상으로 선정 가능
- 일시보호시설, 모자원 아동 등은 필요 시,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관리대상으로 선정 가능
- 기존 사례관리대상 중 서비스 연계로 인해 대상자가 아동양육시설 입소 시 1년간 모니터링 사례관리 진행 하고, 사례관리대상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시 관련 비용은 연계된 아동양육시설에서 지원



### 사례관리 연령 제한의 예외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중 만 12세 연령 도래로 인한 종결 심사시점에 위기개입집중사례관리 등급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례회의 및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례관리 기간 연장 가능(최대 만 15세까지)



## 다. 사업내용

-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인적조사 및 사정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 라.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 ☞ <부록 근거법령 1> 드림스타트 운영 근거 법령 (p.104)

## 마.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시·군·구가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드림스타트) 설치·운영

〈표 1〉 연도별 사업지역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시·군·구 (사업실시단위)	16	32	75	101	131	181	211	219	229

## 2. 추진배경 및 경과

### 가. 추진배경

-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및 사회양극화 등에 따른 아동 빈곤 문제의 심각성 대두
  - 빈곤 가정 아동은 부적절한 양육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건강한 성장 발달 저해

※ 아동의 빈곤은 아동의 삶의 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빈곤아동 삶의 질과 소득지원방안」,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물질적 복지, 건강과 안전, 교육, 위험행동, 주거 및 환경' 등 분야에서 빈곤계층 아동의 삶의 질이 비빈곤 아동에 비해 열악
- 빈곤아동은 비빈곤 아동에 비해 인지발달이 더디고 정서적 불안 등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등 향후 직업 선택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지역사회 내 비행 등의 확률이 높음

- 빈곤 가정 아동에 대한 선제적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 강조
  - 빈곤 가정 아동에 대한 조기투자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 단절 및 인적자본 축적으로 향후 사회비용 절감효과 기대
  - 빈곤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빈곤 가정의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미래적 가치 창출 가능

※ 아동기 빈곤은 빈곤이 대물림되는 원인이며, 빈곤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은 빈곤 완화를 위한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은 공공정책임

<아동빈곤에 대한 유니세프 이슈브리프, 2014년 7월>

- 아동기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생산성 손실, 의료보호 등 사회보호 정책,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됨 (미국의 경우 GDP의 약 4%)

※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성취, 복지수급 등의 측면에서 \$1 투자에 대해 최대 \$16.1의 환원효과 발생  
 <美 랜드연구소, '06>

-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
  - 보건·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사전 예방적·밀착형 통합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공평한 기회보장  
 <부록 참고자료 5> 외국의 아동통합서비스 운영사례 (p.178)



## 나. 추진경과('06~'17년)

연도	추진내용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0개 보건소)</li> <li>- 학대, 방임 아동 발견 등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li> </ul>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실시 16개 시·군·구</li> </ul>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명을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로 변경</li> <li>사업지역 확대('07년 16개 → '08년 32개)</li> <li>국정핵심과제 선정 : 2012년까지 사업지역 전국 확대 추진</li> </ul>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역 확대('08년 32개 → '09년 75개)</li> <li>사업의 질적 고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인력 교육 강화 및 사례관리 통합전산시스템 구축</li> <li>- 추진협의회 정기 개최, 멘토-멘티 체계 구축</li> </ul> </li> <li>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체계 마련</li> </ul>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역 확대('09년 75개 → '10년 101개)</li> <li>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홈페이지 개편화</li> <li>대상아동별, 서비스유형별, 지역유형별 특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아동별 : 위기도 검사도구 도입 및 신규사업지역에 적용</li> <li>- 서비스유형별 : 기본·필수·선택 서비스로 분류, 아동발달영역별 서비스 체계 구축</li> <li>- 지역유형별 : 대도시 자치구, 대도시 기초단체, 중소도시 기초단체, 농산어촌 기초단체</li> </ul> </li> </ul>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역 확대('10년 101개 → '11년 131개)</li> <li>위기도 검사도구 전 사업지역 적용</li> <li>아동복지법에 드림스타트사업 근거 신설('11.8.4., '12.8.5. 시행)</li> <li>「지역 내 아동통합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11.8. ~ '13.12.)</li> </ul>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역 확대('11년 131개 → '12년 181개)</li> <li>「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계</li> <li>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li> </ul>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역 확대('12년 181개 → '13년 211개)</li> <li>위기도 검사도구(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도구) 개정</li> <li>사업 실시연수 2년 이상 지역 서비스 대상지역 전체 읍·면·동 확대 단계적 추진</li> <li>아동통합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한 사업체계 개선방안 연구</li> </ul>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역 확대('13년 211개 → '14년 219개)</li>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e-dreamstart) 통합</li> <li>드림스타트 운영 및 서비스 질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유형별로 격년제 점검 ('13년도 사업점검 : 대도시 자치구, 중소도시 기초단체)</li> <li>- 멘토-멘티 지원체계 개선</li> </ul> </li> <li>추진협의회 권역별 개최</li> </ul>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역 전국 확대 완료('14년 219개 → '15년 229개)</li> <li>드림스타트 업무지원시스템과 홈페이지 통합 추진</li> <li>통합사례관리 1:1 컨설팅 시범운영</li> </ul>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사례관리 1:1 맞춤형 컨설팅 운영</li> <li>사업운영 점검 대상기간 확대(1년→2년)</li> </ul>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약계층 아동 수 및 수행인력규모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예산 차등 지원</li> <li>드림스타트 사업 효과성 종단연구 완료(3년)</li> <li>민간 전문인력 명칭 변경(아동통합서비스전문위원 → 아동통합사례관리사)</li> <li>드림스타트 복지정보통계시스템 고도화</li> </ul>

I. 사업개요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합사례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질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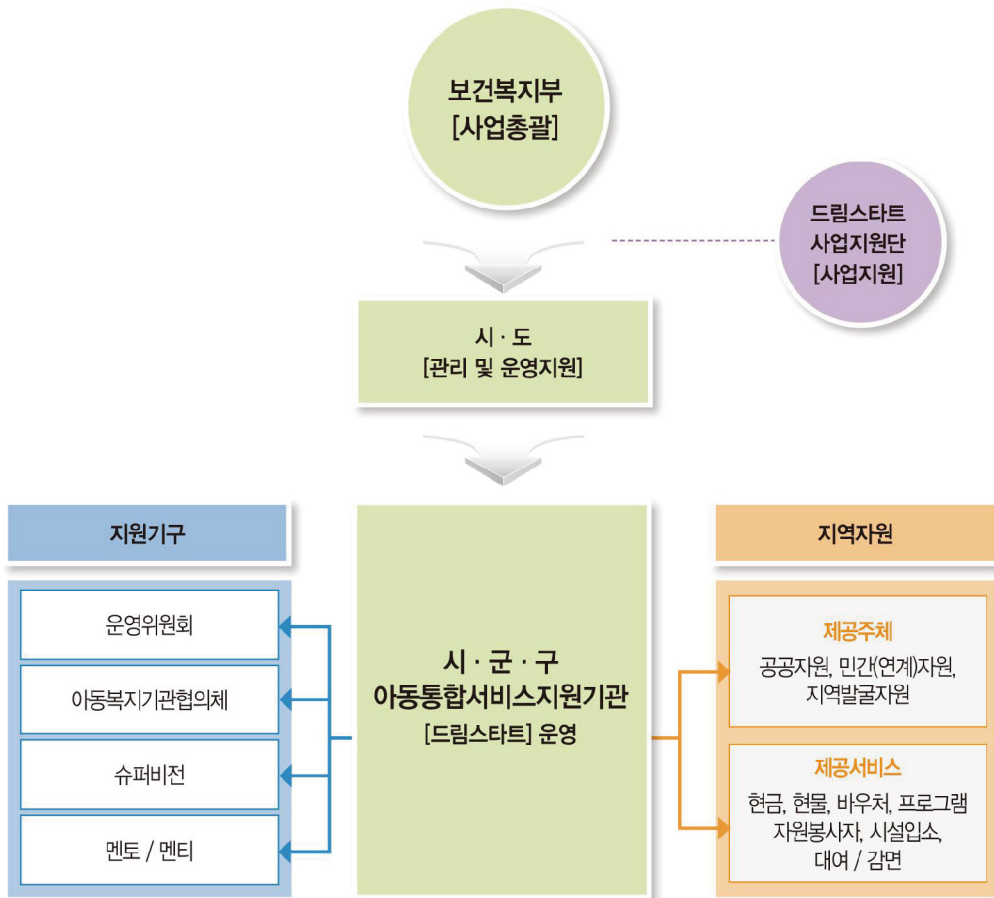
VII. 부록

### 3. 2018년 사업추진방향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를 조기 진단·개입하는 사전 예방적 서비스 체계 강화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 구성 확대 및 사업 수행인력 확충
  
- 지역 간 서비스 수혜 형평성 제고
  - 취약계층 아동 수, 사례관리 아동 수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예산 차등지원으로 재정투입효과 극대화
  
- 지역 내 사각지대 아동 적극 발굴·보호
  - 학대 위험, 방임 등 위기아동 발굴·보호를 위한 가정방문 확대
  - 지자체 재정투입 확대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 적극 발굴
  - 위기아동조기발견시스템을 통해 발굴·연계된 아동 통합사례관리
  
- 운영 효율화를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 시·군·구별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운영방식 적극 활용(분소 형태 등)
  
- 드림스타트 서비스 질 개선 지속 추진
  - 사업운영 점검 및 컨설팅, 효과성 연구 결과 활용 등을 통한 지역별 서비스 질의 균형적 향상
  - 종사자 고용안정 등 처우개선 및 교육을 통해 사례관리 수준 향상
  
- 지역 내 아동복지서비스 사례관리 협력체계 강화
  -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등 사례관리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 운영위원회 및 기관협의체 운영 내실화, 후원기관 등 지역자원 발굴·활용 활성화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적극 연계 활용



## 4. 사업추진체계



[ 그림 1 ] 사업추진체계도

I 사업개요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합서비스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별 부 록



〈 표 1 〉 추진주체별 주요 업무

추진주체	주요 업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li> <li>▪ 국고보조금 확보 및 지원</li> <li>▪ 사업 홍보 및 수행인력 교육 총괄</li> <li>▪ 사업 지원단 구성·운영</li> <li>▪ 사업 운영 지도·점검 등 총괄</li> <li>▪ 사업 추진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추진협의회 운영 등</li> </ul>
시·도 [아동 업무 담당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역 드림스타트 팀 인력배치·정원 조정, 조례 개정 등 지원</li> <li>▪ 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li> <li>▪ 드림스타트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조정</li> <li>▪ 드림스타트 사업 전반(예산, 실적 등)에 대한 점검, 지도</li> <li>▪ 상·하반기 권역별 워크숍 운영 총괄</li> <li>▪ 시·도별 멘토-멘티체계 운영 지원</li> <li>▪ 사업지원단 현장지원 관련 업무 및 운영 지원</li> </ul>
시·군·구 [시·군·구 드림스타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림스타트 설치·운영(사업의 운영 및 관리)</li> <li>▪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 홍보</li> <li>▪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슈퍼비전 구성·운영</li> <li>▪ 드림스타트 중심의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운영</li> <li>▪ 아동복지교사 관리·운영</li> <li>▪ 방과 후 돌봄서비스 아동 배치</li> </ul>
사업지원단 [(재)한국보육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아동통합서비스 협력체계 운영 지원</li> <li>- 통합사례관리 과정 모니터링, 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li> </ul> </li> <li>▪ 연구개발 및 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교육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실무자 교육 운영, 전문가 간담회 등</li> </ul> </li> <li>▪ 사업운영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검모형 개발, 사업운영 점검, 사업효과성 검증</li> </ul> </li> <li>▪ 사업홍보 및 후원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자료 개발, 홍보실시, 후원개발, 뉴스레터제작 등</li> </ul> </li> </ul>



# II

## 사업운영

1. 드림스타트 설치
2. 조직 구성 및 주요업무
3. 사업관리
  - 가. 사업계획 수립
  - 나. 추진실적 관리
  - 다. 사업운영 점검
  - 라. 교육이수
  - 마. 사업수행인력 안전대책
4.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관리
5. 예산관리



# 1. 드림스타트 설치

## 가. 추진체계

- (시·군·구)사업계획서 작성 및 시·도에 제출 → (시·도)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건복지부 제출 → (보건복지부)최종 심사 및 결과 통보

☞ <부록 관련서식 1> 사업계획서 (p.122)

## 나. 조직·인력구성

- 전담 부서 설치 및 공무원 배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공고 및 채용  
 ※ '2. 조직 구성 및 주요업무 (p.26)' 및 '4.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관리 (p.34)' 참고

## 다. 사업 환경조성

- (설치장소) 전담공무원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시·군·구 지역 내 설치  
 ※ 공간 확보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부담, 프로그램운영실 및 상담실은 타 기관과 공동 사용 가능
  - 기존 인프라 또는 유휴 공간(사업장, 대학교, 아파트 단지 내 사무소 등)을 활용하되 어린이집, 놀이터 등으로부터 서비스 대상 아동의 접근성이 최적화 된 곳에 설치
  - 시·군·구 청사 내 설치 시 업무 공간과 구분
  - 사무실, 상담실(개별 상담 가능 공간), 프로그램 운영실(서비스 기획, 연계 등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
-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시, 지방비를 확보하여 드림스타트 사무소 추가 설치 가능



### 주사무소 지정

- 주사무소 : 수행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사무실, 상담실(개별상담 가능 공간), 프로그램 운영실(서비스 기획, 연계 등이 가능한 공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

\* 타 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연락 또는 우편물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무소를 주사무소로 지정하여 연락처 및 주소 등 공개

\* 기타 추가 설치 사무소는 분사무소(분소)라 함



- (비품) 수행 인력의 업무를 위한 기본적인 비품(책상, 컴퓨터, 회의용 집기, 시청각 장비 등) 및 프로그램 교육자료(각종 책자, 시청각 자료 등) 등 구비 가능
- (전산) 사례관리를 위한 행정전산망(지방비), 드림스타트 홈페이지(국비) 유지 및 관리
- (보험) 대상 아동 및 드림스타트 사업 수행인력 등 실무자의 위험 대비, 장소 및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상해(안전)보험, 화재보험 반드시 가입
  - ※ 해당 시설 등에 대한 보험가입이 완료되어 있을 시 별도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

I  
정책대상II  
사업운영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IV  
아동통합사례관리V  
지원관리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지원 조정VII  
부록

## 2. 조직 구성 및 주요업무

### 가. 조직 구성 및 역할

#### 1) 운영책임

- 시장·군수·구청장
  - 드림스타트 전담부서 설치
    - ※ 전담부서(드림스타트 전담팀)는 아동복지 담당부서에 설치하여 각종 아동복지 제도 및 자원 간 연계 원활 도모
  - 사업운영 관련된 제반 사항 지원

#### 2) 운영관리

- 전담공무원
  - 팀장은 6급 이상 공무원
  - 사회복지, 간호·보건, 보육, 행정 분야 각 1인씩, 최소 3인(팀장 포함)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실무경험 3년 이상인 자 등
  - 지역사정 및 정보(자원, 서비스 네트워크 등) 현황에 능한 자를 우선 배치
    - ※ 공무원 인건비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부담
    - ※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근무를 권장



#### 시간선택제 공무원 배치

- 전일제(주당 40시간 근무) 공무원을 팀장 포함 최소 2인 이상을 배치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배치 고려
- 드림스타트 전담팀 미구성 지자체의 경우, 전담공무원 배치(사회복지, 간호·보건, 보육, 행정 각 1인) 결원 분야 충원을 통한 전담팀 구성 방안으로 고려
-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건비’는 드림스타트 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집행 불가

####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 전문인력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보건·복지·보육(교육) 분야 별로 채용



- 지역별 기본 4명 배치, 취약계층 아동 수를 고려하여 7명까지 채용

※ 「2018년 시·군·구별 예산 지원 기준」(p.45)에 맞게,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 운용(추가 총원 등)을 위해 지원된 인건비 산정 인원에 따라 채용 (취약계층 아동 과다 지역은 8명까지 채용 지원)

〈표 1〉 드림스타트 구성 및 업무

구분	전문분야	구성		공통 업무	업무
		공무원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팀장 (운영 및 관리 총괄)	행정, 사회복지, 보건(간호)	공무원 (6급 이상, 1인)	-	아동 통합 사례 관리  아동 학대 신고 의무*	- 시·군·구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및 행정·예산관리 총괄 - 취약계층 아동가구 조사, 서비스 기획·조정 및 서비스 제공 총괄 - 지역사회지원 발굴·연계 및 행복e음 승인 등 자원 총괄 관리 -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 및 사례관리 협력체계 관리 - 수행인력 및 아동복지교사(지역사회복지사 포함) 관리 - 방과후 돌봄서비스 아동 배치 - 업무 관련 협의회 참석 등
보건 담당자	보건 (간호)	1인 이상	1인 이상		- 건강, 영양 등 방문 보건서비스 지원 - 지역 내 보건 연계망 구축 - 의료 개입 및 응급 지원 서비스 등
복지 담당자	사회복지	1인 이상	1인 이상		- 정서 및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지원 - 자원봉사자 및 학교연계 프로그램 관리 등
보육(교육) 담당자	보육(교육)	1인 이상	1인 이상		- 보육/조기교육 프로그램 지원 - 가정방문 조기교육 수행/관리 등

※ 각 분야 담당자 최소 1인 이상 배치, 팀장은 각 영역별 업무(보건, 복지, 보육(교육))를 겸할 수 있음

\* 아동학대 발견 시 즉시 신고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의뢰서를 통해 해당사례를 의뢰하고, 연계결과확인서를 요청하여 아동학대 재발여부 확인 및 사례관리 진행

☞ <부록 근거법령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령 (p.111)

☞ <부록 참고자료 3>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p.170)

☞ <부록 관련서식 28, 29>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의뢰서 및 연계결과확인서 (p.163, p.164)

아동복지교사(지역사회복지사 포함) 업무 및 관리는 「2018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9249, '17.12.29)」을 따름

I  
개요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합사례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운영 및 조정

VII  
부록

## 나. 주요업무

### 1)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 시·군·구 드림스타트 지원기구 구성·운영을 통해 사업운영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운영위원회 :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전반 관련 자문(연 1회 이상)
  - 아동복지기관협의체 : 아동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조정을 통해 지역 내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조정 역할 수행(분기별 1회 이상)
  - 슈퍼비전 : 실무자의 사례관리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자문 및 지원(연 4회 이상)
  - 멘토-멘티체계 : 사업운영과 관련된 노하우 및 우수사례 공유

### 2) 아동통합사례관리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를 통해 아동의 문제 및 욕구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대상아동(위기아동 등) 발굴
  - 취약계층 아동(가구)에 대한 문제 및 욕구 파악을 통한 계획 수립
  -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서비스 연계) 및 점검
  - 사례관리 기초기록 관리 및 아동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 3) 자원관리

-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기적 자원 현황 파악 및 신규 자원 발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등록된 해당 지역자원에 대한 승인, 반려, 종료 처리 및 수정 등 등록자원 총괄 관리

### 4)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 타 사업 간(지역아동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통합 및 조정





- 아동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강화를 위한 기타 업무 수행
  - 방과 후 돌봄서비스 아동 배치 : 돌봄서비스 중복·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아동을 각 돌봄기관에 배치
  - 아동복지교사(지역사회복지사 포함) 관리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업무 수행

I  
정책연구II  
사업운영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IV  
아동통합사례관리V  
지원관리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VII  
부록

## 3. 사업관리

### 가. 사업계획 수립

- 시·군·구 드림스타트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검토·보완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당해 연도 2월까지)
- ☞ <부록 관련서식 1> 사업계획서 (p.122)
  -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교부하고, 시·도는 각 시·군·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 계획 및 소요예산을 검토 후 예산 교부
  - ※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수정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음

### 나. 추진실적 관리

- (시·군·구) 사업추진실적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상시 입력
- (시·도) 시·도는 시·군·구 드림스타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 점검사항 : 실무인력, 대상자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 지역인프라 개발, 예산집행, 아동학대 신고 및 연계현황 등 사업운영사항 및 매년 실시하는 사업운영 점검 결과 지적된 미흡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등
  - 점검일정 : 상반기 6월 30일 기준(7월말까지 보고), 하반기 12월 31일 기준(익년 1월말까지 보고)
    - ※ 이 외에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의 사업추진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방문 등 수시로 실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 <부록 관련서식 2>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실적 점검표 (p.125)



## 다. 사업운영 점검

### 1) 목적

-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점검을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효과적인 사업운영 도모
- 사업진행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확인하여 사업추진을 돕고 문제 해결 지원

### 2) 개요

- (점검시기 및 대상) 매년 1~3월, 격년제 실시(4개 지역유형을 2개 그룹으로 구분)

점검 시기	대상 지역	대상 사업
2018년 1~3월	대도시 자치구 / 중소도시 기초단체	2016년~2017년 추진사업
2019년 1~3월	대도시 기초단체 / 농산어촌 기초단체	2017년~2018년 추진사업

- (점검기구) 점검위원회 (보건복지부(총괄), 중앙점검단, 현장점검단)
  - (중앙점검단) 보건, 복지, 보육(교육) 분야의 전문가
  - (현장점검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외부전문가 포함), 시·도담당자, 비점검지역 드림스타트 팀장

### 3) 점검내용 및 방법

- (점검분야) 기본구성,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자원개발 및 연계, 만족도, 홍보 등 총 6개 분야 11개 영역

점검분야	점검영역
1. 기본구성	1. 시설환경 및 관리 2. 사업운영체계 3. 전담조직과 인력
2. 통합사례관리	1. 사례관리 과정 2. 사례회의 3. 슈퍼비전
3. 서비스 운영	1. 서비스 운영
4. 자원개발 및 연계	1. 지역인프라 활용 및 관리 2. 자원봉사자 및 후원기증 관리
5. 만족도	1. 이용자 만족도
6. 홍보	1. 홍보

- (점검방법) 현장점검, 사례점검, 실적점검 등 점검지표에 의한 종합점검 실시
  - 시·군·구 드림스타트를 방문하여 기본구성 등 현장방문 점검 (현장점검단) 및 행복e음에 입력된 사례관리 및 운영에 대한 실적자료 점검(중앙점검단)

## 4) 결과환류

- 지역유형별 우수지역(상위 20%)을 공개하고, 분야별 우수사항 및 미흡사항을 분석하여 시·군·구별 통지
  - (우수지역)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멘토지역으로 활용
    - 포상 범위와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점검단 회의를 거쳐 결정
    - 우수지역은 멘토지역으로 활용 가능
  - (미흡지역) 점검 주요 분야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현장컨설팅 실시

## 라. 교육이수

- 전담공무원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신규 또는 전문화 교육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이수
  - (신규 교육) 2017년까지 신규교육 미이수자, 2018년 드림스타트 신규 전담공무원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 (전문화 교육) 2017년까지 신규교육을 이수한 전담공무원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 전담공무원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개인정보보호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이수
  - 개인정보보호 및 아동학대신고의무 관련 교육은 신규 교육 또는 전문화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
    - ※ 아동학대신고의무 관련 교육은 시·도별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별도 실시 가능
- 2018년 교육훈련 실시 계획

구분	신규 교육	전문화 교육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전담공무원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li> <li>• 2017년까지 신규교육 미이수 전담공무원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전담공무원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li> <li>• 기타 교육이 필요한 자(드림스타트 전담공무원 이외 시·도 담당공무원 등)</li> <li>• 2년차, 3년차, 4년차 이상을 구분하여 운영</li> </ul>
교육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별 계획에 따라 운영</li> </ul>	
교육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사업지원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위탁 가능)</li> </ul>

※ 교육계획은 별도 통보



## 마. 사업 수행인력 안전대책

- 사·군·구 드림스타트는 사례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행인력의 위험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매년 수행인력 안전대책 마련
  - 적절한 안전조치(안전장비 구비, 상담실 및 사무실 환경 정비 등)를 추진하여 사업 수행인력을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가정방문 일정에 대하여 상사 및 동료에게 반드시 사전 공유하고, 위험 우려 가정에 대하여는 동료 직원과 동행(2인 이상)하여 방문
    - ☞ <부록 4> 아동통합사례관리 안전준칙 (p.193)

I  
정책연구II  
사업운영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IV  
아동통합사례관리V  
지원관리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VII  
부록

## 4.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관리

### 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배치

#### 1) 기존 근무자(전환, 연속(재)고용 등) 채용기준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부문의 상사·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업에 종사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하는 상사·지속적 업무 종사자로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임

#### 2) 신규(결원 또는 증원 등에 따른 총원 시) 채용기준

- 관련분야 자격증(간호, 복지, 보육(교육))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현장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
  - ※ 기존 근무자(전환, 연속(재)고용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2018년에 신규(결원 또는 증원 등에 따른 총원 시) 채용하는 인력부터 본 채용기준이 적용됨

채용분야	자격기준	해당 분야 현장경력 기준
보건	간호사, 간호조무사	-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복지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보육 (교육)	보육교사, 정교사(준교사)	- 보육교사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보육교사 2급, 준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각 채용분야 2회 이상 채용 공고 후에도 적임자 채용이 안 될 경우, 타 채용분야 대체 고용 가능
- ※ 자격증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 해당 기관장의 책임 하에 드림스타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채용 가능



### 3) 신규(결원 또는 증원 등에 따른 총원 시) 채용절차

-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실무적용능력 (사례관리, 상담 및 교육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 방식에 따라 전문인력을 우선 채용하는 것을 권장
  - ※ 다만,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등 공개채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채용 가능

### 4)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확인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에 따라 결격사유를 확인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각각 조회 및 점검·확인
  - ※ 채용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를, 건강진단서를 제출받고, 조회결과 및 확인을 통해 최종 합격여부 결정
    - ☞ <부록 근거법령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령 (p.111)

### 5) 채용형태

- 시·군·구가 직접 고용 형태로 채용
  -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 방침에 따른 정규직(무기계약직) 채용 원칙
  - ※ 서비스기관에 인건비를 보조하는 형태의 간접채용 불가
  - ※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형태 채용 불가

### 6) 배치

- 시·군·구 드림스타트에 배치



#### 채용 관련 참고사항

-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7.7.20)
  - ※ 드림스타트 사업에 종사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직접 고용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임
    - 드림스타트 사업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17.7.20) 이후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는 2년 기간이 초과하더라도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868(2017.8.10.)
    -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는 전환 예외 사유임 (예: 육아휴직 등)

-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퇴사후 무기계약직으로 재 채용하는 경우 포함)의 인건비는 조직관리 기준의 기준인건비(총액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편성운영 가능(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1898(2017.5.26.))
- ③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등 적용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99(2012.12.13.))  
 ※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사업에 포함

## 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복무관리

### 1) 복무관리

#### ■ 상근근무

-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휴일 및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정해진 근무시간(월~금, 8시간, 점심시간 제외) 중 그 직무에 종사

#### ■ 휴가

-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유급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 병가 및 경조사휴가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휴가일수를 따름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선택 적용)
- 그 외에 휴가, 휴일, 초과근무 등 근로시간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용

### 2) 권한 부여

#### ■ 신분증 발급

-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취약계층 대상 가정 또는 관련 기관 방문 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신분증 발급, 크기 및 형태 등은 공무원증과 동일





- 행복e음 이용 ID 부여
  - 사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복e음 이용 ID 부여  
☞ <부록 6> 전산시스템 권한 (p.243)
-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이용 ID 부여
  -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업무지원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별 ID 신청 가능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이용 ID 부여**

-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내 [직원 메뉴] > 정보 관리 > 사용자 관리
- 각 사·군·구 업무 총괄자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ID 신규 생성 가능

**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 총액기준 편성**

- 기본급(사회보험본인부담금 포함), 기관부담 사회보험부담금, 시간외수당, 퇴직금 포함
- 기본급은 연차에 따라 차등지급

〈연차에 따른 기본급 지급 기준〉

근무기간	1년차 (1년 미만)	2년차 (1년 이상~ 2년 미만)	3년차 (2년 이상~ 3년 미만)	4년차 (3년 이상~ 4년 미만)	5년차 이상 (4년 이상~)
기본급(만원)	175	180	185	190	195

- ※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된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 드림스타트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지출 가능  
(이 경우, 인건비는 드림스타트 사업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될 경우 드림스타트 지급기준의 초과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 드림스타트 근무 경력 100% 인정하여 기본급 산정

- 시간외 수당 : 15시간 이내/월
  - 지급 방법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 가능(1일 제한 시간 없음). 다만 조기 출근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조기 출근을 요구한 경우만 인정하며,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식사 등)은 근로시간에서 공제
  - 시·군·구는 지급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지방비로 편성 지급하고 사전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지급 범위를 알 수 있도록 안내
  - 시·군·구는 시간외 근무대장을 관리하여 시간외 수당 지급 조치
  
- 퇴직금 :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나, 다음의 사유(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어 지급받은 경우,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는 등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참고하고 운용
  - ※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제8조, 제13조~제23조)

구 분	개 념
퇴직금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li> <li>※ 퇴직금 산정방법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li> <li>·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일 기준 최근 3월간의 임금/최근 3월간의 일수</li> <li>· 재직일수 = 입사일(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사 일까지 기간</li> </ul>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부담금을 사외에 적립·운용하도록 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토록 하는 제도</li> <li>- (확정급여형): 근로자의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li> <li>※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li> <li>- (확정기여형):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급여수준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li> <li>※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li> </ul>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법 보칙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개별 법령 준수  
 ※ 주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퇴직적립금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 부담 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개인에게 지급 불가

## 라. 그 외 수당

- 기본급 외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식대, 상여금,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는 지방비로 지원

## 마.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여비

-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내·관의 출장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본 사업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지방비로 추가 집행 가능

## 5. 예산관리

### 가. 예산관리 목적

- 예산집행계획 수립·시행 및 집행 실적 점검을 통한 예산 실집행을 제고 및 예산 불용 최소화
  - 시·도 및 시·군·구 자체 예산(지방비)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수행 가능
- 예산편성 및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나.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국고보조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함

- (시·도) 국고보조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
  - ※ 시·도는 시·군·구의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집행 미흡 지역의 예산을 조정(감액),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지역에 배부(증액) ⇨ 시·군·구별 차등지원 가능
- (시·군·구) 사업안내서 「2018년 시·군·구별 예산 지원기준(안)」(p.44)을 근거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통합서비스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실행예산 내역’ 항목 간 조정 집행 등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나, 당초 예산의 30%를 초과하여 감액 또는 증액할 경우 시·도와 협의
    - ※ 시·군·구는 공문 등으로 시·도와 협의하며, 시·도는 복지부에 결과 통보
    - 규정화된 사업수행 보다는 아동육구에 맞는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예산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편성



## 다. 예산구성 및 집행

### 1) 기본사업비(사업관리운영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구성(시설, 집기, 시스템 마련 등) 및 운영 전반에 필요한 일반 사업비

※ 드림스타트 사무소 설치 및 운영 시 공간 확보 비용은 지방비 전액 부담



#### 기본사업비 세부(사업관리운영비)

- 시설유지관리비, 사무용품(비품) 구입비, 수행인력 여비 및 교육비, 사업현황 조사비(연구비), 차량구입 지원비 및 차량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홍보비, 전산시스템 유지비 등 사업운영에 따른 경비

#### ■ 기본사업비 항목별 편성기준

##### - 시설유지관리비 및 사무용품(비품) 구입비

- 시설유지관리비 : 시설물 수리, 개·보수 비용 등 지출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로 편성
- 사무용품(비품) 구입비 : 수행인력의 업무를 위한 기본적인 비품(책상, 컴퓨터, 회의용 집기, 시청각 장비 등) 및 프로그램 교육자료(각종 책자, 시청각 자료 등) 구입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로 편성
- ※ 책상 등 사무기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업비에서 집행 가능

##### - 기타 관련 비용은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

- 수행인력 여비 및 교육비 :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드림스타트 사업 수행과 교육 이수에 필요한 여비 및 교육비 집행 가능하며, 여비 지급 시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참고
- ※ 공무원의 여비 및 교육비는 지방비로 지원
- ☞ 관련 내용 '교육이수(p.32)'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여비(p.39)' 참조
- 사업현황 조사비(연구비) : 드림스타트 효과성 연구 및 만족도 연구 수행을 위한 설문지 인쇄 및 답례품 비용 등
- 차량구입 지원비 및 차량운영비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승용차 / 승합차 중 선택하여 구입 가능(시·군·구 별 1대만 국고 지원 가능)
- ※ 드림스타트 차량 미구입 시, 지자체 차량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드림스타트 업무 수행 관련 유류비는 국비에서 사용 가능



### 차량구입 국고지원 한도 등 세부 유의사항

- 국고지원 한도 : 차량 구매 가격의 2/3 지원(최대 1,500만원)
  - ※ 차량 구매가격의 1/3은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구입차량의 관리책임자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차량 내용연수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동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내용 연수 경과 이전에 교체 불가
  - ※ <참고> 조달청고시 제2016-40호 「차량 내용연수」 : 일반승용차 내용연수 9년

- 특근매식비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특근매식비 집행 시 '18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참고하여 공무원 특근매식비 기준에 준하여 지급
- 홍보비 : 드림스타트 사업 홍보를 위한 각종 인쇄물, 단순 홍보물품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 지급 가능
  - ※ 홍보에 활용 가능한 매체(지역신문, 반상회, 기관 홈페이지 등) 등을 적극 활용하여 물품 및 인쇄물 제작 등에 대한 예산은 최소한으로 사용
- 전산시스템 유지비 :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집행
  - ※ 사례관리를 위한 행정전산망 비용은 지방비로 집행
- 드림스타트 사업 수행 시 신변 안전에 필요한 용품 구입 가능

## 2) 서비스 운영비

- 맞춤형 통합서비스 수행을 위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필수·맞춤 서비스 연계 및 제공비,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관련 비용
- 기본서비스비(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기본서비스 수행비)
  - ☞ 4.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관리(p.34) 참조
- 필수·맞춤 서비스비(필수·맞춤 서비스 연계 및 제공비)
  - 서비스 수행 관련
    - 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아동의 사정 결과와 사례관리 계획에 의해 진행
    - 필수·맞춤서비스는 연계방식이 원칙, 연계할 자원이 없는 경우만 직접 방식으로 제공



- 단순 지원을 위한 물품 구매 사양
- 단편적인 이벤트성 서비스는 사례개입의 목적에 위배되므로 슈퍼비전을 통해 적합성 점검



###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 서비스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아래의 경우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 연계, 공유 차원에서 개방 가능
  - 드림스타트 비사례 아동이 서비스 이용 실비(전액)를 부담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만,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 2/3 이상 참여)
  - 추가 비용 없이 지역사회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경우
  - 사업 미실시 지역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업지역 확대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경우 (다만, 서비스 제공 이후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통해 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

#### - 서비스 대상자 관련

- 한정된 대상자에게 특정 서비스 예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
- 동일한 대상자에게 반복적인 일회성 서비스 개입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한 분명한 근거 제시 필요
- 서비스 참가비, 개별로 지급되는 물품 및 교구재 지원은 드림스타트 대상자에 한함
- 서비스 대상자에게 '현금'형태로 지원 불가  
예) 학원, 학습지 서비스 비용 등 개인통장으로 지급 금지

#### - 서비스 수행기관 관련

- 서비스 기관의 사업계획서를 드림스타트가 승인하거나, 드림스타트 예산으로 서비스 기획, 모니터링 관리 등 서비스 관련 책임을 위임하는 서비스 위탁 방식 운영 불가
- 서비스 기관의 상근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그에 대한 인건비는 드림스타트 예산에서 지급 불가
- 드림스타트는 서비스 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관은 드림스타트가 점검 시 제안한 조치사항을 적극 반영

- 지역사회 조직화비(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관련 비용)
  - 부모, 실무자, 지역사회 참여자 대상 사업 설명 및 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 운영위원회,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슈퍼비전 등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기구 운영 지원 관련 비용 및 수당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외부전문가 또는 슈퍼바이저 수당, 사례관리 컨설팅 운영지원 관련 비용 및 수당
  - 자원봉사 활동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

### 3) 2018년 시·군·구별 예산 지원기준(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내역	사업비
1. 기본사업비		50
가. 사업관리운영비	- 시설유지관리비, 사무용품 구입비, 공과금, 수행인력 여비 및 교육비, 사업현황 조사비 (연구비), 차량구입 지원 및 차량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홍보비, 전산시스템 유지비 등	50
2. 서비스 운영비		
가. 기본서비스비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기본서비스 수행비	차등
나. 필수·맞춤 서비스비	- 필수·맞춤 서비스 연계 및 제공비	차등
다. 지역사회 조직화비	- 부모, 실무자, 지역사회 참여자 대상 사업설명회 및 교육 운영비 등 - 운영위원회,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슈퍼비전 등 지원기구 운영 지원 및 수당, 사례관리 컨설팅 운영 지원 및 수당, 전문가 또는 슈퍼바이저 수당, 자원봉사활동비 등	10

- 예산 지원기준 : 지역여건(취약계층 아동 수, 지리적 특성) 및 사업추진상황(사례관리 아동 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별 지원금액 조정
  - 시·도는 보건복지부가 문서로 통보하는 ‘시·군·구별 예산 지원기준’을 참고하되, 필요한 경우 지역 간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교부 가능
  - ※ 기본서비스비와 필수맞춤서비스비는 차등 지원하되, 고정비 성격인 사업관리운영비와 지역사회 조직화비는 균등 지원

- 기준보조율 : 국비 100%(서울특별시는 그 외 지역의 2/3 수준)\*

\* 보조금관리에관한법을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





### 드림스타트 2018년 사군구별 예산지원기준(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8774(2017.12.14.))

- (인건비) 취약계층 아동 수, 수행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적용단가) 29백만원\*
    - ※ 4년차 기본급 월 190만원, 시간외 수당, 기관부담 사회보험부담금, 퇴직금
  - (기본지원) 사군구별 116백만원 기본 지원
    - ※ 116백만원 = 29백만원(1인당 인건비) × 4명(기본 4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운영)
  - (추가지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 이상 운영 시, 최대 7명까지 1명당 29백만원 추가 지원
  - (증감조정)
    - ※ (조정 원칙) 취약계층 아동 과다 지역 29백만원 증액 / 취약계층 아동 과소 지역 29백만원 감액
      - \* (증액 예외)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아동통합사례관리사 6명 이상 운용 지역은 증액 제외
      - \* (감액 예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 이상인 지역은 감액 제외(고용 안정 고려)
- (필수맞춤서비스비) 사례관리 아동 수, 도농 지역간 단가 차이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적용단가) 아동 1명당 도시 지역(시 또는 자치구) 18만원, 농산어촌 지역(군) 30만원
    - ※ 사례관리 아동 수 1명당 사군구별 지원액이며, 아동 1명당 지원액은 아님
  - (기본지원) 사군구별 사례관리 아동 수 실적에 따라 지원
  - (추가지원) 취약계층 아동 과다 지역 아동 80명분 서비스 비 추가 지원
    - \* (예외)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아동통합사례관리사 6명 이상 운용 지역은 추가 지원 제외
- (사업관리운영비) 사업관리를 위한 운영비는 50백만원 균일 지원
- (지역사회 조직화비) 지역자원 개발연계 및 관리 비용은 10백만원 균일 지원
- (기타) 서울특별시는 그 외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금액의 2/3 수준으로 적용
  - ※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8774(2017.12.14.) 문서 '2018년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참고

## 선거기간 홍보 및 사업진행 관련

■ 보건복지부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2017.12.11.)

- (질의 1)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따른 서비스 제공은 연간 계획에 따라 매년 아동과 가족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 또는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사항임.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서비스제공)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답변 1)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시달한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방

- (질의 2)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사업의 효과성, 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서비스 대상 아동 및 가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 유인책으로 답례품(생필품 등)을 제공할 때 이 답례품(생필품 등)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답변 2) 보건복지부가 시달한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이에 응한 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 무방

- (질의 3)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개최하는 추진협의회(드림스타트 실무자 대상 전국단위 회의) 및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 등이 개최됨. 이와 같은 행사 및 협의회 등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답변 3) 보건복지부가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를 개최하거나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무방

- (질의 4) 매년 광역 사·도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드림스타트 간 네트워크 체계 구성 및 교류를 위하여 권역별 드림스타트 실무자(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가 참석하는 업무연찬회, 토론회, 워크숍 등이 개최됨. 해당 업무연찬회, 토론회, 워크숍 등에 참석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드림스타트 실무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지역 특산품 등)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변 4) 보건복지부가 시달한 ‘드림스타트 사업안내’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도 권역 내 드림스타트 간 교류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에 참석한 사람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 III

##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1. 운영위원회
2. 아동복지기관협의체
3. 슈퍼비전
4. 멘토-멘티 체계



# 1. 운영위원회

## 가. 목적 및 기능

-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등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자문
- 사업지역 및 지원대상 확대, 서비스 지원, 예산운용, 지역자원 개발·연계 및 관리, 지자체 내 광역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논의

## 나. 구성 및 운영

- 구성
  - 위원장 : 시·군·구 부단체장(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 위원 :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 공무원 : 해당 시·군·구 외 관할 시·도에서도 위원으로 참여 가능  
(간사 : 드림스타트 팀장)
    - 민간전문가 : 지역 내 아동 관련 자원과 연계가 용이하도록 관련 단체, 기업, 지역 주민으로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로 구성  
※ 지역실정에 따라 성격 및 위원구성이 유사한 타 법정위원회 활용 가능
- 운영 : 연 1회 이상 운영  
☞ <부록 관련서식 11> 운영위원회 회의록 (p.138)
- 입기 : 지방자치단체 별도 규정
- 회의수당 : 지급 가능



## 2. 아동복지기관협의체

### 가. 목적 및 기능

- 지역 내 아동복지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아동복지서비스 연계·조정
  - 지역자원 및 서비스 제공 관련 협의·조정과 각 기관 간 대상자 및 서비스 등의 정보 공유

### 나. 구성 및 운영

- 구성
  - 위원장 : 아동부서 담당 국·과장
  - 위원 :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의 장 등  
(간사 : 드림스타트 팀장)
  - ※ 드림스타트 팀장을 주축으로 보건·복지·보육(교육) 등의 각 실무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 구성·운영 가능
- 운영 :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아동·청소년 분야 분과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운영 가능  
(명칭이 달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체면 가능)
  - ☞ <부록 관련서식 12> 아동복지기관협의체 회의록 (p.139)
- 임기 : 지방자치단체 별도 규정
- 회의수당 : 지급 가능

## 3. 슈퍼비전

### 가. 목적 및 기능

- 사례개입전략 및 서비스 기획, 자원관리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지도·지원을 통해 실무자의 사례관리 업무 역량 향상
- 행정업무·조직관리, 수행인력의 소진 예방 등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문 및 실제적 교육을 통해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의 효과 극대화

### 나. 구성 및 운영

- 구성
  -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슈퍼바이저 구성
    -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분야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 ※ 슈퍼비전 관련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의뢰 가능한 체계 (전문가 목록) 구축
- 운영 : 연 4회 이상 운영
  - ☞ <부록 관련서식 13> 슈퍼비전 기록지 (p.140)
- 임기 : 지방자치단체 별도 규정
- 회의수당 : 지급 가능
  - ※ 자문료, 원고료 등 추가 지급 가능



## 4. 멘토-멘티 체계

### 가. 목적

- 멘토지역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우수사례 및 정보를 멘티지역 및 그 외 시·군·구와 공유하여 아동통합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시·도 권역 내 드림스타트 간 네트워크 체계 구성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업 운영 효율성 증대

### 나.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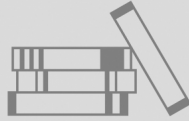
- 구성
  - 시·도는 권역별 시·군·구 드림스타트 중 멘토지역을 보건복지부로 추천
  - 보건복지부는 추천된 드림스타트 중 사업운영 성과 및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멘토지역 지정·통보
- 운영방식
  - 임기는 멘토지역 지정으로부터 1년이며, 연임 가능
  - 시·도는 멘토지역과 유기적 협력으로 지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멘토지역의 시·도 내 거점역할 수행 지원
  - 멘토지역의 활동 점검 및 관리 실시, 멘토 활동 기준에 의거 역할 미수행 시 멘토 지역 변경 가능
    - ※ 멘토지역의 활동 내용에 따라 점검 시 가점 차등 부여
- 멘토의 주요 기능
  - 드림스타트 견학 지원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
  - 업무연찬회,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한 지역 내 실무자 간의 연계 강화(시·도 공동 추진, 연 1회 이상 실시)
  - 드림스타트 사업 및 운영,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 전 지역 확대 방안 및 우수 사례관리 노하우 공유 등



2018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http://www.mohw.go.kr/>





# IV

## 아동통합사례관리

1. 아동통합사례관리 개요
2. 아동통합사례관리 과정
  - 가. 접수
  - 나. 사정
  - 다. 계획
  - 라. 실행
  - 마. 점검
  - 바. 종결
3.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운영



# 1. 아동통합사례관리 개요

## 가. 개념

- 복합적 욕구를 가진 서비스 대상자에게 포괄적(comprehensive), 체계적(systematic), 지속적(consistent)으로 지역사회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 모델
  - 가정방문·상담을 통한 현황조사 및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통해 서비스 목표 및 사례관리를 계획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및 자원 연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관리

## 나. 목표

- 아동의 양육환경, 아동 발달영역(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및 발달연령을 고려한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한 전인적 발달 도모
-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관들 간의 팀 접근을 통해 취약계층 가족 전체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

## 다. 특징

### 1)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수요자인 아동 중심의 개별화된 접근을 통해 각 아동의 욕구와 가구여건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2) 통합 체계 구축

- 서비스, 방법론, 전달체계의 통합
  - (서비스의 통합)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 (방법론의 통합) 개별실천, 집단실천, 가족실천, 지역사회실천
  - (전달체계의 통합) 민간과 공공 영역의 전달체계 통합



- 대상아동 및 가족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편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서비스, 제공방법, 전달체계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통합 체계 구축

### 3)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조정

- 개별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이 아닌 관련 공공·민간 기관들 간의 밀접한 연계와 조정을 통한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 4) 예방관리체계 구축

- 취약계층 아동·가족의 위기상황과 문제에 대한 조기발견 및 개입을 통해 예방적 사례관리 체계 구축
- 사례관리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장차 상황이 더 악화되어 더 큰 비용을 가져올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예방 효과

### 5) 능동적 사례관리

- 서비스 개입 이후, 대상자인 아동과 가족이 연계된 지역 자원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긍정적인 변화 및 자활·자립이 가능하도록 관리
- 대상아동 및 가족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

## 라. 역할

- 대상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초기 정보 수집 및 사정, 개입계획의 수립·조정 및 점검, 평가, 종결 등 사례관리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
- 대상아동 및 가족의 문제와 욕구 해결에 필요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간접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
- 사례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록 및 보고하여 슈퍼바이저의 지도와 감독을 수행하는 역할



### <참고> 사례관리 시 다양한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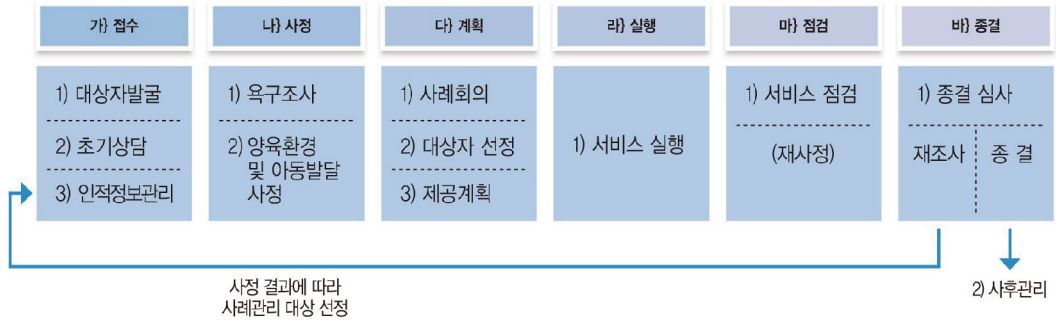
- 인테이크 담당자 : 대상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수집
- 상담자 : 인테이크 뿐만 아니라 개입계획 수립, 서비스 조정, 점검, 평가 종결 등의 전 과정에서 상담자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수행
- 사정자 :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 및 강점과 자원을 분석하여 서비스 기획의 근거 마련
- 서비스 기획자 : 사정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에게 개별화된 맞춤형 통합적 서비스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자 : 사례관리사는 대상자와 지역사회 자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지역사회 자원이 부재하거나 활용이 곤란할 경우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가능
- 행정가 :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와 관련된 행정적인 사항 처리
- 자원개발 및 네트워크 관리자 : 사례관리의 핵심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서비스 제공자들 간 네트워크 구축, 자원개발 및 네트워크의 업무는 사례관리사가 관여하지만 아동의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환경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다루어야 함
- 옹호자 : 대상자의 입장에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대상자 대변
- 평가자 :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 대한 평가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나타나는 대상자의 변화에 대한 평가 실시

## 마. 방법

- 인적정보관리, 욕구조사,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기반으로 대상아동 및 가족의 욕구 및 문제 파악
- 대상아동 및 가족의 욕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목표와 계획 수립
-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및 자원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대상아동 및 가족의 변화 파악



## 2. 아동통합사례관리 과정



[ 그림 1 ]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 과정

### 가. 접수

-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자 관련 정보 및 주변사항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인적정보관리

#### 1) 대상자 발굴

##### ■ 개념

-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 중 드림스타트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는 과정

##### ■ 주요내용

- 대상 : 0세(임산부) ~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 우선지원

## - 발굴방법

- 행복e음 내 취약계층 아동 중 가정방문을 통한 드림스타트 자체 발굴
  - 개별(본인 및 타인) 의뢰 접수
  - 관련 기관(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의뢰 접수
- ※ 의뢰대상자 중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대상 확대 가능

**<참고> 관련 기관 간 의뢰 시, 사례관리사가 확인할 사항**

- 의뢰를 고려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여 대상아동 및 가족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준비시킴.
- 의뢰하려는 문제가 대상아동 및 가족에게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것이고, 대상아동 및 가족이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상자가 동의해야 함.
- 의뢰를 고려하기 전, 타 기관의 서비스 활용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대상아동 및 가족의 어려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대상아동 및 가족이 사용 가능한 교통수단, 문맹, 두려움 및 스트레스 등에 대해 확인
- 의뢰 기관이 대상아동 및 가족이 과거에 이용했거나 혹은 거절당했던 자원과 기관이 아닌지 확인하여야 함
- 타 기관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경험, 노력과 시간의 부족, 대상아동 및 가족과 기관 간의 부족한 의사소통, 기관의 절차와 정책 등의 요인이 의뢰의 실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의뢰 시, 대상아동 및 가족이 의심과 오해 등 부정적인 감정과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지 않도록 확인
- 대상아동 및 가족의 욕구와 서비스에 대한 기대 등 필요한 정보들을 기록한 서비스의뢰서를 제공하거나 받아야 함.

**2) 초기상담**

## ■ 개념

-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상담

\* 드림스타트 자체발굴 아동, 행복e음 내 취약계층 아동, 타기관 의뢰 아동 등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실시



### ■ 주요내용

- 행복e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 수혜이력, 가구원의 인적사항 등 대상자와 관련된 기본정보를 사전에 파악
-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자 정보\* 및 종합의견 정리
  - \* 가구, 경제, 주거, 건강 상황에 대한 정보, 민간기관 서비스 이력 등
- 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의 개인정보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수집 및 관리
  - ☞ <부록 근거법령 5> 개인정보수집 관련 법령 (p.118)
  - ☞ <부록 관련서식 3> 개인정보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p.129)

**행복e음 등록**    상담·신청 ▶ 초기상담 (드림스타트)

☞ <부록 아동통합사례관리 서식 1> 초기상담 (p.202)



#### <참고> 상담 시 사례관리사가 사전에 안내할 내용

- 본인에 대한 소개
- 상담 내용 기록(녹음)에 대한 동의
- 방문 목적 설명
- 수혜자격 및 요건, 과정, 내용 등 사업 소개
- 법률에 의한 비밀 보장 안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상담내용 관리

I 소개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합사례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VII 부록



### <참고> 상담 시 사례관리사가 활용할 수 있는 상담 기술

구분	내용
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아동 및 가족에게 사례관리사 자신과 소속기관을 소개하고 다음 단계인 신뢰단계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주요 실천기술</li> </ul>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아동 및 가족이 자신을 잘 소개하고 의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가 대상아동 및 가족을 격려하고 독려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술</li> <li>대상아동 및 가족이 말한 내용을 사례관리사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명료화하기, 바꾸어 말하기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확인하도록 해주어 아동 및 가족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이해 내용을 명료화 하는 기술</li> </ul>
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접의 기본적인 태도로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실제적인 노력이며 관심을 기울이는 것</li> </ul>
질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문은 육하원칙에 의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행, 개방형·폐쇄형 질문을 적절하게 활용</li> <li>한 질문 속에 여러 가지 내용의 질문이 섞여있는 중첩질문은 피하기</li> <li>'왜'라는 질문을 피함. '어떻게', '무엇이', '어디서', '언제' 등의 의문부사를 사용하는 것이 대상아동 및 가족의 방어적 자세를 예방하고 심판받는 느낌을 감소시키며 보다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답변 유도할 수 있음.</li> </ul>
관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아동 및 가족의 주변환경(생활환경, 가족상황, 가족구성원 간 기류, 일상생활관리능력 등) 다양한 작·간접적인 정보들을 민감하게 파악</li> </ul>
라포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라포(Rapport)는 대상아동 및 가족과 사례관리사 사이의 상호이해와 작업 관계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조화, 공감, 화합의 상태</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례관리사는 면접의 목적 및 초점을 유지하기 위해 촉구, 탐색, 침묵 등의 기법 활용</li> </ul>

### 3) 인적정보관리

#### ■ 개념

- 대상자 및 가구에 대한 세부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과정

#### ■ 주요내용

- 대상자의 주거사항, 가구유형, 가족사항, 소득현황, 대상자별 개별 정보 등 확인





- 가구현황은 공통 양식을 활용하고, 대상자에 따라 취학전, 취학중, 임신부 양식 선택
  - 취학전 : 건강, 보육현황, 가정생활습관, 기관보육현황, 방문서비스, 향후계획
  - 취학중 : 건강, 보육현황, 가정생활습관, 학교생활, 방문서비스
  - 임신부 : 현재 상태, 출산 구분, 출산 예정일, 실제 출산일, 기호품번호, 몸무게

행복e음 등록 사례관리 ▶ 사례관리업무지원 ▶ 인적정보관리

☞ <부록 아동통합사례관리 서식 2> 인적정보관리 (p.203)



**<참고> 접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진행 원칙**

구분	내용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아동 및 가족의 개별적인 특성과 처해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함.</li> <li>■ 대상아동 및 가족이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을 표출하는 데에는 '특별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함.</li> </ul>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아동 및 가족은 오랜 시간 수많은 어려움으로 고통 받아온 사람들이므로, 그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함.</li> </ul>
강점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100% 문제인 경우는 없으며, 대상아동 및 가족은 반드시 강점 및 능력, 그리고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강점과 능력, 자원을 탐색해야 함.</li> </ul>
칭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칭찬이란 대상아동과 가족의 강점과 능력, 자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li> </ul>
해결중심/ 강점중심 언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가 있다'는 표현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 '문제가 있는 상황' 보다는 '문제가 없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접수 진행</li> </ul>
아동 및 가족의 관심사에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아동 및 가족의 관심사에 초점을 두고 인테이크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관심과 목표가 같다는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들도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원하며, 사례관리사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인식해야 함</li> <li>■ 비록 부모들이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바라는 바는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시켜야 함.</li> </ul>

I 사례관리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합사례관리

V 자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이용권 조정

부록

## 나. 사정

- 대상자 및 가족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욕구 및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단계
-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대상자의 상황을 판단하고 서비스 개입의 근거를 확보
-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 1) 욕구조사

#### ■ 개념

- 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을 통해 표출된 욕구를 총체적,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과정
- 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이 표출한 욕구와 사례관리사의 전문적 판단을 추가하여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

#### ■ 주요내용

##### - 구성

- 욕구조사는 총 10개 욕구영역\*에 대하여 조사
- \* 안전, 건강, 일상생활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 보장

##### - 방법

- 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 중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 한해 욕구대상자, 주요원인, 원인 제공자에 대한 파악
- 가족의 경제상황, 주거상황, 건강상태, 심리사회적 특징, 장애물과 함께 사회관계망에 대한 파악
- 욕구영역별로 야기되고 있는 주요문제 완화 또는 해결에 도움되는 강점 등 잠재적 활용가치가 있는 자원에 대한 파악
- 가정방문을 통해 가구별로 욕구조사 실시

행복e음 등록

사례관리 ▶ 사례관리업무지원 ▶ 욕구조사관리

☞ <부록 아동통합사례관리 서식 3> 욕구조사 (p.212)



**<참고>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파악 접근 방법**

- 사례관리사는 대상자의 진술을 토대로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 확인
- 필요에 따라서는 대상자와 가깝게 생활하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대상자의 욕구, 문제, 자원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전에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구해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던 기관의 기록, 서비스 제공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제공받았던 서비스와 그 결과를 파악

**2)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 개념

- 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 현재 및 미래의 발생 가능한 위기 요인 등을 사례관리사의 전문가적 시각을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과정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개입 여부, 서비스 개입 방향 및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

■ 주요내용

- 구성
  - 연령별 발달특성을 고려한 사정도구 총 4종으로 구분

〈 표 1 〉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도구 구성

구분		사정도구 구성 내용	
영아용	만 3세 미만	양육환경 사정도구	아동발달 사정도구
유아용	만 3세 이상 ~ 7세 미만		
취학아동용	만 7세 이상 ~ 13세 미만		
임산부용	-	가족 및 환경 사정도구	

- 방법

-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과의 면담, 가정환경 등을 파악
- 대상자 개인별로 사정 실시

- 활용

-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결과에 따라 드림스타트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사례관리 등급 결정
- 사례관리 등급에 따라 사례점검 및 재사정 주기 생성\*

〈 표 2 〉 사례등급별 정의 및 재사정 주기

사례등급	사례등급별 정의	재사정 주기
위기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방임, 가정폭력 등 아동과 가족에게 위기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로 사례관리자가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li> </ul>	3개월 이내
집중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와 가구 구성원이 복합적인 욕구 및 문제를 가지고 있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li> <li>■ 양육환경과 아동발달에 대한 문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집중적인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li> </ul>	6개월 이내
일반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와 가구 구성원의 욕구 및 문제가 복합적이지 않지만 관련 서비스 연계를 통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li> <li>■ <u>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으나 문제에 대한 서비스 연계로 문제가 안정화된 경우로 모니터링과 통상적인 관리를 하는 경우</u></li> </ul>	12개월 이내

-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자에게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 경우, 재사정을 실시하여 아동 및 가족의 변화 확인

\* [그림 2] 사례등급별 사례관리 과정 (p.74) 참조

- 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에 대한 서비스 개입 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



**비사례대상 및 아동학대 의심대상 조치**

- 사정 결과, 비사례대상\*인 경우

- 최종 사례관리대상에서 제외되나 1년마다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아동 및 가족의 변화사항 점검

\* 비사례대상: 양육환경 사정도구 및 아동발달 사정도구의 모든 항목에서 '0점(없음)'으로 체크된 대상자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행복e음 등록 사례관리 ▶ 사례관리업무지원 ▶ 위기도조사 관리

- ☞ <부록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매뉴얼> 대상별 평정기준 (p.267)
- ☞ <부록 근거법령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령 (p.111)
- ☞ <부록 관련서식 28, 29>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의뢰서 및 연계결과확인서 (p.163, p.164)
- ☞ <부록 참고자료 3>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p.170)

## 다. 계획

- 접수 및 사정을 통해 파악한 대상자의 정보를 근거로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사례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서비스 계획(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 사례회의, 대상자 선정, 서비스제공계획

### 1) 사례회의

#### ■ 개념

- 대상자 선정, 대상자 문제 및 욕구 분석, 장·단기 목표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사례에 대한 점검, 종결 여부 등 대상자의 통합사례관리 전 과정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대한 간략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상황을 점검·평가하며, 대상자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과정

#### ■ 주요내용

- 초기상담, 인적정보관리,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결과를 통해 파악된 정보를 근거로 사례회의 실시
-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문제 및 욕구를 분석하여 사례관리 장기목표 설정
-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 계획 수립
- 주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적절성 및 사례관리 진행상황 점검
- 사례관리 관련 행정적인 사항 점검
  - 사례회의를 통한 사례점검 시, 서비스 개입 여부, 서비스 내용, 대상자의 변화, 장·단기 목표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내용 포함
  - ※ 서비스 대상자의 사례회의 참여 및 서비스 지원 모니터링 시 협조 등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과정에 적극 참여 요청

■ **참석자**

- 팀장, 전담공무원, 이동통합사례관리사 등 드림스타트 실무자 모두 참석
- ※ 필요 시, 외부참석자(외부전문가, 수행기관 종사자) 참여

■ **주기**

- 사례등급에 따라 1개월 ~ 3개월 이내로 사례회의(사례점검) 실시

〈 표 3 〉 사례회의(점검) 주기

사례등급	사례회의(사례점검) 주기
위기개입	1개월 이내
집중사례관리	3개월 이내
일반사례관리	3개월 이내

행복e음 등록 사례관리 ▶ 사례관리업무지원시스템 ▶ 사례회의관리

☞ 〈부록 이동통합사례관리 서식 5〉 사례회의관리 (p.224)



**<참고> 사례회의 종류**

구분	첫 사례회의	모니터링(사례 점검) 사례회의	종결 사례회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및 욕구 분석</li> <li>• 장·단기 목표 수립</li> <li>• 대상자 선정 여부 판단</li> <li>• 희망복지지원단 이관 여부 판단(필요 시)</li> <li>• 그외 유관기관 개입 여부 판단(필요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개입 여부 및 서비스 내용 점검</li> <li>• 대상자 변화 점검</li> <li>• 장·단기 목표 점검 및 신규목표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 여부 결정</li> <li>• 사례관리과정에서 일어난 대상아동 및 가족의 변화 논의</li> <li>• 사후관리계획 수립</li> </ul>

※ 재사정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례회의는 첫 사례회의와 모니터링(사례 점검) 사례회의가 결합된 형식으로 실시



<참고> 사례의 장·단기 목표 특징

구분	장기목표	단기목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6개월 이상 혹은 종결 시점)으로 달성되어야 할 대상자 중심의 변화 방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적(1~3개월 이내)으로 달성 가능하되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과도기적 목표</li> <li>• 대상 아동의 현재 욕구 충족이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목표</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시점에서 대상자에게 어떠한 변화를 기대할지에 대한 현실적 상태나 수준 반영</li> <li>• 사례관리사에게 사례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목표와 무관한 별도의 내용이 아닌 장기 목표를 지향하며 그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 수준의 단계적, 과정적 내용으로 하나의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개의 단기목표 수립 가능</li> <li>• 구체적, 평가 및 측정 가능, 실행 가능하도록 설정</li> </ul>
시기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사례회의 시 수립</li> <li>• 재사정 주기와 무관하게 목표는 유지될 수 있으나, 대상자의 사례관리유형(위기/집중/일반사례관리대상)의 변화 또는 목표 달성 여부에 의해 수정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 사례회의 시, 목표 수립 및 점검</li> </ul>

※ 목표 수립 시 고려사항

- 대상자의 목표 설정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함.
- 하나의 문제에는 하나의 목표만 설정해야 함.
- 목표는 명료하고, 정확해야 함.
- 긍정적으로 기술해야 함.
- 대상자 중심으로 기술해야 함.
- 구체적, 실현 가능, 달성 여부 체크가 가능하도록 기술해야 하며, 되도록 행동 형태로 진술. 이유(why)나 어떻게(how) 보다는 무엇을 언제 한다는 등의 표현으로 기술해야 함.

I 사례조사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복지시설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품질 관리

VII 부록



### <참고> 사례관리 기록의 중요성

- 대상아동 및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다.
- 적격 자격을 입증할 문서로 사용된다.
- 대상아동 및 가족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필요 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문가들 사이의 공조체제를 원활하게 해준다.
- 사례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 사례관리사의 사고를 조직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 대상아동 및 가족과 사례관리사 간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촉진한다.
- 슈퍼비전, 자문, 동료 검토를 위한 근거가 된다.
- 교육훈련의 자료로 사용된다.
- 연구조사의 자료로 사용된다.
- 서비스의 효율성, 효과성, 품질을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
- 사례관리사와 기관이 행정절차상의 규정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 실무와 행정상의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전달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 청구와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자원 확보에 활용된다.

## 2) 대상자 선정

### ■ 개념

- 사정 및 사례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는 과정

### ■ 주요내용

- 드림스타트 대상자 선정, 미선정 여부 최종 확정\*
  - \* 대상자 최종 선정 후 대상자 및 주양육자를 통해 <드림스타트 서비스 이용 동의서> 확보
- 희망복지지원단으로의 이관 여부 결정





행복e음 등록 사례관리 ▶ 사례관리업무지원시스템 ▶ 대상자 선정 및 유형분류

- ☞ <부록 관련서식 4> 드림스타트(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서(p.130)
- ☞ <부록 아동통합사례관리 서식 6> 대상자선정 및 유형분류(p.225)



### 권장 사례관리 아동 수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사례관리 아동 수 50 ~ 70명 권장
  - ※ 취약계층 아동이 과다한 지역이더라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사례관리 아동 수는 최대 80명을 넘지 않도록 함.

### 3) 서비스 제공계획

- 개념
  - 대상자의 장·단기 목표 달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과정
- 주요내용
  - 대상자의 문제 및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서비스의 구체적인 전략 수립
  - 서비스 제공전략은 서비스 제공자, 전달방법, 제공 횟수 및 시간, 서비스 비용 및 부담, 평가방법 등을 포함

행복e음 등록 사례관리 ▶ 사례관리업무지원시스템 ▶ 서비스 제공계획 관리

- ☞ <부록 아동통합사례관리 서식 7>, 서비스 제공계획 관리 (p.226)



### <참고> 서비스 계획 과정에 필요한 질문

- 실행할 필요가 있는 일은 무엇인가 ?
- 가장 나은 방법은 무엇인가 ?
- 누가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것인가 ?
- 언제 각각의 욕구가 충족될 것인가 ?
- 언제, 어디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가 ?
- 종결 이후에 아동과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게 될 것인가 ?

## 라. 실행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대상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

### 1) 서비스 실행

#### ■ 개념

- 서비스 계획 내용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대상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

#### ■ 주요내용

- 사례회의에서 계획한 내용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유형\*을 기본서비스·필수서비스·맞춤서비스로 구분하고, 기본서비스 및 필수서비스는 사례등급과 상관없이 반드시 제공

서비스 유형	내용
기본서비스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면담
필수서비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맞춤서비스	사정결과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

☞ 사업안내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운영'부분 참조 (p.79)

- 지역 내 서비스 기관 및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행복e음 내 서비스 이력을 참고하여 중복서비스 수혜 방지
- 지역 내 자원연계가 곤란할 경우 직접서비스 제공 가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적극 연계 활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개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 대상 아동 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
- (연계대상 서비스) 각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아동 대상 서비스\*
  - 주요 서비스 : 아동정서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인터넷과몰입치유 등
- (연계사업) 아동대상 서비스 중 지자체 담당자 간 협의하여 결정
- (연계인원) 서비스 사업별 수혜 인원 혹은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부서 간 협의
- (연계절차)
  - 드림스타트 담당부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1월 10일까지 우선 배정 필요 서비스와 사업별 연계인원(비율)을 확정
  - 드림스타트 담당부서는 확정된 비율의 범위 내에서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에 근거하여 연초 (1월 중)에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여 공문으로 추천하고 개인별 신청양식을 구비하여 16일까지 신청, 서비스 연계·지원
  - 분기별 공문 추천
    - ※ 연초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월별 신청 여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예산 집행 계획을 고려, 부서 간 협의하여 결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추천 명단 및 신청에 근거하여 서비스 대상을 선정한 후 선정 결과를 드림스타트 담당부서와 신청자 본인에게 통보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은 선정 후 익월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되 서비스 개시 전까지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드림스타트 담당자의 대납 불가, 중복서비스 방지 차원에서 드림스타트에서의 지원 불가)
  - 협이된 연계 인원(비율) 중 집행 잔액 예정액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부서가 일반 아동 대상 추가 신청·집행
    - ※ 세부내용 : 2018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참조

행복e음 등록

사례관리 ▶ 서비스연계 모니터링 ▶ 지역서비스 제공관리

☞ <부록 아동통합사례관리 서식 8> 지역서비스 제공관리 (p.237)

I  
개요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합사례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지원

VII  
부록



### <참고> 서비스 실행 과정의 유의사항

#### 1. 서비스 실행과정 전 이행 확인

- 서비스 연계 자원과의 협약
  - 대상자에게 제공할 필수 또는 맞춤 서비스 제공 초기 계획을 구체화하거나 직접 실행하기 위한 연계자원과의 협의 과정
  - 대상자의 목표 및 서비스 계획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약
    - 가급적 구체적인 용어 및 언어로 표기된 서면 계약을 통해 명확한 역할 설정
    - 연계자원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협약
    - 연계자원기관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협약기간 명시

#### 2. 서비스 실행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원칙

- 경제성의 원칙
 

선택된 활동은 사례관리사와 대상자의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사례관리사가 관여하지 말아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일에는 요구되는 도움만을 제공하고, 대상자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만 사례관리사가 수행함.
- 대상자의 자기결정의 원칙
 

개입의 전 과정을 통해 가능하면 대상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야 함.
- 개별화 원칙
 

도움을 필요로 하는 특정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도록 개입활동을 조정해야 하는데, 대상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함
- 발달적합 원칙
 

개입의 전체 방향은 대상자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 상호의존성의 원칙
 

사례관리 활동의 일부는 대상자의 활동에 달려 있음. 대상자의 활동과 변화능력을 고려한 후 개입이 출발되어야 함. 사례관리사와 대상자의 활동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양측의 활동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함.
- 서비스 목표에 초점의 원칙
 

모든 활동은 어떤 식으로 사례관리사와 대상자 간 상호 합의한 계획의 목표에 부합되어야 함.



## 2) 모니터링 사례회의(사례점검)

### ■ 개념

- 모니터링 사례회의를 통한 사례점검은 매 사례회의마다 대상자의 변화 및 서비스 개입 여부, 목표 달성 여부 등 사례관리 과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향후 사례관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 재사정 전에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점검과는 구분하여 실시

### ■ 주요 점검내용(질문)

- 대상자의 상황은 변화되었는가?
- 연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희망하는 결과가 달성되었는가?
-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가?
- 서비스 제공계획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가?
- 사례는 종결되어야 하는가?

## 마. 점검

- 사정주기 내에 제공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단계
- 서비스 점검 및 평가,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재사정

## 1) 서비스 점검 및 평가

### ■ 개념

- 사정 주기 내에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적절성 등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

### ■ 주요내용

- 시기
  - 사례관리 종결처리(재조사 포함) 직전 재사정 주기 도래 시 실시

- 방법

- (서비스 점검) 서비스에 대한 이행 여부, 변경내용 및 사유, 진행상태 등 개별 서비스에 대한 점검
- (서비스 평가) 서비스 제공량, 서비스 내용, 제공방법, 대상자 실태 및 변화 등 대상자에게 제공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행복e음 등록 사례관리 ▶ 사례관리업무지원시스템 ▶ 서비스 점검관리

☞ <부록 이동통합사례관리 서식 9> 서비스 점검관리 (p.239)

## 2)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재사정

### ■ 개념

- 서비스 개입 후 대상자의 변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례등급에 따른 주기에 맞추어 재사정 실시

### ■ 주요내용

-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지속개입 여부 및 서비스 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
- 재사정은 주기적(위기개입 3개월 이내, 집중사례 6개월 이내, 일반사례 12개월 이내)으로 실시

행복e음 등록 사례관리 ▶ 사례관리업무지원시스템 ▶ 위기도조사 관리

☞ <부록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매뉴얼> 대상별 평정기준 (p.267)



[ 그림 2 ] 사례등급별 사례관리 과정



## 바. 종결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전 과정의 마지막 과정으로, 사례관리 종결 여부 및 유형을 결정하는 단계
- 종결심사, 사후관리로 구성

### 1) 종결 심사

#### ■ 개념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과정을 마무리하는 과정
- 종결이 불가피한 대상자에 대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종결여부를 협의하고 결정하는 과정

#### ■ 주요내용

- 장·단기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한 점검
- 종결에 대한 사례관리사의 종합적인 의견
- 사례관리를 통해 개입한 이후 나타난 대상자 및 가족의 변화 기술
- 종결유형은 ‘재조사’와 ‘종결’로 구분



#### <참고> 종결사유

- ① 재사정 결과 비사례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장, 단기 목표 달성)
  - ② 연령도래에 따른 상급학교 진학(만13세 이상)
  - ③ 이사 또는 6개월 이상 연락 두절(사망 포함)
  - ④ 아동 및 가족의 서비스 거절이나 포기(서비스 거부 동의서 활용 가능)
  - ⑤ 기타 서비스 조정회의 결과 종결 합의된 사례
- \* 위 ①의 경우, ‘종결심사관리’를 작성하기 전에 재사정 결과를 ‘위기도 조사’에 추가하여 등록

-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재사정’과 ‘종결사례회의’ 실시 후, 종결심사서 작성 절차에 따라 종결 실시



### <참고> 종결 사례회의

- 사후관리 실시 여부 논의
- 사후관리 일정과 내용을 포함하는 사후관리계획 수립
- \* 동 사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종결심사양식’에만 등록

※ 대상자와의 종결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종결시점 등에 대한 사전안내 필요

행복e음 등록

사례관리 ▶ 사례관리업무지원 ▶ 종결심사관리

☞ <부록 이동통합사례관리 서식 10> 종결심사관리 (p.241)



### <참고> 종결 시 유의사항

- 종결하기 전에 대상아동 및 가족이 종결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종결에 대한 논의 실시
- 사례관리기간 동안 대상아동 및 가족이 성취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함께 확인
- 종결 이후에도 필요할 때는 언제나 드림스타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 장기, 단기 목표 종결된 대상아동 및 가족의 경우에도 문제가 재발하거나, 새로운 욕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대상자의 긍정적인 변화, 상황 유지 여부 확인

## 2) 사후관리

### ■ 개념

- 종결 이후, 대상자 및 가족이 성취한 변화들을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재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
- 문제가 재발했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을 시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 및 긴급 시 사회적 안전망 역할





■ 주요내용

- 종결 후 6개월 이내에 변화 상황, 안정화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재개입 필요성을 조기에 판단하는 사후관리 실시
- 구체적인 사후관리 일정, 내용을 포함하여 사후관리계획 작성
- 이사의 경우, 새로운 거주지역의 드림스타트와 연결되도록 사례관리내용을 공문으로 통보
-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
- 종결대상자에게 종결심사 단계에서 e-그린우편을 연계하여 통지서 발행 가능 (단, e-그린우편을 사용하는 지역만 발송 가능)  
 ※ 지속적 상담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연계하여 사후관리 지원

행복e음 등록	상담·신청 ▶ 안내상담 ▶ 상담등록 ▶ 통합상담이력관리
	사례관리 ▶ 업무지원 ▶ 업무바로가기 ▶ 통합상담이력관리



**<참고> 이사 등에 따른 지역 드림스타트 간 연계**

- 1) 타 지역 드림스타트에 의뢰하는 경우(드림스타트 → 타 지역 드림스타트)
  - (대상자 의뢰) 사례관리 대상 아동이 이사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새로운 거주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서비스 지속 필요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해당 지역 드림스타트에 사례관리 연계 의뢰
  - (방법) 새로운 거주 지역의 드림스타트와 연결되도록 '연계의뢰'\*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사례관리 요청
    - \* 필요 시 '지역 간 드림스타트 서비스 의뢰 요청서' 양식 활용 가능
    - 사례관리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거주 지역의 드림스타트에 '연계의뢰 결과'\* 내용을 요청 가능
    - \* 필요 시 '지역 간 드림스타트 서비스 의뢰 결과서' 양식 활용 가능
- 2) 타 지역 드림스타트로부터 의뢰받은 경우(타 지역 드림스타트 → 드림스타트)
  - (접수 및 대상자 선정) 타 지역 드림스타트에서 의뢰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초기상담 및 사정을 실시하여 드림스타트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I 정책심사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합사례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VII 모니터링  
VIII 부록

- 타 지역 드림스타트는 '연계의뢰'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사례관리 요청
  - \* 필요 시 '지역 간 드림스타트 서비스 의뢰 요청서' 양식 활용 가능
  - 사정결과,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로 판정된 아동에 대해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절차에 따라 사례관리 진행
  - 타 지역 드림스타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타 지역 드림스타트에서 의뢰받은 아동의 '연계의뢰 결과' 내용을 통보
  - \* 필요 시 '지역 간 드림스타트 서비스 의뢰 결과서' 양식 활용 가능
- (정보 공유) 필요한 경우 의뢰받은 사례관리 아동에 대한 관련 정보 등을 타 지역 드림스타트에 협조 요청
- ☞ <부록 관련서식 25, 26> 지역 간 드림스타트 서비스 의뢰 요청서 및 결과서 (p.157, p.159)



## 3.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운영

### 가. 개요

-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지원
  - 지역자원 연계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회 내 자원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드림스타트 예산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방식으로도 지원 가능
  - 사업의 고유기능 및 아동발달 지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서비스 유형을 기본서비스·필수서비스·맞춤서비스로 구분하여 운영

### 나. 서비스 지원방식

#### 1) 지역자원 연계방식

-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의 각종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지원
  - 서비스 예산(인건비 포함)에 외부 지원이 포함된 경우 연계방식에 해당

#### 2) 직접방식

- 지역사회 내 연계할 자원이 부족하여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
  - 서비스 예산(인건비 포함)이 전액 드림스타트 예산으로 구성된 경우

### 다. 서비스 유형

#### 1) 기본서비스

- 개념
  - 드림스타트 사업의 고유기능인 아동통합사례관리의 기초로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대상에게 반드시 직접 제공

### ■ 주요 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아동 발굴 및 현황조사를 위한 주기적 면담(연 2회 이상) 및 현황 조사(직접방식으로 제공)
  - ※ 기본서비스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통합상담이력관리에 상담내용을 기록하고, 서비스 제공 계획에는 별도로 등록하지 않음
- 드림스타트 초기상담 대상 및 사례관리 아동 모두가 대상

#### 행복e음 등록

상담·신청 ▶ 안내상담 ▶ 상담등록 ▶ 통합상담이력관리

사례관리 ▶ 업무지원 ▶ 업무바로가기 ▶ 통합상담이력관리

## 2) 필수서비스

### ■ 개념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

### ■ 주요 내용

- 제공기준 : 사례관리대상의 발달단계(임산부,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내에서 모든 필수서비스를 각 1회 이상 제공
  - ※ 부모에 대한 필수서비스는 대상자 선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제공(이후 매년 제공)
- 제공방법
  -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활용 가능
  - 유관기관을 활용하여 필수서비스 개입이 어려운 경우, 관련 서비스 기관에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서비스 기관의 강사를 드림스타트 또는 특정 장소(가정, 어린이집 등)에 파견하여 실시
  - 지역자원 연계방식이 원칙이나 연계방식이 어려울 경우 직접방식 활용 가능



대상별 서비스 내용		
아동 (총8종)	건강검진(성장발달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임산부 (총2종)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	
부모 (총1종)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	

- ※ 영아(생후 36개월 미만)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은 부모 교육으로 대체 가능
- ※ 사정 시 파악한 대상자의 문제 및 욕구와 관계없는 필수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장·단기목표 설정 불필요

### 3) 맞춤서비스

#### ■ 개념

-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 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및 필수서비스 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 ■ 주요내용

- 제공기준 : 지역자원 및 대상아동의 사정결과(문제 및 욕구)를 고려하여 대상아동 및 가족에 대한 맞춤 지원  
 ※ 담당자는 사례관리 시, 제공된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반드시 모니터링 진행
- 제공방법 : 지역자원 연계방식이 원칙이나 연계방식이 어려울 경우 직접방식 활용 가능

## 라.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 1) 서비스 인력관리

- 서비스 실행을 위해 채용되는 인력(아동통합사례관리사, 강사,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및 성범죄 경력을 각각 조회 실시

- 서비스 연계 시에도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 실행 인력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여부 확인

☞ <부록 근거법령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령 (p.111), <부록 관련서식 8, 9>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p.134, p.135), <부록 관련서식 6, 7>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p.132, p.133)

## 2) 서비스 진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확보

-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
- 아동통합사례관리의 첫 과정인 초기상담부터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하므로,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대상자의 동의 필요
  - 대상자에게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목적, 법적근거, 정보 활용, 제공 범위, 목적 달성 후 처리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
- 사례관리 시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모든 대상, 즉, 아동을 포함한 인적정보관리의 가구원 모두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필요
  - [개인정보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에 각 대상별로 동의에 따른 서명 확인
  - 개인정보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자(가출, 실종, 동의 거부자 등)의 동의는 확보가 불가하므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불가
    - ※ 단, 사례관리를 위해 사례회의 메뉴에 해당자 관련 사항 기재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인 주 양육자가 대신 서명
- [개인정보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는 대상자에 대한 아동통합사례 관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유효
- 종결된 대상자의 정보 내용은 5년 간 보유하고, 5년 경과 시 즉시 파기
- 확보한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훼손 및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 <부록 관련서식 3> 개인정보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활용 가능(p.129)

## 3) 드림스타트(사례관리)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확보

-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상자와의 합의 과정



- 사례관리 초기에 <드림스타트(사례관리) 서비스 이용 동의서>\*로 대상자 동의 확보  
\* 대상자의 주요 문제 및 욕구, 사례관리 목표, 드림스타트 및 대상자의 역할(의무), 서비스 조정 및 중단 내용, 종결 조건 및 기간 등이 기록  
- 단,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서비스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서비스 이용 동의서> 확보 가능
  - ※ 대상자 상황, 서비스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 ※ 서비스 대상자와의 합의과정을 통해 동의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 ☞ <부록 관련서식 4> 드림스타트(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서 활용 가능(p.130)

#### 4) 대상자의 초상권 동의 확보

- 서비스 진행 시 촬영된 사진(대상자 및 가족 얼굴 등)을 홍보자료(보도자료, 브로셔, 소식지, 홈페이지 게시 등)로 활용 시 반드시 사전에 초상권 동의 확보  
☞ <부록 관련서식 5> 초상권 사용 동의서 활용 가능(p.131)

#### 5) 서비스 수행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사정 결과와 사례관리 계획에 의해 진행
- 서비스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아래의 경우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 연계, 공유 차원에서 개방 가능
  - 추가 비용 없이 지역사회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경우
  - 드림스타트 비사례 아동이 서비스 이용 실비(전액)를 부담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다만,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 2/3 이상 참여)
  - 사업 미실시 지역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업지역 확대의 일환으로 제공(다만, 서비스 제공 이후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통해 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
- 드림스타트는 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제공 및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 기관은 드림스타트가 점검 시 제안한 조치사항을 적극 반영



2018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http://www.mohw.go.kr/>





# V

## 자원관리

### 1. 개념

- 가. 자원
- 나. 자원관리

### 2. 자원관리 방법

- 가. 자원개발
- 나. 자원등록
- 다. 자원현행화
- 라. 복지자원 일제정비
- 마. 자원활용



# 1. 개념

## 가. 자원

- 일반적으로 복지자원이란,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잠재된 위험 및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의미하며 지역사회 내 유·무형의 서비스(노동력이나 기술)와 물질적 요소를 총칭
  -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관리·제공되는 자원은 제도, 시설, 기관, 단체, 프로그램 및 사람들의 지식, 기술, 정보 등을 포함

### 행복e음상 자원의 개념 및 유형

※ 행복e음상 자원은 제공주체①와 제공서비스②를 통칭

- ① 제공주체 : 서비스 전달 주체
  -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이나 시설, 단체, 모임 등
  - 각종 공적급여와 관련 프로그램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공기관
  - 후원이나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각 개인이나 단체
  - cf) 개인이나 기관(단체)이 일정 금액을 공동모금회 또는 민간복지재단에 기탁하는 경우,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접점)하는 공동모금회나 민간복지재단이 제공주체가 됨
- ② 제공서비스 : 제공주체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금, 현물, 바우처, 프로그램, 자원봉사, 시설입소, 대여/감면 등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각종 복지서비스

[참고] 제공주체와 제공서비스별 분류

구분		내용
제공 주체별 분류 (3종)	공공 자원	조세를 이용하여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단 등 공공기관 및 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바우처, 프로그램 및 대여/감면 서비스  (제공서비스 예시) - 생계급여 등 국기초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공적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 노인돌봄서비스, 보건소의 보건서비스,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 공공근로, 저소득가정보조 등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실시하는 복지사업 - 각종 바우처 사업
	민간 (중계)	민간 재원을 사용하며, 사회복지자원을 제공받아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및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구분	내용
<p>자원</p>	<p>(제공서비스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복지관, 종별복지관 등 이용시설의 현금지원, 현물지원 및 서비스프로그램</li> <li>- 요양원, 그룹홈 등 생활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li> <li>- 공동모금회의 예치금(시군구 지정기탁), 기획사업, 지정기탁(현물, 현금), 긴급 지원사업</li> <li>- 전국단위 민간기관(사회공헌단체)의 각종 서비스</li> </ul>
	<p>지역 발굴 자원</p> <p>지역(시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내에서 직접 발굴되어 관리되는 민간 자원으로, 자원의 제공자와 자원의 수혜자 간의 직접적 서비스 연결이 이뤄진다는 특징을 가지는 자원</p> <p>(제공서비스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개인 및 단체의 후원·기부금품</li> <li>- 지역 내 개인 및 단체의 각종 프로그램</li> <li>- 지역 내 개인 및 단체의 자원봉사</li> </ul>
<p>제공 서비스별 분류 (7종)</p>	<p>현금</p> <p>현금 또는 현금성 자원에 해당하는 급여 ex) 장학금, 학비지원,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생계비지원 등</p>
	<p>현물</p> <p>실물로서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 ex) 연탄 지원, 김장김치 지원, 가전제품 지원 등</p>
	<p>바우처</p> <p>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 ex) 고운맘 카드,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산후조리 돌봄 바우처 등</p>
	<p>프로그램</p> <p>시설이나 기관이 비교적 정기적·정례적으로 제공하는 신체적·정신적 지지 지원 및 교육 과정 등 ex) 안전교육, 심리치료, 멘토링서비스 등</p>
	<p>자원 봉사</p> <p>개인이나 단체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노동력 등을 제공하여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 ex) 학습지도, 기업 봉사단체를 활용한 집수리 봉사 등</p>
	<p>시설 입소</p> <p>사회복지 생활시설에 입주해 생활하는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p>
	<p>대여/감면</p> <p>지자체 개별사업으로 각종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이용료 등을 감면해주는 서비스 ex) 저소득층 생활용자금 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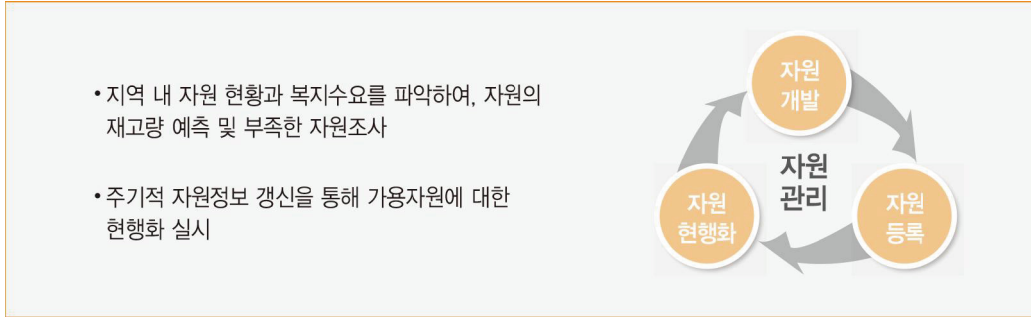
- I 사업개요
- II 사업운영
-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 IV 아동복지서비스관리
- V 자원관리
- VI 아동복지서비스 운영 및 조정
- VII 부록

## 나. 자원관리

-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산재된 다양한 자원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 대상자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자원(예산, 프로그램 등)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민간 자원을 적극 개발, 산재된 다양한 자원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 자원의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원정보 표준화\*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관리
- ※ 자원정보 표준화 : 모든 복지자원을 하나의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등록 및 수정)하는 것



## 2. 자원관리 방법



[ 그림 1 ] 행복e음 자원관리 과정

### 가. 자원개발

- 지역 내 부족한 서비스 내용을 홍보하여, 해당 서비스를 보유한 기관이나 개인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지역자원과 협약체결을 통해 드림스타트 대상자의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협력 체계 구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동복지기관협의체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강화

### 나. 자원등록

- 행복e음 내 등록된 모든 자원은 공유되며, 시·군·구에서 발굴된 지역자원은 기존 등록된 자원과의 중복 여부 확인 후, 행복e음 내 등록
  - 자원(제공주체 및 제공서비스) 중복 등록 지양

☞ (유의사항) 제공주체 중복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주체 등록 시, 반드시 기 등록 제공주체를 먼저 검색 후 등록

- I 사업개요
- II 사업운영
-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 IV 아동통합사례관리
- V 자원관리
- VI 아동복지서비스 운영 및 지원
- VII 부록

- 자원(제공주체 및 제공서비스) 에 대한 상세정보 중 누락사항 유무 점검



**등록 시, 유의사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집되는 기부금(물)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례관리 공동모금회연계」 메뉴를 통해 등록
  - 서비스유형 ‘바우처’, ‘시설입소’, ‘대여/감면’은 중앙에서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자원정보가 수집되므로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등록 불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민간복지시설의 경우, 중앙에서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자원정보가 수집되므로, 각 지자체에서 자원으로 별도로 등록하지 않도록 유의
  - 제공서비스명\* : 복지자원 분류체계를 세분화하여 자주 등록하는 서비스명을 추출 및 소분류한 것으로, 서비스명 목록에서 선택하여 입력
- \* <부록 아동통합사례관리 서식 7> 「복지자원 분류체계」 참고(p.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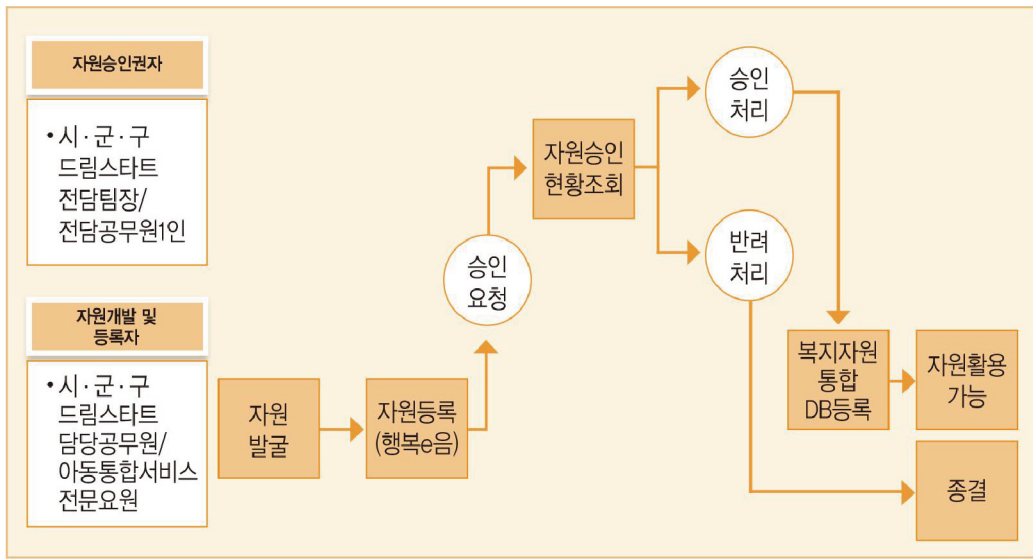
**참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서비스 정보」 등록 메뉴

시설구분	메뉴위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력정보>기초관리>서비스정보관리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이력정보>사업정보관리>서비스정보관리
아동복지관	이력정보>기초운영관리>프로그램(서비스)관리
지역자활	이력정보>공통정보>사업분류관리
노숙인 다시e음(구 노숙)	이력정보>사업관리>사업정보관리
한부모	이력정보>공통정보>사업분류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분류체계와 관리항목(생애주기, 대상기준 등)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적용 ('13.1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서비스 정보 등록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자동 연계 처리됨

- 발굴된 자원(제공주체)에 대한 승인 또는 반려 처리를 통하여 가용자원으로 선별
  - 자원승인은 1회에 한하며, 제공 서비스 등록은 별도의 승인절차 불필요
  - ※ 자원 등록 및 승인은 '지역발굴자원'에 한함



[ 그림 2 ] 자원등록 절차

### 다. 자원현행화

- 자원관리책임자는 지역 내 복지자원(제공주체, 제공서비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자원의 가용여부 등 정보의 최신 내용을 주기적으로 행복e음(복지자원통합관리 시스템)에 갱신
  - ※ 현행화 항목(예시) : 자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담당자명, 유효기간, 잔여량, 서비스 내용, 중복 여부(자원 및 서비스) 등
- 조사를 통해 갱신된 결과는 별도의 시스템에 반영하여 자원 현행화
  - ※ 지역사회 내 전수조사(3월) 및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원의 일제 현행화(9월) 실시

### 라. 복지자원 일제 정비

- 자원관리책임자는 지자체에서 자체 발굴 등록한 지역 복지자원 정보에 대해 정해진 사업기간 동안 행복e음(복지자원통합관리 시스템)에 정비 실시
  -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 내 정보의 적합성 점검 및 현행화

행복e음	자원관리 ▶ 복지자원일제정비 ▶ 일제정비관리
	자원관리 ▶ 복지자원일제정비 ▶ 일제정비 대상조회

- I 사업개요
- II 사업운영
-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 IV 아동통합사례관리
- V 자원관리
- 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 VII 부록

## 마. 자원 활용

- 대상자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 및 서비스 연계
-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시 지역 내 공유된 자원정보를 적극 활용
  - ※ 승인이 완료된 자원에 한하여 서비스 연계 가능



### 자원활용 우선순위

- ① 위기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공자원(공적급여 및 서비스)을 먼저 확인
- ② 전국단위민간기관(사회공헌기관)의 제공서비스, 공동모금회 등의 사업 검토
- ③ 지역단위의 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등의 서비스 정보를 활용

〈 표 1 〉 [참고] 자원관리자의 역할

자원관리자 분류		주요역할	비고
중앙자원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	- 외부 정보시스템에 존재하는 공공자원, 민간 (중계)자원의 정보를 복지자원통합DB에 연계 하여 등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자원 관리자	자원 관리책임자	- 자원의 개발 및 관리(사후관리 포함) 등 최종 책임을 지며, 민간과의 협력 및 지역 내 자원 공유 업무 총괄 추진 - 지역 내 자원 승인 및 주기적 정비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장  ※ 1인의 업무대리자를 둘 수 있음
	자원 관리실무자	-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시스템에 해당 자원을 등록 및 수정하는 업무 전반을 수행	시·군·구 드림스타트 실무자





### 자원관리책임자 권한 신청방법

- 행복e음 아이디 및 권한 발급과 동일하게 지자체 기관총괄책임자를 통해 발급  
(행복e음 상단 > 운영 관리 > 권한관리 매뉴얼 참조)
- 통합권한 3개 이상 신청 방법 : 운영관리 > 권한 정보관리 > 권한관리 > 권한 추가요청 관리



### 기타자원 활용 시 유의사항

#### [후원금품]

#### 1) 개요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시·군·구는 후원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자발적인 기탁에 의한 후원만 가능
  - ※ 프로그램 후원이나 지역자원의 서비스연계 등의 후원은 가능
- 후원금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지정 기탁 또는 지방자치 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 진행
- 특정 기관 및 복지재단 등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후원은 드림스타트가 대상자를 추천하고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직접 지원되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지정 기탁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됨

#### 2) 처리절차

##### 가)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 후원금품은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드림스타트의 자산으로 수입·지출을 명확하게 관리
  - ※ 기부금영수증 발행 불가
-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는 드림스타트에서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이며, 공문을 통해 서류 등 접수
- 후원금품 심의를 통한 확정(사용허가) 후 활용 가능하며, 기부심사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

##### 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정 기탁

- 후원금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정 기탁하여 배분 가능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정 기탁 절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입력 → 진행사항 결과보고 → 현금영수증 발행

- ※ 진행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양식은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양식과 동일하게 사용해도 무관하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후원물품은 단가 산정이 가능한 쌀, 김치에 한함(단가

산정이 불가능한 후원물품은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 〈후원 시 유의사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해 각 드림스타트에서는 각종 홍보물품 또는 자료 등의 제작 시 후원계좌 번호 기재, 아동을 지정하는 1:1 후원 모집 등 통념상 금품 모집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 후원 권유나 강요 불가  
 〈부록 근거법령 2〉 기부금품의 모집 관련 법령 (p.107)  
 ※ 다만, 프로그램 협력이나 자원봉사자 모집은 가능
- 직접적으로 후원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요구하는 쪽이 아닌 요구를 받는 쪽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주의

### [자원봉사자]

#### 1) 개념

- 드림스타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드림스타트에 지원하여 활동하며, 서비스 제공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행 인력
  - 기관 자원봉사 : 특정기관의 자원봉사단체(또는 모임)를 활용하여 드림스타트 서비스 진행 지원
  - 개인 자원봉사 : 개인이 특정기관의 자원봉사 단체(또는 모임)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드림스타트 서비스 진행 지원

#### 2) 모집

- 자원봉사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자원봉사자 모집

#### 3) 교육 및 관리

- 자원봉사자 대상의 교육용 자료를 제작하여 교육 실시
-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구비하거나, 별도의 자원봉사자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 활동 내역 관리
- 자원봉사자 만족도 조사 또는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인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승인을 득한 자원봉사 확인증 발급 가능



# VI

##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1. 개요
2. 사례관리 협력체계
  - 가. 지역아동센터
  - 나. 희망복지지원단
  -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 1. 개요

- 타 사업(지역아동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사례 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
-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파악 및 서비스 중복 제공 방지

## 2. 사례관리 협력체계

※ 다음의 기관 외 타 사업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례관리 협조 가능

### 가. 지역아동센터

#### 1) 지역아동센터로부터 의뢰받은 경우(지역아동센터 → 드림스타트)

- (접수) 지역아동센터에서 1차 사정을 통해 집중지원아동으로 분류된 아동의 경우, 시·군·구 드림스타트에 사례관리를 의뢰
  - 지역아동센터는 '사례관리 의뢰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드림스타트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사례관리 요청
- (대상자 선정) 드림스타트는 의뢰받은 아동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초기상담 및 사정을 실시하여 드림스타트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 사정 결과,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로 판정된 아동에 대해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절차에 따라 사례관리 진행
  - 사정 결과, 비사례대상으로 판정된 아동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로 그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
    - ※ 이 경우,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아동으로 관리하고, 추후 해당 아동에 대한 심층사정이 필요한 경우 드림스타트에 사례관리 재요청 가능



- (정보 공유) 드림스타트는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아동에 대한 관련 정보 등을 지역 아동 센터에 협조 요청

## 2) 지역아동센터에 의뢰한 경우(드림스타트 → 지역아동센터)

- (사례관리) 드림스타트의 신규 또는 기존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사례 관리는 드림스타트에서 실시
- (서비스 연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중 돌봄서비스 필요 아동의 경우, 지역 아동 센터에 연계
  -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은 지역 아동 센터에 연계
  - ☞ <부록 관련서식 27> 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 의뢰 양식 (p.160)

###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간 사례관리 협력 시 유의사항>

- 위 운영방안은 기본 모델이며 각 시·군·구는 지금까지의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현황, 지역 아동센터와의 연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방안 마련 시행
- 가급적 지역아동센터에서 의뢰하는 아동은 가정방문을 통해 사정을 실시하고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되, 현재의 여건상 모두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지역아동센터와 협의·조정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관리
-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반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더라도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 전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므로(아동복지법 제37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 취약계층 아동(만 12세 초등학교 이하)의 기본정보(지역아동센터 이용 여부, 사례관리 상황 등)를 파악하여 관리 필요
- 지역아동센터로부터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아동(만 12세 초등학교 이하)의 사례관리를 의뢰받은 경우도 드림스타트 사정 결과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아동으로 선정 가능
  - 다만, 드림스타트의 운영 상황(취약계층 아동 수,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 아동 수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

## 나. 희망복지지원단

### 1) 희망복지지원단과 드림스타트 간 중복 서비스 연계 방지를 위한 사전 협의 필요

- 해당 서비스가 기 연계되고 있는지를 확인 후 서비스 연계

### 2) 희망복지지원단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희망복지지원단 → 드림스타트)

-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드림스타트는 의뢰받은 아동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초기상담 및 사정을 실시하여 드림스타트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 ※ 다만, 드림스타트가 희망복지지원단으로부터 의뢰받은 아동에 대한 사정 결과 비사례 대상으로 판정된 경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3) 희망복지지원단에 의뢰한 경우(드림스타트 → 희망복지지원단)

- (대상자 의뢰)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결과, 가구 단위의 집중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 의뢰
  -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의뢰 동시 진행 가능
- (시스템 절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사례관리 ‘대상자선정관리’ 메뉴에서 ‘희망으로 이관’ 선택
  - ※ 다만, 이미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관리 진행 중인 대상인 경우 의뢰 불가



[ 그림 1 ] 드림스타트와 희망복지지원단 간 사례관리 협조 절차

※ 희망복지지원단의 초기상담은 읍·면·동에서 담당하며, 읍·면·동 담당자는 아동이 있는 가구를 드림스타트로 의뢰 가능

##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 1)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 → 드림스타트)

- (접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통합적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의 경우, 시·군·구 드림스타트에 사례관리 의뢰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연계의뢰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드림스타트에 송부하고 사례관리를 요청
  - 드림스타트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의뢰된 아동의 ‘연계결과확인서’를 송부
- ☞ <부록 관련서식 28, 29>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의뢰서 및 연계결과확인서 (p.163, p.164)
- (대상자선정) 드림스타트는 의뢰받은 아동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한 초기상담 및 사정을 실시하여 드림스타트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드림스타트 → 아동보호전문기관)

- (대상자 의뢰) 드림스타트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및 사례 연계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통합서비스 수행인력은 신고의무자 직군에 포함됨
- (방법) 드림스타트는 ‘연계의뢰서’를 통해 사례를 의뢰하고, 사례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 기관에 ‘연계결과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 ☞ <부록 근거법령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령 (p.111)
- ☞ <부록 참고자료 3>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p.170)

### 3) 서비스 협력

-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협력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조(예 :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번호	문항	체크란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상흔이나 폭행으로 보이는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예	아니오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및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예	아니오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예	아니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예	아니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예	아니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예	아니오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예	아니오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예	아니오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예	아니오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예	아니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예	아니오
12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아니오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표현하거나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예	아니오
14	아동이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을 보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예	아니오
15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1-14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학대 의심 사항 : )	예	아니오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활용 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 사업개요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솔체계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별 부록



2018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http://www.mohw.go.kr/>



# VII

## [부록 1] 근거법령

1. 드림스타트 운영 근거 법령
2. 기부금품의 모집 관련 법령
3. 숙박형 청소년 활동 관련 법령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령
5.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령



## 1 | 드림스타트 운영 근거 법령



## □ 「아동복지법」

<[시행 2017.12.20.] [법률 제14887호, 2017.9.19., 일부 개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2016.3.22.>
-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 □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2017.12.20.] [대통령령 제28481호, 2017.12.19., 일부개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2.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 대상 선정 및 이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 설치·운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
3. 법 제2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
4.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청구에 관한 사무
- 4의2. 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 4의3. 법 제29조의4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43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 자산 관리업무에 관한 사무
10.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 10의2. 법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보호에 관한 사무
11.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 11의2. 법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에 관한 사무
13. 법 제51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14. 법 제5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66조에 따른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무
16. 법 제6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 2 기부금품의 모집 관련 법령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자치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29.]

②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도 및 시·군·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숙박형 청소년 활동 관련 법령



####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705호, 2017.3.21., 일부개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4.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②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 [여성가족부령 제104호, 2016.12.27., 타법개정]>

**제1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 ①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준수한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3.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4. 법 제25조에 따른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령



### □ 「아동복지법」

<[시행 2017.12.20.] [법률 제14887호, 2017.9.19., 일부 개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1.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②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③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2015.3.27., 2016.3.2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55호, 2017.12.19., 일부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 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삭제 <2016.5.29.>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 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 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7.17.] [법률 제15352호, 2018.1.16., 일부 개정]>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제 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2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 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당지원 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과외 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 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한정한다.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 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 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대중문화예술 기획 업자가 같은 조 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 등
    -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 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 등
    -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 등으로서 해당 시설 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 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 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 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 ② 제 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 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696호, 2017.3.21., 일부개정]>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근거 법령,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
2.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
3. 제34조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보장기관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07호, 2016.3.29., 일부개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VII

## [부록 2] 관련서식

1. 사업계획서(예시)
2.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실적 점검표
3.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4. 드림스타트(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서
5. 초상권 사용 동의서
6.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7.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8.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9.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0. 근로계약서(예시)
11. 운영위원회 회의록
12. 아동복지기관협의회 회의록
13. 슈퍼비전 기록지
14. 업무협약서(예시)
15. 서비스 관리일지(서비스 수행기관용)
16. 서비스 관리대장(드림스타트)
17. 후원금(품) 관리대장
18. 자원봉사 활동일지(단체)
19. 자원봉사 활동일지(개인)
20. 자원봉사 관리대장
21. 자원봉사 확인증(예시)
22. 자원봉사 신청서
23. 서비스 만족도 조사
24. 효과성 측정(참고 서식)
25. 지역 간 드림스타트 서비스 의뢰 요청서(예시)
26. 지역 간 드림스타트 서비스 의뢰 결과서(예시)
27. 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 의뢰 양식
28.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의뢰서
29.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결과확인서



## 1 사업계획서(예시)



※ 본 양식은 기본사항으로 별도 양식 추가 작성 가능

## ○○ 시·군·구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 I. 사업 개요

## 1. 추진 배경

○

## 2. 추진경과

○

## 3. 추진방향

○

## II. 사업 현황

## 1. 일반 현황

가. 드림스타트 설치 장소 :

나. 사업 대상지역(읍·면·동) :

다. 인구규모 및 면적

인 구	전 체	명(남 명 / 여 명)
	등록외국인	명(남 명 / 여 명)
세대 수		세대
행정구역 수		○개 읍·면·동( 통 반)
면 적		km <sup>2</sup>

## 라. 지역특성

- 임대아파트 밀집지역, 대상자 분포 등 지역 상황 기술
- 복지 시설 및 인프라 기술



마. 복지대상자 현황

1) 저소득층 현황

(기준일 : '18.1.1. 단위 : 가구 / 명)

계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기타 저소득	
전체지역	사업지역	전체지역	사업지역	전체지역	사업지역	전체지역	사업지역	전체지역	사업지역
/	/	/	/	/	/	계 / 모자 / 부자 / 조손 /	계 / 모자 / 부자 / 조손 /	/	/

2) 만 12세 이하 저소득가정 아동현황

(기준일 : '18.1.1. 단위 : 가구 / 명)

계		수급자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기타 저소득 아동	
전체지역	사업지역	전체지역	사업지역	전체지역	사업지역	전체지역	사업지역	전체지역	사업지역
/	/	/	/	/	/	/	/	/	/

3) 사업대상 아동현황(연령대별)

(기준일 : '18.1.1. 단위 : 가구 / 명)

연령대별	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타 저소득
계					
영아 (36개월 이하)					
유아 (37개월~학령 전기)					
학령기 (초등학교 1~6학년)					
임산부					

바. 복지공급자원 현황

(일반 복지자원 현황을 기술하고 그중 드림스타트 사업에 활용이 가능한 인프라 및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기술)

- 1) 복지인프라(주요 관련기관 및 시설)
- 2) 연계 협력 가능한 인적자원

(단위 : 명)

계	사 회 복지사	치료 교사	보육 교사	초등학교교사 (특수교사)	주민자치 위원	통반장	자원 봉사자

I 사업개요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합사례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조사 및 조정

VII 부록

2. 추진체계

가. 조직 및 인력

- 드림스타트 담당부서(조직도, 공무원 인력배치 등 지역별 지원체계 특징 기술)
- 수행인력 구성(직급 및 인원 등)

(단위 : 명)

총괄 (팀장)	건강	보육(교육)	복지	비고

나.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슈퍼비전 운영계획

- 운영 장소 및 방안, 참여인원 등 기술

3. 주요사업(사업내용에 따라 변경할 필요가 있음)

가. 기본프로그램 흐름도

나. 기본서비스

- 1) 주요대상, 총괄책임, 서비스제공방안 및 프로그램 내용 기재
- 2) 세부프로그램

다. 필수서비스

- 1) 주요대상, 총괄책임, 서비스제공방안 및 프로그램 내용 기재
- 2) 세부프로그램

라. 맞춤서비스

- 1) 주요대상, 총괄책임, 서비스제공방안 및 프로그램 내용 기재
- 2) 세부프로그램

마. 지역사회 조직화사업

- 1) 주요대상, 총괄책임, 서비스제공방안 및 프로그램 내용 기재
- 2) 세부프로그램

4.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연간 소요내역	
		세부내역	계
기본 사업비	가. 사업관리 운영비		
서비스 운영비	가. 기본서비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명)	
	나. 필수·맞춤 서비스		
	다. 지역사회 조직화		
총 계			





## 2 |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실적 점검표



※ 보건복지부의 추진실적 점검 계획에 따라 본 서식은 변경 가능

◆ 시·도명:	◆ 드림스타트:
---------	----------

**□ 지역현황**

1. 일반현황

시·군·구	주소	연락처	팩스	사무실 위치	거점 여부
	( - )			<input type="checkbox"/> 청사 내 <input type="checkbox"/> 청사 외	

※ 사무실 2개 이상인 지역의 경우, 칸 추가하여 작성(거점사무실 여부 표기 필수)

2. 조직체계  전담팀  비전담팀

개소년도	소속국명(또는 관명)	과명	팀명

3. 사업지역 현황

사업지역 현황			전지역 확대여부	전지역 확대 계획시기(년월)*
기준	전체 읍면동 수	사업지역 읍면동 수		
법정동				

\* 현재 전지역 미확대인 지역에 한해 작성

**□ 인력현황**

1. 전체 인력현황

구분		인원수
계		명
공무원	전담	명
	겸직	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계약직	명
	무기계약직	명
기타 인력	지역사회복지사	명

I 사업개요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합사례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VII 부록

2. 공무원 현황  준수(3인 이상)  미준수(2인 이하)

구분	성명	해당직렬	발령일자	전담 여부
계				명
팀장				
공무원1				
공무원2				

3.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현황  준수 (4인 이상)  미준수 (3인 이하)

구분	담당분야	성명	채용일자	무기계약직 전환여부
계				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계	명		
	건강			
	복지			
	보육/교육			
기타	계	명		
	지역사회복지사			

사례관리 현황

1. 총괄현황

대상자 수			가구 수			실시비율(%)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수(A)	초기상담 대상자 수 (B)	사례관리 대상자 수 (C)	12세 이하 취약계층 가구 수(D)	초기상담 가구 수 (E)	사례관리 가구 수 (F)	아동		가구	
						B/A	C/A	E/D	F/D

2. 아동현황

- 수급자 별 대상자 현황

구분	아동 수						임산부 (0세)
	계	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기타저소득	일반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수					-	-	-
초기상담 대상자 수							
사례관리 대상자 수							

※ 아동 현황 중복 시, 수급과 차상위를 우선 순위로 기입(ex. 수급이면서 한부모 아동은 수급에 포함)



- 성별·연령별 대상자 현황

구분	남				여			
	영아	유아	학령기	임산부	영아	유아	학령기	임산부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수				-				-
초기상담 대상자 수								
사례관리 대상자 수								

3. 가구현황

- 수급자별 가구 현황

구분	가구 수						
	계	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기타저소득	일반	임산부(0세)
12세 이하 취약계층 가구 수					-	-	-
초기상담 가구 수							
사례관리 가구 수							

※ 가구 현황 중복 시, 수급과 차상위를 우선 순위로 기입(ex. 수급이면서 한부모 가정은 수급에 포함)

4. 아동학대 신고 및 연계 현황

아동학대 신고 건수	신고한 사례 중 아동학대 판정건수	학대 판정아동 사례관리 건수

□ 프로그램 현황

1. 분야별 서비스 현황

분야	제공서비스 연계 건수	제공주체 연계 건수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위기		

I 사업개요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합사례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점검 및 조정

VII 부록

## □ 예산

구분	예산편성 현황(원)		
	계	국비	지방비
금액	원	원	원

## □ 기타

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3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본 조사는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의거 드림스타트를 통한 아동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아동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성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인이력,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상황내용,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등

드림스타트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복지대상자 선정 및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의 목적 등으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법에 의거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 내용은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 선별과정 및 통합서비스 관리를 위해 활용·보관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파기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위 내용을 담당공무원(아동통합사례관리사)으로부터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정보주체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예) 홍길동 (아동 본인)	(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예) 홍길순 (모)	(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 대상자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수

※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칸 추가 등 서식 변경 가능

년 월 일

○○○ 시·군·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I 사업개요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합사례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준비 및 조정  
VII 부록

## 4 | 드림스타트(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서



## 드림스타트(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서

- 대상자 :
- 서비스 계획

주요문제/욕구	
사례목표	

드림스타트의 역할	
아동 및 가족의 역할	
종결조건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상기와 같은 드림스타트(사례관리)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며, 드림스타트와 함께 아동과 가족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본인(또는 대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훈련 및 연구 활동 등에서 본인(또는 대상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례관리 종료 후 1년간 활용하며 5년간 보관 후 폐기됩니다.

성           명: \_\_\_\_\_ (인)

아동과의 관계:

날           짜:     년     월     일

사 례 관 리 자: \_\_\_\_\_ (인)

○○○ 시·군·구청장 귀하



5 | 초상권 사용 동의서



**초상권 사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 및 언론매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시 촬영된 대상자 사진 및 영상과 관련하여 초상권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사용 목적**

드림스타트 홍보매체 및 인쇄물(브로셔, 소식지, 홈페이지 게시물 등), 언론 매체(신문, 잡지 기사 등) 등 사업 홍보

▣ **사용 형태** : 드림스타트 서비스 참여 시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위의 사항에 따라 초상권 사용에 동의하며, 그 권리를 귀 기관에 위임합니다.

초상권 주체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성명(서명 또는 인)
예) 홍길동 (아동 본인)	(법정대리인) (인)
예) 홍길순 (모)	(인)
	(인)

※ 사진 및 영상물 활용 대상자에 한해 동의 필요

※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수

년      월      일

아 동(법정대리인 서명) : (예시) 홍길동 (인)

보호자(본 인 서명) : (예시) 홍길순 (인)

○○○ 시·군·구청장 귀하

## 6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1.30.>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외국인인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국적(외국인인 경우만 작성)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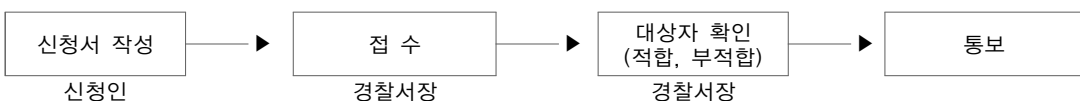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취업자등 본인의 동의서 1부(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삭제 <2016. 11. 30.>
3.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 8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9.23.>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취업(예정) 직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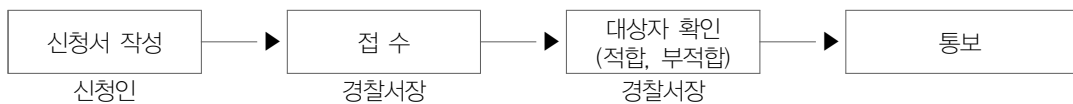
경찰청장(\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9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6.9.2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 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I 시정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학사예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VII 부록

## 10 근로계약서(예시)



##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_\_\_\_\_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시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종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휴게시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 주휴일 : 매주 \_\_요일

## 5. 임금

- 시간(일, 월)급 : \_\_\_\_\_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_\_\_\_\_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_\_\_\_\_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_\_\_\_\_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I  
정책  
개요

II  
사업  
영역

III  
지원  
구  
구  
성  
및  
영  
역

IV  
이  
동  
보  
통  
사  
예  
관  
리

V  
지  
원  
관  
리

VI  
이  
동  
보  
통  
사  
예  
관  
리  
조  
정  
요  
구

VII  
부  
록

## 11 운영위원회 회의록



## 운영위원회

지역명					
안건					
회의일자(시간)		2018. . . ( : ~ : )			
연번	직위	소속(직책)	성명	성별	비고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 원				
주요안건					
회의내용					



**12 아동복지기관협의체 회의록**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지역명					
안건					
회의일자(시간)		2018. . . ( : ~ : )			
연번	직위	소속(직책)	성명	성별	비고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 원				
주요안건					
회의내용					

I 단계

II 사업공  
공표

III 지원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  
통합  
사례관리

V 지원  
관리

VI 아동  
복지  
서비스  
조사  
및  
개선

VII 부  
록

## 13 슈퍼비전 기록지



## 슈퍼비전

지역명					
주제					
일자(시간)		2018. . . ( : ~ : )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 ) 명</li> <li>▪ 참석 실무자명 :</li> </ul>			
슈퍼바이저 (성명/소속/직급)					
연번	직위	소속(직책)	성명	성별	비고
1					
2					
3					
슈퍼비전 내용		구분 (중복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사례관리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기획 및 운영 <input type="checkbox"/> 드림스타트 운영 <input type="checkbox"/> 기타( )		
		주요 내용			
		슈퍼바이저 의견			





## 14 업무협약서(예시)



### 업무협약서

본 협약서는 “드림스타트 00사업”(이하 “00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함에 있어 “00시장·군수·구청(이하 00기관명1”이라 한다)과 “0000시 00기업, 00의사회 (이하 00기관명2”이라 한다)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00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00기관명1” 과 “00기관명2”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00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00기관명1”과 “00기관명2”의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협약사업개요)

1. 프로그램명 :
2. 기간, 장소 등 :
3. 대 상 :
4. 내 용 :

#### 제3조 (업무분담)

1. “00기관명1”은 “00사업”의 진행 및 자원봉사자 지원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2. “00기관명2”은 사전 협의된 인력 및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한 사업을 진행 한다.

#### 제4조 (사업비 지급)

1. “00기관명1”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원정을 “00기관명2”의 사업 개시 전일까지 전액 지급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00기관명2”은 10일 이내에 “00기관명1”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운영비 지급은 “00기관명2”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 18 자원봉사 활동일지(단체)



## 자원봉사 활동일지(단체)

일시			장소	
기관 및 단체명			인원	
주요 활동				
참가자	성별(나이)	주소	연락처	
평가				









21 | 자원봉사 확인증(예시)



제 호

# 확 인 증

홍 길 동  
(생년월일)

위 사람은 ○○드림스타트에서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

- 기간: . . . ~ . . . (총 시간)
- 활동내용:

년 월 일

담 당: \_\_\_\_\_ (인)

○○ 드림스타트

I 소개문서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합사례관리

V 자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점검 및 조정

VII 부록

## 22 자원봉사 신청서



## 자원봉사 신청서

소 속 단체명		작성일		상담자	
성 명	(인)	성 별		생년월일 (음, 양)	
전화번호		이동전화		E-mail	
주 소	( - )				
최종학력		학교 / 학년		전공학과	
직 업		직장명		자격증	
희망분야	<input type="checkbox"/> 목욕봉사 <input type="checkbox"/> 이미용서비스 <input type="checkbox"/> 홍보활동(캠페인, 취재활동) <input type="checkbox"/> 사무보조 <input type="checkbox"/> 통·번역 <input type="checkbox"/> 환경보존 <input type="checkbox"/> 정서지원 <input type="checkbox"/> 의료지원 <input type="checkbox"/> 교통질서 <input type="checkbox"/> 가사/생활지원 <input type="checkbox"/> 생활건강(수지침, 대체의학) <input type="checkbox"/> 재난재해지원 <input type="checkbox"/> 급식/배달 지원 <input type="checkbox"/> 문화공연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차량봉사 <input type="checkbox"/> 문화해설                      (                      ) <input type="checkbox"/> 학습지도 <input type="checkbox"/> 상담활동				
희망시간	(                      )요일 시간 : (                      :                      )~(                      :                      )		희망지역	(                      )구 (                      )동	
자원봉사 경 험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 활동기간 :                      년                      개월 - 활동기관 : - 활동내용 :			자원봉사 교육이수	<input type="checkbox"/> 기본·소양교육 <input type="checkbox"/> 보수교육 <input type="checkbox"/> 전문·리더교육 <input type="checkbox"/> 재난재해교육 <input type="checkbox"/> 기타교육(                      )
비 고					
홈페이지등록용-기재시 본인의 실적확인가능함 (000.0000.go.kr)	희망ID	(영문 혹은 숫자 8자 이내)		비밀 번호	(영문 혹은 숫자 8자 이내)
<p>본인은 '자원봉사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봉사활동 실적관리·인증, 봉사활동처 연결, 자원봉사상해보험가입, 봉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용함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성 명 :                      (서명)</p> <p>000 드림스타트장 귀하 (000-000) 0000 00구 000동 000-0 / Tel,000-0000 Fax,000-0000 E-mail, 000@000,000</p>					



## 23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서비스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명		성별(나이)	남 / 여 (     세)
참여기간			

#### ■ 프로그램 만족도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강사(진행자)는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시간 및 기간은 적당하였다.					
프로그램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이웃에게 권해주겠다.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좋았다.					
- (주제1)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5점	4점	3점	2점	1점
- (주제2)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5점	4점	3점	2점	1점
- (주제3)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5점	4점	3점	2점	1점

#### ■ 운영 만족도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프로그램 장소의 크기는 적당하였다.					
프로그램 장소의 환경은 쾌적하였다.					
프로그램 장소는 찾아오기 어렵지 않았다.					
앞으로도 드림스타트 서비스(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 ■ 기타 의견

I 사업개요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복지서비스  
보급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VII 부록

## 24. 효과성 측정(참고 서식)



■ 신체/건강 효과성 측정 척도(예시)

나의 건강에 대한 생각

\* 다음은 나의 건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읽고 자신이 해당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1	2	3	4	5
② 식사는 거르지 않고 먹는다.	1	2	3	4	5
③ 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	1	2	3	4	5
④ 손톱, 발톱을 짧고 깨끗하게 정돈한다.	1	2	3	4	5
⑤ 외출해서 돌아오면 손을 씻는다.	1	2	3	4	5
⑥ 식사 후에 칫솔질을 철저히 한다.	1	2	3	4	5

출처 : 김성희(2007). 학령기 아동의 건강증진행위 예측모형(간소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인지/언어 효과성 측정 척도

1) 아동이 지각하는 학업성적 수준

학습에 대한 생각

\* 다음은 나의 학습 수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학업성적은 다음 중 어느 수준에 해당합니까?

▶ 매우 못함과 매우 잘함 사이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못함 <-----> 매우 잘함									
전체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국어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1	2	3	4	5	6	7	8	9	10
수학	1	2	3	4	5	6	7	8	9	10
영어	1	2	3	4	5	6	7	8	9	10

## 2) 아동의 학습습관

## 학습 습관에 대한 생각

\* 다음은 나의 학습 습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읽고 자신이 해당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질문 내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학교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2	3	4
② 나는 실수를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어려운 내용을 좋아한다.	1	2	3	4
③ 나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다 한다.	1	2	3	4
④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⑤ 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⑥ 나는 하던 공부를 끝낼 때까지 공부에 집중한다.	1	2	3	4
⑦ 나는 학교생활이 내가 성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⑧ 나는 몇 시간 동안 얼마나 공부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한다.	1	2	3	4
⑨ 나는 공부가 지루해도 계획한 것은 마친다.	1	2	3	4
⑩ 학교생활이 나의 미래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1	2	3	4
⑪ 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시간 계획을 세운다.	1	2	3	4
⑫ 나는 노는 것을 그만두지 못해 공부를 시작하기가 어렵다.	1	2	3	4
⑬ 학교 공부는 내가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1	2	3	4
⑭ 나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공부 시간을 확실히 정해둔다.	1	2	3	4
⑮ 나는 공부를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집중을 못한다.	1	2	3	4
⑯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유용할 것이다.	1	2	3	4
⑰ 나는 시험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공부한다.	1	2	3	4
⑱ 학교생활은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출처 : 양명희(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세영(2006).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 유형, 자기 통제력, 자기조절학습 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본 척도는 양명희(2000)가 개발한 자기조절학습능력 측정도구를 김세영(2006)이 재구성한 문항을 한국어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수정·보완한 것임



## ■ 정서/행동 효과성 측정 척도

### 1) 아동의 안녕감

#### 나의 느낌은?

\* 다음의 질문을 잘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맞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질문 내용	전혀 느끼지 못했다	가끔 느꼈다	자주 느꼈다	항상 느꼈다
① 행복하다고 얼마나 자주 느꼈나요?	1	2	3	4
② 생활이 재미있다고 자주 느꼈나요?	1	2	3	4
③ 만족스럽다고 얼마나 자주 느꼈나요?	1	2	3	4
④ 자신이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것을 얼마나 자주 느꼈나요?	1	2	3	4
⑤ 평소 해야 할 자신의 책임(의무)을 다하고 있다고 얼마나 자주 느꼈나요?	1	2	3	4
⑥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경험들을 했다고 얼마나 자주 느꼈나요?	1	2	3	4
⑦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떠올리거나 표현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고 얼마나 자주 느꼈나요?	1	2	3	4

출처 : 이정미·이양희(2007).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및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발달심리학회지, 20(4), p.33-58.

\* 본 척도는 이정미·이양희(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간소화한 것임

## 2) 아동의 자아존중감

## 내가 생각하는 나는?

\* 다음을 읽고 자신이 해당하는 칸에 ○표 해 주세요.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나에게는 좋은 점이 많이 있다.	1	2	3	4	5
② 나도 남들만큼 일을 해낼 수 있다.	1	2	3	4	5
③ 나는 가끔 내게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1	2	3	4	5
④ 나는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는 때가 있다.	1	2	3	4	5
⑤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참 힘들다.	1	2	3	4	5
⑥ 내게는 고칠 수만 있다면 고쳐야 할 점이 많다.	1	2	3	4	5
⑦ 나는 주저하지 않고 결심할 수 있다.	1	2	3	4	5
⑧ 나는 함께 지내기에 재미있는 사람이다.	1	2	3	4	5
⑨ 나는 집에서 화를 잘 낸다.	1	2	3	4	5
⑩ 나는 새로운 것을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1	2	3	4	5
⑪ 나는 내 또래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1	2	3	4	5
⑫ 나는 쉽게 포기한다.	1	2	3	4	5
⑬ 내 생활에서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다.	1	2	3	4	5
⑭ 사람들은 보통 내 생각에 잘 따른다.	1	2	3	4	5
⑮ 나는 나 자신을 대단치 않게 생각한다.	1	2	3	4	5
⑯ 나는 가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화가 날 때가 있다.	1	2	3	4	5
⑰ 우리 가족은 날 잘 이해한다.	1	2	3	4	5
⑱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잘 생기지 않았다.	1	2	3	4	5
⑲ 나는 가끔 내가 하는 일에 자신이 없어진다.	1	2	3	4	5
⑳ 나는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자신 있게 말한다.	1	2	3	4	5

출처 : 김경연(1986). 어머니 관련 변인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한국발달심리학회지, 6(1), p.37-50.

유우영(1992).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 존중감 간의 관계: 아버지 관련변인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본 척도는 김경연(1986)이 한국 아동들에게 검증·사용하고 유우영(1992)이 학령기 아동에게 적용한 척도를 간소화 한 것임





**25 지역 간 드림스타트 서비스 의뢰 요청서(예시)**



**지역 간 드림스타트 서비스 의뢰 요청서**

1. 기본사항

아동사항	아동명	(□남/□여)	생년월일	년	월	(만	세)		
	주소		집전화						
	아동 휴대폰		보호자 휴대폰						
	학교	초등학교	학년 / 반		학년		반		
기본사항	지역	드림스타트	연락처						
	주소								
	의뢰자		의뢰자 연락처						
	드림스타트 이용기간		년	개월					
가족사항	가정형태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한부모(부/모) <input type="checkbox"/> 조부모 <input type="checkbox"/> 아동세대 <input type="checkbox"/> 친척 <input type="checkbox"/> 시설입소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이름	관계	나이	직업	학력	종교	동거여부	건강상태	비고
정부지원	공적부조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기타승인    )							
	경제상황	월평균 수입(      만원)		부채 유무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      만원)			
주거사항	소유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 <input type="checkbox"/> 복지시설 (쉼터)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거주형태	<input type="checkbox"/> 거실	<input type="checkbox"/> 방1	<input type="checkbox"/> 방2	<input type="checkbox"/> 방3	<input type="checkbox"/> 입식부엌			
	기타사항	<input type="checkbox"/> 재래식부엌	<input type="checkbox"/> 재래식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수세식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마당				

I 시정개편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합사례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VII 부록

## 2. 아동·가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구체적으로 기술)

\* 인지·학습, 심리·정서, 건강·장애, 학교적응, 또래 및 대인관계, 가족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관찰된 아동의 모습	
가정환경의 모습	<input type="checkbox"/> 가정방문 <input type="checkbox"/> 아동 입소 시 부모상담 <input type="checkbox"/> 전화 및 면접을 통한 상담
아동을 바라보는 드림스타트의 입장	

## 3. 이전에 개입된 서비스

\* 이전에 아동에게 개입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이 내용은 아동 의뢰 및 초기 상담 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개입된 서비스 유형	<input type="checkbox"/> 심리검사 <input type="checkbox"/> 심리치료 (미술, 인지, 놀이, 모래, 음악, 독서 등) <input type="checkbox"/> 사례관리 <input type="checkbox"/> 타 기관 프로그램 연계 (집단상담, 개별상담)		
개입기관		개입기간	년      개월
개입사유			
종결사유			
서비스제공 결과			

## 4. 아동사례관리가 의뢰되는 것을 아동 및 가정의 동의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예.                       아니오.

○○시·군·구 드림스타트/ ○○시·군·구 드림스타트



**26 지역 간 드림스타트 서비스 의뢰 결과서(예시)**



**지역 간 드림스타트 서비스 의뢰 결과서**

▶ 연계일시 : 20 년 월 일

아동 인적 사항	성명		성별	여자 / 남자
	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본 인 :	아동 및 가족의 특성	
보호자 :				
연계 드림스타트 정보	연계 의뢰 드림스타트		연계 접수 드림스타트	
	기관명 (부서)		기관명 (부서)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조치 결과	<input type="checkbox"/> 사례관리 진행(내용 : ) <input type="checkbox"/> 타기관 연계(연계기관 : ) <input type="checkbox"/> 연락 두절(이유 : ) <input type="checkbox"/> 기타(내용 : )			
귀 기관에서 의뢰하신 아동에 대해 위와 같이 조치결과를 통보드립니다.  20 년 월 일  아동 성명 : (서명) 담당자 성명 : (서명)				

I 사업개요

II 사업운영

III 지역거주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합사례관리

V 자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운영 및 조정

VII 부록

## 27 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 의뢰 양식



## 1. 기본사항

아동사항	아동명	(□남/□여)	생년월일	년	월	(만	세)		
	주소		집전화						
	아동 휴대폰		보호자 휴대폰						
	학교	초등학교	학년 / 반		학년		반		
센터사항	센터명	지역아동센터	연락처						
	주소								
	지역아동센터 의뢰자		의뢰자 연락처						
	아동의 센터 이용기간		년	개월					
가족사항	가정형태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한부모(부/모) <input type="checkbox"/> 조부모 <input type="checkbox"/> 아동세대 <input type="checkbox"/> 친척 <input type="checkbox"/> 시설입소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이름	관계	나이	직업	학력	종교	동거여부	건강상태	비고
정부지원	공적부조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기타승인    )							
	경제상황	월평균 수입(    만원) 기타 (    )			부채 유무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    만원)			
주거사항	소유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 <input type="checkbox"/> 복지시설 (쉼터)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거주형태	<input type="checkbox"/> 거실 <input type="checkbox"/> 방1 <input type="checkbox"/> 방2 <input type="checkbox"/> 방3 <input type="checkbox"/> 입식부엌 <input type="checkbox"/> 재래식부엌 <input type="checkbox"/> 재래식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수세식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마당							
	기타사항								



## 2. 아동·가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구체적으로 기술)

\* 인지·학습, 심리·정서, 건강·장애, 학교적응, 모래 및 대인관계, 가족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관찰된 아동의 모습	
가정환경의 모습	<input type="checkbox"/> 가정방문 <input type="checkbox"/> 아동 입소 시 부모상담 <input type="checkbox"/> 전화 및 면접을 통한 상담
아동을 바라보는 센터의 입장	
센터에서 아동에게 하고 있는 것	

## 3. 이전에 개입된 서비스

\* 이전에 아동에게 개입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이 내용은 아동 의뢰 및 초기 상담 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개입된 서비스 유형	<input type="checkbox"/> 심리검사 <input type="checkbox"/> 심리치료 (미술, 인지, 놀이, 모래, 음악, 독서 등) <input type="checkbox"/> 사례관리 <input type="checkbox"/> 타 기관 프로그램 연계 (집단상담, 개별상담)		
개입기관		개입기간	년    개월
개입사유			
종결사유			
서비스제공 결과			

I 사업개요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합사례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VII 부록





**28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의뢰서**



연 계 의뢰서

사례번호				연계확인여부	Y ( ) / N ( )		
연계 의뢰 기관	기관명			연계수단	<input type="checkbox"/> 팩스( )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 <input type="checkbox"/> 우편( ) <input type="checkbox"/> 방문( )		
	담당자	(인)		직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연계 접수 기관	기관명						
	담당자	(인)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적 사항	아동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학대 행위 의심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아동과의 관계 / 동거여부	
	연락처			접수일시	년 월 일 00:00		
	주 보호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		학대유형 (학대의심유형)	신체/ 정서/ 방임/ 성		
	가족관계	성명	성별	연령	관계	동거여부	직업/학교
	아동 및 가족의 특성						
	조치사항	※ 일자별 기재					
연계일자	년 월 일 00:00						
의뢰내용 (학대의심내용, 협력사항)							

※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 연계접수기관 담당자는 의뢰기관에서 요청 시 연계결과확인서를 작성하여 연계의뢰기관 담당자에게 전달 합니다.(단, 사례종결시에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 ○○시·군·구 드림스타트

I 사업개요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솔사례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양 조 전

별 부 록

## 29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결과확인서



## 연 계 결 과 확 인 서

사례번호				연계확인여부	Y ( ) / N ( )	
연계 접수 기관	기관명			연계수단	<input type="checkbox"/> 팩스( )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 <input type="checkbox"/> 우편( ) <input type="checkbox"/> 방문( )	
	전달일시	년 월 일 00:00				
	담당자	(인)		직위		
연계의뢰 기관	기관명					
	담당자	(인)		직위		
아동 및 의뢰 요청 사항	성명		성별		(만)연령	
	연락처			연계접수일시	년 월 일 00:00	
	의뢰요청사항					
현재 상황		<input type="checkbox"/> 종결( ) <input type="checkbox"/> 타 기관 의뢰( ) <input type="checkbox"/> 유지( ) <input type="checkbox"/> 기타( )				
향후진행계획						

※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 ○○시·군·구 드림스타트





# VII

## [부록 3] 참고자료

1. 전국 드림스타트 지역유형 분류
2. 전국 드림스타트 현황
3.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4. 행복e음 전국지원 현황
5. 외국의 아동통합서비스 운영사례



## 1 | 전국 드림스타트 지역유형 분류



### 가. 분류기준

- 법적·행정적 지위 및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관련 요소를 동시에 고려
- 대도시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과 농산어촌지역(군 단위 이하)은 사업운영 관련 요소의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되므로 법적·행정적 분류체계를 그대로 적용
- 이외 시 지역은 지역적 특성이 혼재되어 있어 면적, 인구, 취약계층, 자원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

### 나. 분류결과

-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총 229개 지역)
  - 대도시 자치구(69개), 대도시 기초단체(16개), 중소도시 기초단체(62개), 농산어촌 기초단체(82개)
  - ※ 지역유형분류는 사업운영 점검 시 지역 구분 단위로 활용
- 지역 유형별 특징
  - (대도시 자치구) 면적에 비해 인구와 지역자원이 많음
  - (대도시 기초단체) 지역범위가 넓고, 전체 인구 및 취약계층아동 수, 지역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음
  - (중소도시 기초단체) 인구, 면적, 지역자원이 평균적 수준임
  - (농산어촌 기초단체) 면적에 비해 인구와 지역자원이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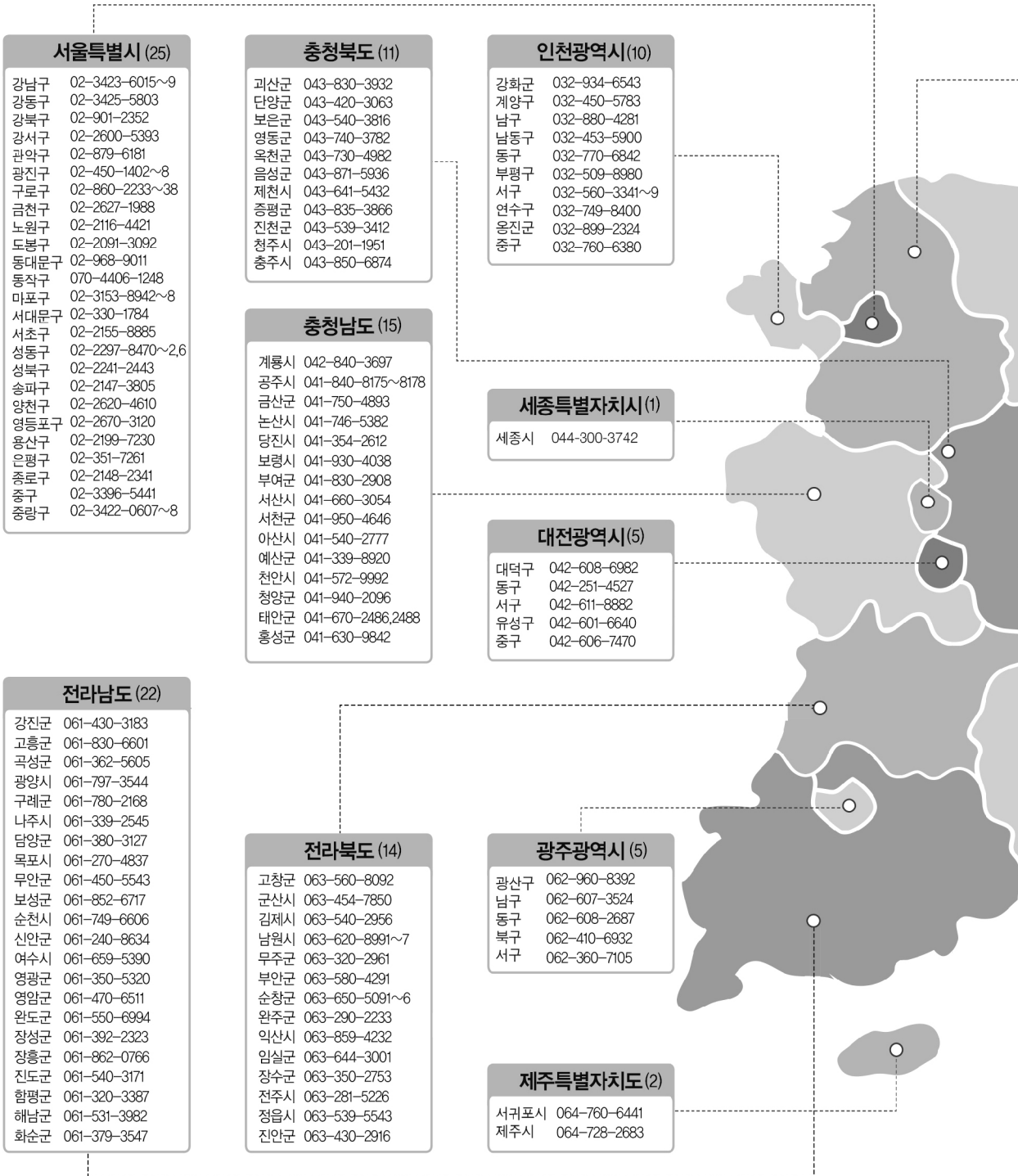
〈 표 1 〉 지역 유형 분류

지역유형	시·군·구 명
대도시 자치구 (69)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금천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부산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대구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인천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중구, 연수구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중구
대도시 기초단체 (16)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익산시,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창원시
중소도시 기초단체 (62)	세종 세종시 경기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동두천시, 시흥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강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충북 충주시, 제천시 충남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전북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남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경북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경남 거제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통영시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농산어촌 기초단체 (82)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전북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화순군, 함평군, 해남군 경북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경남 고성군,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함천군
계 229개	

※ 2014년 7월 청주시-청원군 통합으로 전국 시·군·구 수 변경(230→229)

- I 시·군·구 개황
- II 사업운영
-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 IV 아동통합사례관리
- V 지원관리
- VI 아동복지서비스
- VII 부록

## 2 전국 드림스타트 현황



**서울특별시 (25)**

강남구	02-3423-6015~9
강동구	02-3425-5803
강북구	02-901-2352
강서구	02-2600-5393
관악구	02-879-6181
광진구	02-450-1402~8
구로구	02-860-2233~38
금천구	02-2627-1988
노원구	02-2116-4421
도봉구	02-2091-3092
동대문구	02-968-9011
동작구	070-4406-1248
마포구	02-3153-8942~8
서대문구	02-330-1784
서초구	02-2155-8885
성동구	02-2297-8470~2,6
성북구	02-2241-2443
송파구	02-2147-3805
양천구	02-2620-4610
영등포구	02-2670-3120
용산구	02-2199-7230
은평구	02-351-7261
종로구	02-2148-2341
중구	02-3396-5441
종각구	02-3422-0607~8

**충청북도 (11)**

괴산군	043-830-3932
단양군	043-420-3063
보은군	043-540-3816
영동군	043-740-3782
옥천군	043-730-4982
음성군	043-871-5936
제천시	043-641-5432
증평군	043-835-3866
진천군	043-539-3412
청주시	043-201-1951
충주시	043-850-6874

**충청남도 (15)**

계룡시	042-840-3697
공주시	041-840-8175~8178
금산군	041-750-4893
논산시	041-746-5382
당진시	041-354-2612
보령시	041-930-4038
부여군	041-830-2908
서산시	041-660-3054
서천군	041-950-4646
아산시	041-540-2777
예산군	041-339-8920
천안시	041-572-9992
청양군	041-940-2096
태안군	041-670-2486,2488
홍성군	041-630-9842

**인천광역시 (10)**

강화군	032-934-6543
계양구	032-450-5783
남구	032-880-4281
남동구	032-453-5900
동구	032-770-6842
부평구	032-509-8980
서구	032-560-3341~9
연수구	032-749-8400
옹진군	032-899-2324
중구	032-760-6380

**세종특별자치시 (1)**

세종시	044-300-3742
-----	--------------

**대전광역시 (5)**

대덕구	042-608-6982
동구	042-251-4527
서구	042-611-8882
유성구	042-601-6640
중구	042-606-7470

**전라남도 (22)**

강진군	061-430-3183
고흥군	061-830-6601
곡성군	061-362-5605
광양시	061-797-3544
구례군	061-780-2168
나주시	061-339-2545
담양군	061-380-3127
목포시	061-270-4837
무안군	061-450-5543
보성군	061-852-6717
순천시	061-749-6606
신안군	061-240-8634
여수시	061-659-5390
영광군	061-350-5320
영암군	061-470-6511
완도군	061-550-6994
장성군	061-392-2323
장흥군	061-862-0766
진도군	061-540-3171
함평군	061-320-3387
해남군	061-531-3982
화순군	061-379-3547

**전라북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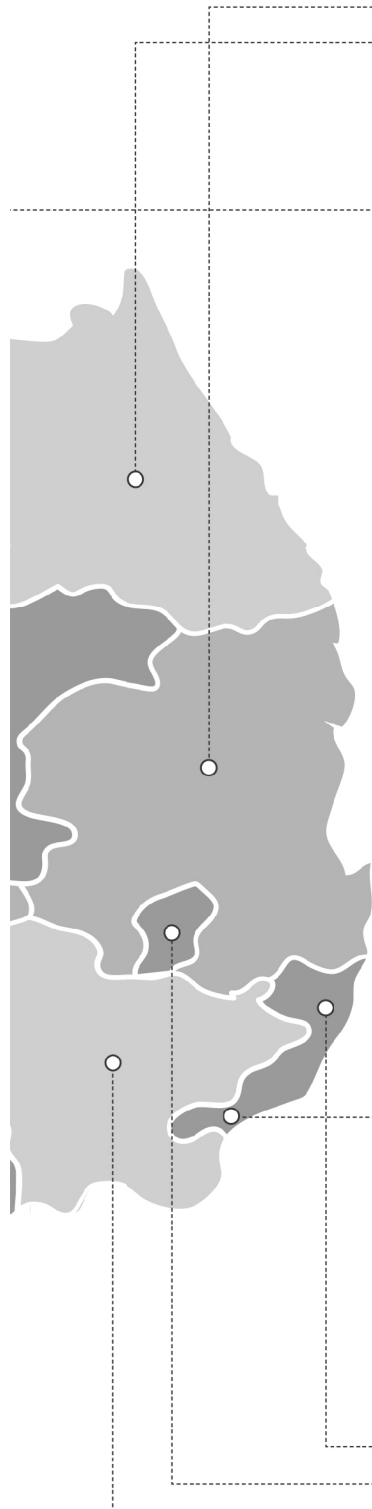
고창군	063-560-8092
군산시	063-454-7850
김제시	063-540-2956
남원시	063-620-8991~7
무주군	063-320-2961
부안군	063-580-4291
순창군	063-650-5091~6
완주군	063-290-2233
익산시	063-859-4232
임실군	063-644-3001
장수군	063-350-2753
전주시	063-281-5226
정읍시	063-539-5543
진안군	063-430-2916

**광주광역시 (5)**

광산구	062-960-8392
남구	062-607-3524
동구	062-608-2687
북구	062-410-6932
서구	062-360-7105

**제주특별자치도 (2)**

서귀포시	064-760-6441
제주시	064-728-2683



**경기도 (31)**

가평군	031-580-4591
고양시	031-8075-3685
과천시	02-3677-2217
광명시	02-2680-6258
광주시	031-760-4436
구리시	031-550-8393
군포시	031-390-0601
김포시	031-980-5600
남양주시	031-590-8664
동두천시	031-860-2802
부천시	032-625-8498
성남시	031-729-2961~4
수원시	031-228-3903
시흥시	031-310-6275
안산시	034-481-2263
안성시	031-678-5388
안양시	031-8045-3396
양주시	031-8082-4192
양평군	031-770-1036~7
여주시	031-887-2755
연천군	031-833-8993
오산시	031-8036-8720
용인시	031-324-4509
의왕시	031-345-2612
의정부시	031-850-5701
이천시	031-645-3629
파주시	031-940-4422
평택시	031-8024-7490
포천시	031-538-3257
하남시	031-790-6264
화성시	031-369-4856

**강원도 (18)**

강릉시	033-660-2326
고성군	033-680-3923
동해시	033-530-2105
삼척시	033-570-4094
속초시	033-639-2178
양구군	033-480-2240
양양군	033-670-2811
영월군	033-370-1850
원주시	033-737-2775
인제군	033-460-2284
정선군	033-560-2943
철원군	033-450-5234
춘천시	033-250-4805
태백시	033-550-2075
평창군	033-330-2093
홍천군	033-430-2130~7
화천군	033-440-2345
횡성군	033-340-2340

**경상북도 (23)**

경산시	053-810-5343
경주시	054-760-7731
고령군	054-950-7061~4
구미시	054-480-6582
군위군	054-380-6213
김천시	054-421-2491
문경시	054-550-8950
봉화군	054-679-6695~9
상주시	054-537-6671~3
성주군	054-930-6893
안동시	054-840-5190
영덕군	054-730-7363~7
영양군	054-680-6292
영주시	054-639-5822
영천시	054-330-6260
예천군	054-650-6362
울릉군	054-790-6166,6214
울진군	054-789-6271
의성군	054-830-6512
청도군	054-370-2265
청송군	054-870-6651
칠곡군	054-971-0950~1
포항시	054-270-3071~9

**부산광역시(16)**

강서구	051-970-4342
금정구	051-519-5161
기장군	051-709-5064
남구	051-607-6482
동구	051-440-4722
동래구	051-550-4905
부산진구	051-605-6441
북구	051-309-2086
사상구	051-310-3291
사하구	051-220-5631
서구	051-240-3573
수영구	051-610-4483
연제구	051-665-5651
영도구	051-419-4121~8
중구	051-600-4202
해운대구	051-749-6271

**울산광역시(5)**

남구	052-226-4812
동구	052-209-3470
북구	052-241-7678
울주군	052-229-7962
중구	052-290-4785~8

**대구광역시(8)**

남구	053-664-3224
달서구	053-667-3431
달성군	053-668-2681
동구	053-662-2671
북구	053-665-4344
서구	053-663-2612
수성구	053-666-4641
중구	053-661-2612

**경상남도 (18)**

거제시	055-639-3753
거창군	055-940-8792
고성군	055-670-5832~7
김해시	055-330-6593-1~8
남해군	055-860-3894~5
밀양시	055-359-6011
사천시	055-831-2674
산청군	055-970-6581
양산시	055-392-5983
의령군	055-570-2481
진주시	055-749-7471~2
창녕군	055-530-1941
창원시	055-225-3911~7
통영시	055-650-4670~6
하동군	055-880-6539
함안군	055-580-2383
합양군	055-960-5158
합천군	055-930-3254~7



## 3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2017년 11월 30일 기준)

구분	기관명	관할 시군구	주소	전화번호
중앙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6길 19(역삼동) (06228)	02-558-1391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수서동) (06362)	02-2040-4242
서울 (8)	서울특별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구, 노원구, 중랑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장안동) (02520)	02-2247-1391
	서울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구,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가길 12 시정현빌딩 2층 (가양동) (07523)	02-3665-5183~5
	서울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0, 4층(응암동) (03472)	02-3157-1391
	서울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7가길 5, 4층(대림동, 태안빌딩) (07413)	02-842-0094
	서울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구, 도봉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1층(타운힐빌딩) (02833)	02-923-5440
	서울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신수동) (04088)	02-422-1391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2길 6, 5층(문정동) (05796)	02-474-1391
	부산 (4)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서구, 동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동래구, 부산진구, 연제구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83(아미동2가) (49240)
부산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수영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6 영풍리전시 903호 (48101)	051-715-1391
부산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북구, 강서구, 사상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68 화명대림타운상가 405,406호 (46536)	051-711-1391
부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서구, 동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동래구, 부산진구, 연제구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41번길 11 삼환오피스텔 1503호(범일동) (48742)	051-791-1360
대구 (3)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수성구, 남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302(동인동3가) 2층 (41906)	053-422-1391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달서구,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19(송현동) 2층 (42742)	053-623-1391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서구,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25길 12-1(산격동) (41539)	053-710-1391
인천 (3)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부평구,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9(주안동) (22134)	032-434-1391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 계양구, 강화군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4, 5층 504, 505호(계산동, 삼환빌딩) (21050)	032-515-1391
	인천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동구, 연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 4층(간석동) (21545)	032-424-1391



구분	기관명	관할 시군구	주소	전화번호
광주 (2)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 광산구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16(쌍촌동) (61966)	062-385-1391
	빛고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북구, 남구, 동구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132(송하동) (61738)	062-675-1391
대전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56(중촌동) (34803)	042-254-6790
울산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울주군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3길21(성안동)(44421)	052-245-9382
경기 (12)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과천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25번길 20(영화동) (16272)	031-245-2448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6 4층(도림빌딩) (11652)	031-874-9100
	경기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하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6 2층(태평동) (13306)	031-756-1391
	경기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양시, 파주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7번길 11, 7층(행신동, 삼정프라자) (10518)	031-966-1391
	경기부천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천시, 김포시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279 서호빌딩4층 405호 (중3동 1058-4) (14539)	032-662-2580
	경기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	화성시, 오산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34, 4층(봉담읍, 송현빌딩) (18303)	031-227-1310
	경기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39, 204호(금곡동, 다남빌딩) (12239)	031-592-9818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2, 203호(고잔동, 슈마프라자) (15458)	031-402-0442
	경기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9 505호(구갈동) (16977)	031-275-6177
	경기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	시흥시, 광명시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83(대아동, 2층) (14911)	031-316-1391
	경기평택 아동보호전문기관	평택시, 안성시	경기도 평택시 소사길 33 동방평택복지타운(소사동) (17877)	031-652-1391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 392번길 17 (16266)	031-8009-0080
강원 (4)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47번길 35(후평1동) (24257)	033-244-1391
	강원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릉시,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강원도 강릉시 솔올로5번길 33 2층(교동, 반트빌딩 2층) (25515)	033-644-1391
	강원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469번길 7(명륜동) (26482)	033-766-1391
	강원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강원도 동해시 부곡3길 20-9 2,3층(25735)	033-535-5391
충북 (3)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 202번길 66-1(울량동) (28332)	043-216-1391
	충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 4층(청전동, 제천시보건복지센터) (27152)	043-645-9078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1길 19(옥천읍) (29039)	043-731-3685



구분	기관명	관할 시군구	주소	전화번호
충남 (3)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4(성정동) (31140)	041-578-2655
	충청남도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논산시, 계룡시, 공주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충청남도 논산시 증암로384번길 55(취암동) (32974)	041-734-6640
	충청남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50 충남보훈회관 1층 (신경리 903) (32263)	041-635-1106
전북 (3)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완주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서서학동) (55099)	063-283-1391
	전라북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12, 4층(갈산동 185-3) (54595)	063-852-1391
	전라북도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41(향교동) (55751)	063-635-1391~3
전남 (3)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순천시, 여주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보성군, 고흥군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92-5(용당동) (57935)	061-753-5125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5, 3층(석현동) (58615)	061-285-1391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전라남도 나주시 예향로 4073, 2,3층(송월동) (58263)	061-332-1391
경북 (4)	경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395번길 24(성건동) (38133)	054-745-1391
	경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경상북도 안동시 밤적골길 20(울세동) (36692)	054-853-1391
	경북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청송군, 울릉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25번길 12, 3층(대잠동) (37685)	054-284-1391
	경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1-5 3층(송정동 80-1 하나빌딩) (39276)	054-455-1391
경남 (3)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창원시, 밀양시, 양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함안군, 함천군, 의령군, 창녕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회원동) (51292)	055-244-1391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상대동) (52773)	055-757-1391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85번길 8 2층(부원동) (50924)	055-322-1391
제주 (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59(노형동) (63084)	064-712-1391~2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1, 2층(서귀동) (63593)	064-732-1391





## 4 행복e음 전국자원 현황



(2015년 12월말 기준)

구분	재단명	홈페이지
1	(사)그린라이트	www.green-light.co.kr
2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www.busrugy.or.kr
3	(사)함께하는 사랑밭	www.withgo.or.kr
4	(재)고속도로장학재단	www.hsf.or.kr
5	(재)노인의료나눔재단	www.ok6595.or.kr
6	(재)아름다운 동행	www.dreaminus.org
7	(주)녹십자	www.greencross.com
8	63스퀘어	www.63.co.kr
9	APRO(아프로)	www.aprofg.com
10	cj문화재단	www.cjculturefoundation.org
11	IBK행복나눔재단	www.ibkfoundation.or.kr
12	J&M상지재단	-
13	JA코리아	www.jakorea.org
14	kbs한국방송공사	www.kbs.co.kr
15	(주)함소아&함소아제약	www.hamsoapharm.com
16	KRX국민행복재단	www.krxfoundation.or.kr
17	KSD나눔재단	www.ksdnum.co.kr
18	kt&g복지재단	www.ktngwelfare.org
19	kiIT서포터즈	www.itsupporters.com
20	LG공익재단	foundation.lg.or.kr
21	MBN매일방송국	www.mbn.co.kr
22	SBS	www.sbs.co.kr
23	건강가정지원센터	familynet.or.kr
24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	www.knbnanum.or.kr
25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www.ikef.or.kr
26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www.kbedu.or.kr
27	굿네이버스	www.goodneighbors.kr
28	귀뚜라미재단	www.kfoc.or.kr
29	금하장학회	http://www.kumha.or.kr/bbs/board.php?bo_table=s21
30	기아대책	www.kfhi.or.kr

I 사업개요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복지사업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VII 부록

구분	재단명	홈페이지
31	남촌복지재단	<a href="http://www.jkhuhfoundation.or.kr">www.jkhuhfoundation.or.kr</a>
32	농어촌희망재단	<a href="http://www.rhof.or.kr">www.rhof.or.kr</a>
33	농협재단	<a href="http://jaedan.nonghyup.com">jaedan.nonghyup.com</a>
34	다누리	<a href="http://www.danurifoundation.org/">http://www.danurifoundation.org/</a>
35	다솜이재단	<a href="http://www.dasomi.org">www.dasomi.org</a>
36	대한법률구조공단	<a href="http://www.klac.or.kr">www.klac.or.kr</a>
37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a href="http://www.jabinanum.or.kr">www.jabinanum.or.kr</a>
38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a href="http://www.kamsw.or.kr">www.kamsw.or.kr</a>
39	대한적십자사	<a href="http://www.redcross.or.kr">www.redcross.or.kr</a>
40	더 나은 세상(현대자동차 협력)	<a href="http://www.1.or.kr">http://www.1.or.kr</a>
41	동부문화재단	<a href="http://www.dongbuculture.or.kr">www.dongbuculture.or.kr</a>
42	두울장학재단	<a href="http://www.dooeul.or.kr">www.dooeul.or.kr</a>
43	따뜻한 동행	<a href="http://www.walktogether.or.kr">www.walktogether.or.kr</a>
44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a href="http://www.lovecoal.org">www.lovecoal.org</a>
45	롯데월드-(주)호텔롯데롯데월드	<a href="http://www.lotteworld.com">www.lotteworld.com</a>
46	롯데재단	<a href="http://www.lottefoundation.or.kr">www.lottefoundation.or.kr</a>
47	메리츠화재	<a href="http://www.meritzfire.com">www.meritzfire.com</a>
48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a href="http://www.makeuoyourlife.net">www.makeuoyourlife.net</a>
49	모퉁이돌장학회	<a href="http://www.cchurch.org/scholarship">www.cchurch.org/scholarship</a>
50	미래에셋박현주재단	<a href="http://foundation.miraeasset.com">foundation.miraeasset.com</a>
51	밀알복지재단	<a href="http://www.miral.org">www.miral.org</a>
52	바보의나눔	<a href="http://www.babo.or.kr">www.babo.or.kr</a>
53	밝은청소년	<a href="http://www.eduko.org">www.eduko.org</a>
54	법무부	<a href="http://www.moj.go.kr">www.moj.go.kr</a>
55	벽산장학문화재단	<a href="http://www.byucksanf.or.kr">www.byucksanf.or.kr</a>
56	보령중보재단	<a href="http://www.borongfoundation.org">www.borongfoundation.org</a>
57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a href="http://www.dongposarang.com">www.dongposarang.com</a>
58	사랑의달팽이	<a href="http://www.soree119.com">www.soree119.com</a>
59	사랑의복지재단	<a href="http://www.sarangfare.org">www.sarangfare.org</a>
60	사랑의전화복지재단	<a href="http://www.loveaid.org">www.loveaid.org</a>
61	사회복지법인백암재단	<a href="http://www.beak-am.org">www.beak-am.org</a>
62	사회복지법인에버그린복지재단	<a href="http://www.egreen.org">www.egreen.org</a>
63	사회복지법인한림화상재단	<a href="http://www.hallymburnfund.org">www.hallymburnfund.org</a>



구분	재단명	홈페이지
64	삼성꿈장학재단	<a href="http://www.sdream.or.kr">www.sdream.or.kr</a>
65	삼성사회봉사단	<a href="http://www.samsunglove.co.kr">www.samsunglove.co.kr</a>
66	삼성서울병원	<a href="http://www.samsunghospital.com">http://www.samsunghospital.com</a>
67	삼성재단	<a href="http://www.samsungfoundation.org">www.samsungfoundation.org</a>
68	삼성전기	<a href="http://www.samsungsem.co.kr">http://www.samsungsem.co.kr</a>
69	삼일문화재단	<a href="http://www.31cf.or.kr">www.31cf.or.kr</a>
70	새생명지원센터	<a href="http://www.kids119.or.kr">www.kids119.or.kr</a>
71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a href="http://www.lif.or.kr">www.lif.or.kr</a>
72	서목장학재단	<a href="http://sm.tirepia.co.kr">sm.tirepia.co.kr</a>
73	서울랜드	<a href="http://www.seoulland.co.kr">www.seoulland.co.kr</a>
74	서울장학재단	<a href="http://www.hissf.or.kr">www.hissf.or.kr</a>
75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a href="http://www.seoulhanbumo.or.kr">www.seoulhanbumo.or.kr</a>
76	성혜장학회	<a href="http://www.shscholar.com">www.shscholar.com</a>
77	세방이의순재단	<a href="http://www.esun.or.kr">www.esun.or.kr</a>
78	세이브더칠드런	<a href="http://www.sc.or.kr">http://www.sc.or.kr</a>
79	송암문화재단	<a href="http://www.songamfoundation.org/">http://www.songamfoundation.org/</a>
80	숙정재단	<a href="http://www.sookjung.or.kr">www.sookjung.or.kr</a>
81	스마일재단	<a href="http://www.smilefund.org">www.smilefund.org</a>
82	신용회복위원회	<a href="http://www.ccrs.or.kr">www.ccrs.or.kr</a>
83	아름다운가게	<a href="http://www.beautifulstore.org">www.beautifulstore.org</a>
84	아름다운재단	<a href="http://www.beautifulfund.org">www.beautifulfund.org</a>
85	아산사회복지재단	<a href="http://www.asanfoundation.or.kr">www.asanfoundation.or.kr</a>
86	아이들과미래	<a href="http://www.kidsfuture.or.kr">www.kidsfuture.or.kr</a>
87	아이러브재단	<a href="http://www.kfpb.org">http://www.kfpb.org</a>
88	알트웰민초장학재단	<a href="http://www.mincho.or.kr">www.mincho.or.kr</a>
89	양현재단	<a href="http://www.yanghyun.org">www.yanghyun.org</a>
90	양호재단	<a href="http://www.smallworld.or.kr">www.smallworld.or.kr</a>
91	에듀윌장학재단	<a href="http://sf.eduwill.net">http://sf.eduwill.net</a>
92	에버랜드	<a href="http://www.everland.com">www.everland.com</a>
93	여송사회복지재단	<a href="http://www.yeosong.kr">www.yeosong.kr</a>
94	얼매나눔재단	<a href="http://www.merryyear.org">www.merryyear.org</a>
95	영산조용기자선재단	<a href="http://www.yonggicho.org">www.yonggicho.org</a>
96	우리청년사업단	<a href="http://woori-biz.com">woori-biz.com</a>

I 소개

II 사업공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복지사업의 법적근거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의 질 향상 방안

VII 부록

구분	재단명	홈페이지
97	우림장학재단	www.urims.com
98	우천복지재단	www.wocheon.or.kr
99	우체국공익재단	www.kopf.or.kr
100	운곡장학재단	www.ungok2011.com
101	웅진재단	www.wif.kr
102	원모평애재단	http://wonmo.org
103	월드비전	http://www.worldvision.or.kr
104	유당복지재단	yudangwelfare.or.kr
105	유영학술재단	www.yy2006.org
106	이랜드복지재단	www.elandwelfare.or.kr
107	인구보건복지협회	www.ppfk.or.kr
108	인클로버	www.inclover.or.kr
109	인터알리아공익재단	http://blog.naver.com/interfund
110	일주학술문화재단	www.iljufoundation.org
111	임수복장학재단	http://www.limsooboksf.com
112	장미란재단	www.roseran.org
113	장애인문화협회	www.bluesky82.org
114	재단법인 신한장학재단	http://www.shsf.or.kr
115	주거복지재단	www.hwf.or.kr
116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www.biz.or.kr/love
117	청소년미래재단	www.youthf.com
118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현대자동차그룹 협력)	http://www.childfund.or.kr
119	초록우산어린이재단	www.childfund.or.kr
120	최경주재단	www.kjchoifoundation.org
121	평원재단	www.pyongwon.org
122	포도학사평생교육원	-
123	포스코청암재단	www.postf.org
124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www.prufoundation.or.kr
125	푸르메재단	www.purme.org
126	하트하트재단	www.heart-heart.org
127	한국광해관리공단	www.mireco.or.kr
128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아가야	agaya.org
129	한국농아인협회	www.deafkorea.com



구분	재단명	홈페이지
130	한국도로공사	www.ex.co.kr
131	한국마사회	http://company.kra.co.kr
132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	www.wish.or.kr
133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http://www.soam.or.kr
134	한국사랑봉사협회	www.kals1004.or.kr
135	한국사회복지관협회	www.kaswc.or.kr
136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www.kofofo.or.kr
137	한국새생명복지재단	www.knewlife.org
138	한국신장장애인협회	www.koreakidney.or.kr
139	한국실명예방재단	www.kfpb.org
140	한국심장재단	www.hearto.or.kr
141	한국어린이안전재단	http://www.childsafe.or.kr
14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ww.stop.or.kr
143	한국여성재단	www.womenfund.or.kr
144	한국에너지재단	www.energylove.or.kr
145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146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147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www.kacold.or.kr
148	한국전기안전공사	www.kesco.or.kr
149	한국전력공사	www.kepco.co.kr
150	한국지엠한마음재단	www.gmkorea-foundation.or.kr
151	한국펄벅재단	www.pearlsbuck.or.kr
152	한국해비타트	www.habitat.or.kr
153	한국혈액암협회	www.bloodcancer.or.kr
154	한기장복지재단	www.prokwfm.org
155	한마음사회복지재단	www.hmcs.or.kr
156	행복나눔재단	www.skhappiness.org
157	현대오일뱅크1%나눔재단	www.oilbanknanum.org
158	현대차정몽구재단	www.hyundai-cmkfoundation.org
159	형남진장학재단	www.hyungsf.or.kr
160	홀트아동복지회	www.holt.or.kr
161	화물운전자복지재단	www.fordrivers.or.kr

I 소개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돌봄사례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안정 및 지원

VII 부록

## 5 | 외국의 아동통합서비스 운영사례



### 1) Head Start 프로그램(미국)

#### ■ 역사, 관련 정부 부처, 관련법

- 미국의 Head Start는 1965년 존슨대통령의 ‘가난과의 전쟁(the War on Poverty)’을 위해 설계된 연방정부 최초의 프로그램
-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 보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을 제정하고, 이후 1981년 제정된 일괄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에 근거하여 진행되어 오다가 1990년 Head Start 확대 및 질 개선법(Head Start Expansion and Quality Improvement Act)을 제정, 1994년의 재 인준은 3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Early Head Start를 시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7년에 재 인준된 ‘학교 준비를 위한 Head Start 향상법(Improving Head Start for School Readiness Act, P. L. 110-134)’은 프로그램 평가 방법, 기관 선정, 교사의 질을 통해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체결 되었고, 2012년 9월 30일 Head Start 프로그램을 개정 Head Start 법을 마련
- Head Start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SS) 산하의 아동가족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 내에 있는 Head Start국(Office of Head Start: OHS)에서 담당

#### ■ 목표 및 목적

- Head Start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성, 학습능력, 건강 및 영양수준을 개선하여 일반 가정 아동과 동일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 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제공되는 서비스

- 대상아동 선정의 기준과 절차(ACF 홈페이지)
  - 첫째, 가구총소득이 빈곤선(2015년 4인 가족 기준, \$24,250)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가정의 아동(공적 부조를 받는 가정의 아동이나 위탁가정 아동 포함)
  - 둘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은 최소한 만 3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Head Start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지역 내 학교의 취학연령에 달해야 하기 때문(만약, 아동의 연령이 0~3세일 경우 Early Head Start의 대상)



- 셋째, Head Start 프로그램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빈곤선 이하인 저소득가정의 아동이 적어도 90%를 차지해야 하며, 장애아동은 적어도 10% 이상으로 구성
  - 넷째, 지역 내 저소득가정의 아동이나 장애아동 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구성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가정의 아동도 참여 가능(단, 선정기준에 합당한 아동들이 많을 경우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은 후 자리가 비는 즉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조치를 취함.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의 평균출석률이 85% 이하로 떨어지거나 장기결석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환류)
- 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Head Start 프로그램(HS), 3세 미만의 영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 Head Start 프로그램(Early Head Start: EHS)으로 구성
- HS 프로그램은 포괄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 부모참여, 건강진단, 사회봉사, 영양, 교사진과 부모들을 위한 진로지도의 6가지 주된 프로그램으로 구성
  - EHS 프로그램은 1996년부터 시작된 저소득 가정의 3세 미만의 영아와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즉, 가정 내외에서 일어나는 질적인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부모교육, 임신전후에 대한 건강과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제공, 가족 지원과 영양교육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임산부에 대한 서비스>

임신초기부터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가정 아동의 건강 및 발달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

### <3세 미만 영아들을 위한 서비스>

영아들의 신체적·인지적·사회적·정서적인 발달을 목표로 부모와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이 중에서 특히 영아의 사회성 발달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아동과 부모의 목표 구체화, 목표성취를 위한 경험제공, 교사와 부모의 적절한 역할 제시,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교구 제공, 아동이 있는 가정의 개별적인 문화, 인종, 언어, 경험을 고려한 프로그램 제시 등(ACF, 2003)

### ■ 전달체계 및 기관 간 연계

- 아동가족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은 각 주에 흩어져 있는 지청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민간비영리조직 및 영리조직, 학교 등 지역에서 Head Start 프로그램을 운영(계획)하는 기관에 운영예산을 지원

-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Head Start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는 지역사회를 기초단위로 하여 설립하며, 아동의 집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센터를 찾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센터에는 직원이 상주하며 대상아동 선정, 서비스 기관 연계, 프로그램 진행 등 역할을 담당
-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술적 지원과 훈련, 상담을 제공하는 가족정보체계(Head Start Family Information System), 정보·자료·출간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및 출판센터(Head Start Information and Publication Center), 훈련교재와 정책자료 출간, 타 기관과의 프로그램 연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기술 지원센터(National Head Start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Resource Center)가 있음

#### ■ 재정체계

- Head Start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에 전체 예산의 약 75% 정도를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방에서 부담
- 이용자들은 전액 무료로 이용
  - ※ 2014년 회계연도를 근거로 본다면 Head Start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총예산은 8,598,095,000 달러임.
-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이용아동 1인당 연간프로그램 비용은 평균 7,800 달러
  - ※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Grantee(연방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Head Start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지칭)는 2014년 현재 1,798개소임.
- 1996년부터 시행된 조기Head Start 프로그램의 경우는 2014년 500백만 달러를 투입(ACF, 2014)
  - ※ 전국적으로 106,954명에 달하는 3세미만의 영아가 프로그램에 참여

#### ■ 성과관리체계

- 1969년에 발표된 웨스팅하우스 평가보고서가 계기가 되어 ‘질적 수준 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양·질 확보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 1970년대 들어 Head Start 수행기준 제정(Datta, 1997; Lombardi & Cabbage, 2004.)
  - 1980년대 들어 Head Start 기금이 증액 되었으나 강력한 레이거노믹스 정책을 추구한 결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질적인 개선, 효과성 추구보다는 보다 많은 유아의 등원을 확보를 우선시하게





- 되는 양적 팽창을 중심으로 운영(Zigler, et. al., 1993)
- 1990년대 들어서는 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 최대화를 도모하며, NHSA를 중심으로 실버리본패널(SRP)이 구성되어 Head Start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을 요구하게 되고 NHSA에서는 우수시설 인증제(QI)를 실시하여 질 확보에 기여
  - Head Start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하는 평가정책은 향후 3년 동안 프로그램의 질, 재정의 투명성, 기관운영 허가권 등 7개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있음. 특히, 전문가들이 교수학습 상황을 직접 참관하여 과학적인 지표에 따라 평가를 내리도록 함으로써 Head Start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교육의 질을 평가함. 또한 Head Start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시장경쟁의 논리를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성과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기준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재정 지원이 중단될 예정임.
  - 성과관리 체계로 인하여 Head Start 프로그램은 크게 교육측면, 경제적 측면, 건강 측면, 법적 안정성(범죄비용 감소) 측면에 기여
    - 첫째, 교육측면에서는 참여대상 아동의 읽기 능력, 어휘력, 수학실력의 능력향상 및 학교 진학률이나 졸업률이 상승하였음(Garces et. al., 2002; Zill & Sorongon, 2004; DHHS, 2005)
    -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Head Start 프로그램이 사회를 위한 현명한 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 Head Start 아동 1인당 1달러의 지급은 거의 7~9달러의 편익,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한 학업중도 포기자에 대한 비용 9,000달러 절감, 초등학생 특수교육 프로그램 비용 절감, 범죄율 감소로 인한 29,000달러 절감 등(Ludwig & Phillip, 2007; Deming, 2009;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1)
    - 셋째, 건강 측면에서도 Head Start 프로그램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수준을 향상 시킴
      - ※ 저소득층 아동의 사망률이 33%정도 감소, 구강건강 상태 또한 높고, 부모에 의해서 습득 하게 되는 문제시 되는 행동들(약물, 흡연, 음주 등)이 현저하게 감소(Ludwig & Miller, 2007; DHHS, 2005), 게다가 삶의 만족도가 높고, 적응기술에 대한 자신감의 증대, 분노나 우울감의 감소, 질병 감소 등의 효과를 경험
    - 넷째,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Head Start 프로그램이 범죄 감소에도 기여하여,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불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유발(Garces, et. al., 2002)

### ■ 사례관리

- 각 Early/Head Start 센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에게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 하기 위해 특수교육 조정자(special needs coordinator), 건강 조정자(health coordinator) 부모 참여 조정자(parent involvement coordinator), 사회 서비스 조정자(social service coordinator)와 이들이 지도·감독하고 있는 가족 서비스 워커(family service worker)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정자(coordinator)를 고용
- 일반 기관의 사회복지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가족 서비스 워커는 Early/Head Start가 제공하는 자원에 국한되지 않고, 각 아동과 가족이 필요한 사정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모니터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족 서비스 워커의 질 향상을 위해 주변 대학의 관련 기관에서 연방정부의 지원금(grant)을 받아 훈련과 교육 실시 (정익중·남기철·전연진, 2009)

### ■ Head Start 향후 정책

- (Early Head Start의 확정) Early Head Start에 참가하는 영유아의 수를 4배로 증가시킬 계획임.
- (Early Head Start과 Head Start의 잠재적 가능성의 발현) 최근의 Head Start 재 개시는 다른 조기교육 프로그램(정상을 향한 경주-평등과 기회: Race to the Top-Equity and Opportunity)과 조화를 이루고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작임. 오바마 정부는 이러한 아동들의 취학 준비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조기 교육 대책 프로그램에 더 많은 투자를 함.
  - Head Start 재정보조 증가 : 3~4세 아동의 어린이집 정책뿐만이 아니라 출생 직후 가정방문, 부모들을 위한 식품영양교육 등 종합적인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음.
  - Early Head Start와 Head Start 수준 향상 : 2.5억불을 Head Start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기관을 설립하고 확장시키는 데에 투자 할 것임.
- (Head Start 프로그램 수준 향상) Head Start 프로그램 수준 향상을 위해 또한 다음의 조치들이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추가되었음
  - ① Head Start 교실에서의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평가
  - ② Head Start 프로그램의 훈련 개선 및 강화
  - ③ 우수한 Head Start 센터 사례 연구 및 프로그램 소개
  - ④ 멘토제 운영



## 2) Sure Start 프로그램(영국)

### ■ 역사, 관련 정부 부처, 관련법

- 아동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퇴치하기 위한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장기 계획의 하나로 1998년 Sure Start 프로그램 계획이 발표

※ Sure Start란 빈곤층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이 인생을 어려서부터 확실하게(Sure) 출발하도록(Start) 돕는다는 의미

- 2004년 발표된 정부의 ‘아동보육 10년 전략(The Ten Year Childcare Strategy)’과 2004년 통과된 ‘아동법(Children Act)’에 따라 Sure Start 아동센터는 14세 이하 아동에게도 방과 후 보육을 제공

- 2006년 발표된 ‘아동보육법 2006(Childcare Act 2006)’과 2009년 발표된 ‘도제, 기술, 아동학습법 2009(Apprenticeships, Skills, Children and Learning Act 2009)’의 제정은 보육 시장이 적절하게 형성된 지역사회에서 Sure Start 아동센터를 통해 보육 및 유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조

- 아동, 학교, 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ies[DCSF])에서 2010년 영국정부의 내각교체로 DCSF가 해체되었고,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가 조기 지원 프로그램(Early Support programme)의 일환으로 Sure Start 프로그램을 실시

※ Sure Start 아동 센터는 영국 정부의 조기개입 방편 중 일부임. 유아유년기 동안의 성장 발달이 여성 동안 발전을 좌우하는 본질적인 기반을 형성한다는 증거는 명백함. 이런 이유로 영국 정부는 조기개입 보조금(Early Intervention Grant : EIG) 도입

※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아동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 2010년 ‘아동 빈곤법 2010’이 제정되어 2011년 4월부터 2014년까지의 제1차 아동빈곤전략인 “아동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 취약성의 원인 단절과 가정생활의 변화(A New Approach to Child Poverty : Tackling the Causes of Disadvantage and Transforming Families’ Lives)”를 발간

### ■ 목표 및 목적

- Sure Start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소외를 방지하고, 교육기준을 향상시키며, 건강상의 문제를 줄이며 삶의 기회를 향상시키고, ‘양질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으니 궁극적으로 모든 영유아에게 가정 배경과는 무관하게 최상의 인생 출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 Sure Start 아동센터 혹은 지방Sure Start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

• 아동과 가족에 대한 교육, 보육, 건강, 취업 등의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부모의 빈곤 탈피를 돕기 위한 체제를 구성하고 운영
- 범죄 감소,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위한 환경 등을 구축하여 생산성 높은 건전한 시민 사회 재건

#### ■ 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제공되는 서비스

- Sure Start 아동 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모든 아동을 대상(평균 800명)으로 서비스를 제공, 2004~2006년의 첫 번째 시기(Phase 1)와 2006~2008년의 두 번째 시기(Phase 2)가 박탈 지수<sup>1)</sup> 하위 30% 지역에 Sure Start 아동센터를 설립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2008~2010년의 세 번째 시기(Phase 3)는 그 외의 지역에까지 아동센터를 늘려서 2010년 5월 이전, 3,500개 센터가 2백 5십만 명의 아동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통합정부가 들어선 이후, Sure Start 아동센터는 2014년 2월 말 기준 3,019개 센터에 10억 5천만 명의 아동과 가족에게 지원하고 있음(4children, 2014).
- Sure Start는 2002년 이후 아동센터(Children's Centre)로 발전하면서 아동보육과 교육을 기본으로 하여 보건 서비스, 가족지원, 부모현장방문, 고용지원, 정보 제공, 부모에 대한 조언과지지, 네트워크의 포괄적, 통합적 기관의 역할 수행(Sure Start Unit, 2005; Moss, 2006)

#### ■ 전달체계 및 기관 간 연계

- Sure Start 프로그램에는 파트너십, 이용자 참여, 관리형 정부라는 특징을 가짐.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 단위의 파트너십, 둘째, 지방단위의 지방협의체와 서비스 공급자 즉, 지방법정기관(지방정부와 보건기관 등), 자발적 조직, 지역사회조직, 민간부문 조직과의 파트너십, 셋째, 지방프로그램 운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 협의체 내부의 협의체 운영자, 전문가, 부모간의 파트너십(Gustafsson, 2005)
- Sure Start 프로그램 수행 기관은 아동센터(Children's Centers), 지역 Sure Start 프로그램(Sure Start Local Programmes : SSLP), 조기우등기관(Early Excellence Centres), 이웃보육서비스(Neighborhood Nurseries) 등

#### ■ 재정체계

- 1999년부터 2003년까지 19억 파운드의 정부예산이 들어갔으며 2004년 예산은 12억 파운드, 2005~2006년에는 약 15억 파운드 이상의 정부재정이 투입

1) 잉글랜드·웨일즈 지역을 인구규모가 비슷한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지역별 가구수입·취업률·교육수준·건강수준 등을 활용하여 점수화한 것을 말함.



- 2010년 영국 정부의 새로운 내각에서 Sure Start 아동 센터에 대한 예산에 대해 조기개입보조금으로 Sure Start 아동 센터를 유지하고 있음. 2014-2015년 예산은 약 18억 파운드(한화 약 3조원)임.

※ 조기개입보조금은 Sure Start에 대한 이전 재정지원을 대체할 수 있지만 조기개입보조금은 지방 정부의 재량권으로 소비

- Sure Start 지역 프로그램(Sure Start Local Programmes : SSLPs) 비용은 2009~2010년 물가로 1년에 대상아동 1인 당 약 1,300파운드이고, 아동과 그 가족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 4년에 걸쳐 평균적으로 대상아동 1인 당 4,860파운드의 비용이 소요(최소 2,000파운드 이하에서 최대 12,000파운드 이상 지출)

#### ■ 성과관리체계

- Sure Start 프로그램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Sure Start 국가 평가 연구소에서 2011년 연구에서는 아동이 5살이 될 때까지 지역Sure Start프로그램의 대상 아동 1인 당 279파운드에서 557파운드의 경제적 혜택을 보고함(DfE, 2011).

※ SSPL 거주 부모가 비교지역 거주 부모보다 더 빠르게 직장을 구함. 더 수입이 많은 가족은 이러한 혜택(수당) 가치의 2/3을 받고 더 많은 세금 영수증과 더 낮은 수당지급이라는 관점에서 납세자가 1/3을 받음

- 최근 아동에 대한 조기투자 비용에 관한 사회적 환원 비용에 관한 연구결과, Action for Children와 NEF(2009)에서 Sure Start 아동 센터를 통해 대상 아동 1인당 1파운드 투입하였을 경우, 사회-가치적 비용이 4.6파운드임. 최근 2012년에 아동보호단체 Barnardo에서 조기개입 가치에 관한 연구결과, 아동 1인당 서비스 개입 1파운드 투입하였을 때 사회적 환원비용은 12.5파운드 임.

※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 지원에 대해 2£, 가족지원에 대해 4.5£, 십대 미혼모 지원에 대해 3.5£, 양육지원에 대해 2.5£의 이익을 창출함(GHK, 2012).

- Sure Start 프로그램의 다른 성과로는 가정 내 엄격한 훈육이 감소되었고, 가족해체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가정학습환경이 풍부하고, 학업성취도의 변화는 긍정적인 편이고, 차량범죄도 줄어들었음(DfE, 2011). 또한, 비만 아동의 체질량 지수가 낮아졌고, 양육자의 심리적 안녕감과 가족 간의 관계가 향상됨(NESS, 2010; NESS, 2012)

※ Morrow와 Malin(2004)은 부모위원회 참여와 관련하여 부모들의 임파워먼트에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부모들은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천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가졌으며 긴밀한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문가와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게 되었다고 평가

※ Barnes 외(2006)를 중심으로 한 런던대학의 '아동·가족과 사회이슈 연구소'는 Sure Start 4년의 성과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효과를 평가한 결과, 학업성취도의 변화는 긍정적인 편이었고,

지역사회 무질서와 관련하여 차량범죄는 줄어들었지만 폭력, 약물 문제가 증가 하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Sure Start 4년의 성과가 치안문제를 해결 하지는 못했어도 아동인구의 유지, 빈곤완화, 아동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 확대의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 ■ 사례관리 및 센터 현황

- 각 아웃리치 워커(outreach worker)와 가족 지원 워커(family support worker)는 전담하는 가족을 정해 아웃리치와 가정방문을 함으로써, 각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 아웃리치와 가정방문을 통해 Sure Start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 및 Sure Start 아동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 Sure Start 아동센터 한 기관에 인력은 보통 4~9명이고, 관리하는 가구는 약 300가구이고, 연간 예산은 15만 파운드에서 25만 파운드로(한화 약 3억~ 4억 5천만원)임.

### 3) Best Start 프로그램(호주)

#### ■ 역사, 관련 정부 부처, 관련법

- Best Start는 호주 빅토리아주의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젝트
- 보건, 복지, 교육서비스를 비롯하여 스포츠, 취미, 도서관,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을 위해 법무부(법무예방부서), 체육관광연방게임부(Commonwealth Game), 빅토리아 경찰과 사회서비스기반부(Department of Infrastructure), 혁신산업지역개발부(Department of Innovation, Industry and Regional Development), 행정자치부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협력

#### ■ 목표 및 목적

- Best Start는 0~8세 아동의 건강, 발달, 학습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및 가족 지원, 보건서비스, 조기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부모,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와 모든 아동 및 가족 욕구에 대한 조기개입 강화를 지향

#### ■ 서비스 대상자 및 제공 서비스

- 빅토리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부터 취학아동(0세~8세)을 대상
- 서비스 전달원칙



- 지역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계획-평가 과정을 거쳐 연계서비스를 통해 부모와 지역사회를 지원
- 아동의 안녕(wellbeing) 증진을 위해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학교 네트워크와 학교 자원을 활용
-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용이하고 모든 아동과 가족 욕구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 아동의 일상생활 내에서 부모, 조부모, 주양육자 등 다른 보호자들과의 관계 구축
- 돌봄과 지지의 연속선상에서 보편적 서비스와 2차, 3차 서비스 조정
- 우수하게 평가된 프로그램의 공유
- 서비스 계획, 개입 등의 제반 과정을 평가

### Best Start 핵심 활동 내용

- 양질의 산전관리
- 자녀양육 관련 부모교육 및 지원
- 미취학 아동과 학령기 초반 아동의 교육 기회 제공, 취학 후 3년 동안 아동에게 양질의 학습 및 보호 제공
- 아동의 조기학습 및 발달 지원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 아동 및 부모의 건강 보호를 위한 건강 정보 제공
- 지역사회 내 아동과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에 허브 역할 부여
- 가정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제공
-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적절한 주택공급 장려

### ■ 전달체계 및 기관 간 연계

- Best Start 프로젝트는 지역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유한 사업으로 기획
- 지역별 Best Start 수행을 위한 협력관계(파트너십) 구축
  - 지역 파트너십은 Best Start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임
  - 파트너십 구성은 지역사회 내 아동의 주양육자 대표, 아동 및 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자,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 관련 분야에 영향력이 있는 주요 집단으로 구성
  - 아동양육, 유아기 서비스 개입, 지역 중심 서비스 계획 및 실천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광범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많은 이점을 창출

- 파트너십은 지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와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인력과 함께 협력할 6개의 필수 파트너 그룹으로 구성
  - i) 부모
  - ii) 지방 정부
  - iii) 건강 관련 서비스 기관
  - iv) 교육 관련 서비스 기관
  - v) 가족 및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 vi) 지역사회 집단(체육 및 여가 관련 모임, 옹호집단 등)

#### ■ 성과관리체계

- Best start 프로그램은 아동과 가족을 위한 성과와 서비스를 보다 폭넓게 증진시키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13개 지역에 걸쳐 서비스 영역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지표는 Best Start 해당지역의 지역사회 프로파일과 지역특성을 개발하여 반영하되, 3가지 영역에서 평가
  - 건강과 안녕(health and wellbeing)
  - 학습과 발달(learning and development)
  - 안전(Safety)
- 주(州) 전체의 표준 데이터베이스, 평가 프로파일, VicHealth 파트너십 분석 도구, 서비스 협력관계 도구, 아동 및 부모에 대한 포괄적 검사, 다양한 가족 전략, 조정자와의 인터뷰, 해당 지역방문 등 다양한 평가방법과 도구 활용
- 대부분의 평가지표는 장·단기에 걸쳐 측정되며 평가 결과보고서는 정부에 제출해 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용

#### 4) Family Start 프로그램(뉴질랜드)

##### ■ 역사, 관련 정부 부처, 관련법

- 1989년 ‘아동·청소년 및 가족법(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에 의해 ‘가족의사결정모델(Family group conference)’을 도입하여 아동의 문제 해결 시 반드시 가족의 의사결정을 따르도록 규정
- 기존의 파편화된 아동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아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Family Start’제도를 고안
- 뉴질랜드의 3개 지역을 대상으로 ‘Family Start’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1999~2000년 추가로 13개 지역에서 프로그램 실시, 2012년 기준 총 32개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의 욕구 및 특성, 문화에 맞춰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Family Start는 정부의 ‘가족강화전략’의 일환으로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의 지역사회 서비스국(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보건부(Ministry of Health),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등 3개 부처가 지원

#### ■ 목표 및 목적

- ‘가족강점접근(Family Strength Approach)’을 도입하여 예방적·통합적(건강, 보육, 복지 등) 조기개입 및 지원을 통해 아동이 속한 가족에 대한 삶의 질 향상
- 아동중심, 가족중심, 조기개입,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잠재역량을 높이고, 가족의 강점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의 동등한 출발 보장
- 정부와 각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가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세부 목표 달성

#### 세부목표

- 아동의 건강증진, 교육 및 사회적 성취 달성
- 부모의 양육기술 및 역량 강화
- 부모의 개인적·가족적 환경 개선

#### ■ 서비스 대상과 제공서비스

- Family Start의 사업대상은 빈곤가구 중에서도 특히 더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고 위험 가정이며, 뉴질랜드 가정의 5%가 해당
- Family Start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학습과 관계, 가족상황, 환경과 안전 개선에 중점을 두는 집중적인 가정방문 프로그램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기술과 가족의 목표 성취를 스스로 강화하고 개선하는 자발적 프로그램
- 서비스는 대상자의 임신 3개월~출산 후 1년 이내에 조기 개입하여 최대 5년 간 서비스를 제공

#### <지원과정>

- Family Start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된 가족에 대해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가정방문을 실시
- 서비스 자격 사정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동의서를 접수
- 가족과 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가족의 문제 및 욕구, 강점, 목표 등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개선
- 가정방문을 통해 서비스 개입

### 〈서비스 지원내용〉

- 가정방문(Home Visits)
  - 아동 안전(Child Safety)
  - 개별가족계획(Individual Family Plans)
  - 조기교육(AM&BTL: Ahuru Mowai and Born to Learn)
  - 건강 및 교육성취 증진(Promoting health and Education Outcomes)
- Family Start 프로그램의 사례관리는 ‘의뢰, 초기상담 및 접수, 사정, 서비스 제공, 서비스 종결’ 순으로 진행

#### ■ 전달체계 및 기간 관 연계

- Family Start의 가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는 정부와 각 지역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MOU를 맺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서비스는 가족복지사(family worker/whānau workers)가 수행
- 지역의 보건전문가(Health Promoters), 치과 의사(Dentists), 치과치료 전문가(Dentist Therapist, Dental Assistants), 간호사(Registered Nurses), 자원 봉사자, 사회·가족복지사(Social Workers), 유아·부모 교육 전문가(Early Childhood/Parent Educators)들과의 연계를 통해 조직 운영 및 활동
- 가족복지사는 대상자 가족의 옹호자 및 코디네이터로서 가족이 욕구에 맞춰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돕고 실행계획 수행을 위해 가족과 함께 활동하며, 계획이 잘 수행되었는지 모니터링 하는 등 가족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 ※ 가족복지사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교육학, 보건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일주일에 최소 1.5시간의 슈퍼비전을 받음

#### ■ 성과관리체계

- Family Start 프로그램의 평가는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아동청소년가족국(Department of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s, CYF), 보건부(Ministry of Health),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에서 주관하며, 서비스 제공이 끝날 때 프로그램의 효과평가를 실시함
- 평가는 Family Start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동 및 가족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영향, 아동 및 가족의 욕구와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 등 장·단기 효과를 확인
- Family Start 프로그램에 참여한 위기 가족이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고위험 가족의 문제가 효과적으로 완화되는 등 긍정적



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으로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양육자의 양육기술을 향상시키고 가족이 스스로 강점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가족의 역량이 강화되고, 국가적으로는 자원의 절약 및 문제해결이 용이해지는 성과를 나타냄

I  
정책방향II  
사업운영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IV  
아동통합사례관리V  
지원관리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VII  
부록



2018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http://www.mohw.go.kr/>



# VII

## [부록 4] 아동통합 사례관리 안전준칙

1. 공통지침
2. 아동의 집 등을 방문할 시 주의사항
3. 대상아동 및 가족과 상호작용 시 주의사항



## 1 공통지침



- 수행인력의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 1년에 한 번 이상 모든 수행인력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실시
- 안전을 위해 드림스타트에서 다음과 같은 물리적 환경을 조성

〈표1〉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대책

구분	내용
기관의 분위기 및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안하고 차분하며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분위기의 근무 공간 및 대기실</li> <li>■ 항상 적당한 인원이 사무실에 있어야 함(홀로 있지 말 것)</li> <li>■ 대기 장소나 상담실, 대상아동 및 가족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들을 잘 보이도록 공간 배치</li> </ul>
안전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람시스템, CCTV 등 보안장비 설치</li> <li>■ 복도의 꺾어진 부분이나 가려진 공간에는 거울 설치</li> <li>■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 공간 마련</li> <li>■ 위험한 상황에서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문(비상출입문) 설치</li> </ul>
상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통합사례관리사와 대상아동 및 가족이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자리 배치</li> <li>■ 최소한의 가구 배치, 가능하면 가볍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으며,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야 함.</li> <li>■ 대상아동 및 가족이 던질 수 있거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그림, 액자, 꽃병, 재떨이, 가위 등)은 치우고,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음.</li> <li>■ 상담실은 두 개의 출구가 있어야 하며, 출구가 하나라면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언제든지 신속하게 나갈 수 있도록 출구 쪽으로 앉아야 함.</li> </ul>
아동 및 가족의 동선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아동 및 가족이 돌아다닐 경우 접근에 제한 필요</li> <li>■ 사용하지 않는 장소의 문은 모두 잠가야 함</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밝은 조명 설치, 오래된 전구, 깨진 창문 교체</li> <li>■ 주차 시 자동차 문은 반드시 잠글 것</li> <li>■ 어두운 장소를 조심하고, 기관 내 시각지대 최소화</li> </ul>

출처: OSHA 안전 가이드라인 및 NASW 안전 가이드라인에서 편집



## 2 아동의 집 등을 방문할 시 주의사항



- 아동의 가정방문 일정에 대하여 상사 및 동료에게 반드시 보고
- 가정방문하기 전에, 다음의 위험요소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한 상황이 의심된다면 방문 일정을 재조정

### 위험요소

- 대상아동의 가족이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인가 ?
  - 싸움, 다툼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 ?
  - 대상아동 및 가족이 분노, 흥분한 상태가 있는가 ?
  - 대상아동 및 가족이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방문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
  - 대상아동의 가족이 폭력 관련 전과를 가지고 있는가 ?
  - 대상아동의 가족이 최근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실직, 가정 해체, 사회적 고립 등)에 있는가 ?
- 
- 가정방문 시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면 지체하지 말고 현장을 벗어날 것
  - 가정방문 시, 2인 1조로 동행할 것
  - 위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또는 위험한 상황이나 방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협조를 구하여 동행할 것
  - 무기가 될 수 있는 물건(냄비, 칼, 뜨거운 물 등)이 많은 장소를 피하고, 출입문이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 가능한 밝은 시간대에 가정방문하고, 어두운 장소를 피할 것
  -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에 대해 민감성을 키워야 함

I 시계정사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합사례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안정 및 조정

VII 부록



### 폭력적인 아동 및 가족과 대화하기

- 소속 기관과 이름 밝히기
- 찾아온 이유를 간단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기
- 대상아동 및 가족의 권리에 대하여 알리기
- 대화에 있어서 솔직할 것
-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나타나기
- 도발적이지 않고, 비판적인 태도로 부드럽게 이야기하기
-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태도로, 중립적으로 언급
- 대상아동 및 가족의 감정에 공감
- 감정적이거나 무시하는 느낌을 주는 언급은 피하기
- 대상아동 및 가족 사이에 적절한 공간 확보
- 대상아동 및 가족에게 항상 존중하는 모습 보이기
- 비언어적 소통도 언어적 소통만큼 중요
- 직접적인 시선접촉을 지속하기 말 것
- 대상아동 및 가족과 이야기를 시작하면 경청하기
- 공감하고, 염려하고, 비판적이지 않기
- 대상아동 및 가족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도록 함





### 3 대상아동 및 가족과 상호작용 시 주의사항



#### ■ 언어적 기술

- 아동 및 가족에게 초점을 두고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음을 표현
- 차분한 자세를 유지
- 어떻게 언어 전달을 하는지 의식
- 천천히, 조용히, 자신감 있게 말하기
- 간단하게 말하며, 사무적인 언어나 복잡한 전문용어는 사용하지 않음.
- 주의 깊게 듣고, 방해하지 말고, 요청하지 않은 조언이나 비판은 삼가기
- 아동 및 가족이 이야기하도록 격려
-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함.
- 진정을 위한 도구로 침묵을 사용
- 한쪽 편을 들거나 왜곡된 것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을 위협하는 협상을 시도하지 않음.
-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음.

#### ■ 비언어적 기술

- 차분한 바디랭귀지 사용 : 주먹을 쥐지 않고 편안한 손 모양, 배려하는 보습을 보임
- 아동 및 가족의 신체적 수준에 맞추기 : 상대가 앉아 있을 경우 무릎을 구부리는 등의 행동으로 똑바로 서서 상대방을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도록 함.
- 상대방과의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 : 약 1미터 정도
- 다음과 같은 행동은 하지 말 것
  - 도전적인 자세
  - 손을 엉덩이 아래에 두는 것
  - 손가락 질(손끝으로 가리키는 행위)
  - 팔을 흔드는 행위
  - 팔짱을 끼고 있는 행위
  - 노려보는 행위(도전적으로 비칠 수 있음)

### ■ 적대적인/화가 난 대상자 대하기

- 아동 및 가족은 자신의 상황에서 도움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감정적인 고통 또는 불만, 방문에 따른 두려움과 불안 등으로 인하여 분노의 반응을 보일 수 있음.
- 아동 및 가족에게 차분하나 단호한 태도로 반응하고 응답함
- 분노에 대하여 아동 및 가족이 직접 정의하도록 하고, 그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도록 도움.
- 아동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도움과 이익을 위한 노력, 역할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이득이 될 것임을 강조함.
- 작은 목소리가 대상자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도록 도울 수 있음
- 아동 및 가족이 앉도록 독려함.
- 이러한 상황에서 해야 할 일과 무엇을 이야기할지 미리 연습함.
- 상황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자리를 떠나고, 112에 전화함.
-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아동 및 가족을 대함.

### ■ 긴장감 줄이기

- 차분한 목소리 톤과 태도를 갖도록 함.
- 명확하고 직접적인 태도로 이야기하여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들을 수 있도록 함.
- 직접적으로 “진정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음.
- 공감하는 태도를 보임.
- 좌절이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함.
- 감정을 반영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함.  
예) 무척 화가 나신 것 같군요 등
- 실수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도록 함.
- 아동 및 가족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화가 난 것임을 명심해야 함.
-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차분한 톤으로 이야기 하고, 대립적이지 않은 자세로 대상자를 대함.
- 천천히 움직임.
- 아동 및 가족을 직접 마주보지 말고, 옆에 서도록 함.
- 과도한 시선접촉을 피하고,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지 않음.
- 화가 난 사람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음.



- 나중에 이야기하거나 잠시 화를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하여 아동 및 가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주제를 바꾸는 것은 통할 때도 있지만 조심해야 함. 아동 및 가족이 알아차릴 경우 더욱 화나게 만들 수 있음.
- 유머 사용은 쉽게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I  
정책상사II  
사업운영  
공통사항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IV  
아동통합사례관리  
기관협력사례관리V  
지원관리  
기관관리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운영VII  
부록

〈표2〉 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및 상담 시 가이드 라인

구분	내용
가정 방문 전 확인 내용(위험 사정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및 가족이 폭력과 관련된 개인력이 있는가 ?</li> <li>■ 아동 및 가족이 불법 약물 사용, 물질/알코올남용을 하고 있는가 ?</li> <li>■ 아동 및 가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가 ?</li> <li>■ 집안에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li> <li>■ 집에 난폭한 개 또는 위협이 될 만한 동물이 있는가 ?</li> <li>■ 집 또는 소유지 내 안전 위험요소가 있는가 ?</li> <li>■ 가정 내에 누군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인가 ? 두려워하는 인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할 수 있는가 ?</li> <li>■ 보호관찰 중이거나 전과기록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li> </ul>
가정방문 시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전정보를 통하여 위험발생 가능성을 확인</li> <li>■ 방문 및 상담 계획 알리기 : 상사 또는 동료에게 가정방문사실과 장소 등에 대하여 알리기</li> <li>■ 방문 및 상담 전 안전장비 갖추기 : 휴대폰, 필요한 경우 경찰 및 안전요원 등과 동행</li> <li>■ 고립된 장소, 어두운 장소 피하기</li> <li>■ 다음의 상황 등에 직면했을 경우,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들은 가정방문을 금지하거나 이미 가정을 방문한 경우에는 빠져나오는 것이 바람직함</li> <li>가족구성원이 술 등에 취해 있는 경우</li> <li>현재 가정에서 폭력적인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li> <li>실제적인 폭력이 아동통합사례관리사에게 가해지는 경우</li> <li>현재 아동통합사례관리사에게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경우</li> <li>- 아동 및 가족이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방문에 적대적으로 응대하는 경우 등</li> </ul>
상담 시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및 가족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사정: 위험성에 대한 내력 파악, 대상자, 가족의 특수사정 사전 인지(약물 및 알코올 남용, 전과 기록, 위험성 있는 병력)</li> <li>■ 아동 및 가족의 흥분상태에 대한 인지 : 흥분상태에 대한 조짐을 재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함</li> <li>예) 눈 깜박임이 빨라짐, 움직임에 있어서 자세를 낮추는 경우, 호흡이 빨라짐</li> <li>■ 아동 및 가족을 자극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li> <li>■ 아동 및 가족의 흥분, 분노, 충동성의 수준을 사정할 수 있는 도구 활용</li> <li>■ 위험 상황 발생 시 아동 및 가족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가 될 수 있는 특정 단어나 문구 사용(사전에 직원들 사이에 합의되어야 함)</li> </ul>

출처: NASW 안전 가이드라인에서 편집



# VII

## [부록 5] 드림스타트 아동통합 사례관리 서식

1. 초기상담
2. 인적정보관리
3. 욕구조사
4.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도구
5. 사례회의관리
6. 대상자선정 및 유형분류
7. 서비스 제공계획 관리
  - 복지자원 분류체계
8. 지역서비스 제공관리
9. 서비스 점검관리
10. 종결심사관리



## 1 | 초기상담



상담구분	<input type="checkbox"/> 단순안내 <input type="checkbox"/> 요청접수	상담일자	상담유형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내방 <input type="checkbox"/> 가정방문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기관방문
접수경로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요청 <input type="checkbox"/> 기관 내 의뢰 <input type="checkbox"/> 통장 및 이웃주민 의뢰 <input type="checkbox"/> 위기야동발굴	<input type="checkbox"/> 사례관리자의 발굴 <input type="checkbox"/> 타기관 의뢰 <input type="checkbox"/> 좋은 이웃들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거유형	인적정보관리 참조
가구유형	인적정보관리 참조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가구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상담내용				
상담자 종합의견				



## 2 | 인적정보관리

### (공통양식)

#### ▶ 대상자정보

사례관리 번호	성명	성별	나이	주민등록 번호	주양육자	최종 위기도
주소	전화 번호				휴대 전화	

#### ▶ 담당자정보

사례 관리자	소속	전화 번호
-----------	----	----------

#### ▶ 주거사항

주거 형태	<input type="radio"/> 단독주택 <input type="radio"/> 다세대주택 연립 <input type="radio"/> 아파트 <input type="radio"/> 무허가/오피스/비닐하우스 <input type="radio"/> 여관/고시원/쪽방 <input type="radio"/> 컨테이너 <input type="radio"/> 기타( )	주거 구분	<input type="radio"/> 자가 (소유주 : ) <input type="radio"/> 전세 (전세금 : 만원) <input type="radio"/> 월세 (보증금 : 만원), (월세 만원) <input type="radio"/> 임대주택 (보증금 : 만원), (월세 만원) <input type="radio"/> 무상임대 <input type="radio"/> 시설/그룹홈( ) <input type="radio"/> 기타( )
주거 상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긴급 보수 필요 <input type="checkbox"/> 노후 <input type="checkbox"/> 폭염 취약 <input type="checkbox"/> 한파 취약 <input type="checkbox"/> 한기 부적절 <input type="checkbox"/> 채광 부족 <input type="checkbox"/> 협소한 공간 <input type="checkbox"/> 약취/불결		



주거 환경	<input type="checkbox"/> 소음 <input type="checkbox"/> 유흥가 <input type="checkbox"/> 대로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이사계획 (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	거주 기간 (   년   개월 )
가족 구조	<input type="checkbox"/> 방(   )개 <input type="checkbox"/> 거실(   )개	난방 방법 <input type="checkbox"/> 가스보일러 <input type="checkbox"/> 기름보일러 <input type="checkbox"/> 연탄, 화목보일러 <input type="checkbox"/> 전기매트, 전기온돌 <input type="checkbox"/> 주방(   )개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개 <input type="checkbox"/> 전기관넬 <input type="checkbox"/> 재래식 난방(아궁이) <input type="checkbox"/> 욕실(   )개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욕실 겸용(   )개 <input type="checkbox"/> 전기매트, 전기온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공용 <input type="checkbox"/> 단독   // <input type="checkbox"/> 수세식 <input type="checkbox"/> 재래식   // <input type="checkbox"/> 본채 <input type="checkbox"/> 별채	
	양육환경   침실/놀이공간 (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협소 )	

▶ 가구유형

가구 유형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구 <input type="checkbox"/> 청장년1인가구 <input type="checkbox"/> 독거노인가구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구 <input type="checkbox"/> 미혼부모가구 <input type="checkbox"/> 부부중심가구 <input type="checkbox"/> 노인부부가구 <input type="checkbox"/> 조손가구 <input type="checkbox"/> 새터민가구 <input type="checkbox"/> 공동체가구 <input type="checkbox"/> 기타가구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가구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구
-------	---	--

▶ 소득현황

월평균 소득	(   ) 만원	월평균 지출	(   ) 만원
주요 소득원		주요지출 내역	





▶ 가족사항

선택	관계	성명	연령	결혼	등거	학력	직업	건강상태	장애유형	보장내역	주양육자

▶ 구성원 세부정보 ◎ 내국인 ◎ 외국인 ◎ 사회복지전산관리부여자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가주주와의관계	가구구성사유	학력	결혼여부	직업	건강상태	기혼/미혼사유	등거여부	미동거사유	장애유형	장애통류	직업종류	비고
1							[보기] 참고	[보기] 참고	[보기] 참고	선택	[보기] 참고	[보기] 참고	[보기] 참고	선택	직접 입력	[보기] 참고	[보기] 참고	직접 입력	
2																			
3																			
4																			

분야 III
온조 보호자를 대리하는 등 III
미만보호자 A
미만보호자 B
미만보호자 C
미만보호자 D
미만보호자 E
미만보호자 F
미만보호자 G
미만보호자 H
미만보호자 I
미만보호자 J
미만보호자 K
미만보호자 L
미만보호자 M
미만보호자 N
미만보호자 O
미만보호자 P
미만보호자 Q
미만보호자 R
미만보호자 S
미만보호자 T
미만보호자 U
미만보호자 V
미만보호자 W
미만보호자 X
미만보호자 Y
미만보호자 Z

항 목	보 기
가주와의 관계	가주주/처/부/모/자/자부/남편/사위/시부/시모/장인/장모/백부/백모/숙부/숙모/양부/양모/형/형수/제/제수/시숙/올케/중형/중형수/중제/중제수/누이/형부/매부/시누이/중매/중매부/제부/조카/동서/손/손부/손서/중손/중손부/고손/고손부/고종/오빠/재혼자녀/조부/조모/시조부/시조모/중조부/중조모/고조부/고조모/장조부/장조모/고모/고모부/대고모/당숙/당숙모/서모/서조모/이질/당질/질부/외숙/외숙모/외종/이모/이모부/이종/외손/외손부/외조부/외조모/처형/처제/처남/처남매/처조카/처질부/처숙부/처숙모/처사촌/처고모/처고모부/처고종/처이모/처이모부/처이종/처가친척/시가친척/외가친척/친척/동거인/외종손/외종손부/언니/종사자/입소자/대표자/참여자/법인/임원/중개사무소/신청인/장/동반가족/양자/양자부/계부/계모/정비대상관계
가주 구성 사유	주민세대/30세 미만 미혼 자녀 중 미취업/사실혼 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자/외국 국적 배우자/외국인/외국인수급권자/외국인 부 또는 모/주민등록 말소된 부 또는 모/재혼 가정 자녀/조부모 양육(가정해체)/친권자/가구의 주소득자/2촌 이내 혈족외 동거인/전산관리번호 부여자
학 령	무학력/취학면제/취학유예/기타학력/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초등학교 재학/초등학교 중퇴/초등학교 졸업/중학교/중학교 재학/중학교 중퇴/중학교 검정/중학교 졸업/고등학교/고등학교 재학/고등학교 중퇴/고등학교 검정/고등학교 졸업/전문대학/전문대학 재학/전문대학 졸업/전문대학 수료/대학(교)/대학(교) 재학/대학(교) 중퇴/대학(교) 수료/대학(교) 졸업/대학원 석사과정/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대학원: 석사과정 중퇴/대학원: 석사과정 수료/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대학원 박사과정/대학원: 박사과정 재학/대학원: 박사과정 중퇴/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대학원: 박사과정 졸업/고등전문학교/미취학
결혼 여부	기혼/미혼
직업	전문직/관리직/사무직/판매직/서비스직/생산직/단순노동/자영업/농업/어업/축산/무직/학생/기타
건강 상태	건강/장애/질병/허약/질병 + 장애
기혼/미혼 사유	기혼 사유 : 재혼/별거/이혼/사별 미혼 사유 : 동거/미혼모/미혼부
동거 여부	동거/비동거
장애 유형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간질
질병 종류	정신 질환/신부전증/결핵/알콜중독/치매/희귀난치성 질환/만성 질환/기타



보육현황	주양육자	○ 모 ○ 부 ○ 조부 ○ 친척 ○ 조모 ○ 기타( )
	양육태도	○ 엄격한편 ○ 보통 ○ 허용 ○ 방임
가정생활 습관	놀이장소	○ 집 ○ 골목 ○ 놀이터 ○ 기타( )
	주놀이상대	○ 모 ○ 부 ○ 조모 ○ 조부 ○ 또래친구 ○ 형제자매 ○ 없음 ○ 기타( )
기관보육 현황	현이용시설유형	○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유치원 ○ 놀이방 ○ 학원 ○ 이용시설 없음 ○ 기타 (이용시설 명: )
	이용기간	현 시설 이용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전체 시설보육 이용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이용시간	시 분 ~ 시 분 / 1일( )시간, 주 ( )일
	통원방법	○ 도보(보호자: ) ○ 통원버스 ○ 기타( )
방문서비스	이용여부	○ 이용 중 ○ 이용하지 않음
	이용유형	○ 가정방문 보육 / 놀이지도 ○ 가정방문 부모상담/교육 ○ 교구(놀이감) 대여서비스 ○ 기타( )
향후계획	희망보육시기/유형	연령 ( ) 세부터 보낼 예정(이유: ) ○ 국공립 ○ 민간가정보육시설(놀이방) ○ 선교원 ○ 학원 ○ 가정보육방문서비스 ○ 기타( )



(취학중 아동 양식)

대상자명				
나이				
건강	전반적인 건강상태	<input type="radio"/> 매우양호 <input type="radio"/> 양호 <input type="radio"/> 보통 <input type="radio"/> 불량 <input type="radio"/> 매우불량		
	영양상태	<input type="radio"/> 매우양호 <input type="radio"/> 양호 <input type="radio"/> 보통 <input type="radio"/> 불량 <input type="radio"/> 매우불량		
	현재 약물복용 기타치료상황			
	주이용의료기관	<input type="radio"/> 보건소 <input type="radio"/> 종합병원 <input type="radio"/> 개인병원		
	대상자의 키	(      ) cm	대상자의 몸무게	(      ) kg
원하는 도움				
구분	<input type="radio"/> 취학전 <input type="radio"/> 취학중	<input type="radio"/> 임산부		
건강	출생상태	<input type="radio"/> 만숙아 <input type="radio"/> 미숙아 <input type="radio"/> 과숙아 <input type="radio"/> 신진성 기형 <input type="radio"/> 신진성 질환		



보육현황	주양육자	○ 모 ○ 부 ○ 조부 ○ 조모 ○ 친척 ○ 조모 ○ 기타( )
	양육태도	○ 엄격한편 ○ 보통 ○ 허용 ○ 방임
가정생활습관	학습/숙제	○ 도와준다 ○ 혼자서한다 ○ 하지않는다
	학교명/학년	( ) 초등학교 ( ) 학년
학교생활	적응상태	○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교우관계	○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학업성취도	○ 상 ○ 중상 ○ 보통 ○ 중하 ○ 하
	문제경험	○ 없음 ○ 상습결석/지각 ○ 성적부진 ○ 수업태도불량/산만 ○ 폭력(피해/가해) ○ 도박 ○ 인터넷/게임중독 ○ 집단따돌림(피해/가해) ○ 기타( )
	주활동 장소	○ 집 ○ 친구집 또는 이웃집 ○ 친척집 ○ 방과후지도기관 ○ 놀이터 ○ 기타( )
	방과후 지도 기관 종류	○ 학교 내 방과후교실 및 특기적성교실 ○ 복지관 ○ 공부방( ) ○ 지역아동센터 ○ 사설학원( ) / ( ) ○ 기타( )



(임산부 양식)

대상자명	
나이	

건강 현재 건강 상태	전반적인 건강상태	<input type="radio"/> 매우양호 <input type="radio"/> 양호 <input type="radio"/> 보통 <input type="radio"/> 불량 <input type="radio"/> 매우불량	
	영양상태	<input type="radio"/> 매우양호 <input type="radio"/> 양호 <input type="radio"/> 보통 <input type="radio"/> 불량 <input type="radio"/> 매우불량	
	현재약물복용 기타치료상황		
	주이용의료기관	<input type="radio"/> 보건소 <input type="radio"/> 종합병원 <input type="radio"/> 개인병원	
원하는 도움	대상자의 키 (            ) cm	대상자의 몸무게 (            ) kg	
구분	<input type="radio"/> 취학전 <input type="radio"/> 취학중 <input type="radio"/> 임신부		

현재상태	<input type="radio"/> 임신 <input type="radio"/> 출산 (임신 주)	출신구분	<input type="radio"/> 초산 <input type="radio"/> 경산
출산 예정일		실제출산일	
기호품 선호	<input type="radio"/> 흡연 <input type="radio"/> 음주 <input type="radio"/> 기타(            )	몸무게	임신 전 몸무게 (            )kg



3 | 욕구조사

욕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01-가족 내 안전 유지	A-폭력						1. 정신질환 2. 음주문제 3. 약물 오남용 4. 폭력적 성향 5. 왜곡된 성의식 6. 치매 7. 무기력감 8. 성격차이 9. 무관심/의지없음 10. 보호역할 가구원 부재 11. 가족내차별 12. 가족구성원 간 갈등 13. 가정해체 14. 경제적 빈곤 15. 종교문제 16. 이유 없음
	B-성추행/성폭력						
	C-유기						
	D-방임						
	E-학대						
	F-실종						
02-가족 외부로부터의 안전 유지	A-폭력						1. 자기보호능력미약(정신지체 등) 2. 폐임/약용 3. 친인척 간 불화 4. 타인과 불화 5. 원한관계 6. 부채/금전거래
	B-성폭력						
	C-협박·위협						
	D-학대						
	E-착취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01-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2 일상 생활 유지	G-공격적 행동 (싸움경가반복적 민원제기·폭력행동)							8. 치매 9. 성격장애 10. ADHD 11. 불안감 12. 이성문제 13. 과도한 인터넷/게임 몰입 및 중독
	H-대인기피							
	I-은둔/침거							
	J-의사소통장애							
	K-위생관리문제							
	L-이상한 행동							
	M-불안감							
	A-식사 및 준비 곤란							
	B-의복착용 곤란							
	C-외출 곤란							
	D-약물복용 곤란							
	E-위생관리 (용변처리 등) 곤란							
	F-긴급상황 대처 곤란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제공자1	제공자2	제공자3	원인3	
02-여가생활 활용	A-여가활동 부족					1. 시간 부족 2. 정보 부족 3. 경제적 빈곤 4. 가족의 통제 및 교육 미흡	5. 적절한 치료 부재 6. 가족의 무관심 7. 주변의 괴임 8. 무기력감/의지없음 9. 여가시설 부족
	B-부적절한 여가 활동(개임 도박 등)						
01-관계형성	A-부부갈등						
	B-부모자녀 갈등						
	C-고부갈등						
	D-형제(자매)갈등						
	E-가족간 관계소원						
	F-가족간 관계단절						
	G-가족간 갈등						
3 가족 관계	A-장애인돌봄 곤란						
	B-노인돌봄 곤란						
02-가족돌봄	C-아동돌봄 곤란						
	D-환자돌봄 곤란						
						1. 실업 2. 폭력 3. 탈선 및 가출 4. 성격차이 5. 배우자 외도 6. 자녀양육 갈등 7. 종교 갈등 8. 가족부양부담 9. 다문화가구 10. 시간부족 11. 보호역할 기구원 부재	12. 가족 내 차별 13. 학업성적 부진 14. 자녀 이성문제 15. 교우관계 16. 재산상속 갈등 17. 금전거래 18. 경제적 빈곤 19. 정보부족 20. 무관심 21. 장애 22. 질병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4 사회적 관계	A-친인척과 갈등								
	B-친인척 관계소원								
	C-친인척 관계단절								
	D-이웃간 갈등								
	E-이웃간 관계소원								
	F-이웃간 관계단절								
01-친인척 및 이웃 간 관계형성	A-직장생활 어려움								
	B-학교생활 어려움								
	C-종교생활 어려움								
	D-기타 사회생활의 어려움								
02-소속된 집단 및 사회생활	A-식비 부족								
	B-주거비 부족								
5 경제	01-기초생활 혜택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02-자산관리	C-의복비 부족						4. 사고 및 화재 5. 일시적 질병 및 상해 6. 중한 질병 10. 부양인무자의 부양기피 11. 근로능력자 부재 (사망/가출/실종)
	D-난방비 부족						
	E-공과금 체납						
	F-통신비 부족						
	G-의료비 부족						
	A-자산관리 능력부재						1. 지적장애 2. 치매 3. 정신질환 4. 음주문제 5. 슬관성 도박 6. 보호자 부재 (소년소녀가정) 7. 근로능력자 부재
	B-부채						8. 실직/휴폐업 9. 파산 10. 신용불량 11. 사고 12. 의료비과다 13. 교육·학습 부족 14. 타인에 의한 세금체납 (명의도용 등)
C-과태료·벌금							
D-과소비·낭비							
01-기초지식 습득 및 향상	A-읽기·쓰기·말하기 문제						4. 학습이지 부족 5. 학습지도자의 부재 6. 보호자의 무관심/ 인지부족
	B-수리계산 능력 부족						1. 언어능력 부족 2. 신체적·정신적 장애 3. 학습능력 부족
	C-그 외 기초 학습능력 부족						
6 교육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02-교육환경 개선	A-수업료·급식비 등 부족							
	B-특수교육 문제							
	C-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							1. 경제적 빈곤 2. 교육환경 지원자의 부재 3. 가족부양부담 4. 보호자의 인식/무관심/의지부족
	D-무단결석							5. 이성문제 및 교우관계 6. 탈선 및 기출 7. 본인의 무관심/의지부족 8. 정보부족
	E-학업성적 부진							
7 고용 01-취(창)업	A-실업·실직							
	B-열악한 근로환경							
	C-저임금							
	D-비정규직							
	E-구직의 어려움							1. 신체·정신적 건강문제 2. 부채 3. 가족 간병부담 4. 자녀 양육부담 5. 조직생활 부적응 6. 따돌림 7. 경험 및 경력 부족 8. 직업기술/훈련 부족 9. 저학력
	F-창업의 어려움							10. 교통문제 11. 자금부족 12. 정보부족 13. 복지서비스 의존 14. 잦은 실패경험 15. 낮은 자존감 16. 사회관계기술 부족 17. 신체적 장애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02-주거 외부 환경 개선	E-냉난방 열악								
	F-전기/가스 시설 열악								
	G-상하수도 시설 열악								
	H-지붕노후 (누수 등)								
	I-벽/담 등 노후								
	J-주택 내 이동 곤란								
	K-사생활 공간 부족								
	A-학습환경 열악								1. 도서산간지역
	B-교통접근성 열악								2. 유흥업소 밀집지역
	C-상습침수								3. 공장 밀집지역
	D-철거 등 공공수용								4. 자연재해 다발 지역
E-거주지 이전								5. 우범지역	
								6. 편의/기비시설 낙후부재	
								7. 위험물 방지	
								8. 쓰레기 방지	
								9. 정보 부족	
								10. 도시계획 (강제철거·퇴거)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제공자1	제공자2	원인1	제공자3	원인3	
9 법률 및 권익 보장	F-화재·폭발 위험물에 노출							
	G-생활환경 열악							
	A-법률처리(재산/ 위자료 등) 문제 B-신분상실 C-사고보상 처리 D-파산/신용불량 E-국적문제 A-차별대우 B-권리침해							1. 법률지식 및 정보 부족 2. 법적후견인 부재 (장애·미성년 등) 3. 폭력/범죄 4. 이혼 5. 사고 (의료·산재·교통사고 등) 6. 결혼이민/이주/난민 /탈북 7. 주민등록 말소 8. 경제적 능력 부족
10 기타	기타							
								1. 고용기회 차별 2. 관련법률조항의 문제 3. 부당한 철회나 이주 요구



우선순위	욕구명	욕구내용	강점	장애물
주요욕구				
사회적 지지자원			첨부파일	
가계도				



## 4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도구



※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매뉴얼> 참조

I  
개요

II  
요구사항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합사례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VII  
부록

## 5 사례회의관리



## \* 단기성과 목표

## \* 장기성과 목표

번호	단기목표	번호	장기목표

회의일시		다음회의 일시	
회의제목			
회의내용			
회의결과			
내부참석자		첨부파일	
외부참석자 (수행기관 종사자)	소속 : 직책 : 이름 :	외부참석자 (외부전문가)	소속 : 직책 : 이름 :



**6** 대상자선정 및 유형분류



선정 일자		신규/ 재사정		미선정 사유
선정 처리 구분	○ 선정 ○ 미선정	이관여부	<input type="checkbox"/> 희망으로 이관	
유형 분류	○ 사례관리대상자			

I  
개요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합사례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VII  
부록

## 7 서비스 제공계획 관리



- 제공주체 세부항목

제공주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제공주체구분		사업자구분	
시설기관구분		시설기관상세구분	
유효기간		지사(지점)명	
담당자명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우편번호)		
제공주체설명			



- 제공서비스 세부항목

<b>1. 서비스 내용</b>			
- 서비스 유형	○현금 ○현물 ○바우처 ○프로그램 ○자원봉사		
- 서비스명		제공형태	○직접 ○연계
- 서비스분류	대분류	중분류	
- 담당자명		담당부서	
-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e-mail		홈페이지	
- 서비스 설명			
- 이용 비용	○금액 ○수량 ○무료 ○봉사자정보(연령, 성별, 혼성)	○기탁자 성명 ○본인부담금 ○봉사가능지역	서비스 기간
- 지원횟수	(단위 : 주, 월, 분기, 반기, 년, 기타, 수시, 1회성, 부정기, 회)		
- 이용정원수	( ) 명	(연계) 인원수	( ) 명
- 이용가능인원수	( ) 명		
<b>2. 서비스 대상 기준</b>			
-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대상특성	□일반 □여성 □임산부 □장애 □국가유공자 등 □실업자		
-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요루 □간질 □지적 □자폐성 □정신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 가구유형	□일반 □한부모 □다문화 □조손 □새터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 소득구분	□일반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 제외대상			

I 사업개요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합사례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VII 부록

## &lt;제공서비스 유형&gt;

1. 현금					
후원금액		제공주기		지원횟수	
기탁자 성명	<input type="checkbox"/> 익명	기탁자 연락처			
(연계)지원액		현재잔액			
2. 현물					
제공량		단위당단가		제공(환산)가액	
기탁자 성명	<input type="checkbox"/> 익명	기탁자 연락처			
(연계)지원량		(연계)지원액			
3. 바우처					
제공가액		단위당단가		제공량	
본인부담금	<input type="checkbox"/> 무료	지원주기		지원횟수	
(연계)지원량		(연계)지원액			
4. 프로그램지원					
본인부담금	<input type="checkbox"/> 무료	지원주기		지원횟수	
이용정원수		(연계)인원수			
이용기능인원수					
5. 자원봉사					
봉사인원수					
봉사지역					





— 복지지원 분류체계

〈복지지원 분류체계의 특징〉

- 드림스타트 필수서비스와 맞춤형서비스의 프로그램을 표준화된 복지지원으로 분류
- 복지지원분류체계는 행복음 자원분류체계로 희망복지지원단과 공동사용
- 아동 및 부모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시, 복지지원 분류체계 중 관련 분류를 찾아서 행복음에 입력하여 서비스 지원 관리
- 2014년도 복지지원 관리운영방안 연구 결과, 소분류 단위의 세분화된 제공서비스명 추가
- ‘예제’는 행복음 상 기본적으로 등록되어있는 제공서비스명으로 실무자의 신규 제공서비스명 등록 요청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원의 승인/반려 여부에 따라 현황(추가/수정/삭제)변동 가능

대분류	중분류	예 제	설 명
1. 일자리 일자리 (6)	1-1. 직업상담 및 알선	직업 및 취업 상담, 취업알선, 취업 비람회개최	- 일정한 작업이나 직업 등에 대해 알맞은 소질을 평가하고, 직업을 선택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 상태와 주변환경 및 직업환경 등 제반 문제점들을 찾아 해결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반 도움을 제공
	1-2.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 교육	직업능력평가, 직업직상감사, 직업 훈련, 직업재활훈련, 직업 및 직장 체험, 직무교육, 보호직업장지원, 공동 직업장지원, 자격증취득지원, 내일 배움카드지원	- 개인이 일의 세계를 탐색하여 자기의 적성·흥미·능력에 맞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기능·태도·이해 및 판단력과 습관들을 개발하는 교육 -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knowledge)과 기술(skill)을 훈련
	1-3. 자활 및 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취업 성공패키지사업,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적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지역자활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지역 특화된 자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참여자 사례관리 등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1-4. 창업지원	창업지원, 창업자금지원, 창업교육, 희망가게운영, 인큐베이터사업단운영	- 창업 관련 판로 및 입지, 사업화 컨설팅 및 교육, 정보, 자금, 홍보 및 마케팅 등 지원
	1-5. 직업유지 및 지원지원	취업후상담및관리, 취업후지도, 퇴소 후상담, 취업자간담회, 취업자자조 모임, 자립정착금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 내일 키움통장사업, 희망플러스사업	- 지역자활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지역 특화된 자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참여자 사례관리 등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대분류	중분류	예 제	설 명
2. 주거 (3)	1-6. 규직관련 비용지원	학원 등록비 지원, 강습료 지원, 직업 교육 재료비 지원	- 앞서의 분류체계로 구분되지 않는 서비스의 내용에 관해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 해당 교육/강습 시설에서 무료강습 또는 수강하는 것과는 구별
	2-1.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지원(일반), 화장실개보수 지원, 지붕개량지원, 도색·도배·장판 지원, 누수방수지원, 보일러교체 수리, 전기공사·점검, 방충망설치·수리, 방역서비스	- 도배, 장판, 방역, 편의시설 등의 마련 및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 주거시설 내 외부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데 관련된 일련의 직접서비스
	2-2 거차미련 및 이주지원	임시주거지원, 임대주택지원, 이사 지원, 시설텔소지원	- 주거를 대신할 수 있는 거차미련 및 이주지원으로, 주거지원에 따라 이동이 필요한 경우 관련된 지원 서비스
	2-3. 주거관련 비용지원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이사비용, 공인중개수수료지원	- 전·월세비와 같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중개수수료 등 주거관련 현금 지원
3. 일상 생활 (7)	3-1. 가사 지원	가사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세탁, 빨래, 청소, 집정리, 의류침구관리, 물품 관리, 장보기지원, 행정및일상업무 지원, 일상생활훈련및교육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사 지원 서비스
	3-2. 식사(음식) 지원	식사지원, 도시락지원, 금식지원, 린 반찬지원, 쌀지원, 찜국지원, 떡국 지원, 라면지원, 김치지원, 고기지원, 간식지원, 상차림지원, 음료품지원, 식사관리, 푸드마켓사업, 푸드뱅크 사업, 기타부식지원	- 저소득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워 식사를 거르는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무료 식사 서비스, 음식 제공 서비스 등
	3-3. 활동(이동) 지원	개인위생관리, 목욕, 손발톱정리, 미용지원, 용변관리, 옷갈아입히기, 위생용품지원	- 노령 및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활동(이동)지원 서비스
	3-4. 위생 지원 (이미용 등)	개인활동지원, 치량지원, 동행지원, 송영지원, 등하교지원, 실버카지원, 수화지원, 일상생활훈련, 신체기능 훈련, 장애인활동지원	- 개인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게 지자체 및 관련 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목욕, 세탁, 이미용 서비스



대분류	중분류	예 제	설 명
4. 신체 건강 및 보건 의료 (6)	3-5. 생활용품 지원	가구지원, 가구관리, 가전제품지원, 가전제품관리, 난방·용품지원, 난방용품관리, 방방용품지원, 방방용품관리, 상품권지원, 출산용품지원, 청소용품지원, 의류지원, 침구지원, 기타생활용품지원	-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류, 식품, 생활가전, 생활용품 등의 현물 지원 서비스  -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급여 기준에 충족하여 현금성 수당 ※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전자배우처와 같은 서비스 이용료 제외
	3-6. 일상생활관련 비용지원	교통비지원, 상하수도요금지원, 생계비지원, 난방비지원, 전기요금지원, 의료비지원, 출산비용지원, 학원비지원, 증여세면제, 이동통신요금지원, 수행여행비지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 행복 e음 공동모금회 시스템에서 연계한 긴급지원 및 기획사업
	3-7. 복합지원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공동모금회 후원의뢰, 공동모금회 후원(지정기탁)한금, 공동모금회 후원(지정기탁)한물, 공동모금회 기획사업, 공동모금회 예치금(시군지정기탁)	
	4-1.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심혈관질환관리, 건강상담, 건강정보제공, 보건교육, 구강교육, 금연교육, 금주교육, 위생교육, 영양교육, 치매교육, 질병예방교육, 응급처치교육, 낙상예방교육, 투약관리, 가정간호서비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예방접종지원	- 의료적 치료행위는 아니지만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면의 예방활동과 일상생활 관리서비스(영양상담, 운동처방 등)
4-2. 검진·진단 및 치료	일반건강검진, 구강검진, 안과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노인건강검진, 발달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난청조기진단, 치매조기검진, 활력증후 측정, 일반진료, 입원진료, 촉탁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 신체적 질병의 완화 및 치료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적 서비스로 통상적인 의료행위, 진료행위 전체	



대분류	중분류	예 제	설 명
5. 정신 건강 및 심리 정서 (6)	4-3. 재활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감각치료, 언어 치료, 직업치료, 직업선치료, 전기치료, 통증치료, 수지침치료, 온열 및 방치료, 운동치료, 운동치료, 스트레칭체조, 운동치료, 요가, 마사지, 신체기능훈련, 청력훈련	-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후유증, 만성질환, 노인병 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와 기능적 장애에 대해 의료적, 심리적 수단 등을 통해 개인의 기능적 능력을 개발하고 회복시키는 신체적·물리적 재활 서비스
	4-4. 사전 후 관리	임신부교실, 임신부산전후관리, 임신부영양아영양보충사업	- 임신과 출산과정에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
	4-5. 의약품의약품 및 보 장구 지원	영양보충제지원, 구충제지원, 한약 지원, 인경지원, 보청기지원, 틀니지원, 구급함지원, 파스지원, 핫팩지원, 상인기저귀지원, 알레르기질환 지원, 보장구대여, 보장구대여_보조기, 보장구대여_자세유지보조기, 보장구대여_장애인보조기기, 보 장구대여_재활보조기, 보 장구대여_활체어, 보 장구지원, 보 장구지원_보 험보조기, 보 장구지원_전동휠체어, 보 장구수리	-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보 장구 등 신체건강 및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보건의료 관련 물품지원 서비스
	4-6. 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	의료비지원, 검사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신체적 질병의 치료나 건강 관리하여 발생된 비용 부분에 대한 현금성 지원
	5-1. 정신건강 교육	우울증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약 물오남용예방교육, 인터넷중독예 방교육	- 지역사회에서 빈번하게 출현하면서 사회문제화 되는 주요 정신적·정서적 문제와 관련하여(특히, 우울 및 자살, 알콜 및 약물중독, 게임, 인터넷 및 도박중독 등) 해당자 또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
	5-2. 심리검사 및 진단	우울증 검사, 인터넷 중독 진단, 심리검 사 성인, 심리검사_아동	- 정신건강이나 심리 정서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 게임의 최초단계의 서비스
5-3. 정신·심리 상담	우울증상담, 자살예방상담, 알콜중 독상담, 약물중독상담, 인터넷중독 상담	-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심리정서적 지원 및 상담서비스	



대분류	중분류	예 제	설 명
6. 보호 및 돌봄·요양 (6)	5-4. 정서발달 및 치유지원	놀이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 웃음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인부활인 및정서지원, 멘토링, 대인관계훈련, 말벗지원, 사회적응훈련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가족관계개선, 사회성향상지원	- 상담을 제외한 다양한 정서적 지원서비스
	5-5. 정신질환자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정신과진료, 심리치료	-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 의료개입 서비스와 이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
	5-6. 정신건강관련 비용지원	정신과 진료 비용 지원, 심리치료 비용 지원	-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한 현금지원
	6-1. 장기 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 아동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가 불가능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시설에 장기 입소시켜 제공되는 보호 및 각종 서비스
	6-2. 단기 시설보호	일시보호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청소년, 일시보호시설, 노인, 일시보호시설, 장애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한부모자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가 불가능한 노인, 장애인 등을 시설에 단기 입소시켜 제공되는 보호 및 각종 서비스 * 노인의 경우, 단기 보호 서비스는 월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에 한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6-3. 주야간 보호	주간보호시설, 아동, 주간보호시설, 노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아간보호시설, 아동, 아간보호시설, 노인, 아간보호시설, 장애인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가 불가능한 노인 및 장애인 등을 낮 동안 혹은 밤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며 기능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6-4. 간병 및 돌봄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간병서비스, 간병인파견, 장애인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	- (간병) 질병 및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병원이나 가정에서 간병인 등의 파견을 통해 활동의 보조나 심원을 돕는 서비스 - (돌봄서비스) 고령이나 질병, 장애, 출산, 산후조리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6-5. 장제서비스	장제급여지원, 임종교육, 영정 사진촬영, 장례지원, 장례비지원	- 생애주기의 흐름에 따라 가족원 또는 서비스 대상자의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일련의 장례절차에 대한 서비스	
6-6. 돌봄·요양 관련 비용지원	돌봄 및 요양 관련 비용 지원	- 보호와 돌봄·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현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예 제	설 명
7. 보육 및 교육 (8)	7-1. 양육상담 및 부모교육	양육상담, 부모교육	-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애로사항이나 정보부족을 해결하면서, 바람직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 소양교육 서비스
	7-2. 보육 및 양육지원	어린이집연계, 시간제탁아지원, 가정 방문, 보육서비스, 시간연장보육서비스, 방과후돌봄서비스, 방과후교실	- 유아 및 아동에 대해 가정 및 교육기관 등에서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 보호를 제공 - 교육기관 이용, 교재, 학습 등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소요비용을 감면 또는 지원
	7-3 인지발달 및 학습지원	인지학습치료, 기초학습지원, 독서 논술지도, 학습지원, 보충학습, 도서(대여)지원, 교구재지원, 학습품 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다문화가정아동발달서비스	- 성장기 인지발달과 학습능력 제고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7-4. 특기적성지원	외국어교육, 예체능교육, 경제교육, 각종특기적성교육, 동아리활동지원	- 예체능 특기와 적성개발 서비스
	7-5. 진로지도 및 상담	진로 및 직업상담, 진로탐색 및 체험 의사회통능력 향상 기술지원, 학교 생활적응력향상지원, 이동자이존중감 향상지원, 사회예절교육, 생활교육	- 진로지도와 상담 관련 서비스
	7-6. 장애 특수교육	언어발달지원, 점자교육, 수화교육, 장애 특수교육	-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발달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정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아동 및 청소년의 요구에 맞추어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알맞은 교육내용과 방법으로써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
	7-7. 평생교육	정보화교육, 컴퓨터교육, 노인교실, 노인대학, 은퇴준비교육, 외국어교육, 성인한글교실, 한자교육, 경제금융교육, 임종교육	- 성인대상 평생교육 서비스
	7-8. 보육 및 교육관련 비용 지원	보육료 지원, 아동양육수당지원, 교육비지원, 장학금지원, 학원비지원	- 직접적인 교육서비스의 연계를 제외하고 교육관련 발생하는 비용의 지원
8. 문화 및 여가 (6)	8-1. 공연·전시 관람지원	영화관람, 공연관람, 미술관관람, 박물관관람, 스포츠경기관람, 문화예술현장탐방, 문화예술교육, 문화바우처사업	- 공연 및 전시 관람의 기회 제공



대분류	중분류	예 제	설 명
9. 안전 및 권익보장 (4)	8-2. 체육활동 지원	기타체육활동, 헬스, 요가, 댄스, 무용발레, 에어로빅, 검도, 유도, 태권도, 택견, 수영, 골프, 농구, 축구, 당구, 탁구, 게이트볼, 테니스, 배구, 배드민턴, 볼링, 족구, 줄넘기, 마라톤, 스케이트, 스키, 스포츠바우처, 체육대회참여, 클럽및모임지원, 체육활동물품지원	-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8-3. 체험 및 여행지원	야외활동지원, 동물원 및 놀이공원 견학, 캠프 및 여행지원, 체험활동지원, 호도관광지원, 돌봄여행서비스, 여행바우처	- 여가시간의 다양한 활용 욕구에 부합하는 여행 및 관광프로그램, 지자체별 체험 프로그램, 아동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관광 프로그램, 저소득 계층의 개인여행을 지원하는 여행바우처 등의 서비스
	8-4. 취미활동지원	음악교실, 미술교실, 요리교실, 비눗교실, 원예교실, 다도교실,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참여, 놀이프로그램 참여, 문화강좌 참여, 동아리활동	- 문화·예술, 체육활동, 여행 외 취미·여가 활동을 위한 서비스
	8-5. 문화·여가 관련 비용지원	문화활동 비용지원, 여가활동 비용 지원	-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현금 지원
	9-1. 안전 및 인권교육	인권교육, 아동권리교육, 학대 및 (성)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예방교육, 재난 대비안전교육, 권익보장지원, 노인 권익향상지원	- 인권옹호와 권익보장 관련 개인 대면 상담은 물론 지역사회 단위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식개선 교육, 캠페인 등
9-2. 학대 및 폭력피해지원	폭력피해자신고 및 접수지원, 폭력피해자상담 및 지원, 폭력피해자심사지원,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시설풍소, 성매매피해여성시설풍소 지원	- 폭력 및 학대 피해자들의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	



대분류	중분류	예 제	설 명
	9-3. 법률 및 재무상담	법률상담및지원, 법률정보제공, 법률교육, 개인파산 및 회생절차 지원, 신용회복절차지원, 채무상담, 금융상담, 이혼법률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상담과 행정 상담으로 구분하여 전문 정보의 제공 및 문제해결을 위한 대인의 마련과정을 법률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li> </ul>
	9-4. 법률지원관련 비용지원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 등 관련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서비스로서 법률, 행정지원서비스 대신 관련 문제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후원하는 경우</li> </ul>





## 8 | 지역서비스 제공관리



서비스 제공 계획		첨부파일
수립일자		
종결예정일자		

**\* 단기성과 목표**

**\* 장기성과 목표**

번호	단기목표	번호	장기목표

※ 사례회의에서 설정하는 단기목표, 장기목표를 서비스 제공계획의 목표 란에 입력

**\* 서비스 제공계획**

위기도 영역	개입 목표	서비스 명	대상자	우선 순위	개입 시기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제공 주기	제공 기관명	제공 횟수	신청 상태	담당자

I 사업개요

II 사업운영

III 지역거주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합사례관리

V 자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VII 부록

후보자관리		서비스 제공관리	
-------	--	----------	--

1) 서비스제공관리 →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신청			
신청구분	서비스 연계 신청	신청내용	
지급주기			
신청시작일			
예상종료일			

2) 서비스제공관리 → 서비스 완료

서비스 완료			
제공유형		완료내용	
제공횟수			
제공일자			
제공종료일			

3) 서비스제공관리 → 서비스 반려

서비스 반려	
반려내용	



## 9 서비스 점검관리



\* 서비스제공 계획 및 결과 내역

위기도 영역	제공 서비스명	대상자	개입 시기	시작 일자	종료 일자	계획 횟수	제공 횟수	제공기관명	서비스 진행상태

\* 서비스점검 결과 등록

대상자	제공서비스명(제공주체명)	점검방법	이행여부	변경내용	변경사유	서비스 진행상태

I 단계평가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복지서비스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VII 부록

## \* 서비스평가

점검일자	
제공여부	<input type="radio"/> 제공 <input type="radio"/> 미제공
제공량	<input type="radio"/> 매우 충분 <input type="radio"/> 충분 <input type="radio"/> 보통 <input type="radio"/> 부족 <input type="radio"/> 매우 부족
서비스 내용	<input type="radio"/> 매우 충분 <input type="radio"/> 충분 <input type="radio"/> 보통 <input type="radio"/> 부족 <input type="radio"/> 매우 부족
제공방법	<input type="radio"/> 매우 충분 <input type="radio"/> 충분 <input type="radio"/> 보통 <input type="radio"/> 부족 <input type="radio"/> 매우 부족
대상자 실태 및 변화	



10 | 종결심사관리



종결심사일자			종결유형	<input type="checkbox"/> 장기목표달성 <input type="checkbox"/> 단기목표달성 <input type="checkbox"/> 상황호전 <input type="checkbox"/> 거절이나 포기 <input type="checkbox"/> 연락두절 <input type="checkbox"/> 이사 또는 사망 <input type="checkbox"/> 자체종결 <input type="checkbox"/> 연령 도래	
종결심사결과					
단기성과목표	번호	목표내용	성과구분	성과내역	
장기성과목표	번호	목표내용	성과구분	성과내역	
사례관리자의견 (담당자 의견)					
대상자(가족)의 변화					
종결심사의견 (특이사항/사후관리)			첨부파일		

- I 사업개요
- II 사업운영
-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 IV 아동통합사례관리
- V 지원관리
- 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 VII 부록



2018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http://www.mohw.go.kr/>



# VII

## [부록 6] 전산시스템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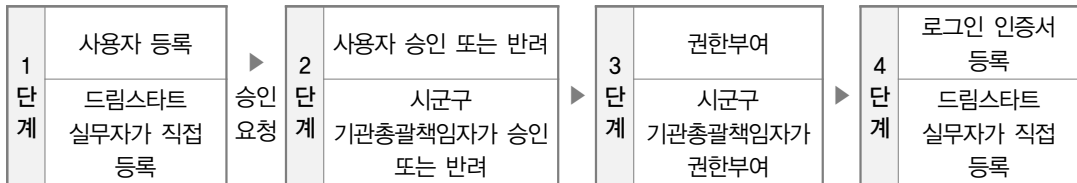
1. 행복e음 권한 및 ID 부여



## 1 행복e음 권한 및 ID 부여



## 가. 행복e음 권한 부여 절차



## 1) 1단계 : 사용자 등록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드림스타트 실무자(담당공무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인 경우, 사용자 등록 진행
  - 시·군·구 지역실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권한 신청 및 부여 가능
  - 새울행정시스템 아이디 사용자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e음) 신규 등록 필요
    - ※ 기존 지자체별로 관리되던 행정정보시스템 로그인 아이디 간 중복발생 우려 및 행복e음 아이디 등록기준에 부합하 지 않는 경우 발생
- 행복e음 사용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직접 접속하여 ① 사용자 등록 클릭 후, 해당 양식 ②사용자 구분 체크 및 실명확인 ▶ ③ 사용자 정보 입력) 작성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주소 : <http://10.184.26.8/swsdn/login.jsp>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 등록 입력 절차]

### ① 사용자 등록

**행복e음 사용자등록**

**행복e음 신규 가입신청**  
※신규, 퇴직, 가입신청 반려 시 가입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행복e음 가입신청 정보 수정**  
※가입신청 정보 수정 및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용자 구분 체크 및 실명확인

**1. 사용자구분**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에 따라 가입절차가 다릅니다.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을 선택하십시오.

**공무원**  
(복지담당 및 복지업무의 담당)

**비공무원**

**2. 실명확인**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실명확인**

**3. 행정구분 및 부서 선택**

행정구분:  보건복지부  법무처(중앙)  법무처(실무)  시도  시군구

(+)부서:  **부서조회**

**다음**

I 사업개요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합사례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VII 부록

### ■ 사용자 구분 선택

- 드림스타트 담당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복지담당 및 복지업무 외 담당)
-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인 경우 : 비공무원

### ■ 실명확인

- 사용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실명확인
-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시군구' 및 부서 선택 후, [다음] 클릭

## ③ 사용자 정보 입력

#### 4. 사용자 정보 입력

**■ 아이디( ID ) 정보**

(\*)로그인 아이디  중복 확인 6~32자의 영문,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10~32자의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조합으로 입력하십시오.  
(단, 로그인 아이디와 개인정보, 수속하기 이전 비밀번호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비밀번호 재확인

(\*)비밀번호 찾기 질문 **선택하십시오.**

(\*)비밀번호 찾기 답변

세움살결시스템 사용자 아이디  (예시 : 시군구의 경우 세움살결시스템 사용자 아이디)

전자결재 아이디

**■ 부서**

(\*)부서

**■ 담당자 정보**

(\*)한글이름  임용일자  담당구분

(\*)재용구분 **선택하십시오.**

집주소  우편번호

집전화번호 **선택**   휴대폰번호 **선택**   (\*)사무실전화번호 **선택**

사무실팩스번호 **선택**   담당업무내용

**■ 이메일**

(\*)E-Mail  선택하십시오

참고사항 : (\*) 표시는 필수입력항목입니다.



- 아이디 정보
  - 필수 기재항목 : 로그인, 비밀번호, 비밀번호 재확인, 비밀번호찾기 질문, 답변
  - 선택 기재항목 : 새울행정시스템 사용자 아이디, 전자결재 아이디
- 부서
  - 필수기재항목으로, 드림스타트가 소속된 해당부서명 선택
- 담당자 정보
  - 필수기재항목 : 이름, 채용구분, 사무실 전화번호
  - 선택기재항목 : 임용일자, 담당구분, 집주소, 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 ※ 선택기재항목이기는 하나, 최대한 상세히 기재
- 이메일
  - 필수기재항목으로, 개인 이메일 정보 입력

#### 참고

#### 사용자 로그인 아이디(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록기준

- ▶ 로그인 아이디 등록기준
  - 6자리 이상~32자리 이하로 영문 또는 숫자로 구성
  - 주민등록번호나 연속숫자, 한 가지 문자 등 사용 금지
  - 한글 아이디 및 시스템 예약어로 시작되는 아이디는 사용 불가  
(-SYSTEM-, -SWSDN-, -ADMIN-, ADMINISTRATOR- 등으로 시작되거나 포함된 단어)
- ▶ 비밀번호 등록기준
  - 9자리 이상~32자리 이하로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한 구성
  - 주민등록번호나 연속 숫자, 한 가지 문자 등 사용 금지
  - 보안을 위해 아이디와 동일한 비밀번호 사용 불가
  - 개인의 비밀번호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암호화되어 관리되며, 비밀번호 분실 시 본인 확인 후, 초기화 처리

## 2) 2단계 : 사용자 승인 또는 반려

- 해당 시·군·구 기관총괄책임자가 승인 처리 수행
- 각 기관별 사용자 등록 요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 사실 여부 확인 후, 적합자에 한하여 승인 처리

## 3) 3단계 : 권한 부여

- 드림스타트 담당자의 신청 후, 해당 시·군·구 기관총괄책임자가 권한 부여
- 드림스타트 담당자 : 권한부여 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작성 후, 해당 시·군·구 기관총괄 책임자에게 신청
- 해당 시·군·구 기관총괄책임자 : 권한 분류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실무자의 업무 범위에 부합하도록 권한 부여

[드림스타트 실무자 행복e음 권한 등급]

구분	권한
드림스타트 담당공무원	시군구드림스타트담당(공무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시군구드림스타트담당(비공무원)

※ 해당 권한으로 사용가능한 사회복지정보시스템(행복e음) 메뉴 : 상담·신청, 사례관리, 자원관리

### 참고

### 권한 부여 관련 유의사항

- 행복e음 아이디는 사용자 1명당 1개의 아이디만 부여 가능하며, 이미 부여된 아이디 변경은 불가
- 드림스타트 권한 이외 추가 권한 부여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각 사군구 기관총괄 책임자의 책임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드림스타트 실무자에게는 반드시 '드림스타트 권한'만 부여
- 업무 이외의 용도로 행복e음 시스템 활용, 대상자 정보에 대한 과도한 조회, 개인정보 유출, 타인에게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를 유출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는 법에 의한 처벌 가능

## 4) 4단계 : 로그인 인증서 등록

- 사용자 등록 후, 해당 시·군·구 기관총괄책임자에 의해 승인 처리되면 개인정보수정 화면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 공인인증서는 GPKI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경우 NPKI로 등록 가능

['GPKI'와 'NPKI']

구분	내용
GPK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자치부에서 인증한 전자인증체제</li> <li>■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인증서</li> </ul>
NPK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부에서 인증한 전자인증체제</li> <li>■ 일반국민들이 사용하는 인증서로 전자상거래 등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이에 해당 ※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 개인 금융활동에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 등록 가능</li> </ul>

## 나. 행복e음 권한 변경 및 중지

### 1) 대상

- 인사이동, 조직변경, 퇴직 등으로 담당업무 변경 또는 종료되는 사용자
- 행복e음 권한 부여 이후 3개월간 로그인 이력이 없는 사용자

### 2) 방법

- 권한 변경 및 중지 처리 업무는 해당 시·군·구 기관총괄책임자가 수행
- 비공무원(아동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정보변경 및 중지 처리에 대한 관리 또한 해당 시·군·구 기관총괄책임자가 수행  
※ 업무권한 부여는 공무원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여 주기적으로 사용 실태를 점검



2018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http://www.mohw.go.kr/>



# VII

## [부록 7]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매뉴얼

1.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도구의 이해
2.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의 실시
3.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결과의 활용
4. 사정도구 세부문항별 평정
5. 참고자료



## 1 |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도구의 이해



### 가. 사정도구의 개발

#### 1) 필요성 및 목적

- 드림스타트는 사례관리에 중점을 둔 취약계층 아동복지사업으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서비스를 연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서비스를 연계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의 문제, 욕구 등에 대한 사정이 필요함. 즉 현재 상황, 다양한 욕구 및 문제, 미래의 발생 가능한 위기요인, 강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및 그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합당한 사정도구가 있어야 함
- 드림스타트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효과적인 사정도구는 어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상세하게 판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가족과 아동에게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어떤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계획 방향을 설정해줄 수 있는 ‘서비스 기반 사정도구’임
- 즉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에서의 ‘사정’의 역할은 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발견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2) 개정 배경

- 기존의 ‘위기도 검사도구’는 서비스 제공과 전문 서비스로의 연계를 위한 ‘서비스 욕구’ 파악의 도구라기보다는 전문적인 진단과 욕구 사정 도구의 중간적인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검사도구가 그 자체로서 발달상태에 대한 진단용이기보다는 서비스 연계를 위한 서비스 욕구 사정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간소화 되어야 함
- 기존 위기도 검사도구의 평정 기준이 ‘전혀 문제가 없다’, ‘약간 문제가 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로 이루어져 경계가 다소 불명확함. 단순 관찰과 보호자의 기술만으로 ‘약간’, ‘상당히’, ‘심각’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며,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기도 항목에 대한 판단 기준과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함





- 위기도 검사에서 드러난 사항이 점수 위주로 위기도를 평가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실제 서비스 계획과 서비스 평가 체계와의 연관성이 부족함. 또한 위기도 검사도구는 총점을 기준으로 위기도 등급 및 검사주기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사례관리 등급은 총점에 의해 결정하기 보다는 어떤 욕구(문제)에 대한 ‘개입의 긴급성’과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기인한 사례관리 집중도로 판정하도록 해야 함. 즉 드림 스타트에서는 ‘검사 (test)’가 아닌 ‘사정(assessment)’을 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며, 지표의 간소화·간명화가 필요함
- 이러한 근거로 인해 위기도 검사도구의 체계, 문항 등이 취약계층 아동들을 모두 위험군이라고 가정하는 듯한 ‘위기도’ 명칭은 현재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문제 및 욕구 파악이라는 ‘사정’의 목적에 맞게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도구’로 변경함

## 나. 사정도구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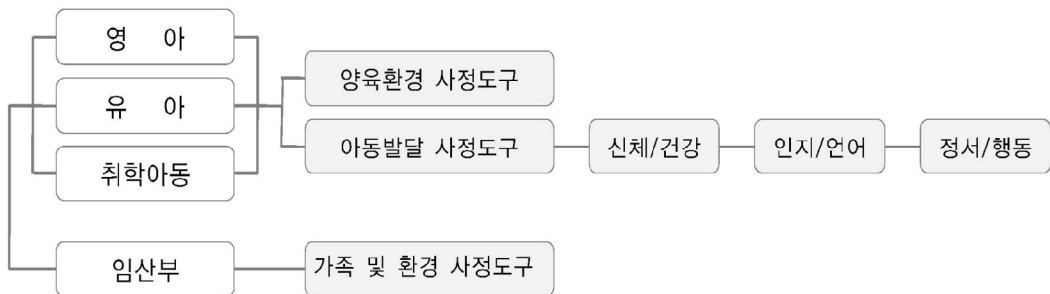
### 1) 특징

- 정확하고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 연령에 따라 검사도구 구분, 문항별 예시문항 기술, 평가 정보원의 다양성 확보
- 가족과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고 어떤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계획 방향을 설정해주는 ‘서비스 기반 사정도구’

구분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도구
연령 세분화	연령에 따라 영아용, 유아용, 취학아동용, 임신부용으로 구분
예시문항 기술	해당 문항 의미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문항 기술
서비스 기반 사정도구	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에 대한 계획방향을 설정해 주는 ‘서비스 기반 사정도구’
평가 정보원의 다양성 확보	‘소견, 소견자’에 대한 기록을 통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보 경로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확인

## 2) 구성

- 영아용, 유아용, 취학아동용 사정도구는 ‘양육환경 사정도구’, ‘아동발달 사정도구’ 총 두 가지 지표로 구성
- 임신부용 사정도구는 ‘가족 및 환경 사정도구’ 한 가지 지표로 구성
  - 양육환경 사정도구
    - 방임, 양육자와 가족 간의 관계, 양육태도, 주거환경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
    - 영아용, 유아용, 취학아동용 모두 총 10가지 문항으로 구성
  - 아동발달 사정도구
    - 아동이 발달과업을 적절하게 달성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
    - 아동의 발달 영역에 따라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세 가지 영역에서 정상발달의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 확인
    - 영아용 5문항, 유아용 7문항, 취학아동용 7문항으로 구성
  - 가족 및 환경 사정도구
    - 건강한 출산을 목적으로 임신부에게 필요한 건강과 생활습관, 환경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
    - 양육환경 사정도구에 준하는 것으로 총 8가지 문항으로 구성



[ 그림 1 ]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도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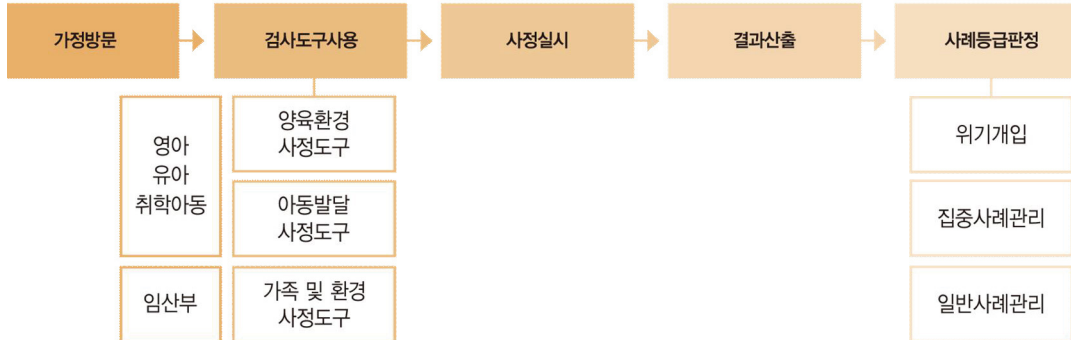


## 2 |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의 실시



### 가. 사정절차

-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의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대한 사정



[ 그림 2 ] 사정절차

### 나. 사정방법

#### 1) 가정방문

-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임산부의 경우, 가족 및 환경)에 대한 사정 실시
- 아동 및 가족(주양육자)과의 면담, 가정환경 관찰
  - ※ 초기상담, 인적정보관리 동시 진행 가능하며, 가정방문 전에 사정도구 문항 내용 반드시 숙지

#### 2) 도구사용

- 대상자의 만연령에 해당하는 사정도구 선택
  - 0세 ~ 만3세 미만 : 영아용 사정도구
  - 만3세 이상 ~ 취학전 유아 : 유아용 사정도구
  - 취학아동 이상 : 취학아동용 사정도구
  - 임산부 : 임산부용 사정도구
- ※ 대상자의 만 연령이 유아에 해당되더라도 현재 취학상태라면 취학아동용 사정도구를 사용하고, 대상자의 만 연령이 취학아동에 해당되더라도 현재 미취학상태라면 유아용 사정도구 사용

- 아동(영아, 유아, 취학아동)은 ‘양육환경 사정도구’와 ‘아동발달 사정도구’를 사용하여 사정하고, 임산부는 ‘가족 및 환경 사정도구’를 사용하여 사정
  - 아동발달 사정도구 문항은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의 발달영역별로 구분되어 있음

### 3) 사정실시

#### (1) 항목구성

문항 (*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V표 해 주십시오)	문항		문항점수	
	없음	징후 또는 의심	없음	있음
3	섭식 문제가 있다.	0	1	3
<input type="checkbox"/> 지나치게 먹지 않아, 하루에 한 끼 먹이기도 힘들다. <input type="checkbox"/> 지나치게 편식이 심하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려 하지 않는다.		→ 예시문		
조건 :		조건자 :		
		→ 조건,조건자		

#### (2) 대상자 정보 기입

- 해당 사정도구에 대상자의 정보(평가일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를 기입함

**양육환경 사정도구(만 3세 이상~7세 미만)**

※ 위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취학상태이면 취학 아동용을 사용해 주십시오.

◆ 평가일자 : <u>2016. 2. 1</u>	◆ 아동 이름 : <u>김드림</u>
◆ 아동 생년월일 : <u>2012. 3. 13</u>	◆ 성별 : <u>남</u>

#### (3) 점수부여

- ※ 대상자의 문제(욕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사정도구에서는 명백한 사실이나 근거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징후나 의심이 되는 경우도 함께 사정함

① 대상자와 가족의 문제(욕구)가 각 문항에 속한 예시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문항별로 점수를 부여함

가. 예시문의 좌측에 위치한 칸에 아동 및 가족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모두 체크나, 체크된 예시문이 ‘징후 또는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문항에 ‘1점’을 부여하고, ‘명백한 관찰결과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문항에 ‘2점’을 부여



- 한 개의 예시라도 ‘징후 또는 의심(1점)’ 또는 ‘있음(2점)’에 해당된다면 문항에 해당 점수를 부여해야함
  - 한 개의 예시만 해당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면 2점을 부여하고, 모든 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징후만 있다면 1점을 부여함
  - 여러 예시에 해당되는 경우 복수체크 가능. 단, 여러 예시에 해당된다고 해서 사정 점수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아동 및 가족의 다양한 문제/욕구를 파악하여 관련된 해당 서비스를 연결하는데 쓰임
- 다. 문항에 관련된 예시들이 ‘징후 또는 의심(1점)’, ‘있음(2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인 ‘있음(2점)’으로 점수 산정

항 목 (※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없음	징후 또는 의심	있음
1	아동 방임이나 학대가 있다.	0	1	2✓
	<input type="checkbox"/>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된다는 이웃의 진술이 있는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의심스러움(1점 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이웃을 통해 사실 확인됨(2점 해당) <input type="checkbox"/>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아동학대/방임으로 의심되는 경우 ( )			

- ② 예시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문항과 관련된 문제(욕구)가 발견된다면, 해당 문항에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단, 소견란에 점수 부여에 대한 근거를 함께 기입해야 함
- ③ 제시된 문항 및 예시문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문항에 ‘0점’을 부여함

〈 표 1 〉 문항의 평정기준

평점	문제수준	설 명
0	없음	제시되는 문항과 관련 예시에 전혀 해당되지 않을 때
1	징후 또는 의심	명백한 관찰결과나 객관적인 근거는 없지만 제시되는 문항과 관련 예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측되거나 혹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됨
2	있음	제시되는 문항과 관련 예시에 해당되는 명백한 관찰결과나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

- ④ ‘소견’과 ‘소견자’에는 해당 문제(욕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정보인지를 기술

I 사례조사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학사례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양호 및 조정  
VII 부록

- 사례관리자가 아닌 다른 정보원(교사, 사회복지사, 전문의 등)으로부터 얻은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소견자에 해당 정보원과 해당 소견을 기술
- 사례관리자의 관찰 및 판단에 의해 체크된 문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소견’ 및 ‘소견자’를 기술(단,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됨)

4	언어 및 인지영역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	0	1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지시를 내리려면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해 여러 번 반복 설명해 주어야 한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못해 여러 번 확인해야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용하는 어휘 및 문장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소견 : 간단한 말이나 질문의 이해가 어려우며,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임(언어장애 3급에 해당) 소견자 : OO언어심리치료센터 심리치료사			

- ⑤ 사정도구 문항 외에 추가로 파악된 정보, 체크된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부가설명, 사례관리 시 고려되어야 할 특성 등은 사정도구 하단의 ‘특이사항’ 란에 기록
- 현재는 문제 행동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향후 문제행동으로 드러날 여지가 있는 의심스러운 요인 발견 시 기록해 두었다가 사례관리시 참고
  - ‘특이사항’에 추가로 기록할 정보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됨



### 장애아동 사정시 참고사항

- ‘장애’로 인해 아동발달 사정도구의 문항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진단받은 장애가 있는 경우, 아동발달 사정도구의 1번 문항(아동의 중증장애 또는 질환)에 해당이 됨. 장애로 인해 유발되는 발달적 증상들인 경우에는 1번 문항에만 체크하고, 동반되는 증상 관련 문항에는 체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시〉 지적장애를 판정받은 아동은 ‘1번 문항’ 이외에도 아동발달 사정도구의 ‘4번(언어 및 인지 언어 발달에 어려움)’과 ‘5번(기초학력 수준에 문제)’에 해당될 수 밖에 없음. 이런 경우에는, ‘1번 문항’에만 체크하여 전문기관(ex. 장애인 복지관)에 연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단, 장애로 인해 유발되는 발달적 증상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정시 관련 문항에 체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예시〉 절단장애가 있는 아동은 ‘1번 문항’에 해당됨. 하지만 이 아동이 ‘인지/언어’ 영역에서 문제(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문항에 체크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주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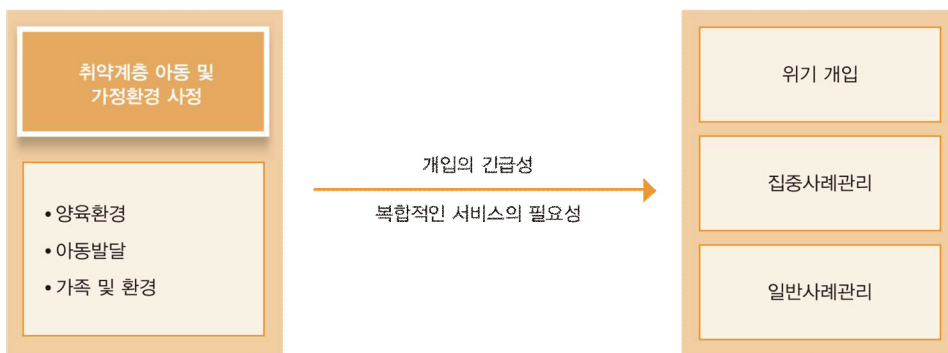
#### 4) 결과산출

- 점수가 부여된 문항 개수 산출(전산에서는 자동적으로 산출)
  - 해당 개수는 '징후 또는 의심(1점)' 또는 '있음(2점)'에 체크된 총 문항 수이며, 이는 사례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됨
  - 사정도구 양식마다 해당개수가 산출됨
    - ⇒ 아동 : 양육환경 사정도구, 아동발달 사정도구
    - ⇒ 임신부 : 가족 및 환경 사정도구

• 체크된 예시의 개수는 점수 및 사례등급과는 관계가 없음

#### 다. 사례등급 판정

-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에서 사례관리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은 '개입의 긴급성'과 '복합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임
  - 개입의 긴급성을 기준으로 '위기개입' 대상을 구분함. 예를 들어, 아동학대가 있다는 징후 또는 의심이 있거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사례관리자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개입해야 함
  - 복합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집중사례관리'와 '일반사례관리'를 구분함. 대상 아동 및 가족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복지·보육·건강의 통합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크며, 사례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을수록 '집중 사례관리' 등급이 부여됨



[ 그림 3 ] 사례관리 등급의 분류 기준

## 1) 위기개입

- 아동학대, 방임, 가정폭력 등 아동과 가족에게 위기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
- 사례관리자가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
- 위기개입에 해당하는 문항에 1점(징후 또는 의심), 2점(있음)에 체크된 경우, 자동적으로 위기개입 대상으로 분류됨



### 위기개입 판정기준

- 아동(영아, 유아, 취학아동) : ‘양육환경 사정도구’에서 1번(아동방임이나 학대), 2번(심각한 가족 갈등이나 배우자 학대) 문항에 해당되는 경우
- 임신부 : 가족 및 환경 사정도구 1번(심각한 가족 갈등이나 배우자 학대), 2번(정신장애, 신체장애, 심각한 질환) 문항에 해당되는 경우

## 2) 집중사례관리

- 대상 아동과 가족이 복합적인 욕구 및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
- 양육환경과 아동발달에 대한 문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집중적인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 집중사례관리 판정기준

- 아동(영아, 유아, 취학아동)
  - 양육환경 사정도구 : ‘위기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문항 2개(아동학대, 가족갈등이나 배우자 학대)를 제외한 나머지 8개 항목 중에서 4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아동발달 사정도구 : 영아는 총 5개 문항 중에서 2개 이상, 유아/취학아동은 총 7개 문항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임신부 : ‘가족 및 환경 사정도구’ 중에서 ‘위기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문항 2개(아동학대, 임신부의 심각한 장애 및 질환)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문항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3) 일반사례관리

- 대상 아동과 가족의 욕구 및 문제가 복합적이지 않지만, 관련 서비스 연계를 통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으나, 문제에 대한 서비스 연결이 이루어져 문제가 안정화된 경우로 모니터링과 통상적인 관리를 하는 경우에 해당



#### 일반사례관리 판정기준

- 아동(영아, 유아, 취학아동)
  - '양육환경 사정도구' : '위기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문항 2개(아동학대, 가족갈등이나 배우자 학대)를 제외한 나머지 8개 항목 중에서 3개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 '아동발달 사정도구' : 영아는 총 5개 문항 중에서 1개에 해당되는 경우, 유아/취학 아동은 총 7개 문항 중에서 2개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 임신부 : '가족 및 환경 사정도구' 중에서 '위기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문항 2개(아동학대, 임신부의 심각한 장애 및 질환)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문항 중에서 2개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 사례등급 판정기준

구분	영·유아·취학아동			임산부
	[양육환경 사정도구]	[아동발달 사정도구]		[가족 및 환경 사정도구]
		영아	유아·취학아동	
위기개입	1, 2번 문항 중 1개 이상			1, 2번 문항 중 1개 이상
집중 사례관리	8개 문항 중 4개 이상	5개 문항 중 2개 이상	7개 문항 중 3개 이상	6개 문항 중 3개 이상
일반 사례관리	8개 중 1-3개	5개 중 1개	7개 중 1-2개	6개 중 1-2개

- 양육환경 사정도구 및 아동발달 사정도구의 모든 문항에서 '0점(없음)'으로 체크된 경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서 제외(단, 향후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년마다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재사정을 통해 아동 및 가족의 변화 상황 점검)
- 아동의 경우, 두 가지 사정도구(양육환경, 아동발달) 중 더 높게 나온 등급(집중사례관리) 일반사례관리)으로 최종 사례등급이 결정됨



### 장애아동 사정시 참고사항

- ‘양육환경 사정도구’와 ‘아동발달 사정도구’에서의 사례등급이 다를 경우에는?
  - 사례등급은 해당양식(양육환경 사정도구, 아동발달 사정도구, 가족 및 환경 사정도구)의 해당 개수에 따라 구분됨. 아동의 경우, ‘양육환경 사정도구’, ‘아동발달 사정도구’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사정도구에서 사례등급이 다르게 나온 경우에는 더 높은 등급 (집중사례관리) 일반 사례관리)으로 판정함
  - 〈예시〉 초등학교 3학년 아동에 대해 사정을 실시한 결과, 위기개입 문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양육환경 사정도구의 문항에서는 2개, 아동발달 사정도구에서는 3개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관리 등급은?
    - 양육환경 사정도구에서는 일반사례관리대상에 해당되지만, 아동발달 사정도구에서 집중사례관리대상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이 아동의 최종 사례등급은 집중사례관리 대상임



### 3 |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결과와 활용



#### 가. 개입서비스 결정

- 대상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결과에 근거하여 개입 서비스 결정
- ‘징후 또는 의심(1점)’, ‘있음(2점)’으로 체크된 모든 문항들에 대한 서비스 개입이 필요함
  - 본 사정도구에서는 ‘징후 또는 의심(1점)’과 ‘있음(2점)’이 문제의 심각성과 같은 수준상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사정점수가 사례등급을 결정하지 않음
  - 다만, ‘징후 또는 의심(1점)’과 ‘있음(2점)’은 개입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징후 또는 의심(1점)’과 ‘있음(2점)’의 개입서비스 차이
  - 아동 및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욕구)가 정확한 진단이나 근거는 없지만 징후를 보이거나 의심스러운 경우(1점)에는 해당하는 문제(욕구)의 전문적인 진단이나 사정을 위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2점)에는 필요한 전문서비스로 바로 연계함  
(예시) 아동 성장발달 사정에 있어서, 징후를 발견한 경우와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의 차이점
  - 사례1) 사례관리자가 인적정보관리 조사 시, 또래에 비해 성장발달이 느린 듯 하다는 징후를 발견하였다면 :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자가 간단한 검사지(예, PDQ 검사)로 성장발달에 대한 초기 사정을 진행할 수 있음. 그리고 그 결과, 임상적인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한 진단을 받도록 할 것임
  - 사례2) 사례관리자가 인적정보관리 조사중에, 대상아동이 3개월 전에 보건소(혹은 정신보건센터)에서 ‘덴버-II’ 검사를 받은 뒤, 성장발달이 지연되고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으나 아직 적절한 서비스가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파악했다면 : 유관기관(보건소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 서비스 연계를 바로 추진하게 될 것임

#### 나. 등급에 따른 사례관리 주기

- 사례등급(위기개입, 집중사례관리, 일반사례관리)에 따라 사례점검(사례회의) 및 재사정 주기가 형성됨

사례등급	내 용	사례점검(사례회의)	재사정
위기개입	즉각적인 개입을 통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즉시 개입 후, 최대 1개월 이내	최대 3개월 이내
집중사례관리	양육환경과 아동발달에 대한 문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집중적인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최대 3개월 이내	최대 6개월 이내
일반사례관리	모니터링과 통상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최대 3개월 이내	최대 12개월 이내

- 사정도구에서 한 문항도 해당되지 않으면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서 제외됨
  - 단, 향후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년마다 양육환경 및 아동 발달 재사정을 통해 아동 및 가족의 변화 상황을 점검해야 함



#### 사례점검 및 재사정시 참고사항

- 사례점검 및 재사정 주기를 정확하게 지켜야 하나요?
  - 사례등급에 따른 사례점검주기와 재사정주기는 최대한의 기한을 의미함. 제시된 주기안에는 사례점검 및 재사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자에게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 경우, 사례점검 및 재사정을 실시하여 아동과 가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례등급에 따른 사례관리 주기

구분	영·유아·취학아동		[아동발달 시정도구]		임신부
	[양육환경 시정도구]	영아	유아·취학아동	[가족 및 환경 시정도구]	
위기개입	① 아동방임, 학대 ② 가족갈등 및 배우자 학대 ▶ 2개 문항 중 1개 이상 해당				① 가족갈등 및 배우자 학대 ② 임신부 장애 및 심각한 질환 ▶ 2개 문항 중 1개 이상 해당
	최대 1개월 이내에 사례점검, 3개월 이내에 재사정 실시				
집중 사례관리	③ 양육자 장애 및 심각한 질환 ④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⑤ 양육자 알코올·약물·도박중독 등 ⑥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비치 ⑦ 아동 건강, 위생 불량 ⑧ 식사제공 미흡 ⑨ 성장발달환경 미제공 ⑩ 양육태도 미흡 ▶ 8개 문항 중 4개 이상 해당	① 아동 중증장애 및 질환 ② 아동신체발달 부진 및 건강문제 ③ 섬식문제 ④ 언어 및 인지발달 문제 ⑤ 정서 및 행동발달 문제 ▶ 5개 문항 중 2개 이상 해당	① 아동 중증장애 및 질환 ② 아동신체발달 부진 및 건강문제 ③ 섬식문제 ④ 언어 및 인지발달 문제 ⑤ 정서 및 행동발달 문제 ⑥ 수리, 기초학력 문제 ⑦ 총동조질, 공격성, 사회부적응문제 ▶ 7개 문항 중 3개 이상 해당	③ 경제적 어려움 ④ 임신부 정기검진 ⑤ 식사, 영양 ⑥ 약물 오남용 ⑦ 총도문제(알코올, 약물, 도박 등) ⑧ 흡연 ▶ 6개 문항 중 3개 이상 해당	
	최대 3개월 이내에 사례점검, 6개월 이내에 재사정 실시				
일반 사례관리	③ 양육자 장애 및 심각한 질환 ④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⑤ 양육자 알코올·약물·도박중독 등 ⑥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비치 ⑦ 아동 건강, 위생 불량 ⑧ 식사제공 미흡 ⑨ 성장발달환경 미제공 ⑩ 양육태도 미흡 ▶ 8개 문항 중 1-3개 해당	① 아동 중증장애 및 질환 ② 아동신체발달 부진 및 건강문제 ③ 섬식문제 ④ 언어 및 인지발달 문제 ⑤ 정서 및 행동발달 문제 ▶ 5개 중 1개 해당	① 아동 중증장애 및 질환 ② 아동신체발달 부진 및 건강문제 ③ 섬식문제 ④ 언어 및 인지발달 문제 ⑤ 정서 및 행동발달 문제 ⑥ 수리, 기초학력 문제 ⑦ 총동조질, 공격성, 사회부적응문제 ▶ 7개 중 1-2개 해당	③ 경제적 어려움 ④ 임신부 정기검진 ⑤ 식사, 영양 ⑥ 약물 오남용 ⑦ 총도문제(알코올, 약물, 도박 등) ⑧ 흡연 ▶ 6개 중 1-2개 해당	
	최대 3개월 이내에 사례점검, 12개월 이내에 재사정 실시				

※ 전체 시정도구에서 한 문항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시태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서 제외됨



## 4 | 사정도구 세부문항별 평정



### 가. 공통 평정기준

- 점수부여 방법
  - 각 문항별로 해당 사항이 없으면 0점(없음), 징후가 있거나 의심이 될 경우에는 1점(징후 또는 의심), 명확한 관찰결과나 정확한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2점(있음)으로 표기
- 해당 '유', '무'로 밖에 판정할 수 없는 문항은 '0점(없음)' 혹은 '2점(있음)'으로 체크함
-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가족구성원에 대한 사정을 실시함
- '양육환경 사정도구'의 '양육자'는 아동의 양육에 주로 관여하는 양육자 모두가 해당됨
- 하나의 이유로 두 가지 문항에 점수가 중복 부여되어서는 안 됨
- 현재 시점(사정 시점)에서 대상자 및 가족이 가지는 욕구 및 문제를 사정함
- 인적정보관리 조사 시 파악한 대상자의 문제 및 욕구 내용에 해당되는 문항에 점수 부여
- 한 문항이라도 신중히 점수부여
  - 점수를 지나치게 쉽게 또는 엄격하게 부여할 경우, 정작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불필요하게 서비스 지원이 남용될 수 있음
  - 초기 사정 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보다는 의심이 될 경우 우선 점수를 부여하고, 이후 점수 부여가 잘못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사정 시 반드시 반영



## 나. 대상별 평정기준

### 1) 영아

〈 표 1 〉 양육환경 사정도구 (만 3세 미만)

◆ 사정일자 : \_\_\_\_\_ ◆ 아동 이름 : \_\_\_\_\_

◆ 아동 생년월일 : \_\_\_\_\_ ◆ 성별: 남, 여

문 항 (※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없음	징후 또는 의심	있음
1	아동 방임이나 학대가 있다.	0	1	2
	<input type="checkbox"/>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된다는 이웃의 진술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아동학대/방임으로 의심되는 경우( )			
	소견 :		소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의 5가지 항목 또는 그 외에 아동학대/방임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함</li> <li>• 양육자뿐만 아니라 주변인에 의해 학대받는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함</li> <li>• 방임은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일컬음</li> <li>• 학대 및 방임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훈육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판정함</li> </ul>			
2	심각한 가족 갈등이나 배우자 학대가 있다.	0	1	2
	<input type="checkbox"/> 가족 내에 심각한 언어적 폭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가족 내에 심각한 신체적 폭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부부 간에 잦은 심각한 싸움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가족 구성원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			
	소견 :		소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구성원에는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을 다 포함함</li> <li>• 폭력이나 갈등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경우인지 판단하여 체크함</li> <li>• 근래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외부의 개입이 있었거나, 부모가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별거중인 경우 해당될 수 있음</li> </ul>			

I 사업개요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합사례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양육환경 조성

VII 부록

3	양육자에게 정신장애/신체장애 혹은 심각한 질환이 있다.	0	1	2
<p><input type="checkbox"/> 정신장애 : 정신분열증( ), 지적장애( ), 우울( ), 기타( )</p> <p><input type="checkbox"/> 신체장애 : 장애종류( )</p> <p><input type="checkbox"/> 양육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질환(ex: 중증 당뇨병, 신장병 등) : 병명( , , )</p> <p>소견 : 소견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자에게 양육에 지장을 주는 정신장애, 신체장애,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경우 본 문항에 체크함</li> <li>• 양육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질환이란, 해당 질환으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함</li> <li>•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았거나, 공식적인 기관에 등록된 분명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있음(2점)'에 체크하고, 징후가 보이는 경우에는 '징후 또는 의심(1점)'에 체크함</li> <li>• 해당하는 장애 및 질환을 기재하고, 장애등급이 산정된 경우에는 '소견'란에 기재함</li> </ul>				
4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0	1	2
<p><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p> <p><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p> <p><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p> <p><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p> <p><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p> <p><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p> <p><input type="checkbox"/>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다.</p> <p><input type="checkbox"/> 연속 3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p> <p>※ 재사정시, 지난 사정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체크함</p> <p>※ 첫 사정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체크함</p> <p>소견: 소견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하는 시기는 지난 사정 이후로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함(첫 사정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함)</li> <li>•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예시에 나온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체크함</li> </ul>				
5	양육자에게 심각한 알콜중독, 약물남용, 도박 등의 문제가 있다.	0	1	2
<p><input type="checkbox"/> 양육자에게 심각한 알콜중독 문제가 있다.</p> <p><input type="checkbox"/> 양육자에게 심각한 약물남용 문제가 있다.</p> <p><input type="checkbox"/> 양육자에게 심각한 도박 문제가 있다.</p> <p>소견 : 소견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자가 알콜중독, 약물남용, 도박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본 문항에 체크함</li> </ul>				





6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환경에 아이를 방치한다.	0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가스레인지 및 화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li> <li><input type="checkbox"/> 집안에 기어 다니거나 보행기를 타다 낙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li> <li><input type="checkbox"/> 집안에 아이가 움직일 때 다칠 수 있는 뾰족한 모서리들이 있다.</li> <li><input type="checkbox"/> 아이를 집안에 혼자 둔 경우가 있다.</li> <li><input type="checkbox"/> 잘 알지 못하는 이웃 등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li> </ul>				
<p>소견 : _____ 소견자 : _____</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기 앞에 가림막 등의 장치가 있는지, 다리미를 아동이 손닿지 않는 곳에 놔두는지 살펴봄. 아동이 어른의 부주의로 인해 화상을 입은 적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함</li> <li>• 집안에 기어 다니거나 보행기를 타다 낙상할 수 있는 공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지 확인함</li> <li>• 뾰족한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덮어씌우거나 다칠 위험이 있는 가구를 밀어놓는 등 신경을 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함</li> <li>• 아이를 집안에 혼자 두거나 잘 알지 못하는 이웃 등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지 확인함. 잘 아는 이웃이라 하더라도 아동을 제대로 돌보기가 어려운 고령의 노인에게 맡기는 경우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정함</li> <li>• 집안 내 환경상 안전사고의 위기에 노출된 환경이 있는 경우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말해주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줄 필요가 있음</li> </ul>				
7	아이의 건강 및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0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특이한 신체증상이 있거나 열이 날 때 체온을 재며 지켜보고 일정 수준 이상일 때 병원 방문을 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li> <li><input type="checkbox"/>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특정 질병, 응급상황 등)에서 비전문적인 시술이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약 투여, 민간요법에 의존한 경우가 있다.</li> <li><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을 제때에 챙겨 하고 있지 않다.</li> <li><input type="checkbox"/> 아기의 체온조절에 위험이 될 만한 상황(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습도가 너무 높은)에서 조절해 주지 않는다.</li> <li><input type="checkbox"/> 젖병, 식기 및 침구, 의복 등의 관리상태가 보기에 상당히 비위생적인 수준이다.</li> <li><input type="checkbox"/> 외출이나 걸레질 후에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아이를 안거나 음식을 먹인다.</li> <li><input type="checkbox"/>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아이를 씻기지 않는다.</li> <li><input type="checkbox"/> 과도한 먼지나 곰팡이가 있는 환경에 방치한다.</li> </ul>				
<p>소견 : _____ 소견자 : _____</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에게 필요한 의학적 조치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정하되, 일상적인 감기 증상에 대해서는 꼭 병원을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물을 많이 먹이거나 열이 너무 오르지 않게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등의 적절한 관리를 하며 지켜본다면 제대로 된 질병관리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li> </ul>				

- I 정례회의
- II 사업운영
-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 IV 아동통합사례관리
- V 지원관리
- VI 아동복지서비스
- VII 아동복지서비스
- VIII 아동복지서비스
- IX 아동복지서비스
- X 아동복지서비스
- XI 아동복지서비스
- XII 아동복지서비스
- XIII 아동복지서비스
- XIV 아동복지서비스
- XV 아동복지서비스
- XVI 아동복지서비스
- XVII 아동복지서비스
- XVIII 아동복지서비스
- XIX 아동복지서비스
- XX 아동복지서비스
- XXI 아동복지서비스
- XXII 아동복지서비스
- XXIII 아동복지서비스
- XXIV 아동복지서비스
- XXV 아동복지서비스
- XXVI 아동복지서비스
- XXVII 아동복지서비스
- XXVIII 아동복지서비스
- XXIX 아동복지서비스
- XXX 아동복지서비스
- 부록

<b>8</b>	<b>아이에게 발달시기에 적절한 수유 및 이유식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적합한 이유식 상황 평가)</b>	<b>0</b>	<b>1</b>	<b>2</b>
소견 : <span style="float: right;">소견자 :</span>				
• 발달시기에 적절한 수유 및 이유식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함(모유수유에 대한 관심과 노력, 월령에 적합한 이유식 상황 평가)				
<b>9</b>	<b>아이의 인지발달을 촉진 하는데 필요한 환경, 자극, 경험을 제공하 지 못한다.</b>	<b>0</b>	<b>1</b>	<b>2</b>
<input type="checkbox"/> 딸랑이, 악기 등 음을 내는 놀이감이나 시각, 청각을 자극할 만한 놀이감이 거의 없다. <input type="checkbox"/> 아이와 얼굴을 맞대고 신체 놀이를 하거나 장난감을 갖고 잘 놀아주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아이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자극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데리고 나가 보여주는 노력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언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아이에게 말을 걸어주는 일이 거의 없다). <input type="checkbox"/> TV나 스마트기기, 비디오물 앞에 아이를 계속 앉아 있게 방치한다(아이가 TV앞에 연속해서 2시간, 하루 4시간 이상 앉아있게 하는지, 아이가 TV를 보면 편해서 일부로 틀어주고 앉혀놓는 경우가 자주 있는지 확인).				
소견 : <span style="float: right;">소견자 :</span>				
• 집안 내 환경은 평소에 아이 발달에 필요한 자극이 주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 이므로, 특정 장난감의 개수 보다는 집안 내 환경에서 평소 부모의 관심과 노력을 볼 수 있는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둠 • 언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될 때 체크함				
<b>10</b>	<b>양육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b>	<b>0</b>	<b>1</b>	<b>2</b>
<input type="checkbox"/> 아이를 충분히 안아주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아이와 눈을 맞추거나 미소를 보여주고 상냥하게 어르는 행동을 보기 어렵다. <input type="checkbox"/> 아이가 울고 보채더라도 배고프거나 불편한지 살피지 않고 스스로 조용해 질 때까지 방치한다. <input type="checkbox"/> 친구나 형제를 때리거나 남의 것을 뺏어도 ‘안 되는 거야’와 같은 설명을 해주면서 다시 돌려주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아이가 싫다는 표현을 해도 억지로 음식을 먹인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울어도 불편한지 살피지 않고 목욕 시킨다. <input type="checkbox"/> 아이를 다루기 힘들다고 때린 적이 있다.				
소견 : <span style="float: right;">소견자 :</span>				
• 제시된 예시에 해당되는지 관찰 및 면담을 통해 확인함				
<b>해당 개수</b>				



〈 표 2 〉 아동발달 사정도구 (만 3세 미만)

문 항 (※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없음	징후 또는 의심	있음
신체 / 건강	<b>1</b> 아동에게 중증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	0	1	2
	<input type="checkbox"/> 선천성 기형: 다지증, 합지증, 잠복고환, 안면기형, 기타( ) <input type="checkbox"/> 신체 및 정신장애: 뇌성마비, 청각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기타( ) <input type="checkbox"/> 성장장애나 왜소증: 염색체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기타( ) <input type="checkbox"/> 심장병, 소아당뇨, 소아암, 간질, 아토피, 천식, 기타( ) 소견 : _____ 소견자 :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았거나, 공식적인 기관에 등록된 분명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있음 (2점)'에 체크하고, 징후가 보이는 경우에는 '징후 또는 의심(1점)'에 체크함</li> <li>• '기타'에는 해당 장애나 질환을 기재함</li> <li>• 장애등급이 산정된 경우에는 '소견'란에 기재함</li> <li>• 질환의 경우, 일상생활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중증 만성 질환일 때 체크함</li> </ul>			
<b>2</b> 신체발달이 연령에 비해 부진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0	1	2	
<input type="checkbox"/> 키가 연령에 비해 작다. (*기준표 참조, 10%이하 불량, 아동의 키= _____ cm) <input type="checkbox"/> 몸무게가 연령에 비해 적다. (*기준표 참조, 10%이하 불량, 아동체중= _____ kg) <input type="checkbox"/> 비만이다. (BMI= 체중/키 <sup>2</sup> , 아동의 BMI= _____ ) (18.5 이하 저체중, 18.5-24.9 정상, 25-29.9 과체중, 30이상 비만) <input type="checkbox"/> 응급실을 찾는 일이 분기별로 1회 이상 되거나, 상해나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1주 이상의 입원도 연간 1회 이상이다. 소견 : _____ 소견자 :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발달의 대표적인 지표가 되는 키와 몸무게가 연령에 적절하지 체크함</li> <li>• 몸무게와 키를 기록하고, 기준표를 참조하여 아동이 대략 몇 %에 해당되는지 기록함 (10% 이하가 되는 경우, 해당 예시에 체크함)</li> <li>•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비만도(Body Mass Index : BMI)를 산출함                      예) 몸무게 30Kg, 키 140Cm일 때 BMI 산출함  <math>BMI = \text{몸무게}/\text{키}^2</math>, 이때 키는 m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math>30/1.4^2=15.3</math>, 18.5 이하이므로 본 사례는 저체중에 해당함</li> </ul>				
<b>3</b> 섭식 문제가 있다.	0	1	2	
<input type="checkbox"/> 하루에 한 끼 먹이기도 힘들만큼 잘 먹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지나치게 편식이 심하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려 하지 않는다. 소견 : _____ 소견자 :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루 한끼 먹이기도 힘들만큼 잘 먹지 않거나, 편식이 매우 심해 점차 건강한 발달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함</li> </ul>				

I 사업개요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돌봄서비스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운영 및 모니터링

VII 부록





정서 / 행동	5	정서 및 행동 발달상에 어려움이 있다	0	1	2
		<p><input type="checkbox"/>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활동과 관심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다. (눈 맞춤이 잘 안 된다/ 다른 사람이나 주변 사물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감정을 주고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언어발달이 지연되어 있거나, 반복적이고 특이한 언어를 사용한다/ 제한적인 관심에 집착하거나, 머리나 손, 몸 등을 반복적으로 흔든다)</p> <p><input type="checkbox"/> 애착관계가 불안정하거나 혼란되어 보인다. (18개월 이상 된 영아가 모와의 분리 상황에서 심하게 떼를 쓰며 저항하고, 모가 돌아와서 달래도 잘 달래지지 않는다/ 18개월 이상 된 영아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선뜻 안기거나 입 맞추는 등 지나치게 접근한다)</p> <p>소견 : <span style="float: right;">소견자 :</span></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는지,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제시된 예시를 통해 확인함</li> <li>18개월 미만 영아는 주양육자가 지속적으로 영아를 돌보고 있는지 여부와 그 외 조건들을 고려하여 애착관련 안정성을 사정함</li> <li>애착 발달에 문제가 보고되는 경우, 문제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아동 발달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외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함. 문제가 보고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면 모-자 애착 강화 프로그램, 영아기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도록 권함</li> </ul>			
<b>해당 개수</b>					

- I 서론
- II 사업운영
-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 IV 아동통합사례관리
- V 지원관리
- VI 아동복지서비스  
운영 및 조정
- VII 부록

## 2) 유아

## 〈 표 3〉 양육환경 사정도구 (만 3세 이상~7세 미만)

※ 위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취학상태이면 취학 아동용을 사용해 주십시오.

◆ 사정일자 : \_\_\_\_\_ ◆ 아동 이름 : \_\_\_\_\_

◆ 아동 생년월일 : \_\_\_\_\_ ◆ 성별 : 남, 여

문 항 (※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없음	징후 또는 의심	있음
1	아동 방임이나 학대가 있다.	0	1	2
<input type="checkbox"/>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된다는 이웃의 진술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아동학대/방임으로 의심되는 경우( )		소견 : _____ 소견자 :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의 5가지 항목 또는 그 외에 아동학대/방임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함</li> <li>• 양육자뿐만 아니라 주변인에 의해 학대받는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함</li> <li>• 방임은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일컬음</li> <li>• 학대 및 방임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훈육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판정함</li> </ul>				
2	심각한 가족 갈등이나 배우자 학대가 있다.	0	1	2
<input type="checkbox"/> 가족 내에 심각한 언어적 폭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가족 내에 심각한 신체적 폭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부부 간에 잦은 심각한 싸움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가족 구성원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		소견 : _____ 소견자 :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구성원에는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을 다 포함함</li> <li>• 폭력이나 갈등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경우인지 판단하여 체크함</li> <li>• 근래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외부의 개입이 있었거나, 부모가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별거중인 경우 해당될 수 있음</li> </ul>				



6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환경에 아이를 방치한다.	0	1	2
<input type="checkbox"/> 가스레인지 및 화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집안에 아이가 걸어 다니다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집안에 아이가 돌아다니다 다칠 수 있는 뾰족한 모서리들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범죄다발 지역에 위치한 집안에 혼자 둔다. <input type="checkbox"/> 길을 혼자 건너다니게 하거나 집 밖에 나가야 하는 심부름을 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input type="checkbox"/> 어른이 옆에서 보지 않은 채 위험한 놀이기구가 있는 곳에 놀게 한다. <input type="checkbox"/> 술에 취한 어른을 집에 자주 데려온다.				
소견:		소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기 앞에 가림막 등의 장치가 있는지, 다리미를 아동이 손닿지 않는 곳에 놔두는지 살펴봄. 아동이 어른의 부주의로 인해 화상을 입은 적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함</li> <li>• 집안에 아동이 걸어다니다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지, 뾰족한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덮어씌우거나 가구를 밀어놓는 등 신경을 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함</li> <li>• 집안 또는 실외 환경상 안전사고의 위기에 노출된 환경이 있는 경우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말해주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줄 필요가 있음</li> <li>• 그 밖에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아이를 방치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함</li> </ul>				
7	아이의 건강 및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0	1	2
<input type="checkbox"/> 특이한 신체증상이 있거나 열이 날 때 체온을 재며 지켜보고 일정 수준 이상일 때 병원 방문을 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가 의심된다. <input type="checkbox"/>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특정 질병, 응급상황 등)에서 비전문적인 시술이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약 투여, 민간요법에 의존한 경우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고 있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아이의 치아, 시력에 관심을 두고 체크하거나 적절한 조치(치과방문, 양치질 지도)를 취한 흔적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아토피나 비만 문제가 있는데 필요한 식이요법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 <input type="checkbox"/> 아이를 하루에 한 번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뛰어놀도록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덥거나, 추운 방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식사 및 침구, 칫솔, 의복 등의 관리 상태가 보기에 상당히 비위생적인 수준이다. <input type="checkbox"/> 외출이나 걸레질 후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아이를 안거나 음식을 먹인다. <input type="checkbox"/> 일주일에 2번 이상 아이를 씻기지 않거나(머리감기 포함), 손 씻기 등을 지도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과도한 먼지나 곰팡이가 있는 환경에 방치한다.				
소견 :		소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에게 필요한 의학적 조치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정하되, 일상적인 감기 증상에 대해서는 꼭 병원을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물을 많이 먹이거나 열이 너무 오르지 않게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등의 적절한 관리를 하며 지켜본다면 제대로 된 질병관리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li> </ul>				





8	아이에게 식사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0	1	2
<p><input type="checkbox"/> 세끼 식사 중 한 끼 이상을 제공하지 않아 굶게 되는 경우가 있다.</p> <p><input type="checkbox"/> 반찬이 매우 부실하다(근래 2주간 아이가 먹은 식단을 질문하여 평가할 수 있음. 예: 김치와 단무지처럼 비슷한 영양소의 반찬 두 가지 이하만 주거나 거의 동일한 반찬을 지속적으로 주는 경우).</p> <p><input type="checkbox"/> 패스트푸드나 과자로 식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예 : 라면이나 초코파이 같은 과자로 저녁을 대체하는 경우가 주 3회 이상).</p> <p>소견 : _____ 소견자 : _____</p>				
<p>• 아동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균형잡힌 식단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함(근래 2주간 아동이 먹은 식단을 질문하여 아동에 대한 식사제공을 확인)</p>				
9	아이의 인지발달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환경, 자극, 경험을 제공 하지 못한다.	0	1	2
<p><input type="checkbox"/> 집에 연령에 적합한 장난감, 책, 한글카드 등이 거의 없다.</p> <p><input type="checkbox"/> 아이와 신체놀이, 그림 그리기, 장난감, 게임 같이 하기 등을 하면서 놀아주는 일이 별로 없다.</p> <p><input type="checkbox"/> 아이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자극(꽃놀이 등의 행사나 꽃이나 눈 등의 계절적 변화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데리고 나가 보여주는 노력이 없다.</p> <p><input type="checkbox"/> 이용할 수 있는(무료) 공연 전시에 아이를 데려간 적이 없다(근래 6개월간 아이와 함께한 활동에 대한 질문을 통해, 위 항목에 대해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제공해줄 수 있는 것들을 주려고 노력을 하거나 관심이 있었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아이에게 말을 자주 걸지 않고 아이의 말에 대답도 길게 하지 않는다.</p> <p><input type="checkbox"/>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지 않는다(아이가 한글을 깨쳐 책을 스스로 읽기 때문에 읽어주지 않는 경우라면 제외).</p> <p><input type="checkbox"/> TV나 스마트기기, 비디오물 앞에 아이를 계속 앉아 있게 방치한다. (아이가 TV앞에 연속 3시간 하루 5시간 이상 앉아있게 한 경우나, 아이가 TV를 보면 편해져서 일부로 틀어주고 앉혀놓는 경우가 종종 있는지).</p> <p><input type="checkbox"/> 컴퓨터 게임시간을 통제하지 않는다(아이가 두 시간 이상 하는데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p>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어린이집 등) 입학 연령이 지났는데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거나, 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필요한 준비물이나 과제물을 잘 챙겨주지 않는다.</p> <p>소견: _____ 소견자 : _____</p>				
<p>• 집안 내 환경은 평소에 아이 발달에 필요한 지적 자극이 주어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므로, 특정 교재나 교구의 수보다는 집안 내 환경에서 평소 부모의 관심과 노력을 볼 수 있는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둠</p> <p>• 부모의 무관심 혹은 기타 사정으로 대부분의 또래 아이들이 받고 있는 유아교육 기관을 통한 교육적 혜택을 아동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함</p>				

- I 사업개요
- II 사업운영
-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 IV 아동복지사제관리
- V 지원관리
- VI 아동복지서비스 운영
- VII 모니터링
- VIII 부록

10	양육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0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아이를 충분히 안아주지 않는다.</li> <li><input type="checkbox"/> 아이와 눈을 맞추거나 미소를 보여주고 상냥하게 말하고 다독거리는 행동을 보기 어렵다.</li> <li><input type="checkbox"/> 아이의 말에 대꾸를 잘하지 않는다.</li> <li><input type="checkbox"/> 아이의 합리적인 요구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지연한다(아이가 춥거나 배고프다고 할 때, 보통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던 일을 멈추고 해주는지, 식사 때 먹지 않는 안 좋은 습관을 고치느라 일부로 지연하는 경우는 제외).</li> <li><input type="checkbox"/> 친구나 형제를 때리거나 남의 것을 뺏어도 '안 되는 거야'와 같은 설명을 해주면서 다시 돌려주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같이 노는 아이를 때리거나 집안 물건을 던지는 등의 예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질문해서 별 다른 제재나 설명 없이 놔두는 경우에 체크할 수 있다).</li> <li><input type="checkbox"/> 아무 때나 자고 먹게 놔둔다(자고 먹는 시간에 대한 질문을 통해 11시가 넘어도 재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등 생활 리듬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경우).</li> <li><input type="checkbox"/>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늦어도 방치한다.</li> <li><input type="checkbox"/> 아이가 싫다는 표현을 해도 억지로 음식을 먹인다.</li> <li><input type="checkbox"/> 아이가 힘들어 하는 과제(학습지)등을 과도하게 강제로 시킨다.</li> <li><input type="checkbox"/> 자지 않으려는 아이에게 말로 설명하기보다 강제로 눕힌다.</li> <li><input type="checkbox"/> 아이에게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 설득 등의 방법보다 체벌을 자주 사용한다.</li> </ul>				
<p>소견 : <span style="float: right;">소견자 :</span></p>				
<p>• 제시된 예시에 해당되는지 관찰 및 면담을 통해 확인함</p>				
<p><b>해당 개수</b></p>				



〈 표 4 〉 아동발달 사정도구 (만 3세 이상~7세 미만)

※ 위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취학상태이면 취학 아동용을 사용해 주십시오.

문 항 (※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 표 해 주십시오.)		없음	징후 또는 의심	있음
1	아동에게 중증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	0	1	2
<input type="checkbox"/> 선천성 기형: 다지증, 합지증, 잠복고환, 안면기형, 기타( ) <input type="checkbox"/> 신체 및 정신장애: 뇌성마비, 청각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기타( ) <input type="checkbox"/> 성장장애나 왜소증: 염색체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기타( ) <input type="checkbox"/> 심장병, 소아당뇨, 소아암, 간질, 아토피, 천식, 기타( )		소견 : 소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았거나, 공식적인 기관에 등록된 분명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있음(2점)’에 체크하고, 징후가 보이는 경우에는 ‘징후 또는 의심(1점)’에 체크함</li> <li>• ‘기타’에는 해당 장애나 질환을 기재함</li> <li>• 장애등급이 산정된 경우에는 ‘소견’란에 기재함</li> <li>• 질환의 경우, 일상생활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중증 만성 질환일 때 체크함</li> <li>• 정서장애(예. ADHD, 틱장애 등)는 본 문항이 아닌 정서/행동 영역의 관련된 문항에 체크함</li> </ul>				
2	신체발달이 연령에 비해 부진하거나 건강 상의 문제가 있다.	0	1	2
<input type="checkbox"/> 키가 연령에 비해 작다. (*규준표 참조, 10%이하 불량, 아동의 키= cm) <input type="checkbox"/> 몸무게가 연령에 비해 적다. (*규준표 참조, 10%이하 불량, 아동체중= kg) <input type="checkbox"/> 비만이다. (BMI= 체중/키 <sup>2</sup> , 아동의 BMI= ) (18.5 이하 저체중, 18.5~24.9 정상, 25~29.9 과체중, 30이상 비만) <input type="checkbox"/> 두통, 복통, 어지러움, 피로감 등을 자주 호소한다. <input type="checkbox"/> 응급실을 찾는 일이 분기별로 1회 이상 되거나, 상해나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1주이상의 입원도 연간 1회 이상이다.		소견 : 소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발달의 대표적인 지표가 되는 키와 몸무게가 연령에 적절한지 체크함</li> <li>• 몸무게와 키를 기록하고, 규준표를 참조하여 아동이 대략 몇 %에 해당되는지 기록함 (10% 이하가 되는 경우, 해당 예시에 체크함)</li> <li>•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비만도(Body Mass Index : BMI)를 산출함                      예) 몸무게 30Kg, 키 140Cm일 때 BMI 산출함  <math>BMI = \text{몸무게}/\text{키}^2</math>, 이때 키는 m로 환산하여 계산함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함  <math>30/1.4^2=15.3</math>, 18.5 이하이므로 본 사례는 저체중에 해당함</li> <li>• 진단받아 관리해야하는 질병이 없다하더라도, 신체적 불편감을 자주 호소하고 입원하거나 응급실을 찾는 일이 빈번한지 확인함</li> </ul>				

- I 사업개요
- II 사업운영
-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 IV 아동통합사례관리
- V 지원관리
- VI 아동복지서비스
- VII 통합사례관리
- VIII 부록

3	섭식 문제가 있다.	0	1	2
<input type="checkbox"/> 지나치게 먹지 않아, 하루에 한 끼 먹이기도 힘들다. <input type="checkbox"/> 지나치게 편식이 심하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려 하지 않는다.				
소견 : _____ 소견자 :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루 한끼 먹이기도 힘들만큼 잘 먹지 않거나, 편식이 매우 심해 장차 건강한 발달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함</li> </ul>				
4	언어 및 인지영역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	0	1	2
<input type="checkbox"/>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으로 가리켜 표시한다. <input type="checkbox"/> 말을 하기는 하지만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 알아듣기 어렵다. <input type="checkbox"/> 또래에 비해 어휘수가 부족하다.				
소견 : _____ 소견자 :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를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함</li> <li>• 말 대신 손이나 몸짓으로 표현하거나, 발음이 심하게 부정확하여 타인이 아동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또래에 비해 어휘수가 부족한 경우 등이 있는지 확인함</li> <li>•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소극적이고 수줍어하는 태도상의 문제가 아니어야 함</li> </ul>				
5	수리영역의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	0	1	2
<b>만 3,4세(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b> <input type="checkbox"/> 1,2,3을 세는 것도 어려워한다. <input type="checkbox"/> 2,3가지 색도 구분하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간단한 대소비교가 어렵다.  <b>만 5,6세(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b> <input type="checkbox"/> 사물을 20개 정도까지 헤아리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사물을 가지고, 더하기와 빼기를 잘 하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사물들의 길이, 크기, 장단, 순서 등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여러개의 사물 중에서 가장 큰(작은) 것은 무엇인지, 가장 긴(짧은) 것은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기본도형들을 가지고 다른 도형을 만들지 못한다.				
소견 : _____ 소견자 :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가 기본적인 인지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사정함</li> <li>• 유아를 직접 만나보고 예시에 제시된 사항들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함</li> </ul>				



6	정서 및 행동발달 상에 어려움이 있다.	0	1	2
<input type="checkbox"/> 눈을 깜박이거나 얼굴 찡그리기, 몸을 움찔거리기, 쿵쿵거리기, 헛기침하기 등의 틱증상을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눈 맞춤이 잘 안 된다. <input type="checkbox"/> 다른 사람이나 주변 사물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감정을 주고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무기력해 보이거나, 기분이 처져 있거나, 자주 우는 모습을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집을 떠나거나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매우 불안해한다.				
소견 : _____ 소견자 :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틱증상은 시간 경과에 따라 증상이 계속 바뀌면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수 있음</li> <li>• 본 문항에 해당하는 경우 틱장애, 주요우울장애, 범불안장애, 분리불안장애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음</li> </ul>				
7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보이고, 공격성, 사회적인 부적응을 보인다.	0	1	2
<input type="checkbox"/>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반항적이고 말을 안 듣는다. <input type="checkbox"/>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다. <input type="checkbox"/> 다른 사람들을 때리거나 싸움을 많이 한다. <input type="checkbox"/> 쉽게 흥분하고,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input type="checkbox"/>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걸돌거나 따돌림을 당한다. <input type="checkbox"/>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에 몰입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소견 : _____ 소견자 :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경우, 본 문항에 체크함</li> </ul>				
<b>해당 개수</b>				

- I 사업개요
- II 사업운영
-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 IV 아동통솔사례관리
- V 지원관리
- VI 아동복지서비스
- VII 아동복지서비스
- VIII 아동복지서비스
- IX 아동복지서비스
- X 아동복지서비스
- XI 아동복지서비스
- XII 아동복지서비스
- XIII 아동복지서비스
- XIV 아동복지서비스
- XV 아동복지서비스
- XVI 아동복지서비스
- XVII 아동복지서비스
- XVIII 아동복지서비스
- XIX 아동복지서비스
- XX 아동복지서비스
- XXI 아동복지서비스
- XXII 아동복지서비스
- XXIII 아동복지서비스
- XXIV 아동복지서비스
- XXV 아동복지서비스
- XXVI 아동복지서비스
- XXVII 아동복지서비스
- XXVIII 아동복지서비스
- XXIX 아동복지서비스
- XXX 아동복지서비스
- 부록

### 3) 취학아동

〈 표 5 〉 양육환경 사정도구 (만 7세 이상~13세 미만)

※ 위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미취학상태이면 유아용을 사용해 주십시오.

◆ 사정일자 : \_\_\_\_\_ ◆ 아동 이름 : \_\_\_\_\_

◆ 아동 생년월일 : \_\_\_\_\_ ◆ 성별: 남, 여

문 항 (※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없음	징후 또는 의심	있음
1	아동 방임이나 학대가 있다.	0	1	2
<input type="checkbox"/>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된다는 이웃의 진술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이 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아동학대/방임으로 의심되는 경우( )		소견 : _____ 소견자 :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의 5가지 항목 또는 그 외에 아동학대/방임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함</li> <li>• 양육자뿐만 아니라 주변인에 의해 학대받는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함</li> <li>• 방임은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일컫음</li> <li>• 학대 및 방임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훈육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판정함</li> </ul>				
2	심각한 가족 갈등이나 배우자 학대가 있다.	0	1	2
<input type="checkbox"/> 가족 내에 심각한 언어적 폭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가족 내에 심각한 신체적 폭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부부 간에 잦은 심각한 싸움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가족 구성원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		소견: _____ 소견자 :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구성원에는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을 다 포함함</li> <li>• 폭력이나 갈등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경우인지 판단하여 체크함</li> <li>• 근래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외부의 개입이 있었거나, 부모가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별거중인 경우 해당될 수 있음</li> </ul>				



3	양육자에게 정신장애/신체장애 혹은 심각한 질환이 있다.	0	1	2
<p> <input type="checkbox"/> 정신장애 : 정신분열증(     ), 지적장애(     ), 우울(     ), 기타(     )  <input type="checkbox"/> 신체장애 : 장애종류(     )  <input type="checkbox"/> 양육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질환(ex: 중증 당뇨병, 신장병 등) : 병명(     ,     ,     )                 </p> <p>                     소견 :     소견자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자에게 양육에 지장을 주는 정신장애, 신체장애,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경우 본 문항에 체크함</li> <li>• 양육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질환이란, 해당 질환으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함</li> <li>•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았거나, 공식적인 기관에 등록된 분명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있음(2점)'에 체크하고, 징후가 보이는 경우에는 '징후 또는 의심(1점)'에 체크함</li> <li>• 해당하는 장애 및 질환을 기재하고, 장애등급이 산정된 경우에는 '소견'란에 기재함</li> </ul>				
4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0	1	2
<p> <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연속 3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                 </p> <p>                     ※ 재사정시, 지난 사정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체크함                      ※ 첫 사정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체크함                 </p> <p>                     소견 :     소견자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하는 시기는 지난 사정 이후로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함(첫 사정에 해당 하는 아동은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함)</li> <li>•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예시에 나온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체크함</li> </ul>				
5	양육자에게 알콜중독, 약물남용, 도박 등의 문제가 있다.	0	1	2
<p> <input type="checkbox"/> 양육자에게 심각한 알콜중독 문제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양육자에게 심각한 약물남용 문제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양육자에게 심각한 도박 문제가 있다.                 </p> <p>                     소견 :     소견자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자가 알콜중독, 약물남용, 도박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본 문항에 체크함</li> </ul>				

- I 사업개요
- II 사업운영
-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 IV 아동복지사제관리
- V 지원관리
- VI 아동복지서비스 운영 및 모니터링
- VII 부록

6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환경에 아이를 방치한다.	0	1	2
<input type="checkbox"/> 아이가 혼자 가스를 제대로 다룰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리를 하도록 방치한다. <input type="checkbox"/> 집에서 누전 등의 위험 요소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치안이 잘 되지 않는 집안에 혼자 둔다. <input type="checkbox"/> 밤늦게 집밖에 나가야 하는 심부름을 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input type="checkbox"/> 어른이 옆에서 보지 않은 채 위험한 놀이기구 에서 놀게 한다. <input type="checkbox"/> 술에 취한 어른을 집에 자주 데려온다.				
소견 : <span style="float: right;">소견자 :</span>				
• 위의 예시 또는 그 밖에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아이를 방치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함				
7	아이의 건강 및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0	1	2
<input type="checkbox"/> 특이한 신체증상이 있거나 열이 날 때 체온을 재며 지켜보고 일정 수준 이상일 때 병원 방문을 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가 의심된다. <input type="checkbox"/>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특정 질병, 응급상황 등)에서 비전문적인 시술이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약 투여, 민간요법에 의존한 경우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아이의 치아, 시력에 관심을 두고 체크하거나 적절한 조치(치과방문, 양치질 지도)를 취한 흔적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아토피나 비만 문제가 있는데 필요한 식이요법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 <input type="checkbox"/> 아이가 종일 밖에 나가지 않고 있어도 방치하고 환기를 자주 시키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덥거나, 추운 방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식사 및 침구, 칫솔, 의복 등의 관리 상태가 보기에 상당히 비위생적인 수준이다. <input type="checkbox"/> 외출이나 걸레질 후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음식을 준비한다. <input type="checkbox"/> 일주일에 2번 이상 아이가 씻도록 하거나(머리감기 포함), 손씻기 등의 지도를 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과도한 먼지나 곰팡이가 있는 환경에 방치한다.				
소견 : <span style="float: right;">소견자 :</span>				
• 아동에게 필요한 의학적 조치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정하되, 일상적인 감기 증상에 대해서는 꼭 병원을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물을 많이 먹이거나 열이 너무 오르지 않게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등의 적절한 관리를 하며 지켜본다면 제대로 된 질병관리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8	아이에게 식사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0	1	2
<input type="checkbox"/> 세끼 식사 중 한 끼 이상을 제공하지 않아 굶게 되는 경우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반찬이 매우 부실하다(근래 2주간 아이가 먹은 식단을 질문하여 평가할 수 있음. 예: 김치와 단무지처럼 비슷한 영양소의 반찬 두 가지 이하만 주거나 거의 동일한 반찬을 지속적으로 주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패스트푸드나 과자로 식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예: 라면이나 초코파이 같은 과자로 저녁을 대체하는 경우가 주 3회 이상).				
소견 : <span style="float: right;">소견자 :</span>				
• 아동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균형잡힌 식단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함(근래 2주간 아동이 먹은 식단을 질문하여 아동에 대한 식사제공을 확인)				





9	아이의 인지발달을 촉진 하는데 필요한 환경, 자극,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	0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 놓인 공간이 없거나 매우 무질서 하게 방치되어 있다.</li> <li><input type="checkbox"/> 집안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소음을 통제해 주는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아이가 시험 공부나 숙제를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주는지 질문하여, 옆에서 TV를 시청하거나 어른들이 떠돌고 노는 등 방해될 수 있는 환경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지 평가).</li> <li><input type="checkbox"/> 아이가 학교 수업외의 취미활동(식물 기르기, 등산 등)을 같이 하거나 하도록 배려한 적이 없다.</li> <li><input type="checkbox"/>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악기나 체육 등의 과외활동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려고 찾아보거나 관심 가진 적이 없다.</li> <li><input type="checkbox"/> 이용할 수 있는(무료) 공연 전시에 아이를 데려간 적이 없다(근래 6개월간 아이와 함께 한 활동에 대한 질문을 통해, 위 항목에 대해 여건이 허락하는 데로 제공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거나 관심이 있었는지 여부).</li> <li><input type="checkbox"/> 아이가 책을 접하도록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책 읽어주기, 구매, 대여, 격려 등). → 아이가 스스로 책을 좋아해서 잘 읽고 있어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라면 제외</li> <li><input type="checkbox"/> TV나 비디오물을 지속적으로 시청해도 제재하지 않는다(아이가 TV앞에 연속 3시간 하루 5시간 이상 앉아있게 하는 경우, 아이가 TV를 보면 편해서 일부러 틀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지).</li> <li><input type="checkbox"/> 컴퓨터 게임시간을 통제하지 않는다(하루에 세 시간 이상 하는 경우에도 제재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li> <li><input type="checkbox"/> 학교에 가져가야 할 준비물을 챙기지 않고 학교 과제를 잘 해가지 않는 상태에서 도와주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li> <li><input type="checkbox"/> 성적이 저조한데도 별 관심이 없거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않는다.</li> </ul>				
<p>소견 : <span style="float: right;">소견자 :</span></p>				
<p>• 제시된 예시에 해당되는지 관찰 및 면담을 통해 확인함</p>				
10	양육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0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아이와 눈을 맞추거나 미소를 보여주고 상냥하게 말하고 다독거리는 행동을 보기 어렵다.</li> <li><input type="checkbox"/> 아이의 말에 대꾸를 잘하지 않는다.</li> <li><input type="checkbox"/> 아이의 합리적인 요구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지연한다(아이가 춤거나 배고프다고 할 때, 보통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던 일을 멈추고 해주는지, 식사 때 먹지 않는 안 좋은 습관을 고치느라 일부로 지연하는 경우는 제외).</li> <li><input type="checkbox"/> 친구나 형제를 때리거나 남의 것을 뺏어도 '안 되는 거야'와 같은 설명을 해주면서 다시 돌려 주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같이 노는 아이를 때리거나 집안 물건을 던지는 등의 예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질문해서 별 다른 제재나 설명 없이 놔두는 경우).</li> <li><input type="checkbox"/> 아무 때나 자고 먹게 놔둔다(자고 먹는 시간에 대한 질문을 통해 11시가 넘어도 재우려고 노력 하지 않는 등, 생활 리듬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경우).</li> <li><input type="checkbox"/> 학교 등에 늦어도 방치한다.</li> <li><input type="checkbox"/> 아이가 싫다는 표현을 해도 억지로 음식을 먹인다.</li> <li><input type="checkbox"/> 아이가 힘들어 하는 과제(학습지)등을 과도하게 강제로 시킨다.</li> <li><input type="checkbox"/> 자지 않으려는 아이에게 말로 설명하기보다 강제로 자게 시킨다.</li> <li><input type="checkbox"/> 아이에게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 설득 등의 방법보다 체벌을 자주 사용한다.</li> </ul>				
<p>소견 : <span style="float: right;">소견자 :</span></p>				
<p>• 제시된 예시에 해당되는지 관찰 및 면담을 통해 확인함</p>				
<p><b>해당 개수</b></p>				



〈 표 6 〉 아동발달 사정도구 (만 7세 이상~13세 미만)

※ 위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미취학상태이면 유아용을 사용해 주십시오.

문 항 (※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없음	징후 또는 의심	있음
1	아동에게 중증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	0	1	2
<input type="checkbox"/> 선천성 기형: 다지증, 합지증, 잠복고환, 안면기형, 기타( ) <input type="checkbox"/> 신체 및 정신장애: 뇌성마비, 청각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기타( ) <input type="checkbox"/> 성장장애나 왜소증: 염색체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기타( ) <input type="checkbox"/> 심장병, 소아당뇨, 소아암, 간질, 아토피, 천식, 기타( )		소견 : _____ 소견자 :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았거나, 공식적인 기관에 등록된 분명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있음 (2점)'에 체크하고, 징후가 보이는 경우에는 '징후 또는 의심(1점)'에 체크함</li> <li>• '기타'에는 해당 장애나 질환을 기재함</li> <li>• 장애등급이 산정된 경우에는 '소견'란에 기재함</li> <li>• 질환의 경우, 일상생활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중증 만성 질환일 때 체크함</li> <li>• 정서장애(예. ADHD, 틱장애 등)는 본 문항이 아닌 정서/행동 영역의 관련된 문항에 체크함</li> </ul>				
2	신체발달이 연령에 비해 부진하거나 건강 상의 문제가 있다.	0	1	2
<input type="checkbox"/> 키가 연령에 비해 작다. (*규준표 참조, 10%이하 불량, 아동의 키= cm) ( ) <input type="checkbox"/> 몸무게가 연령에 비해 적다. (*규준표 참조, 10%이하 불량, 아동체중= kg) ( ) <input type="checkbox"/> 비만이다 (BMI= 체중/키 <sup>2</sup> , 아동의 BMI= ) (18.5 이하 저체중, 18.5-24.9 정상, 25-29.9 과체중, 30이상 비만) <input type="checkbox"/> 두통, 복통, 어지러움, 피로감 등을 자주 호소한다. <input type="checkbox"/> 응급실을 찾는 일이 분기별로 1회 이상 되거나, 상해나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1주 이상의 입원도 연간 1회 이상이다.		소견 : _____ 소견자 :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발달의 대표적인 지표가 되는 키와 몸무게가 연령에 적절하지 체크함</li> <li>• 몸무게와 키를 기록하고, 규준표를 참조하여 아동이 대략 몇 %ile에 해당되는지 기록함(10% 이하가 되는 경우, 해당 예시에 체크함)</li> <li>•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비만도(Body Mass Index : BMI)를 산출함                      예) 몸무게 30Kg, 키 140Cm일 때 BMI 산출함  <math>BMI = \text{몸무게}/\text{키}^2</math>, 이때 키는 m로 환산하여 계산함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함  <math>30/1.4^2=15.3</math>, 18.5 이하이므로 본 사례는 저체중에 해당함</li> <li>• 진단받아 관리해야하는 질병이 없다하더라도, 신체적 불편감을 자주 호소하고 입원하거나 응급실을 찾는 일이 빈번한지 확인함</li> </ul>				



<b>3</b>	<b>섭식 문제가 있다.</b>	<b>0</b>	<b>1</b>	<b>2</b>
<input type="checkbox"/> 지나치게 먹지 않아, 하루에 한 끼 먹이기도 힘들다. <input type="checkbox"/> 지나치게 편식이 심하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려 하지 않는다. 소견 : _____ 소견자 :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루 한끼 먹이기도 힘들만큼 잘 먹지 않거나, 편식이 매우 심해 장차 건강한 발달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함</li> </ul>				
<b>4</b>	<b>언어 및 인지영역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b>	<b>0</b>	<b>1</b>	<b>2</b>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지시를 내리려면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해 여러 번 반복 설명해 주어야 한다/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못해 여러 번 확인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사용하는 어휘 및 문장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소견 : _____ 소견자 :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사정함</li> <li>•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부정확한 발음이나 소극적이고 수줍어하는 태도상의 문제가 아니어야 함</li> </ul>				
<b>5</b>	<b>기초학력 수준에 문제가 있다.</b>	<b>0</b>	<b>1</b>	<b>2</b>
<input type="checkbox"/> (기초학력고사를 치르는 학년의 경우) 학력고사 결과 기초학력수준에 미달한다. <input type="checkbox"/> 또래에 비해 읽기에 문제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또래에 비해 쓰기에 문제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또래에 비해 산수에 문제가 있다. ※ 기초학력 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사의 소견을 받아서 참조하고 이를 반드시 기재할 것 소견 : _____ 소견자 :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읽기 문제 : 3학년 이상에서 단어를 잘못 읽거나 빼먹고 읽거나 없는 글자를 넣어 읽는 문제가 있을 때, 읽기 속도가 느리고 읽고 나서도 내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면 본 문항에 체크함. 초등학교 1, 2학년은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위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적용함</li> <li>• 쓰기문제 : 3학년 이상에서 맞춤법에 오류가 잦고, 문법적 오류도 많으며, 전반적으로 문장의 구성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본 문항에 체크함</li> <li>•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에게는 10이내의 숫자들로 간단한 덧셈, 뺄셈을 시켜보아 평가하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아동에게는 두 자리수의 덧셈, 뺄셈과 구구단을 시켜보고 판단하도록 함</li> </ul>				
<b>6</b>	<b>정서 및 행동발달 상에 어려움이 있다</b>	<b>0</b>	<b>1</b>	<b>2</b>
<input type="checkbox"/> 눈을 깜박이거나 얼굴 찡그리기, 몸을 움찔거리기, 쿵쿵거리기, 헛기침하기 등의 틱증상을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눈 맞춤이 잘 안 된다. <input type="checkbox"/> 다른 사람이나 주변 사물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감정을 주고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무기력해 보이거나, 기분이 처져 있거나, 자주 우는 모습을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자기가 남보다 못하며,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input type="checkbox"/> 어떤 동물이나 상황, 장소에 대해 지나치게 겁을 내고 무서워한다. 소견 : _____ 소견자 :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틱증상은 시간 경과에 따라 증상이 계속 바뀌면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수 있음</li> <li>• 본 문항에 해당하는 경우 틱장애, 주요우울장애, 범불안장애, 분리불안장애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음</li> </ul>				

- I 단계평가
- II 사업공모
-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 IV 아동복지시설관리
- V 자원관리
- VI 아동복지서비스 운영 및 모니터링
- VII 부록

7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보이고, 공격성, 사회적인 부적응을 보인다.	0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쉽게 흥분하고,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고함을 치거나, 갑작스럽게 화를 낸다.</li> <li><input type="checkbox"/> 집, 학교 등에서 말을 안 듣고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어른에게 대든다.</li> <li><input type="checkbox"/>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다.</li> <li><input type="checkbox"/> 신체적, 언어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공격하고, 자주 싸운다.</li> <li><input type="checkbox"/>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잘 속인다.</li> <li><input type="checkbox"/> 남의 물건을 훔친다.</li> <li><input type="checkbox"/> 가출이나 무단결석을 한다.</li> <li><input type="checkbox"/>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약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li> <li><input type="checkbox"/>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걸돌거나 따돌림을 당한다.</li> <li><input type="checkbox"/>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에 몰입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li> <li><input type="checkbox"/> 비행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린다('일진'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 등).</li> </ul>				
<p>소견 : <span style="float: right;">소견자 :</span></p>				
<p>•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반항성 장애,品行장애 등으로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경우, 본 문항에 체크함</p>				
<b>해당 개수</b>				



4) 임신부

〈 표 7 〉 가족 및 환경 사정도구

◆ 사정일자 : \_\_\_\_\_ ◆ 임신부 성명 : \_\_\_\_\_  
 ◆ 임신부 생년월일 : \_\_\_\_\_ ◆ 임신 주수 : \_\_\_\_\_

문 항 (※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 표 해 주십시오.)		없음	징후 또는 의심	있음
1	<p><b>심각한 가족 갈등이나 배우자 학대가 있다.</b></p> <p><input type="checkbox"/> 가족 내에 심각한 언어적 폭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가족 내에 심각한 신체적 폭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부부 간에 심각한 싸움이 자주 있다.  <input type="checkbox"/> 가족 구성원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p> <p>소견 : _____ 소견자 : _____</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 구성원에는 부부이외에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을 다 포함함</li> <li>폭력이나 갈등이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경우인지 판단하여 체크함</li> <li>근래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외부의 개입이 있었거나, 부부가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별거중인 경우 해당될 수 있음</li> </ul>	0	1	2
2	<p><b>임산부에게 정신장애/신체장애 혹은 심각한 질환이 있어 아동양육에 어려움이 있다.</b></p> <p><input type="checkbox"/> 정신장애 : 정신분열증( ), 지적장애( ), 우울( ), 기타( )  <input type="checkbox"/> 신체장애 : 장애종류( )  <input type="checkbox"/> 양육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질환(ex: 중증 당뇨병, 신장병 등) : 병명( , , )</p> <p>소견 : _____ 소견자 : _____</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산부에게 양육에 지장을 주는 정신장애, 신체장애,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경우 본 문항에 체크함</li> <li>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았거나, 공식적인 기관에 등록된 분명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있음(2점)'에 체크하고, 징후가 보이는 경우에는 '징후 또는 의심(1점)'에 체크함</li> <li>해당하는 장애 및 질환을 기재하고, 장애등급이 산정된 경우에는 '소견'란에 기재함</li> </ul>	0	1	2
3	<p><b>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b></p> <p><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p>	0	1	2

I 사업개요

II 사업운영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IV 아동통합사례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VII 부록

<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연속 3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  ※ 재사정시, 지난 사정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체크함 ※ 첫 사정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체크함				
소건 :		소건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하는 시기는 지난 사정 이후로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함(첫 사정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함)</li> <li>•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예시에 나온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체크함</li> </ul>				
<b>4</b>	<b>정기적인 임신부 검진을 소홀히 하고 있다.</b>	<b>0</b>	<b>1</b>	<b>2</b>
<input type="checkbox"/> 제때에 검진을 받지 않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검진 결과(주의사항)를 따르지 않는다.  소건 : 소건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부라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진을 생략하거나, 검진을 받더라도 시기를 놓쳐 제때에 검진 받지 못한 경우, 검진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본 문항에 체크함</li> <li>• 일반 혈액 검사, 간염 검사, 소변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임신 초기/중기/말기 시 초음파 검사 등의 검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함</li> </ul>				
<b>5</b>	<b>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b>	<b>0</b>	<b>1</b>	<b>2</b>
<input type="checkbox"/> 거의 매일 아침을 거른다. <input type="checkbox"/> 주 3회 이상 인스턴트 음식과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한다. <input type="checkbox"/> 주중 대부분 하루에 두 끼 식사를 하거나 주말에 폭식한다.  소건 : 소건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영양식을 섭취하는지 확인함</li> <li>• 아침식사를 거르거나 주 3회 이상 인스턴트 음식과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한 식사 및 폭식을 하는 경우 본 문항에 체크하되, 대체할만한 식품을 섭취한 경우는 제외함</li> <li>• 단순히 횟수만을 가지고 사정하기보다는, 임신부가 영양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지를 함께 확인하여 사정함</li> </ul>				
<b>6</b>	<b>의사와 상의 없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b>	<b>0</b>	<b>1</b>	<b>2</b>
<input type="checkbox"/> 감기몸살, 두통, 복통 등이 있을 시 진찰 없이 약을 복용한다. <input type="checkbox"/> 임신 전에 복용하던 약을 지금도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복용한다.  소건 : 소건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기몸살, 두통, 복통 등이 있을 시 의사의 진단 없이 약을 복용하였는지 확인함</li> <li>• 임신 전에 복용하던 약물을 임신 후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복용하는지 확인함</li> </ul>				



<b>7</b>	<b>임산부에게 심각한 알콜중독, 약물남용, 도박 등의 문제가 있다.</b>	<b>0</b>	<b>1</b>	<b>2</b>
<input type="checkbox"/> 임산부에게 심각한 알콜중독 문제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임산부에게 심각한 약물남용 문제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임산부에게 심각한 도박 문제가 있다.				
소견 : _____ 소견자 : _____				
• 임산부가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 또한 도박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본 문항에 체크함				
<b>8</b>	<b>흡연 문제가 있다</b>	<b>0</b>	<b>1</b>	<b>2</b>
소견 : _____ 소견자 : _____				
• 임산부가 흡연을 하는지 확인함 • 임산부의 흡연 행위 자체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흡연을 했을 시 체크하도록 함				
<b>해당 개수</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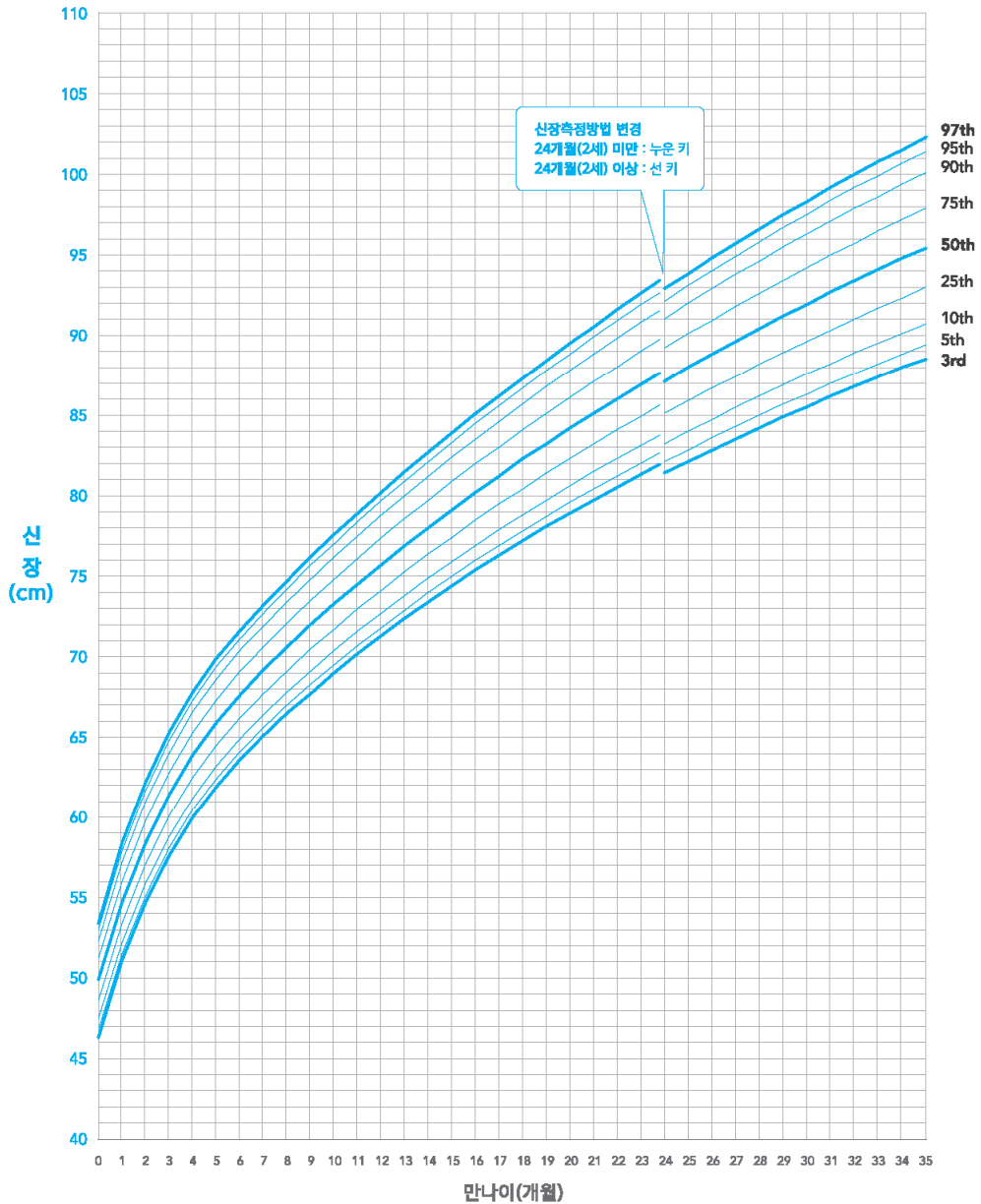
- I  
개요
- II  
사업운영
-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 IV  
아동통화사제관리
- V  
지원관리
- VI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 VII  
부록

5 | 참고자료



가.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신장 / 체중 곡선(영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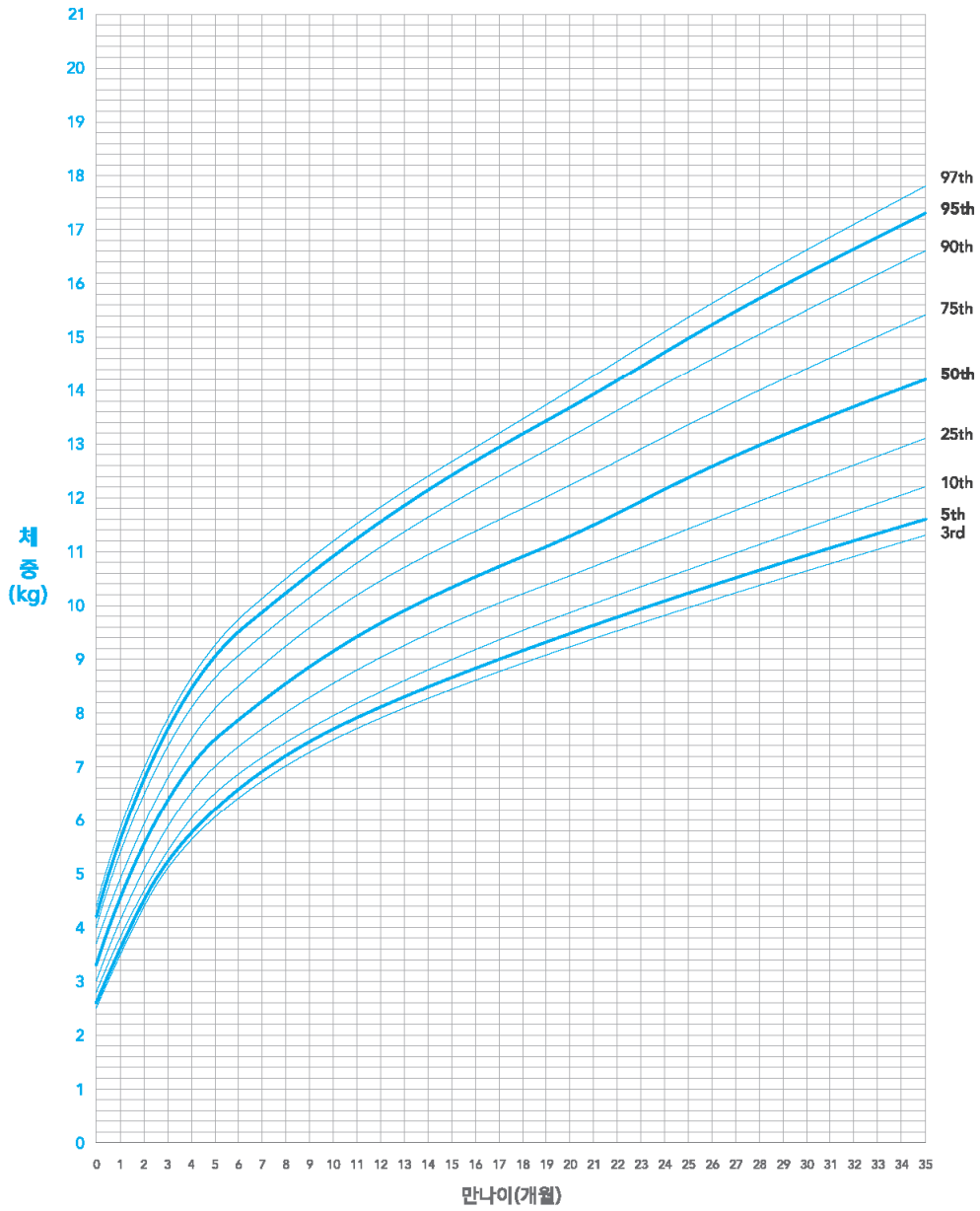
남자 0-35개월 신장 백분위수







남자 0-35개월 체중 백분위수



I 정계대상자

II 용공대상자

III 지원기구 구성 용공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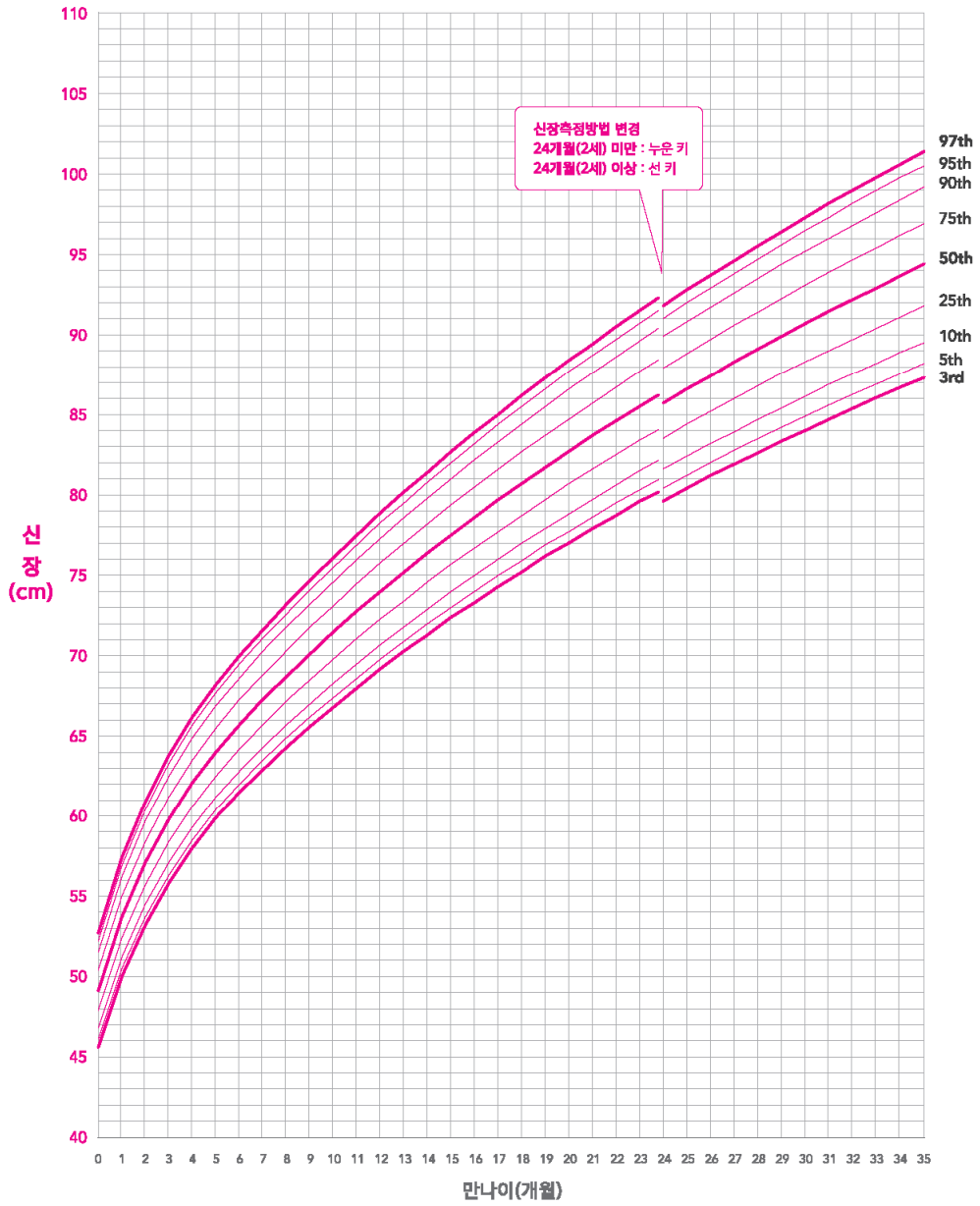
IV 아동복지시설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시설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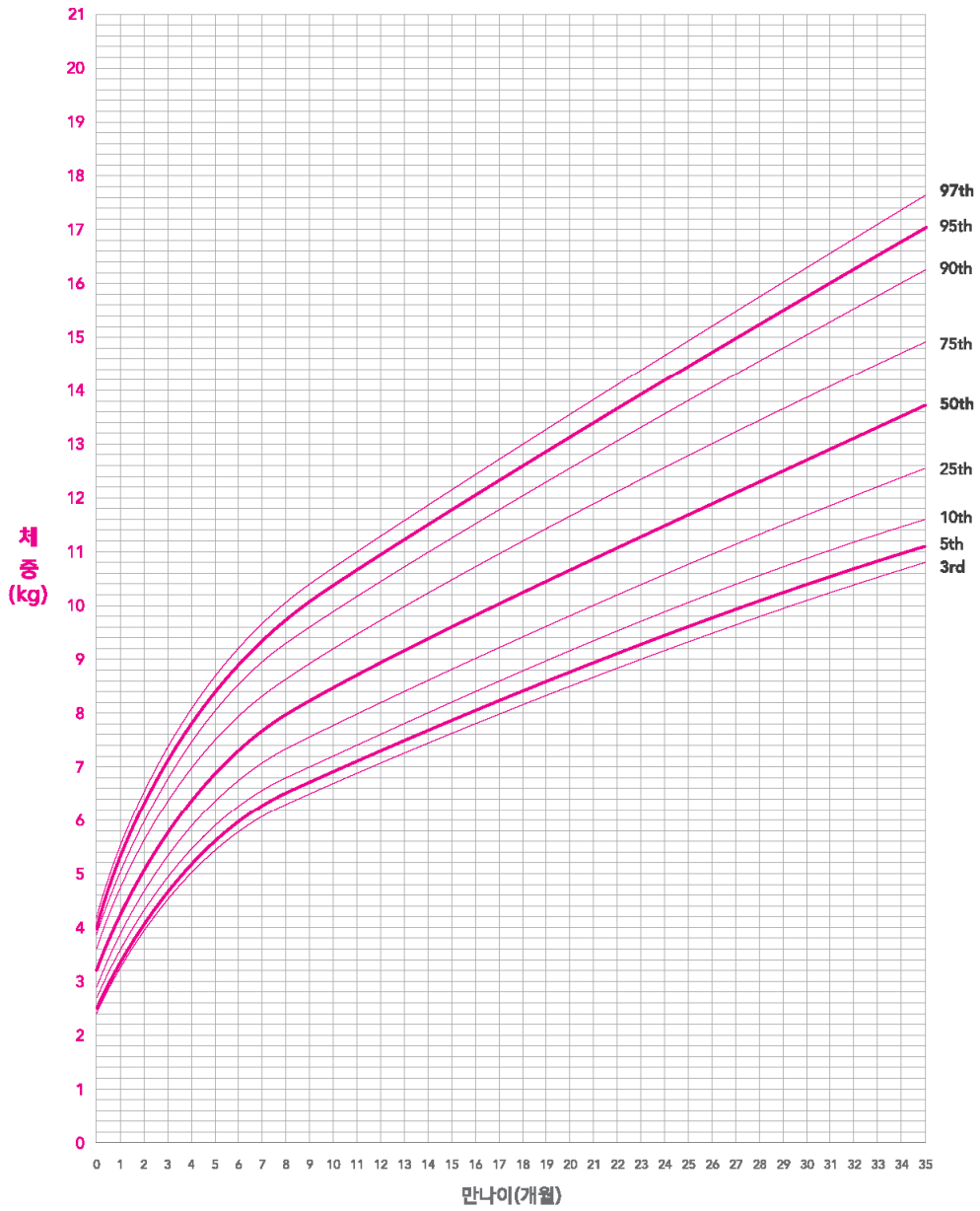
별 부 록

여자 0-35개월 신장 백분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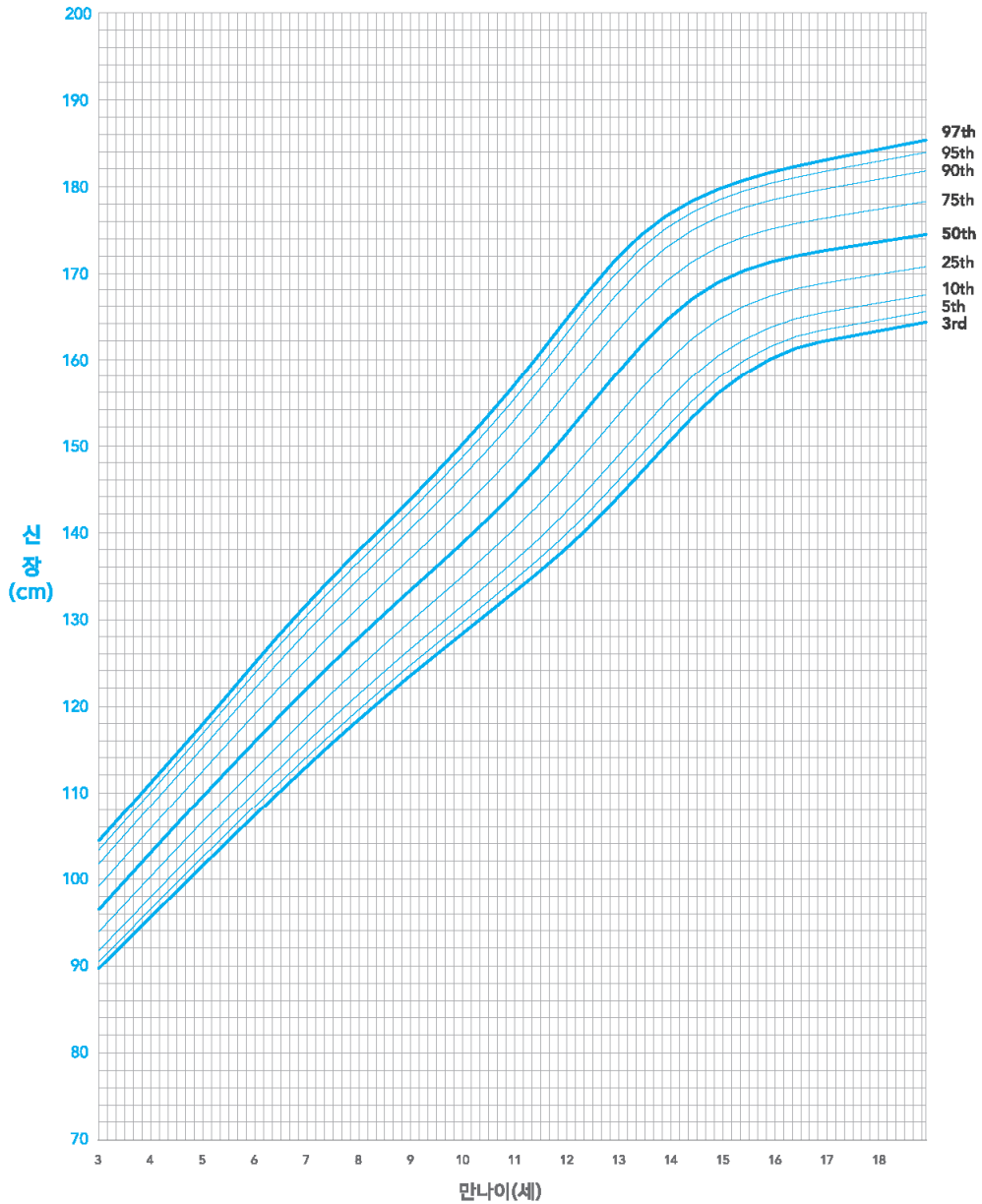
여자 0-35개월 체중 백분위수



- I 정액대상자
- II 영공대상자
-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절차
- IV 아동복지지원사업 관리
- V 지원관리
- VI 아동복지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
- VII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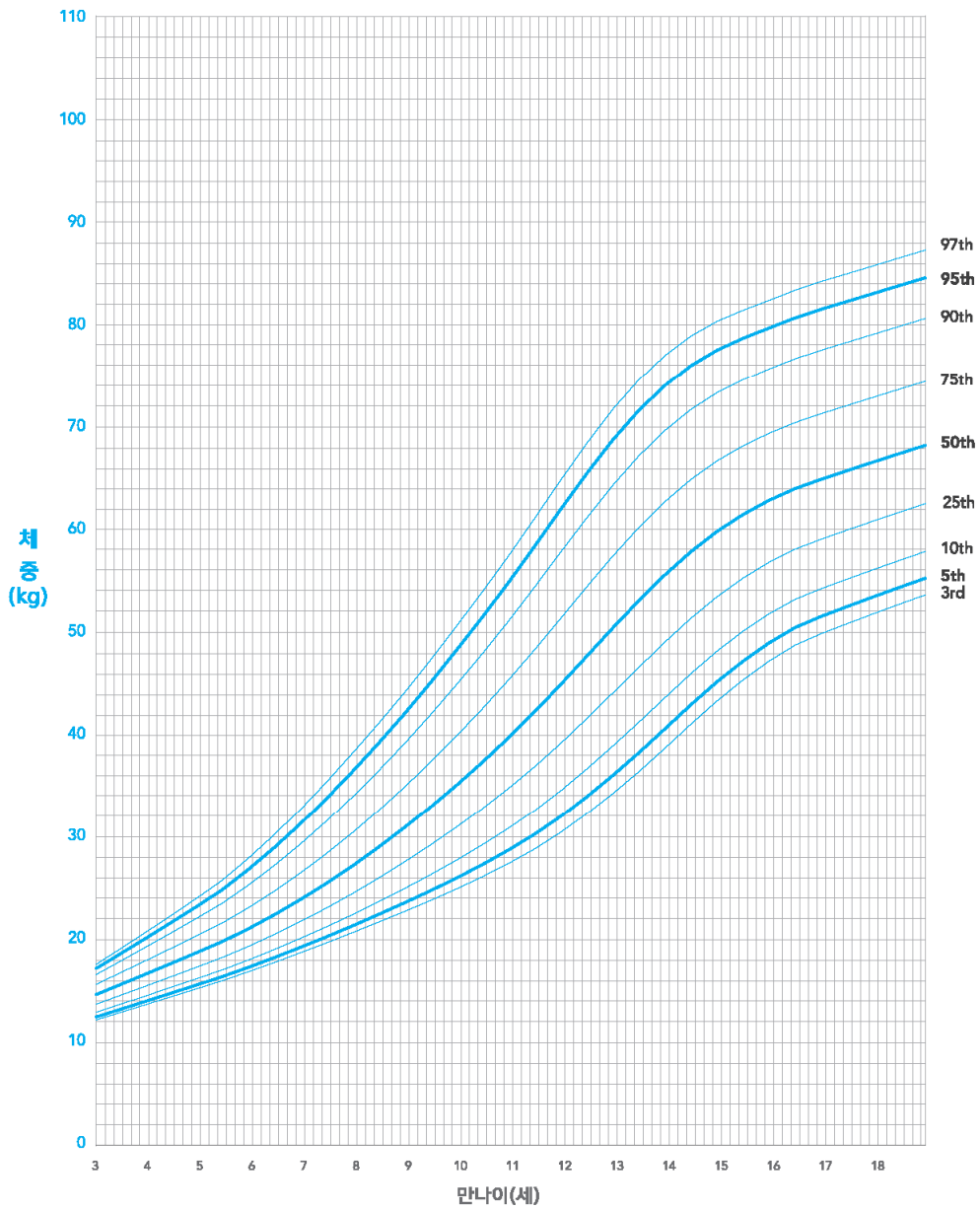
나.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신장/체중 곡선  
(유아, 취학아동)상별 평정기준

남자 3-18세 신장 백분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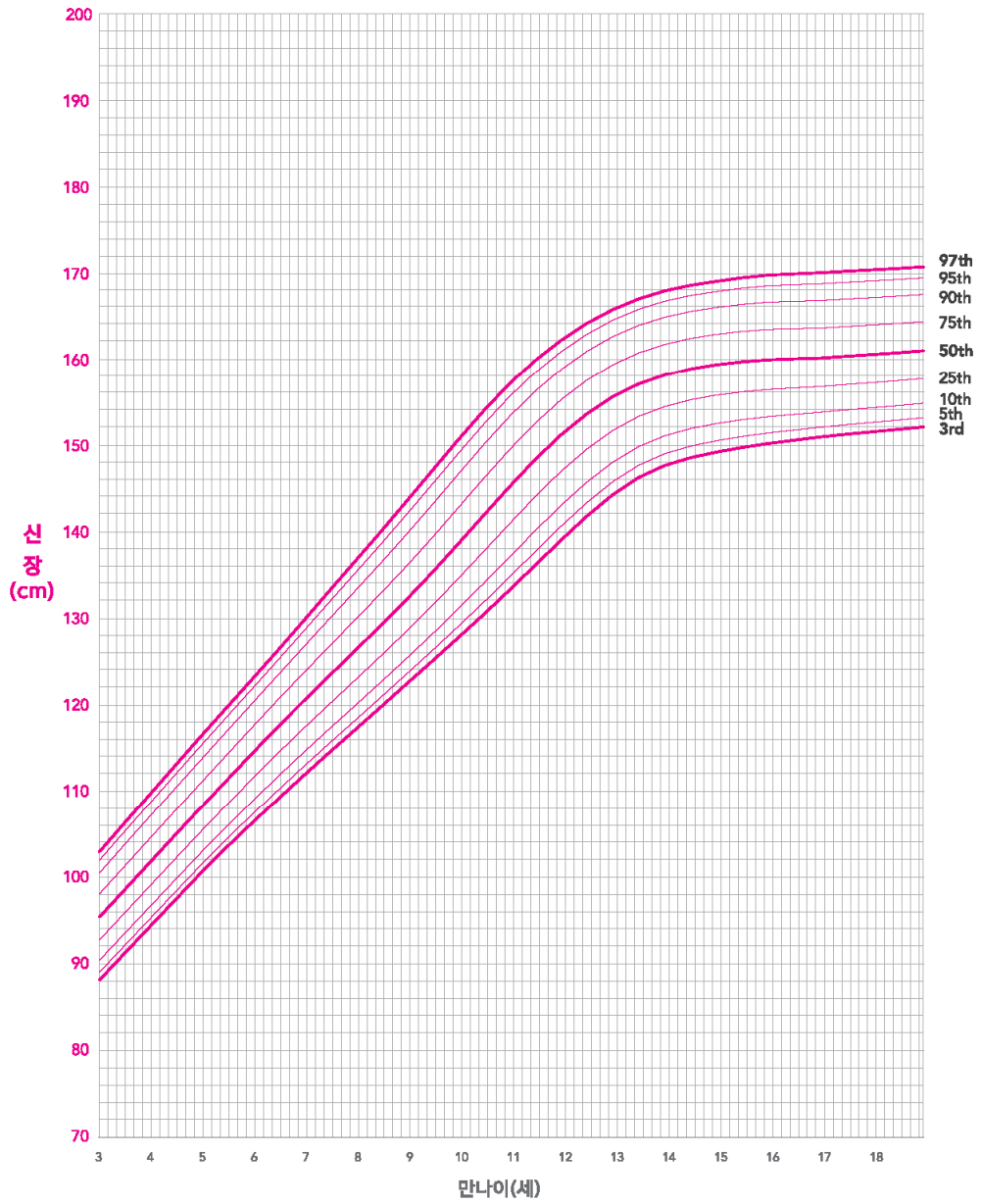


### 남자 3-18세 체중 백분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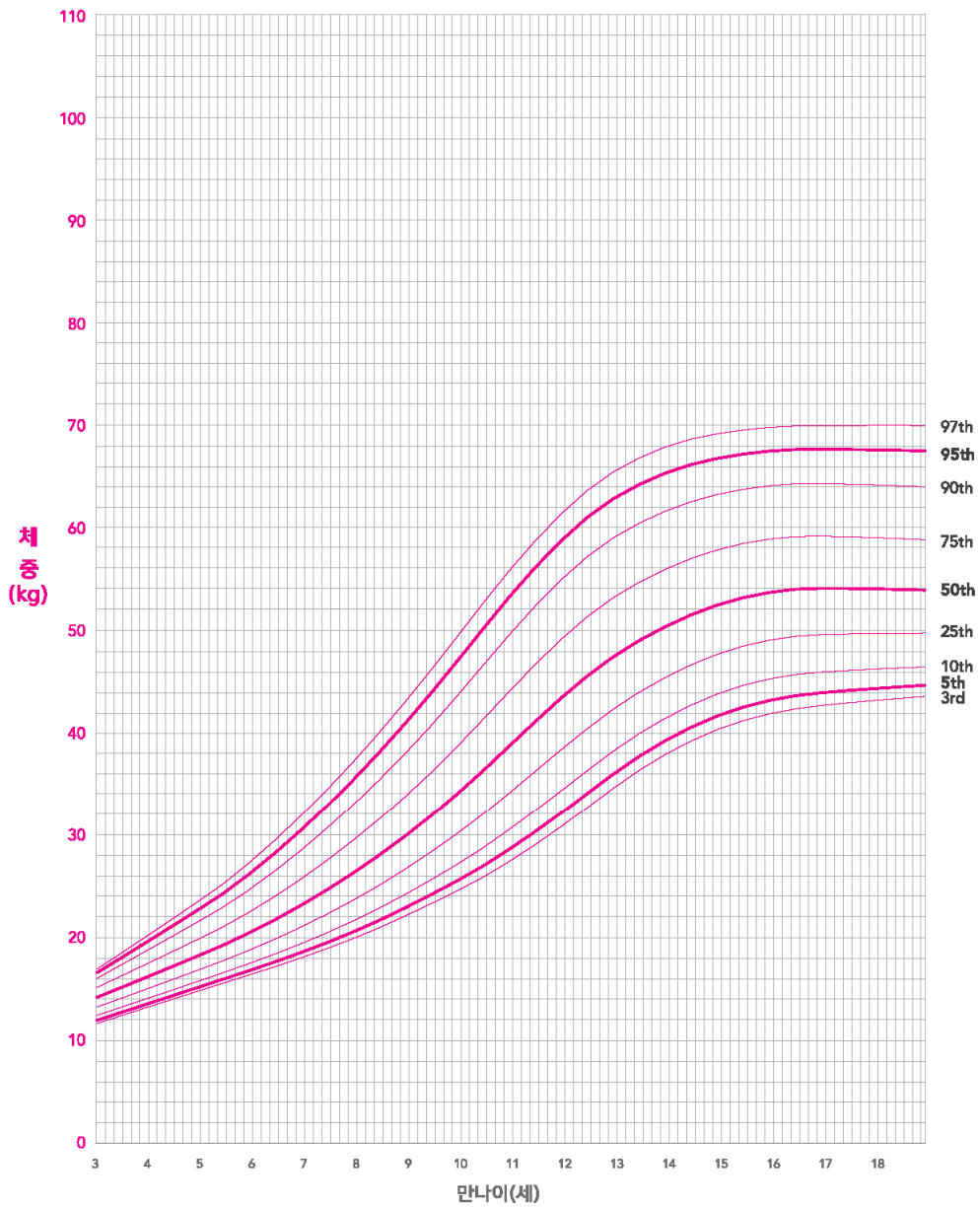
- I 경제대상자
- II 용공대상자
- III 지원가구 구성 용공 품 용공 대상자
- IV 아동복지지원대상자
- V 지원관리
- VI 아동복지지원대상자
- VII 부록

여자 3-18세 신장 백분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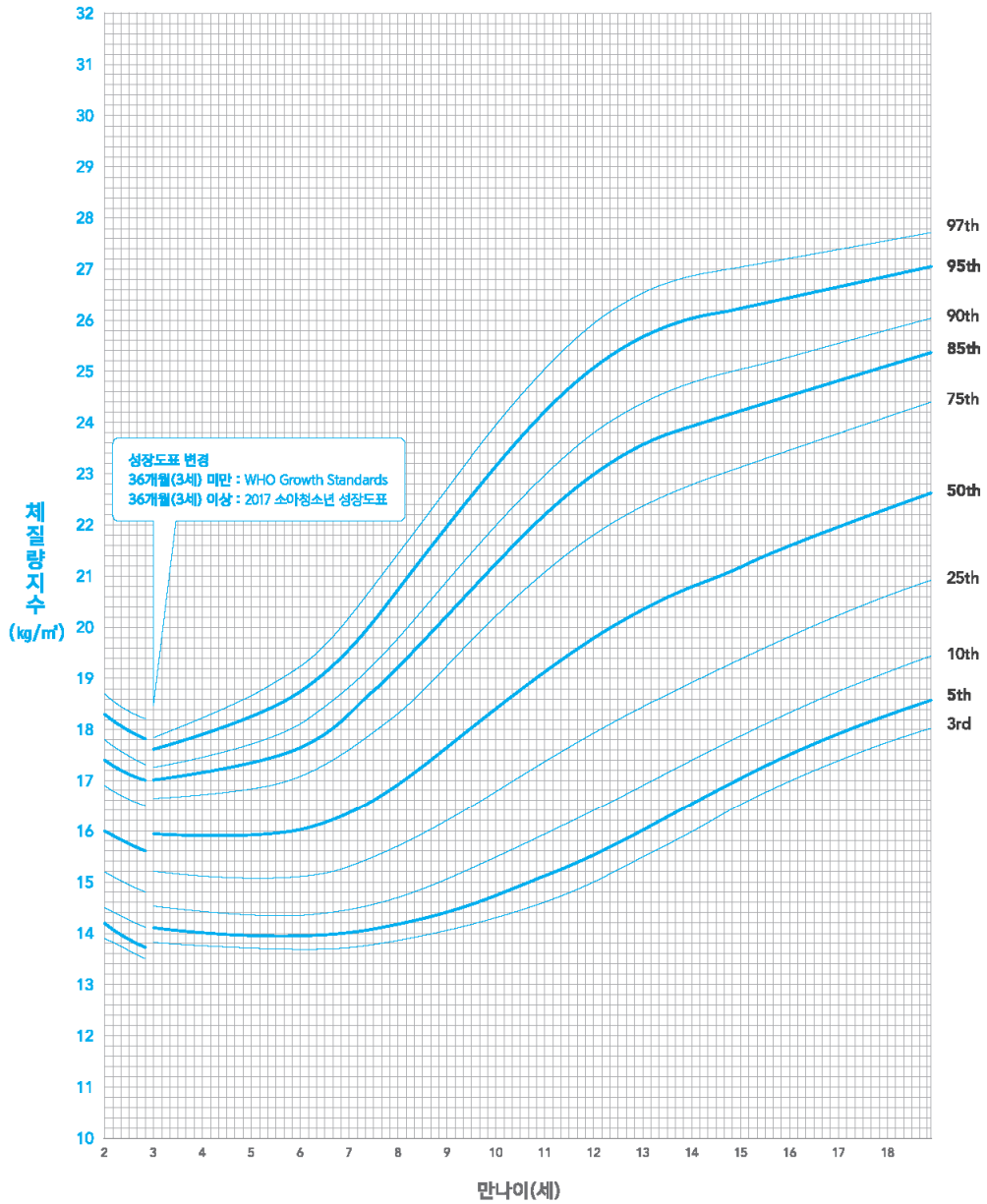
여자 3-18세 체중 백분위수



- I 경제대상자
- II 응급대상자
- III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절차
- IV 아동복지시설관리
- V 지원관리
- VI 아동복지시설운영
- VII 부록

다.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평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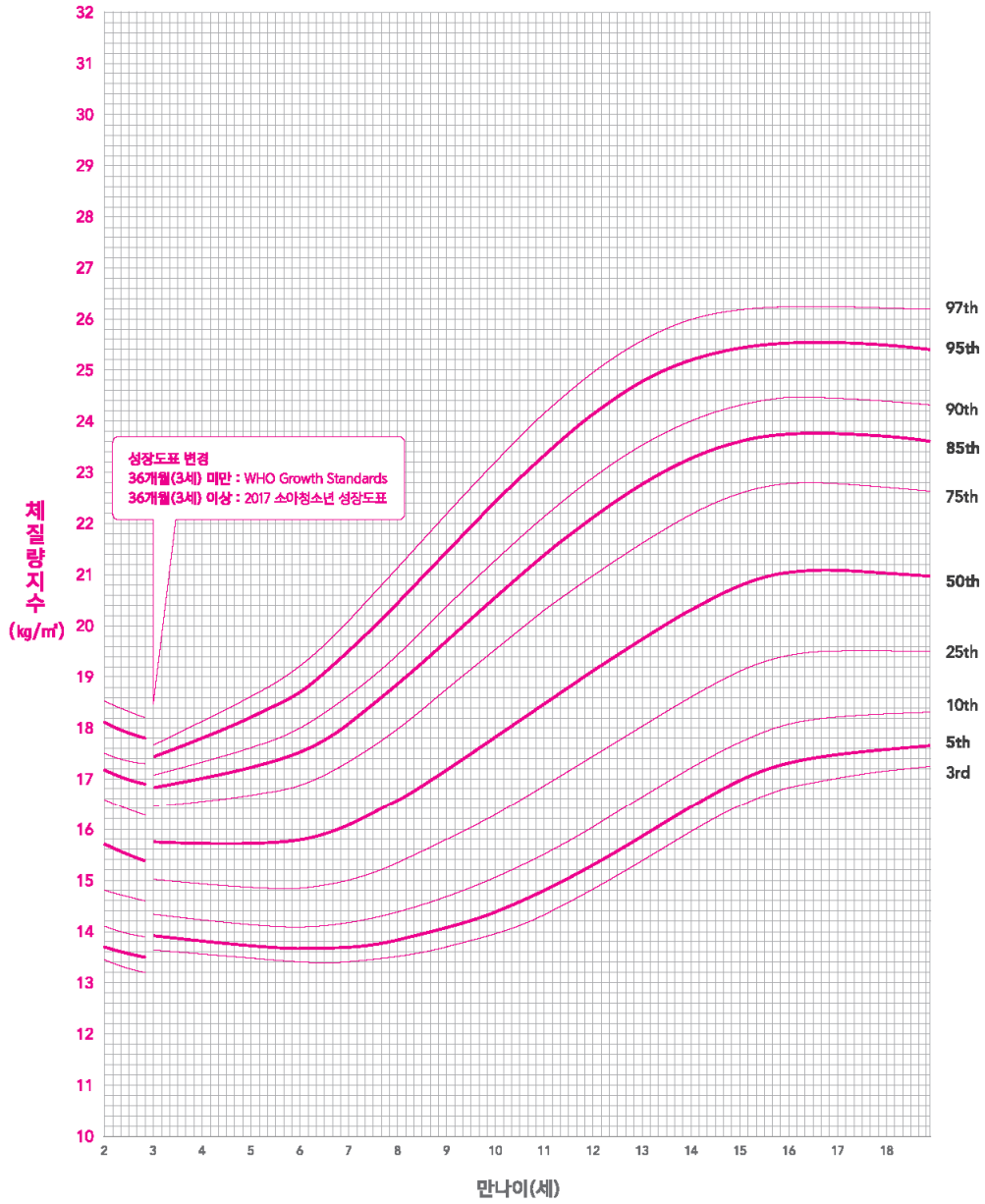
남자 2-18세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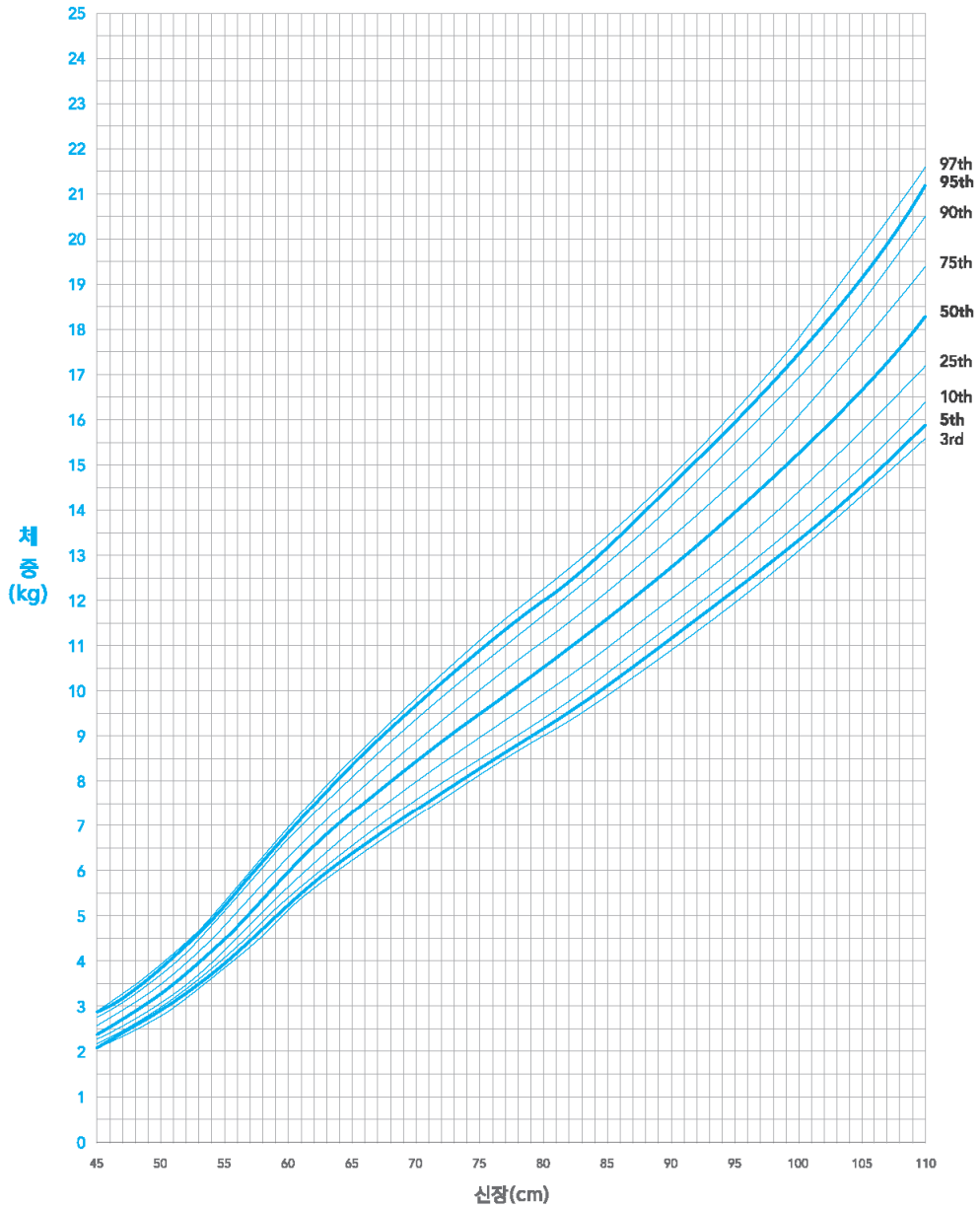
여자 2-18세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 I 경제성장
- II 공공성장
- III 저원가구 구성 및 공공 서비스 제공
- IV 아동복지서비스
- V 저원가구 관리
- VI 아동복지서비스
- VII 부록

라.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신장별 체중 평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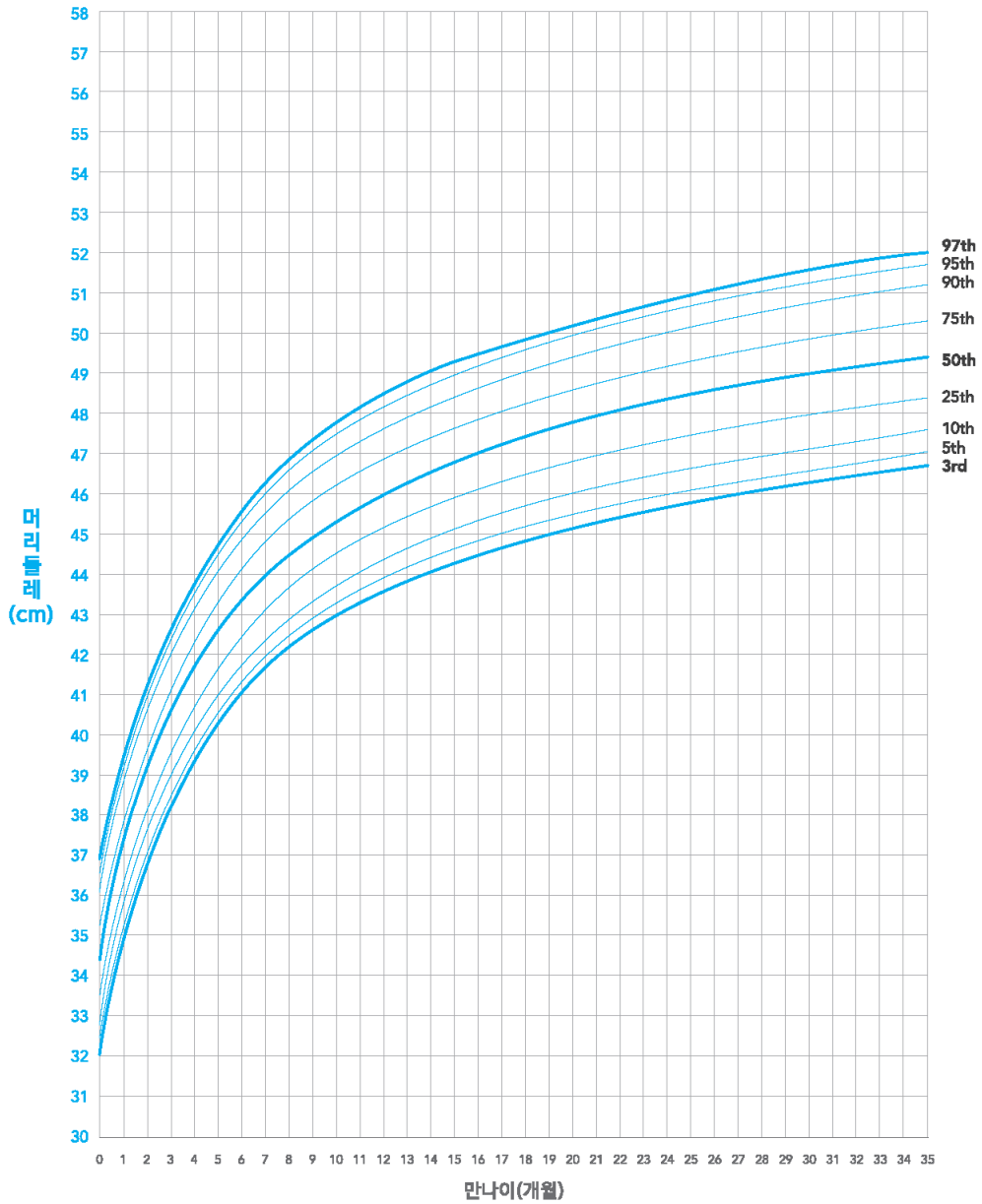
남자 0-23개월 신장별체중 백분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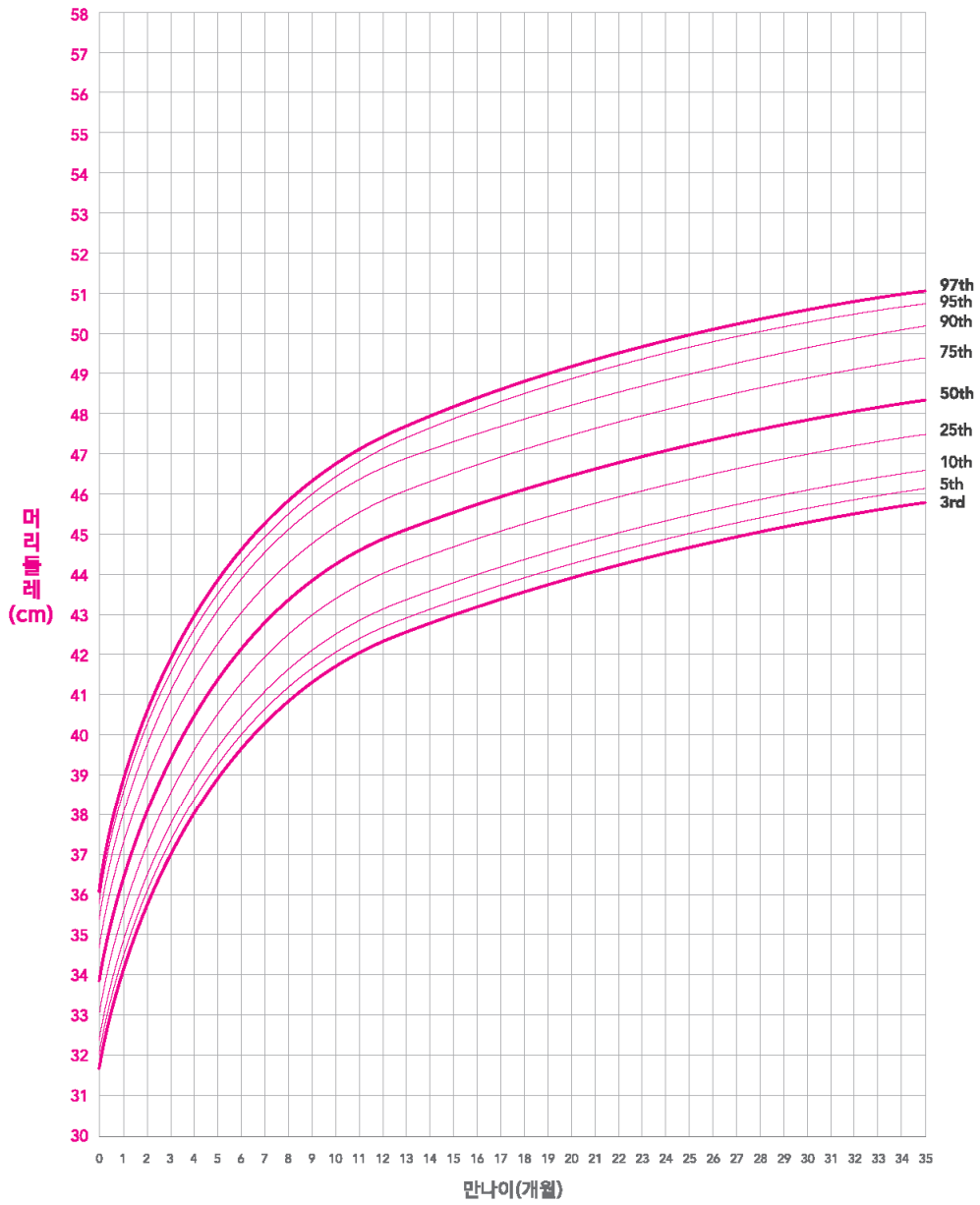
마.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머리둘레 평정기준

남자 0-35개월 머리둘레 백분위수





여자 0-35개월 머리둘레 백분위수



I 정계산양사

II 용공양사

III 지원기구 구성 용공 종합 양공

IV 아동복지시설관리

V 지원관리

VI 아동복지시설운영

부록

## 바. 아동기 장애진단 기준(DSM-V)

### 1)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 특성 : (1) 사회적·정서적 상호작용의 결함, (2)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결함, (3) 대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고 이해하는 데의 결함, (4) 제한된 관심과 기이하고 상동증 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 ■ 진단기준

1. 다양한 상황에 걸쳐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이 현재 또는 과거력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제시된 항목들이 반드시 완전한 것은 아님).
  - 1) 사회적·정서적 상호 관계에서의 결함(예: 비정상적인 사회적 접근, 주고받는 평범한 대화의 실패, 흥미, 정서, 정동(정서와 동기)의 감소된 공유,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과 반응 실패)
  - 2)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사용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들의 결함(예: 통합된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빈곤, 눈 맞춤과 신체 언어의 비정상성, 몸짓을 사용하고 이해하는 데의 결함, 얼굴표정들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전반적 결핍)
  - 3)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고, 이해하는 데의 결함(예: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맞춰 행동을 조절하는 것의 어려움, 가상놀이를 공유하거나 친구를 사귀는 데의 어려움, 또래에 대한 관심 부재)
2.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또는 활동 패턴들이 현재 또는 과거력에 의해 다음 2가지 이상으로 나타난다(제시된 항목들이 반드시 완전한 것은 아님).
  - 1) 상동증적이거나 반복적인 운동 움직임, 물체 사용, 말(예: 단순한 운동 상동증, 장난감을 정렬시키거나 물건을 획 뒤집기, 반향언어, 기이한 용어)
  - 2) 똑같은 것에 대한 고집, 틀에 박힌 일에 대한 완강한 고집, 또는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의 의식화된 패턴들(예: 작은 변화에도 극심한 고통을 받음, 행동 전환의 어려움, 융통성 없는 사고 패턴, 인사 하기의 의례적 절차, 매일 똑같은 길로 가야 하거나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함)
  - 3) 초점과 강도가 비정상적으로 매우 제한되고 고정된 흥미들(예: 특이한 물건들에 강한 애착이나 집착, 과도하게 국한되거나 집요하게 반복되는 흥미)
  - 4) 감각적 자극에 과도한 또는 저조한 반응, 또는 환경의 감각적인 면에 비정상적 관심(예: 통증/온도에 대한 명백한 무관심, 특정 소리나 감촉에 대한 부정적 반응, 물건에 대해 과도하게 냄새 맡거나 만지기, 불빛이나 움직임에 시각적으로 매료됨)
3. 이러한 증상들이 초기 발달기에 나타나야 한다(그러나 사회적 요구들이 제한된 능력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노년기에는 학습된 전략들에 의해 감추어질 수도 있음).



4. 이러한 증상들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분야의 현재 기능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
5. 이러한 장애가 지적 장애(지적 발달장애) 또는 전반적 발달 지연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 지적 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흔히 함께 발생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지적 장애를 동반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사소통이 기대되는 일반 발달 수준보다 이하여야 한다.

## 2)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 특성 :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부주의하며 충동적인 과잉행동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즉 (1) 적절한 행동조절의 실패, 부주의(예: 주의산만), 충동적인 과잉 행동이 12세 이전에 시작되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되고, (2) 2가지 이상의 상황(예: 학교, 가정, 작업장 등)에서 나타나며, (3) 이로 인해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그 질이 크게 저하될 때 ADHD로 진단된다.

### ■ 진단기준

1. 부주의 및 과잉행동-충동성의 지속적인 패턴이 나타난다. 이러한 패턴은 개인의 기능과 발달을 저해 하며, 아래 1)항과 2)항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 1) **부주의:** 다음 중 6개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이 발달수준에 맞지 않으며, 사회적, 학업적/직업적 활동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1) 흔히 세부적인 면에 대해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직업, 또는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다(예: 세부사항을 간과하거나 놓침, 작업이 정확하지 못함).
    - (2) 흔히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예: 강의, 대화, 긴 독서 중에 집중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3) 흔히 다른 사람이 직접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예: 뚜렷하게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없는데도 정신이 다른 곳에 가있는 것처럼 보임).
    - (4) 흔히 지시를 완수하지 못하고, 학업, 잡일, 작업장에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예: 과업을 시작하지만, 곧 초점을 잃고 쉽게 옆길로 빠짐).
    - (5) 흔히 과업과 활동을 체계화하지 못한다(예: 순차적인 과업을 처리하는데 어려움, 자료와 소지품을 정리하는데 어려움, 지저분하고 정리되지 않은 업무, 형편없는 시간관리, 마감기한을 맞추지 못함).
    - (6) 흔히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업에 연관되기를 피하고, 싫어하고, 꺼린다(예: 학업이나 숙제, 청소년기 후거나 성인기에 보고서 준비, 서식 작성하기, 긴 서류 검토하기).

- (7) 흔히 과업이나 활동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잃어버린다(예: 학교 자료, 연필, 책, 도구, 지갑, 열쇠, 서류, 안경, 핸드폰).
- (8) 흔히 외부자극에 의해 쉽게 산만해진다(청소년기 후기나 성인에게는 관련 없는 생각들이 포함될 수 있음).
- (9) 흔히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린다(예: 잡일, 심부름, 청소년기 후기나 성인에게는 회답 전화하기, 공과금 내기, 약속 지키기).
- 2) **과잉행동-충동성**: 다음 중 6개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이 발달수준에 맞지 않으며, 사회적, 학업적/직업적 활동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 후기나 17세 이상은 최소한 5개의 증상이 요구된다.
- (1) 흔히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툭툭 두드리고, 또는 자리에 앉아서도 몸을 움직이려한다.
- (2) 흔히 앉아 있도록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리를 떠난다(예: 교실, 사무실이나 작업장).
- (3) 흔히 부적절한 상황에서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청소년기나 성인에서는 안전부절 못하는 느낌으로 제한될 수 있다).
- (4) 흔히 조용하게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한다.
- (5) 흔히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마치'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한다(예: 음식점, 회의에서처럼 긴 시간동안 가만히 있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편안하지 않음. 안전부절못하거나 따라가기 어렵다고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도 있음).
- (6) 흔히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을 한다.
- (7) 흔히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예: 사람들의 문장을 자신이 끝맺음, 대화 중에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못함).
- (8) 흔히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예: 줄을 기다리는 동안).
- (9) 흔히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한다(예: 대화, 게임, 활동에 참견을 함, 허락을 구하거나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쓰기도 함, 청소년기나 성인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함부로 침범하거나 탈취할 수도 있음).
2. 몇몇 부주의나 과잉행동-충동성의 증상이 12세 이전에 나타난다.
3. 몇몇 부주의나 과잉행동-충동성 증상이 2가지 이상의 상황에서 존재한다(예: 집, 학교, 직장,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함께 있을 때, 다른 활동 중에).
4. 이러한 증상들이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을 방해하거나 그 질을 저하시킨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5. 이러한 증상들이 정신분열증이나 다른 정신증적 장애의 경과 중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야 하고, 다른 정신장애(예: 기분장애, 불안장애, 해리장애, 성격장애, 물질중독 또는 금단)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





어느 것인지 명시할 것

- 복합형 : 지난 6개월 동안 진단기준 1의 1) 부주의와 2) 과잉행동-충동성에 모두 부합되는 경우
- 부주의 우세형 : 지난 6개월 동안 진단기준 1의 1) 부주의에는 부합되지만, 2) 과잉행동-충동성에는 부합되지 않는 경우
- 과잉행동-충동성 우세형 : 지난 6개월 동안 진단기준 1의 2)과잉행동-충동성에는 부합되지만, 1) 부주의에는 부합되지 않는 경우

현재의 심각도 구분

- **경도(mild)** : 증상이 사회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가벼운 손상 이상을 초래하지 않음
- **중등도(moderate)** : 증상이나 기능적 손상이 '경도' 와 '중증도' 사이에 존재함
- **중증도(severe)** : 특별히 심각한 여러 증상들이 존재하거나 또는 증상이 사회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뚜렷한 손상을 초래함

### 3) 틱장애(tic disorder)

- **특성** : 자신도 모르게 얼굴, 목, 어깨, 팔, 다리 등을 빠르게 반복적이며 비율동적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는 부적응적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 **진단기준**

틱은 갑작스럽고, 빠르고, 반복적이고, 비율동적인 운동 움직임 또는 음성이다.

#### ■ 뚜렛 장애

1. 여러 가지 운동틱과 1가지 이상의 음성틱이 반드시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장애의 경과 중 일부 기간 동안 나타난다.
2. 틱은 흔히 나빠지거나 좋아질 수 있지만, 처음 틱이 나타난 이후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3. 발병은 18세 이전이다.
4. 틱은 물질(예: 코카인)이나 다른 의학적 질환(예: 헌팅톤병, 바이러스 감염후 뇌염)의 생리적 효과들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 지속성(만성) 운동 또는 음성 틱장애

1. 1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운동 또는 음성틱이 장애의 경과 중에 존재하지만, 운동틱과 음성틱 둘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2. 틱은 흔히 나빠지거나 좋아질 수 있지만, 처음 틱이 나타난 이후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3. 발병은 18세 이전이다.
4. 틱은 물질(예: 코카인)이나 다른 의학적 질환(예: 헌팅톤병, 바이러스 감염후 뇌염)의 생리적 효과들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5. 뚜렛 장애의 진단기준에 맞지 않아야 한다.  
 세분할 것 : 운동틱만 나타나는 경우  
                   음성틱만 나타나는 경우

#### ■ 일시성 틱장애

1. 1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운동틱 또는 음성틱이 있다.
2. 틱이 처음 발병한지 1년 미만이다.
3. 발병은 18세 이전이다.
4. 틱은 물질(예: 코카인)이나 다른 의학적 질환(예: 헌팅톤병, 바이러스 감염 후 뇌염)의 생리적 효과들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5. 뚜렛 장애 또는 지속성(만성)운동 및 음성 틱장애의 진단기준에 맞지 않아야 한다.

## 4)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 특성 : 우울장애의 하위유형에서 증상이 가장 심한 것으로 거의 매일, 하루에 대부분, 우울증이 연속적으로 2주 이상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 진단기준

1. 다음 9가지 중 5개 이상의 증상이 연속적으로 2주 이상 나타나고, 이전 기능으로부터의 변화가 있다. 5개의 증상들 중 적어도 하나는 1) 또는 2)가 포함되어야 한다. 1)은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이고, 2)는 흥미나 즐거움의 현저한 저하이다.
  - 1) 하루의 대부분,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본인의 주관적 보고(예: 슬프고, 공허하고, 절망적 이라고 느낀다)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관찰(예: 눈물이 있는 것)로도 나타난다(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과민한 기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
  - 2)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다(주관적인 설명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관찰로도 나타난다).
  - 3) 체중조절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현저한 체중감소나 체중증가가 나타나거나(예: 1개월에 체중의 5% 이상 변화), 또는 현저한 식욕감소나 식욕증가가 거의 매일 나타난다(아동의 경우 기대되는 체중 증가에 미치지 못한다).
  - 4) 거의 매일 불면이나 과다수면이 나타난다.



- 5) 거의 매일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가 나타난다(단순히 안절부절못함 또는 치진다는 주관적 느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관찰가능).
  - 6) 거의 매일 피로감이나 활력 상실이 나타난다.
  - 7) 거의 매일 무가치감이나 과도하고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낀다(단순히 아픈 것에 대한 자책이나 죄책감이 아님).
  - 8) 거의 매일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이 나타난다(주관적인 설명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관찰로도 나타난다).
  - 9)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님), 특정한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생각, 또는 자살기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2. 이러한 증상들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3. 삽화가 물질이나 다른 의학적 질환의 생리적 효과들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주요 우울 삽화의 발생이 분열정동장애, 정신분열증, 정신분열형 장애, 망상장애, 또는 기타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들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
  5. 조증 삽화나 경조증 삽화가 있었던 적이 없어야 한다.

#### 해당된다면 세분할 것

- 불안 양상이 있는 것
- 혼재성 양상이 있는 것
- 멜랑콜리아 양상이 있는 것
- 비전형적 양상이 있는 것
- 기분과 일치하는 정신증적 양상이 있는 것
- 기분과 일치하지 않는 정신증적 양상이 있는 것
- 긴장증이 있는 것
- 산후 발병에 의한 것
- 계절성 양상이 있는 것

I  
정리  
정리II  
사업  
사업III  
지원  
지원IV  
아동  
아동V  
지원  
지원VI  
아동  
아동VII  
부  
부

## 5) 분리불안장애(separation anxiety disorder)

■ 특성 : 중요한 애착 대상과의 분리에 대해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나타내는 정서적 장애를 말한다. 즉, (1) 발달단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아동이 어머니를 위시한 애착 대상과 떨어지는 것에 대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나타내고, (2) 진단기준 1의 8가지 중에 3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며, (3) 이러한 증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4주, 성인의 경우 6개월 이상 지속되고, (4) 이로 인해 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고통을 겪거나 부적응적 증상들이 초래되는 경우 분리불안장애로 진단된다.

### ■ 진단기준

1. 발달단계에 맞지 않게 아동이 애착 대상과의 분리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나타내고, 다음 8가지 중 3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
  - 1) 주요 애착 대상이나 집을 떠나야 할 때마다 또는 그러한 상황이 예상될 때마다 심한 불안과 고통을 느낀다.
  - 2) 주요 애착 대상을 잃을까봐, 또는 애착 대상이 질병, 부상, 재난, 죽음과 같은 해로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걱정한다.
  - 3) 애착 대상과 분리될 수 있는 사건들(예: 길을 잃음, 납치당함, 사고를 당함, 병에 걸림)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걱정한다.
  - 4) 분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밖을 나가거나, 집을 떠나거나,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또는 그 외의 장소에 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꺼리거나 거부한다.
  - 5) 혼자 있게 될까봐, 또는 주요 애착 대상 없이 집이나 다른 장소에 있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도한 공포를 느끼거나 꺼린다.
  - 6) 집을 떠나 잠을 자거나 주요 애착 대상이 근처에 없이 잠을 자는 것을 지속적으로 꺼리거나 거부한다.
  - 7) 분리의 주제를 포함하는 악몽을 반복적으로 꾸는다.
  - 8) 주된 애착 대상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분리가 예상될 때 반복적인 신체증상(예: 두통, 복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호소한다.
2. 공포, 불안, 또는 회피가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최소한 4주, 성인의 경우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3. 이러한 장애가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4. 이러한 장애가 다른 정신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자폐 스펙트럼 장애(변화에 대한 과도한 저항 때문에 집 떠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정신증적 장애(이별과 관련된 망상이나 환각), 광장 공포증(신뢰하는 동반자 없이는 밖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 범불안장애(중요한 다른 사람에게 질병이나 피해가 발생될까봐 걱정하는 것), 질병불안장애(질병을 가졌을까봐 걱정하는 것)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

## 6)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

- 특성 : 생활 전반에 걸쳐 만성적인 불안과 과도한 걱정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즉 (1)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건이나 활동에 대해서 과도한 불안과 근심이 6개월 이상 거의 매일 나타나고, (2) 이러한 걱정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끼며, (3) 진단기준 3의 6가지 중 3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고(아동의 경우에는 1개), (4) 이로 인해 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고통을 겪거나 부적응적 증상들이 초래되는 경우 범불안장애로 진단된다.

### ■ 진단기준

1. 다양한 사건이나 활동(예: 일이나 학업수행)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걱정(염려스러운 기대)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이러한 증상이 없었던 날보다 있었던 날들이 더 많다.
2. 개인은 이러한 걱정을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3. 불안과 근심걱정은 다음의 6가지 중 3개 이상의 증상들과 관련되어 있다(지난 6개월 동안 최소한 몇몇 증상들은 없었던 날보다 있었던 날들이 더 많다). 아동의 경우 1가지 증상이면 된다.
  - 1) 안절부절못함 또는 긴장이 고조되거나 신경이 곤두선 느낌
  - 2) 쉽게 피로해짐
  - 3) 주의집중의 곤란이나 정신이 멍해지는 느낌
  - 4) 화를 잘냄(과민성)
  - 5) 근육긴장
  - 6) 수면 장애(잠들기가 어렵거나 수면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또는 초조하고 불만족스러운 수면)
4. 불안, 걱정, 또는 신체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5. 이러한 장애가 물질(예: 남용 약물, 투약 약물)이나 다른 의학적 질환(예: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생리적 효과들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6. 이러한 장애가 다른 정신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공황장애(공황발작이 일어나는 것), 사회불안장애(부정적 평가), 강박장애(오염이나 다른 강박사고), 분리불안장애(애착 대상과의 이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외상적 사건 회상의 촉발자극), 신경성 식욕부진증(체중증가), 신체증상장애(신체적 호소), 신체변형장애(지각된 외모 결함), 질병불안장애(심각한 질병), 정신분열증이나 망상장애(망상적 신념)의 내용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아니어야 한다.

## 7) 적대적 반항장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 특성 : 어른에게 불복종하고, 거부적이며,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즉 (1) <분노하며 짜증내는 기분>, <논쟁적이고 반항적인 행동>, <악의적인 복수심의 표출>의 3가지 범주 8가지 중 4개 이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나고(진단기준 1), (2) 이로 인해 부적응적 증상들이 초래되거나 주변 사람들(예: 가족, 또래집단, 직장 동료)이 고통을 받을 경우 적대적 반항장애로 진단된다.
- 진단기준

1. 분노/짜증내는 기분, 논쟁적/반항적 행동, 악의적인 복수심의 3가지 범주 8가지 중 4개 이상의 증상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행동 양상. 이러한 행동이 형제자매가 아닌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다.

### 분노/짜증내는 기분

- 1) 자주 버럭 화를 낸다.
- 2) 자주 과민하거나 쉽게 짜증을 낸다.
- 3) 자주 분노하고 원망한다.

### 논쟁적/반항적 행동

- 4) 자주 권위가 있는 대상과 논쟁하거나, 또는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어른과 논쟁한다.
- 5) 자주 권위가 있는 대상으로부터의 요청이나 규칙을 따르는데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거절한다.
- 6) 자주 고의적으로 타인을 괴롭힌다.
- 7) 자주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 악의적인 복수심

- 8) 지난 6개월 이내에 최소한 2번 이상 악의적이거나 앙심을 품은 적이 있다.

2. 이러한 행동 장애가 가까운 사회적 환경(예: 가족, 또래집단, 직장 동료)에 있는 개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이러한 행동이 정신증, 물질사용, 우울, 또는 양극성 장애의 경과 중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 또한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야 한다.

#### 현재의 심각도 구분

- 경도(mild) : 증상이 1가지 환경에만 국한되는 경우(예: 집, 학교, 직장, 또래와의 관계)
- 중등도(moderate) : 증상이 최소한 2가지 환경에서 나타나는 경우
- 중증도(severe) : 증상이 3가지 이상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경우

### 8) 품행장애(conduct disorder)

- 특성 :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거나 나이에 적합한 사회적 규범 및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즉 (1) 진단기준 1에 제시된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 <재산파괴>, <사기 또는 절도>, <중대한 규칙위반>의 4가지 범부 15가지 중 3개 이상이 지난 12개월간 지속되고 이 중 1개 항목 이상이 지난 6개월 동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2) 이로 인해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초래되는 경우 품행장애로 진단된다.
- 진단기준

1.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나이에 적합한 사회적 규범 및 규칙을 위반하는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행동패턴이 지난 12개월 동안에 다음 15개의 기준 중 3개 이상으로 나타난다. 그중 1개 이상의 기준은 지난 6개월 이내에 나타나야 한다.

####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 1) 자주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협박하거나, 겁먹게 한다.
- 2) 자주 신체적인 싸움을 건다.
- 3) 다른 사람에게 심한 신체손상을 줄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한다(예: 곤봉, 벽돌, 깨진병, 칼, 총).
- 4)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잔인하게 대한다.
- 5) 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잔인하게 대한다.
- 6) 피해자와 대면한 상황에서 도둑질을 한다(예: 노상강도, 지갑 날치기, 강탈, 무장강도).
- 7)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성적 행위를 강요한다.

**재산파괴**

- 8) 심각한 파괴를 일으킬 작정으로 고의로 불을 지른다.
- 9) 다른 사람의 재산을 고의로 파괴한다(방화에 의한 것은 제외).

**사기 또는 절도**

- 10) 다른 사람의 집, 건물, 또는 차를 파괴한다.
- 11) 물품이나 호감을 취득하기 위해, 또는 의무를 피하려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예: 다른 사람을 속인다).
- 12)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귀중품을 훔친다(예: 파괴와 침입 없이 물건을 사는 채하고 훔치기, 문서위조).

**심각한 규칙 위반**

- 13) 부모가 금지하는데도 자주 외박을 하고, 이는 13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 14) 부모나 양부모와 집에서 같이 살면서 최소한 2번 이상의 가출이 있었다(또는 장기간 돌아오지 않는 1번의 가출).
  - 15) 학교 무단결석을 자주 하고, 이는 13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2. 이러한 행동 장애가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
3. 18세 이상인 경우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야 한다.

**세분할 것**

- **아동기-발병형** : 10세 이전에品行장애 증상이 최소한 1가지 이상 나타나는 경우
- **청소년기-발병형** : 10세 이후에品行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불특정형** :品行장애의 진단기준에는 부합되지만, 첫 증상 발병이 10세 이전인지 이후인지 판단하기에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현재의 심각도 구분**

- **경도(mild)** :品行문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적은 피해를 끼치는 경우(예: 거짓말, 무단결석, 허락 없이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
- **중등도(moderate)** :品行문제의 빈도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경도와 중증도의 중간일 경우(예: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훔치기, 공공기물 파손)
- **중증도(severe)** :品行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예: 강제적 성관계, 신체적 잔인함, 무기 사용, 피해자와 대면한 상황에서 훔치기, 무단침입)



## 2018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초 판 발 행 일 | 2017년 12월

발 행 처 | 보건복지부

연락 및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TEL 044-202-3433, 3438  
FAX 044-202-3968

---

이 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http://www.moh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